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703-01



대외협력 연구

중국 지식재산 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China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2019년도 기초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대외협력 연구

중국 지식재산 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China

2019.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인프라사업의 기초연구활성화 중, “대외협력 연구 - 중국 지식재산 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 구 기 간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연 구 책 임 자 : 이현희(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참 여 연 구 원 : 김송이(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

김아린(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임연구원)

자 문 위 원 : 윤성혜(원광대학교 연구교수)

조은교(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홍규(동서대학교 부교수)

김태수(특허법인 고려 변리사)

이종기(특허법인 中科 변리사)

김세윤(지심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 (연구배경)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가로서,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필요
 - 지식재산 국제규범에 대한 중국의 참여 확대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제도의 개혁 추진
 - 글로벌 시장경쟁의 우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신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실시
 - 경제의 중저속 성장시대의 대안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전략형 신산업(전략성 신항산업) 육성전략부터 중국제조 2025, ‘스마트 플러스’에 이르기까지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육성정책 실시
 - * 소재부품 산업 중심에서 선진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
- (연구목적) 중국의 지식재산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 및 지식재산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주요 지역의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와 상이한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체계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증진
 - 중국의 경제발전단계 및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정책 및 대외무역정책을 살펴보고, 신기술 기반의 산업정책 분석을 통해 對중국 대응방향 모색
 - 중앙정책과 법제도에 한정되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탈피하여 성(省)별 접근을 통해 중국 각 지역의 지식재산 환경 및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수행

제2장 중국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지식재산 환경

- (경제정책의 전환) 1978년 개혁개방 초기의 급격한 경제 성장시기부터 경제의 중저속 성장시대인 신창타이(新常态)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경제정책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힘쓰고 있음
 - (개혁개방 초기 경제현대화정책) 1978년 개혁개방을 통해 문화대혁명으로 침체된 경제 및 사회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외국의 자본 및 기술을 도입하여 중국의 현대화 건설 추진
 -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정책)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수립된 시기로 중국 최초로 시장경제 특성의 산업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농촌경제 발전과 전자기계·석유화학·건설업 등 제조업의 발전 촉진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정책) WTO 가입 이후 외국 기술·자본 유입과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를 개선하였으며 전략성 신흥산업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
 - (혁신적 경제발전 정책) 고속 성장에서 중저속 성장으로 전환된 2012년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산업고도화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지식재산전략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 (대외무역 정책의 변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외무역 정책을 통해 국내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 발전을 지속해옴
 - (수출가속화 정책) 대외개방 초창기에 중국은 대외무역 관리체제를 개혁하고 경제특구, 연해 개방도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제한을 완화
 - (대외무역 제도화 정책) 90년대 들어 경제특구를 확대하고, 대외무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WTO 가입을 위해 무역제도 개혁
 - (대외무역의 전지구화 정책) 2000년대부터 수출입 상품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위해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관세를 인하하고 FTA 체결 등 양자 간 무역 확대
 - (무역강국을 위한 세계화 정책) 서비스 무역 중심의 수출 분야 확대와 성장동력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를 연결하는 무역강국으로 성장하고자 함

- (지식재산 관련 산업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와 전통 산업의 융합을 통해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 마련
 - ‘중국제조 2025’는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으로 10대 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2015년부터 2035년까지의 단계별 계획 및 목표 제시
 - * 차세대 정보기술, 고급수치제어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 설비, 해양 공정설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궤도 교통 설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설비, 농업기계설비, 신소재
 - 2020년까지 중점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제조강국 중위권에 진입하며, 궁극적으로 제조업 주요 분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선두 반열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함
 - 제조업혁신센터 설립을 통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스마트제조 설비 확충, 핵심 기초 부품의 국산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
 - 2019년 3월, 양회(兩會) 정부업무보고에서 ‘스마트 플러스’가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산업정책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
 - ‘스마트 플러스’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기존 산업정책과 기본적인 성격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
 - 미중 무역분쟁에서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은 향후 새로운 산업전략으로 ‘스마트 플러스’를 내세울 전망

제3장 중국 중앙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

- 지식재산 관련 행정기관 개편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의 기반 마련
 - 중국 정부는 2018년 국무원 조직개편으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고 국가지식산업권 국에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지식재산 행정체제를 완성함
 - 국가지식산업권국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심판업무 수행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의 지식재산전략,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정책 등 지식재산 관련 조치를 수립·시행함
-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주요 지식재산 정책
 - 중국은 2008년 최초의 지식재산권 국가정책인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를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대국(大國)으로 도약

- 2008년 이후 특허, 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현재까지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후속조치들을 발표
- 2015년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하, 지식재산 강국 건설 의견)’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질적 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지식재산권강국전략강요’의 수립을 준비

□ 지식재산 관련 주요 법률

- 중국은 2019년 상표법과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특허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
 - 특허법 개정(안)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행정집행 강화, 디자인 보호기간 연장 등 특허 보호와 직무발명 보상 강화, 특허정보의 이용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
 - 2019년 상표법 개정에는 악의적 상표 등록을 방지 및 침해행위에 대해 부당이익의 5배 배상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
 - 2017년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2019년 개정법은 영업비밀 증거개시제도 신설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핵심 개정사항으로 함
- 이 외에도 지리적 표시 보호 및 반도체 집적회로 보호, 전자상거래법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을 추진 중
 - 국무원 조직개편으로 지리적 표시 업무가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 이관하면서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법 규정의 제정을 준비
 - 현행 반도체 관련 규정이 실제 상황에 맞지 않고, 중국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현실에 부합하는 심사지침을 마련
 -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SP의 책임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을 제정·시행
 - 외국인 투자 보호를 위한 ‘외상투자법’과 글로벌 수준의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2014년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설립 등으로 법원이 전문적이고 통일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제4장 중국 주요 성(省)별 지식재산 정책

- 중국은 역사적으로 지방 자치제도가 발달한 국가이며,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한 경제성장이 국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전략을 취함
 -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정부에 정책시행 및 경제적 자율성 대폭 부여한 '방관복' 개혁을 추진
 - 국가지식산업권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의 실시는 지방 지식산업권국으로 전달되어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형태로 나타남

- 2015년 '지식재산 강국 건설 의견'에 의거하여 각 지방 지식산업권국은 매년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실시하였으며, 주요 성(省), 시(市)의 2019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광둥성) 홍콩 마카오와 연결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대외 지식재산 개방 정책을 중점적으로 수행
 - (베이징시) 중관춘 과학기술단지의 창업 활성화 및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중시하는 정책이 특징, 베이징시-허베이성-톈진시의 IP 협력을 추진
 - (저장성) 디지털 경제 발전을 추진하며, 알리바바 등 인터넷 기업과 저장성 정부가 연계하여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
 - (산둥성)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정책이 활발하며, 산둥성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브랜드 육성사업을 실시
 - (윈난성) 지리적 표시 및 증의약 식물신품종 보호를 중시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을 위한 지식재산 법률서비스를 제공
 -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안정화되어 있는 성(省)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온전히 반영한 지역 IP 정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발전된 전략을 제시
 - 광둥성, 베이징시, 저장성, 산둥성은 지식재산 강국 건설 의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진일보된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반면에 경제 발전이 더디거나 중위수준의 경제성장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IP 정책을 선택하고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둠
 - 중국 내 중위 경제발전 수준을 보이는 윈난성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의견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지만,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

제5장 결론

- 고속 성장시대에서 중저속 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 시대에 돌입하며 중국은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을 위한 산업 고도화 정책 추진
 - 1978년 이후 개혁개방과 대외무역 확대를 통해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던 중국 경제는 2011년 이후 점차 둔화되어 6%대의 중저속 성장 유지
 - 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산업고도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경제의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노력
 -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기존의 산업정책에 제동이 걸리자 중국 정부는 ‘스마트 플러스’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며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플러스의 기존 목표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첨단기술을 통해 산업 및 디지털 경제 전반의 혁신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 지식재산전략에서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 정책에 힘입어 중국은 전 세계 산업재산권 최다 출원 건수를 기록하며 ‘지식재산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고품질 특허 부족, 낮은 지식재산 보호인식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
 - 이에 ‘지식재산 강국 전설’을 목표로 지식재산 유관조직 개편, 지식재산 관련 법 개정, 소송 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의 질적 성장 도모

- 중앙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기조에 따라 각 지방 정부도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여 경쟁적으로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지방 분권화와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등이 추진된다면 지식재산 분야의 지방성 법규 제정 및 집행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

Contents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배경 및 범위	4
I. 연구의 배경	4
II. 연구의 범위	6

제2장 | 중국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지식재산 환경

제1절 개혁개방에서 혁신형 경제로 전환	9
I. 개관	9
II. 개혁개방 초기 경제현대화 정책	9
III.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 정책	13
IV.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정책	14
V. 혁신적 경제발전 정책	15
제2절 통상환경 변화와 대외무역 정책	17
I. 개관	17
II. 대외개방 초기단계: 수출가속화 정책	17
III. 대외개방 심화단계: 대외무역 제도화 정책	20
IV. 대외개방 혁신단계: 대외무역의 전지구화 정책	22
V. 전방위 개방단계: 세계화 정책	25
제3절 지식재산 관련 산업정책	29
I. 개관	29
II. 중국제조 2025	30
III.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전략	41
IV. 스마트 플러스	47
제4절 소결	55

제3장 | 중국 중앙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

제1절 지식재산 관련 행정기관 개편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의 기반 마련	59
I. 지식재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체계	59
II. 지식재산 관련 기구의 체계적 개편	63
제2절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주요 지식재산 정책	66
I. 개관	66
II.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72
III.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추진계획	76
IV.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	80
V.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의견	81
제3절 지식재산 관련 주요 법률	83
I. 개관	83
II. 특허법	84
III. 상표법	88
IV. 반부정당경쟁법	92
V. 기타 지식재산권 관계 행정규정	94
VI. 중국 지식재산권 소송체계의 정비	98
제4절 소결	106

제4장 | 중국 주요 성(省)별 지식재산 정책

제1절 개관	111
제2절 지역별 지식재산권 정책	114
I. 지역별 경제 및 지식재산권 현황	114
II. 광동성	119
III. 베이징시	125
IV. 저장성	133
V. 산둥성	137
VI. 윈난성	141
제3절 소결	143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viii

제5장 | 결론

147

붙임 |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실시 10주년 평가보고

151

참고문헌

214

▶▶ 표 목차

표 1-1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액 추이	4
표 1-2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4
표 1-3	연차별 연구 수행계획(안)	6
표 2-1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및 계획의 주요내용	10
표 2-2	개혁개방 초기 대외개방 창구	19
표 2-3	경제특구 유형	21
표 2-4	WTO 가입 전후 중국의 수입관세율 비교	23
표 2-5	'대외무역 발전 13·5 계획'의 주요 임무	26
표 2-6	일대일로를 통한 대외개방의 방식 및 목표	28
표 2-7	중국의 주요 산업정책	29
표 2-8	중국제조 2025의 주요 목표	31
표 2-9	중국제조 2025의 10대 중점산업 및 목표	32
표 2-10	중국제조 2025의 중점 프로젝트	34
표 2-11	중국 3대 통신업체의 5G 시범 스마트시티 분포 현황	37
표 2-12	전략성 신흥산업	42
표 2-13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계획의 단계별 목표	43
표 2-14	'13·5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계획'의 주요 임무	44
표 2-15	중국 정부업무보고 키워드 변화(2016~2019년)	47
표 2-16	스마트 플러스 사회발전지수 지표 구성	48
표 2-17	2019년 발표된 산업인터넷 관련 주요정책	52
표 2-18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오픈 플랫폼 주요 기업	53
표 3-1	IP 부처간 연석회의의 주요 기능	62
표 3-2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신설	64
표 3-3	국가지식재산권국 개편	65
표 3-4	중국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건수	66
표 3-5	중국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 건수	67
표 3-6	중국 지식재산권전략의 변화	71
표 3-7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의 전략목표	73
표 3-8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의 특별임무	74
표 3-9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실시 10주년 성과	76
표 3-10	'2019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78
표 3-11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79
표 3-12	2014~2020년 주요 예상 지표	80
표 3-13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의 주요 행동방안	81
표 3-14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의견'의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	82
표 3-15	중국 특허법상 권리 비교	85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표 4-1	중국 지역내총생산(GRDP)-----	114
표 4-2	중국 지역별 지식재산권 발전 종합능력 평가결과-----	117
표 4-3	중국 지식재산권 지수 상위 10위(2010~2018년)-----	118
표 4-4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의견의 실천방안과 주요 지방정부 정책 비교-----	144

▶▶ 그림 목차

그림 2-1	중국 GDP 성장률 추이(2010~2018년)	15
그림 2-2	GDP 증가율과 MVA 증가율	30
그림 2-3	주요국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30
그림 2-4	중국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R&D) 지출액 및 GDP 비중(2011~2017년)	35
그림 2-5	중국제조 2025 시행 이후 연도별·업종별 업그레이드 현황	35
그림 2-6	5G 표준필수특허 보유 순위	36
그림 2-7	5G 표준 제안 건수 순위	36
그림 2-8	글로벌 5G 준비 순위	37
그림 2-9	2020~2035년 5G 연구개발 및 투자액	37
그림 2-10	중국 드론시장 규모(2015~2019년)	39
그림 2-11	2018년 전 세계 드론 시장점유율	39
그림 2-12	전 세계 전기차 시장점유율	40
그림 2-13	중국 전기차 시장점유율	40
그림 2-14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41
그림 2-15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41
그림 2-16	인터넷 플러스에서 스마트 플러스로 전환	48
그림 2-17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 및 GDP 비중	50
그림 2-18	중국 유선인터넷 광대역 가입자 수	50
그림 2-19	중국 이동통신 이용자 수	50
그림 2-20	소비인터넷에서 산업인터넷으로의 전략 변화	51
그림 3-1	중국의 지식재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59
그림 3-2	국가지식산업국 조직도	61
그림 3-3	국무원 직속기구 개편	63
그림 3-4	IP5 특허·실용신안 출원 추이(2013~2017년)	67
그림 3-5	IP5 상표·디자인 출원 추이(2013~2017년)	68
그림 3-6	IP5 특허·실용신안 등록 추이(2013~2017년)	68
그림 3-7	IP5 상표·디자인 등록 추이(2013~2017년)	69
그림 3-8	중국인의 해외 특허 출원 추이(전체)	69
그림 3-9	중국인의 해외 특허 출원 추이(국가별)	70
그림 3-10	연도별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1심 민사사건 통계	99
그림 4-1	중국 남·북방 GDP 합계 및 비중	116
그림 4-2	2018년 전국 특허 실력 현황 상위 10개	118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xii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배경 및 범위

KIP

KIP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중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중국의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과 더불어 각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지식재산과 관련된 환경 변화 및 지식재산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와는 상이한 중국 지식재산 정책체계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對중국 지식재산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對중국 지식재산 정책 및 시장 접근방식에 있어서 성(省)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존의 중국 지식재산 분야 연구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법제도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성의 지식재산 정책 및 집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경제중심지 및 지재권 발달이 미흡한 지역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배경 및 범위

I 연구의 배경

중국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서 해외수출액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이다. 2018년의 대중(對中) 수출은 19.6% 증가하였으며 2년 연속 고속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식재산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가이다. 2018년 대중(對中) 지식재산권 무역에서 30.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약 8.5억 달러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 및 지식재산권 무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지식재산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표 1-1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중국	137,124	26.0	124,433	25.1	142,120	24.8	162,125	26.8	31,823	24.0
미국	69,832	13.3	66,462	13.4	68,610	12.0	72,720	12.0	17,974	13.5
베트남	27,771	5.3	32,630	6.6	47,754	8.3	48,622	8.0	11,692	8.8
홍콩	30,418	5.8	32,782	6.6	39,112	6.8	45,996	7.6	7,797	5.9
일본	25,577	4.9	24,355	4.9	26,816	4.7	30,529	5.0	7,168	5.4

출처: K-stat(한국무역협회)

주: 2019년도는 1~3월 자료.

▶▶ 표 1-2 거래상대방 국가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수 지	2015	2016	2017r	2017		2018p	2018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수 지	-40.0	-16.6	-16.9	-8.3	-8.6	-7.2	-5.3	-1.9
미 국	-66.8	-49.4	-46.6	-18.4	-28.2	-46.7	-20.6	-26.1
중 국	19.6	20.4	21.7	11.6	10.1	30.2	16.1	14.2
일 본	-2.7	-3.1	-5.2	-2.5	-2.7	-7.0	-5.3	-1.7
영 국	-2.2	5.1	4.5	2.3	2.2	0.7	-0.1	0.8
독 일	-2.7	-3.6	-4.2	-2.6	-1.6	-4.1	-2.3	-1.8
기 타	14.7	14.0	13.0	1.3	11.7	19.7	6.9	12.7

	2015	2016	2017r	2018p		2018p	2018p	
				상반	하반		상반	하반
(베트남)	(16.8)	(18.4)	(24.1)	(11.5)	(12.5)	(24.6)	(12.4)	(12.2)
(프랑스)	(-2.9)	(1.1)	(-3.9)	(-2.4)	(-1.5)	(-4.2)	(-2.9)	(-1.4)
수 출	100.3	108.9	122.7	56.1	66.6	135.2	67.1	68.1
미 국	14.9	13.9	20.6	8.1	12.5	22.0	11.7	10.3
중 국	21.6	22.7	24.1	13.1	11.0	32.4	17.2	15.2
일 본	7.0	5.1	4.1	2.2	1.9	4.4	2.1	2.2
영 국	6.1	12.0	13.2	6.5	6.7	10.5	4.8	5.7
독 일	2.0	1.0	1.4	0.5	0.9	1.0	0.4	0.5
기 타	48.6	54.2	59.4	25.9	33.5	64.9	30.8	34.1
(베트남)	(16.9)	(18.5)	(24.1)	(11.6)	(12.6)	(24.8)	(12.5)	(12.3)
(프랑스)	(0.2)	(4.1)	(0.2)	(0.1)	(0.1)	(1.2)	(0.1)	(1.1)
수 입	140.4	125.5	139.6	64.4	75.1	142.4	72.4	70.0
미 국	81.7	63.3	67.2	26.5	40.7	68.7	32.3	36.4
중 국	2.0	2.3	2.5	1.5	1.0	2.1	1.1	1.0
일 본	9.7	8.2	9.2	4.6	4.6	11.3	7.4	3.9
영 국	8.3	6.9	8.7	4.2	4.5	9.9	4.9	4.9
독 일	4.7	4.6	5.6	3.1	2.5	5.1	2.7	2.3
기 타	34.0	40.1	46.4	24.5	21.8	45.2	23.9	21.3
(베트남)	(0.1)	(0.1)	(0.1)	(0.0)	(0.1)	(0.2)	(0.1)	(0.1)
(프랑스)	(3.1)	(3.0)	(4.1)	(2.5)	(1.6)	(5.4)	(3.0)	(2.5)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9. 03.)

최근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중국의 지식재산제도와 정책이 급변하였다. 지식재산 국제규범에 대한 중국의 참여 확대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요인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국내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의 산업 환경 및 정책이 변화하였다.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질적 측면에서의 성장을 추진하였으며 소재·부품산업 중심에서 선진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전략형 신산업(전략성 신흥산업), 중국제조 2025 등 산업 고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에서부터 제도 전반에 이르기까지 체계상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중국 사법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보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발표하는 정책문건의 실천을 중시하며, 국가체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요강’, ‘결정’, ‘의

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되는 행정 공문이나 지도자 연설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하달하는 정책문건의 지도이념에 근거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식재산 정책을 제정·실시한다.

II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중국의 지식재산법제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이 지방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1차 년도인 2019년에는 주요 성별 지식재산전략 조사 및 분석을, 2차 년도인 2020년에는 1차 년도에 조사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성별 지식재산전략 성과를 분석한 후, 3차 년도인 2021년에는 각 산업별 한중 지식재산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표 1-3 연차별 연구 수행계획(안)

2019년	▶	2020년	▶	2021년
<p>동향 조사 및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지식재산제도 및 정책 조사 및 분석 • 중국의 주요 산업 정책 조사 및 분석 • 주요 성별 지식재산전략 조사 및 분석 		<p>추진성과 검토 및 방향성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성별 지식재산전략 성과 분석 • 13차 5개년(2016~2020) 지식재산 성과 검토 • 14차 5개년(2021~2025) 기획 추진을 위한 중국 지식재산전략의 방향성 파악 		<p>협력 및 대응방향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지식재산 협력방안 모색 • 산업별 한중 지식재산 정책 비교 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 對중국 지식재산 정책 대응방향 연구

이에 1차 년도 과제인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산업정책 등 지식재산 환경에 대해 살펴본 후, 중앙정부의 지식재산 정책과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의 이행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성(省)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 분야별 지식재산 정책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함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경제 상황, 지식재산 역량 등 요인에 따른 지역별 차이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제2장 중국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지식재산 환경

제1절 개혁개방에서 혁신형 경제로 전환

제2절 통상환경 변화와 대외무역 정책

제3절 지식재산 관련 산업정책

제4절 소결

KIP

KIP

》》 제1절

개혁개방에서 혁신형 경제로 전환

I // 개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급격한 성장을 통해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대외무역 활성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안정화, 경제부양정책 등으로 인해 G2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수출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양적 성장에 편중되어 있는 무역구조, 핵심기술과 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지역 간 발전격차, 노동인구의 감소 등의 국내문제로 인한 경제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2011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매년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는 6.6%를 기록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전의 경제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펼침으로써 경제성장률 둔화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공급 측 구조개혁을 통해 기존의 수출, 투자 주도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탈피하여 성장 모델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책이 ‘기술 혁신’에 있다고 보고,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힘쓰고 있다. 혁신을 중시하는 정책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지식재산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으며 지식재산전략 또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위주로 전환하였다.

이하에서는 개혁개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지식재산 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중국 경제정책의 변화를 개혁개방 초기 경제현대화 정책(1978~1991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 정책(1992~2001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정책(2002~2011년), 혁신적 경제발전 정책(2012년~현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 개혁개방 초기 경제현대화 정책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78년을 전후로 중국의 경제발전은 5개년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중국은 2015년부터 시작된 제13차 5개년 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중국

의 5개년 개발계획은 과거 소련의 경제발전 방식, 그리고 2차 대전 후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발전 방식을 답습한 것이다. 5개년 계획은 국가가 ‘계획’이라는 수단을 통해 경제발전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시장이 수단이 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중국의 계획을 통한 경제발전은 개혁개방 이후, 정부의 역할이 ‘통제’에서 ‘조정’으로 변화됨에 따라 사전에 모든 구체적 실시 방안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는 ‘계획(计划)’에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지도적 비전을 제시하는 ‘규획(规划)’으로 전환되었다. 계획에서 규획으로의 조정은 중앙정부가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이행이나 세부 이행은 지방정부에서 결정이 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정책의 이행에 있어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정책이행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중국특색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대변되는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경제체제를 건설 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979년 이후 각 5개년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은 이하의 표¹⁾와 같다.

▶▶ 표 2-1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및 규획의 주요내용

	주요 추진내용	성과
5·5계획 (计划) (‘76~’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과 연료, 엔진, 원재료 공업 분야의 발전을 통해 1980년 까지 농업 기계화 달성을 목표로 함 • 문화대혁명의 충격이 계속되었던 시기로 경제 각 분야에서 개혁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강했지만 경제체제의 발전은 더디었음 • 농촌에서 가족연합생산청포책임제(家庭联产承包责任制) 시험(试行) 실시 • 도시에서는 사영(私营)기업이 등장하기 시작 • 폐쇄경제가 대외개방경제로 변화 시작 •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하였으나, 경제 성장 모델은 여전히 낙후 • 5·5계획 기간 중 경제성장을 평균 6.5% 기록 • 주요생산지표 대부분 목표달성
6·5계획 (‘81~’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계획을 거치면서 모든 당(党)과 인민은 경제건설의 중요함을 공동으로 인식하였으며, 6·5계획 기간 동안 사회주의 기초단계의 국가 상황을 감안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함 • 공업과 농업의 생산, 국민수입 평균 4% 성장, 재정세수 연평균 3.3% 증가를 목표로 함 • 과학기술 수준 향상 • 대외무역 확대와 외화의 효율적 이용, 선진기술의 국내 도입 • 광둥지역에 시험적으로 경제특구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계획기간은 목표치를 179% 달성하고, 계획의 완성률이 97%에 이르러 개혁개방 이래 ‘황금발전기’를 맞이함 • 경제성장률 10.7% • 1985년 수출입 교역량 2,067억 위안(목표의 242% 달성) • 전민소유제단위(单位) 고정자산투자 5,330억 위안 • 고등교육 발전의 황금기로 학생 수 55.9만 명, 누적 대학원생 4만 명 • 도농 생활수준 향상
7·5계획 (‘86~’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계획 기간 중국 특색의 신형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경제개혁의 주체가 농촌에서 도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고속성장세 유지, GDP 성장률 7.8% • 공업성장률 13.2%, 농업성장률 4.7%,

1) BBC, 背景: 中国经济发展和“五年计划”, 2010. 10. 7.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a/2010/10/101004_timeline_fiveyearplan, 2019. 11. 11. 최종접속); 和讯网, “五年计划”与中国经济发展历程, 2011. 04. 20. (http://news.hexun.com/2011-04-20/128901983_2.html, 2019. 11. 11. 최종접속).

	주요 추진내용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영 및 외자경제의 발달로 소유제구조의 변화 시작 • 기업자주권 강화, 행정과 기업 분리, 국유기업의 개혁시작, 승모경영체가 '주주제(股份制)'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자산투자 대폭 증가 • 통화팽창으로 인민의 생활수준 성장은 비교적 완만하게 유지
8·5계획 (91~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와 사회의 안정적 발전 강화,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제2단계 전략 목표를 국민경제 요소 전체의 목표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중국 개혁개방이 가장 빠르게 진행된 시기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목표를 새우고 새로운 개방 국면을 맞이함 • 공유제 중심의 소유제 구조의 개선, 기업체제개혁,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발전, 가격제도의 개혁, 재정세수, 금융 체제 개혁, 임금제도의 개혁, 주택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계획 및 투자체제 개혁, 경제통제체계 건설 강화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경제성장을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여 경제성장률 12%, GDP 성장률 11.6% 달성 • 2차 산업 성장률 17.4%, 3차 산업 성장률 9.9% • 공업, 농업 생산품의 생산량 급증, 기반시설 건설 급증
9·5계획 (9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화 건설의 제2단계 • 이전보다 거시적, 전략적, 지도적 목표 설정 • 2000년까지 1인당 GDP를 1980년의 4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빈곤 퇴치 및 소강사회(小康社会)에 도달 • 현대기업제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반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성장 유지, GDP 성장률 8.4% • 1차, 2차, 3차 산업의 성장률 각 3.5%, 9.8%, 8.2% • 경제성장 방식의 중대한 발전 이룩 • 주요 환경오염 배출량 감소 • 생활수준의 비교적 빠른 성장, 도시의 1인당 소비 성장률 5.7%, 2000년까지 도시의 사회보장 범위 77%
10·5계획 (0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들어 첫 번째 5개년 계획으로 경제발전 정책에 있어 새로운 단계에 돌입 • 개혁, 발전, 안정 간의 관계 정립 • 경제성장 방식의 변화 • 시장메커니즘 작용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함 •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추진 • 지역 간 발전격차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총량, 종합적 국력, 인민생활수준, 대외개방 수준이 모두 높아졌으며, 새로운 발전 단계에 돌입 •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에 유리한 환경 마련 • 경제성장률 9% 이상, 2005년 1인당 GDP 1,700달러 넘어섬 • 농업세 전면 폐지
11·5규획 (规划) (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적 과학발전관 실현을 목표로 함 • 6대 원칙: 경제의 안정적 고속발전 유지, 경제 성장방식 전환, 자주혁신 능력제고, 도농지역 간 협력발전 추진, 조화사회건설 강화, 지속적 개혁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 목표치 사전 달성 • 국내총생산 성장률 7.5%, 국내수지 안정 • 도시주민 1인당 평균수입과 농촌주민의 1인당 순수입 연평균 5% 성장 • 자주혁신 능력 강화로 인해 지식재산권 및 저명상표를 보유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 등장
12·5규획 (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발전을 중심으로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통해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 과학의 발전과 혁신을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핵심으로 설정 • 에너지 절약, 친환경발전방식 추구 • 안정적 발전,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총생산 610.4조 달러, G2 반열 달성 • GDP 평균성장률 8% • 경제성장 견인에 있어 소비가 투자를 따라잡음 • 국내총생산 비중에서 3차 산업이 2차 산업을 따라잡음 • 지역 간 발전격차 증가세가 처음으로 감소
13·5규획 (1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발전, 협력발전, 녹색발전, 개방발전, 공유발전을 통한 안정적 성장 • 新动能, 新공간, 혁신구동 발전전략 	-

출처: BBC, 허신왕(和讯网) 보도기사를 바탕으로 정리.

2. 경제 개방 정책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78년은 중국의 전체 경제발전계획 단계에서 제5차 5개년 경제개발(5·5계획) 단계의 중간지점에 해당한다. 5·5계획은 지난 10년간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무너진 경제와 사회를 재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기간 동안 공업화를 추진하고 전면적 경제발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10여 년의 문화대혁명은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요소를 모두 파탄시켰고 국내 생산자원만으로 공업화를 통한 급속한 발전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1978년 12월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천명하였고 중국 지도부 역시 대외개방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대외개방’이 중국의 장기적 경제발전 노선이 됐다. 이후 현재까지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개혁개방 초기 대외개방의 목표는 명확했다.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산요소인 자본과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흡수하여 중국의 ‘현대화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3. 개방 초기 산업정책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차 3중전회에서 중국 경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중국은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에 시장메커니즘을 접목해 나갔다. 투자주체와 경제정책이 다원화되면서 지금까지 실시해 오던 고도의 집중적 계획경제관리 체제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새로운 현상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경제관리체제의 출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1983년 12기 3중전회에서 ‘계획상품경제’ 개념이 제기되었다. 1987년 국가계획위원회(国家计划委员会)는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고, 시장은 기업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당과 지도부의 생각이라고 표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경제관리체제는 국가가 경제수단과 법률수단, 그리고 필요한 행정수단을 통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계를 조정하여 적절한 경제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기업이 올바른 경영 정책을 확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국가의 시장조절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계획위원회는 ‘산업정책사(产业政策司)’를 설립했다. 산업정책사는 중국의 적절한 산업정책 제시를 위하여 대대적인 조사 및 연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대략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²⁾ 이는 수정과 의견수렴을 통해 1989년 국무원 정책성 문건으로 발표되었다.

1989년에 발표된 ‘국무원의 현재 산업정책 중점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当前产业政策要点的决定)’(이하 ‘중요결정’)은 중국 최초의 산업정책에 관한 정책성 문건으로, 명확한 산업정책을 마

2) 《国务院关于当前产业政策要点的决定》

련하고 국민경제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와 제한해야 할 분야를 결정하는 것은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국가경제를 거시적으로 조절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중요결정의 정책조치는 주로 계획경제 방식을 채택했다. 이후 2년 내 각 지방정부는 중요결정 실시를 위한 보장 조치인 실시방법을 제정했다. 보장조치는 우선 고정자산 감소요구에 따라 고정자산 대출에 대한 저금리를 적용하고,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조절세를 적용했다.³⁾ 또한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각 산업에 대해 생산능력 향상과 개혁에 대한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⁴⁾ 이러한 정책은 개혁개방 초기단계에서 처음으로 시장체제를 적용하고, '계획상품경제의 경제체제'라는 중국 특색의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제정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자원의 배분에 직접 간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 계획경제관리 체제에서 계획관리의 범위를 대폭 줄이고 시장체제의 관리 및 조절 체제로의 대전환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점차 전환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III //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 정책

1992년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제14차)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하고 이를 완성할 것을 천명했다. 이어 1993년 11월에 공산당 제14차 3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关于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若干问题的决定)'이 통과되면서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개혁에 돌입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무원은 1994년 4월 '90년대 국가 산업정책 강요(90年代国家产业政策刚要)'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 최초의 시장경제체제 산업정책이다. 시장경제체제의 산업정책은 ① 농업 및 농촌경제 발전과 농민 수입 증대, ② 기반시설 및 기반 공업 강화, ③ 전자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제조, 건설업 지주산업 진흥, ④ 대외경제무역의 적극적 발전, 대외무역 구조조정, 수출 효익 제고, 신기술 및 관련 시설 및 핵심부품의 수입 장려, ⑤ 산업 조직, 산업 기술, 산업 배치 정책⁵⁾, ⑥ 산업 정책의 제정절차 수립 및 보장체제 실시 등을 포함하였다.

3) 1991년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고정자산 투자 분야 조절세 임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를 제정하고,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제로세율, 제한형 사업이나 경제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각각 차등 적용함.

4) 국무원은 《关于贯彻国家产业政策对若干产品生产能力的建设和改造加强管理的通知》, 《控制建设和爱早生产能力产品目录》를 제정함.

5) 산업조직정책은 기업의 합리적 경쟁을 추진하고 규모의 경제 전업화 협조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기술정책은 실용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과학적 연구 성과의 보급을 가속화하고 국외 선진기술을 수입하는 것을 의미함. 산업배치정책은 경제가 발전된 지역과 발전이 더딘 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분업구조를 만드는 정책을 의미함.

한편, 이 시기에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을 위하여 외상투자 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하고 외상투자를 규범화하기 시작했다. 1995년 중국은 ‘외상투자 지도 방향 임시규정(指导外商投资方向暂行规定)’,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 항목을 장려류, 제한류, 금지류로 구분하여 규범화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3법, 즉 ‘외자기업법(外资企业法)’, ‘외상합자경영기업법(外商合资经营企业法)’, ‘외상합작경영기업법(外商合作经营企业法)’의 실시세칙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단행되기도 하였다.

산업정책의 실시로 정부는 미시적으로 경제를 엄격하게 계획하고 관리하는 한편, 기업들은 점차 시장 주체로 자리매김하였다. 아울러 기업은 국가의 산업조절정책을 수용하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기업의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를 구축하였다.

IV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정책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중국의 국가경제발전에 있어서 대내외적 환경의 중요한 변화에 직면하였다. 2001년에 중국이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면서 개방이 가속화되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또한 2000년 초반부터 중반까지 중국의 경제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거시적 경제조절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산업정책도 각 단계에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했다.

WTO 가입 전후로 중국은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유입하는 ‘인진라이(引进来)’ 정책과 중국의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저우추취(走出去)’ 정책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2004년 ‘국무원의 투자 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投资体制改革的决定)’을 발표함으로써 정부는 관리기능을 담당하고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해외 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심사비준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상황에 따라 인가(核准)제 또는 비안(备案)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대사업이나 제한류에 속한 사업은 사회공공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인가제를 적용하고 이외에는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비안제를 적용하였다. 비안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등록만 하면 되는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절차가 매우 간소화되었다. 또한 외상투자관리 관련 법제가 개정되었다. 2002년 국무원은 ‘외상투자 방향지도 규정(指导外商投资方向规定)’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의 수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을 확대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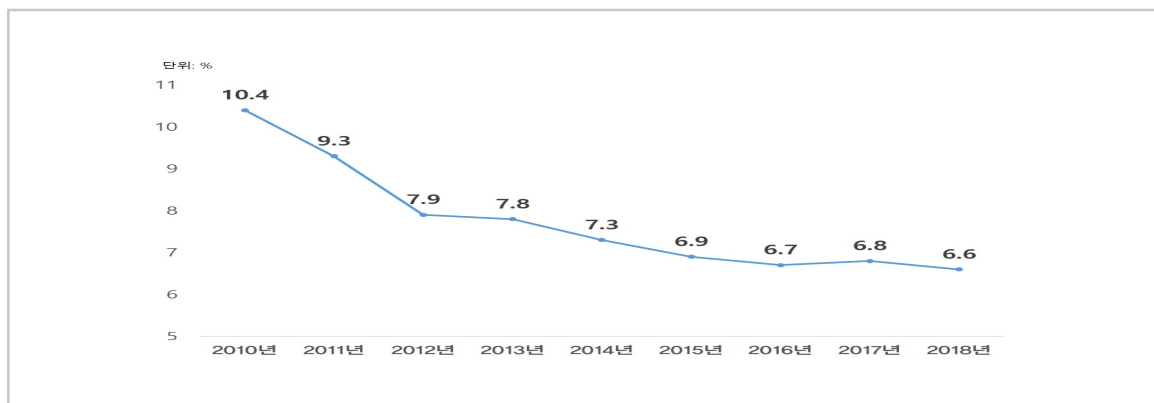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월 14일 국무원 회의에서 자동차, 철강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 계획이 통과되었다. 이어 국무원은 방직, 의류제조, 선박, 전자정보, 석유화학, 경공업, 유색금속, 물류업 등 8개 산업에 대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2010년 9월에 ‘국무원의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新兴产业的决定)’을 발표하고 7개 전략성 신흥산업을 발표했다. 전략성 신흥산업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정보화기술, 바이오산업, 첨단설비제조산업, 신에너지산업, 신소재산업,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등이 포함된다. 이들 전략성 신흥산업은 향후 중국 경제발전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시장환경 조성 및 세제 및 금융 지원정책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2년에 국무원은 ‘12·5 국가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계획(“十二五”国家战略性新兴产业发展规划)’을 발표하고 국가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한 중점 발전 분야 및 발전방향, 주요 임무 등을 지정하였다. 13·5 계획은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의 세부적이고 장기적 계획으로, 동 계획은 중국 정부가 이들 산업의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V 혁신적 경제발전 정책

2012년 11월 공산당 제18기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경제는 새로운 발전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2014년 5월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态)’ 시대에 돌입하였다고 정의하였다. ‘신창타이’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상태’로 이는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간의 고속 성장시대에서 벗어나 중저속 성장시대로 돌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GDP 성장률은 2011년 이후 2018년까지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투자와 생산요소가 기반이 되는 성장 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판단하고 성장 방식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 그림 2-1 중국 GDP 성장률 추이(2010~2018년)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NBSC).

이와 동시에 중국은 새로운 과학기술 및 산업 혁명의 시대적 변화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였다. 2013년 당의 18기 3중전회에서 ‘중공중앙 전면적 개혁에 관한 중대 문제의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발표했다. 본 결정은 중국의 경제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2020년까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시장과 정부의 관계, 시장에서 자원배분의 결정, 시장의 효과적 기능을 위한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산업 정책에도 새로운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다. 신기술을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혁신동력, 새로운 기술 및 산업, 선진제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마련하였다.

산업고도화 정책

- 중국제조 2025
- 인터넷 플러스의 적극적인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 대중창업·만중혁신의 대대적인 추진 관련 정책조치에 관한 의견
- 국가 혁신구동 발전전략 강요
-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 혁신구동 발전전략의 실시와 대중창업·만중혁신의 심화발전 추진 강화에 관한 의견

특히 중국제조 2025는 시진핑 정부의 산업고도화 추진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중국 제조업은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대 공장이라 할 수 있으나, 기술 경쟁력은 다소 뒤쳐진다는 인식이 있다. 또한 자주혁신 능력이 약하며 핵심기술 및 첨단 설비의 대외의존도가 높다. 이에 더해 기업이 핵심이 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시스템이 완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이러한 중국 제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제조강국’로 등극하기 위한 산업 고도화 전략이다. 중국제조 2025는 30년간 총 3단계에 걸친 장기 전략으로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등 10대 핵심 육성전략산업과 5개의 중점사업,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8개의 주요 보장조치를 제시하였다. 중국제조 2025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3절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 제2절

통상환경 변화와 대외무역 정책

I // 개관

1978년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이후로 4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중국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했다. 또한 미국 등 통상강국들과 대응할 정도의 국제적 지위와 무역대국으로서의 힘을 길렀다.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변국가 및 패권국가와의 빈번한 갈등은 중국의 대외무역 확대와 경제성장에 있어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새로운 대외무역 정책을 통해 국내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주변국은 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의 무역정책과 중국제조 2025 등 산업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기존의 무역기조 및 산업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는 통상을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은 신산업 분야, 더 나아가 지식재산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 대외무역 정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대외개방 초기단계(1978~1991년), 대외개방 심화단계(1992~2001년), 대외개방 혁신단계(2002~2011년), 전방위 개방단계(2012년~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 대외개방 초기단계: 수출가속화 정책

1. 대외무역 관리체제의 개혁

중국은 1970년대 초부터 서방국가들과 잇따라 수교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대외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 및 기술 등의 생산요소의 부족으로 인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수출을 증대하여 국내의 부족한 생산요소를 채우려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체제 개혁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대외무역체제 개혁의 핵심은 첫째, 국가가 보유한 대외무역에 대한 경영권을 생산주체에 이양하고, 둘

째, 대외무역 주체를 다양화하며, 셋째, 무역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대외 무역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관리’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1980년 해관총서(海关总署)와 수출입상품검역국을 설립하고, 1982년에는 대외경제무역부를 신설하였다. 대외경제무역부는 대외무역부, 대외경제연락부, 국가수출입관리위원회, 국가외환투자관리위원회 등 당시 대외무역 관련하여 분산되었던 관리기구들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또한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대외무역 관련 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직의 개편은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1978년 이전에 대외무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가진 채 직접적으로 통제하던 구조를 정부의 간접 통제 및 관리체제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수출입에 대한 국가 지도성(指令性) 계획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고, 수출허가증제도가 실시되면서 수출에 대한 자율성이 강화되었다.⁶⁾ 또한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허가권을 각급 지방정부에 이양함에 따라 각 지역에서 무역기업이 대량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2. 대외무역기업 경영체제의 개혁

1988년 국무원은 ‘대외무역체제 개혁 가속화 및 심화에 관한 문제(关于加快和深化对外贸易体制改革若干问题)’를 발표하고 대외무역에 대한 승포경영책임제(承包经营责任制)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대외무역 승포경영책임제는 기업이 승포지표 내에서 일정 비율을 국가에 승포액으로 상납하고 난 후, 나머지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업이 수입을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⁷⁾ 산업, 제품, 지역에 따라서 그 비율을 각각 다르게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전자 기기의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에 대해서는 국가에 상납하는 승포액 없이 수익 전부를 기업이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산업과 무역을 결합(工贸结合)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생산기업이 독자적으로 무역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무역기업의 전문성을 높였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의 가속화를 통해 당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1991년 ‘대외무역체제 개혁 완성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关于进一步改革完善对外贸易体制若干问题的决定)’을 발표하고,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고정환율제도를 기반으로 무역기업이 벌어들이는 외화에 대해서 정부에 상납하는 비율을 줄이고, 기업의 이익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대신에 해당 기업에 한해서는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6) 수입에 대한 지도성 계획 상품은 20%, 수출에 대한 지도성 계획 상품은 30%를 차지함.

郭璐, 改革开放40年来中国对外贸易制度演变研究, 价格月刊, 总第497期, 2018, p. 23.

7) 대외무역승포경영제도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무역을 관장하지만 그 업무는 지방과 기업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함. 승포경영제는 각 성 정부와 대외무역공사가 중앙정부의 대외무역 관리부서와 분기별로 대외무역기업의 총외환수입과 중앙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외환의 규모, 그리고 해당기업의 수출입 손실보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급규모에 대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됨.

더불어, 무역기업에 대한 정부 간여를 점차 줄이고 기업이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1단계에서 의류 및 공예품, 경공업에서만 시험적으로 시도되었던 기업손익책임제(自负盈亏), 즉 자율경영제가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되었다. 수출상품분류경영규정을 없애고 소규모 수출관리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외국제품에 대한 수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고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곧 중국의 무역기업이 국제시장의 궤도에 더욱 가깝게 진입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중국의 기업관리체제가 점차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대외무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 통제가 2단계보다 더 완화되어 지방정부 및 무역기업들의 적극성과 자주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3. 외상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 개방창구 설립

개혁개방 초기 외국인 투자와 수출은 이 시기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었다.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하여 우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제도를 정비하였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이른바 ‘3자 기업법’이 제정되었다.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资经营企业法)’을 제정하고, 1986년에는 100%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는 ‘외자기업법(外资企业法)’이 제정되었다. 이어서 1988년에는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经营企业法)’을 제정하였다. 외상 투자에 관한 기본 법률에 더하여 중국 정부는 더 많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외상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우대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 창구로서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연해경제개방구를 지정하여 해외자본에 최적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였다.

▶▶ 표 2-2 개혁개방 초기 대외개방 창구

구분	명칭	지정 지역	비고
점	경제특구	광둥성 및 푸젠성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하이난 (1981~1988년)	5개 지역
선	1984년 연해개방도시	다롄, 친황다오, 톈진, 옌타이, 칭다오, 련윈강, 난통, 상하이, 닝보, 윈저우, 푸저우, 광저우, 잔장, 베이하이(1984년)	14개 도시
면	1985년 연해경제개방구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민난금삼각주, 라오둥반도, 환발해지역 (1985~1988년)	5개 구역

4. 초기 개혁개방의 성과

1990년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은 1154.4억 달러로 그중 수출액은 620.9억 달러, 수입액은 533.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⁸⁾ 중국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으로 인해 수출 증가폭은 평균 15%를 유지하였다. 대외무역에 관한 정부 권한이 지방 및 기업에게 이관되고, 이로 인해 기업과 지방정부의 무역에 대한 자율권이 점차 확대되었다. 더욱이 특구가 지정된 연해지역은 수출과 외상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대외무역은 여전히 정부의 통제 하에서 개방이 진행되었다. 또한 기술수준이나 생산효율 수준도 낮아 수출 상품이 주로 농산물, 자원산물, 그리고 초기 공산품 등에 한정되었다.⁹⁾ 이들 품목은 부가가치가 높지 않으며, 기술력이 요하지 않는 품목들로 대외무역에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했다.

III 대외개방 심화단계: 대외무역 제도화 정책

1. 개방 범위 확대 전략

1990년대 개방정책은 수출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무원은 '연해지역 수출 지향적 경제발전에 관한 보충규정(关于沿海地区发展外向型经济的若干补充规定)'을 발표하여 외자유치 확대와 가공무역 발전을 연해지역의 발전전략으로 정하였다. 정부는 지난 대외개방 기간 동안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을 급증시킨 경험에 힘입어 연해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을 개방 및 개발구로 대거 지정하였다. 1992년 6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개방 범위를 난징(南京), 우한(武汉), 난창(南昌), 충칭(重庆), 상하이(上海) 등 5개 창장(长江) 연해도시와 동베이(东北), 시난(西南), 시베이(西北) 지역의 13개 주변 시(市), 현(县), 그리고 11개 내륙의 성도(省都)로 확장하고 연해개방도시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방위적 개방의 확대는 다양한 경제특구의 형태로 이어졌다. 경제특구에는 지방 세수 감면과 같은 우대혜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우대 조치는 이 시기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⁸⁾ 郭璐, 앞의 논문, p.23.

⁹⁾ 대외무역 수출상품 분류실시 경영에 관한 규정(关于外贸出口商品实行分类经营的规定)(1982년 제정)

▶▶ 표 2-3 경제특구 유형

구분	주요내용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国家级经济技术开发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4년 다롄을 시작으로 2015년 9월까지 219개로 증가 • 내륙의 개혁개방 정책 실시를 위한 것으로 현대화공업, 산업원구 설치
보세구 (保税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 상하이에 처음 설치 • 1992년 14개 추가 설치
국경경제협력구 (边境经济合作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부터 설치 시작, 총 17개 비준 완료 • 중국의 연변(沿边)지역 개방도시의 가공무역과 국경무역 발전 도모, 중서부지역 개방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역할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 (国家高新技术产业开发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베이징에 시험구 설치를 시작으로 2017년 3월까지 총 157곳으로 확대 • 지식과 기술이 밀집된 대도시 및 연해지역에 설치하여 국내의 기술과 경제 수준을 기반으로 국외 선진 기술자원, 자금, 관리방법 등과 접촉하여 중국의 소프트웨어 환경 제고
중국-싱가포르 쑤저우 공업원구 (苏州工业园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 설치 • 싱가포르 정부와 합작으로 건설한 공업원구로 양국에 모두 중요한 합작사업 • 2018년 국가급 경제개발구 종합심사평가에서 전국 219개 개발구 중 1위 기록
수출가공구 (出口加工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상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가공, 포장하는 특수가공 지역을 의미 • 경제특구의 한 형태로 각종 지방 세수의 감면 우대 혜택을 받음 • 경제가 발달되고, 교통과 대외무역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2.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무역관리제도 개혁

중국의 대외개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992년 14기 중공중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중국의 경제체제를 확정하는 중요한 결정이 담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 문제에 관한 결의(关于建立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若干问题的决议)’(이하 ‘결의’)가 채택되었다. 동 결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이론과 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설로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외무역제도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1993년에 대외무역부가 ‘대외협력부(对外合作部)’로 개편되었다. 1994년 5월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이 통과되어 7월부터 실시되었다. 또한 1997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상계관세 및 반보조금 조례(中华人民共和国反倾销和反补贴条例)’를 제정하는 등 대외무역에 관한 입법도 가속화했다.

개혁개방 이래 국가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던 고정환율제도에도 개혁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정부에 의해 통제되던 환율이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로 전환되었으며 외환시장에 대한 통일된 규범 마련에 착수하였다.

한편,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해 국제규범이 요구하는 기준에 법률과 제도를 맞추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우선 관세 측면에서, 1992년 43.2%에 달하던 수입관세를 1995년 35.6%로 인

하하였으며 2001년에는 다시 15.3%까지 낮추었다.¹⁰⁾ 비관세 측면에서는 수입대체 요건을 폐지하고, 허가증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행정적 비관세 장벽을 완화했다.¹¹⁾

3. 대외무역 제도화의 성과

이 시기 중국의 대외무역은 그 주체가 눈에 띄게 다양해졌으며, 무역 활동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무역시장규모도 확대되었다. 1994년 대외무역 총액은 2,366.2억 달러로 수출은 1,210.1억 달러, 수입은 1,156.1억 달러였는데, 2001년 대외무역 총액은 5,096억 달러로 그중 수출액은 2,661억 달러, 수입액은 2,435.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¹²⁾ 한편, 관련 법제의 개혁으로 대외무역이 안정된 법률과 제도의 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WTO 가입을 위하여 관련 법률과 법규, 규장 및 제도를 정비하여 국제적 규범에 맞는 기본 체계를 갖추었다.

IV 대외개방 혁신단계: 대외무역의 전지구화 정책

1. 수출입상품 구조 전환 가속화

2000년대 들어 중국의 대외무역에 관한 정책기조가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중에서도 수출입상품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핵심으로 볼 수 있다. 2000년까지의 경제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0년대에는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과학기술 관련 무역 확대전략을 실시하였다. 1999년 과학기술부와 대외경제부는 공동으로 ‘과학기술 무역 진흥 행동계획(科技兴贸行动计划)’을 발표하고, 2001년 ‘과학기술 무역 진흥 10·5계획 강요(科技兴贸“十五”计划刚要)’, 2003년에는 ‘과학기술 무역 진흥전략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进一步实施科技兴贸战略的若干意见)’을 발표했다. 상기 전략을 통해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건설하고, 재정과 금융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제품의 수출을 지원하였으며, 동시에 기업의 기술 혁신능력 제고를 촉진하였다. 과학기술 관련 무역

10) 盛浩, 改革开放以来我国外贸战略的演变及展望, 中国流通经济, 第32卷第11期, 2018, p.60.

11) 수출대체요건은 자동차와 같은 특수 제품에 대해서는 유보함. 또한 허가증관리 범위는 수입제품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것이 7개 종류의 유치산업으로 대폭 축소함.

马颖, 李建波, 从进口替代到出口导向: 大陆与台湾贸易发展战略的路径比较, 亚太经济, 第3卷, 2007, pp.78-82.

12) 郭璐, 앞의 논문, p.24.

확대 전략은 이후 11·5규획(2006~2010년)과 12·5규획(2011~2015년) 기간에도 지속되었다. ‘과학기술 무역 진흥 11·5규획(科技兴贸“十一五”规划)’, ‘전자기계 및 첨단기술제품 수출입 12·5발전규획(机电和高新技术产品进出口“十二五”发展规划)’, ‘12·5기간 수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十二五”期间促进出口持续健康发展的意见)’ 등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2. 대외무역제도 개혁

중국은 WTO 가입의정서에 평균 관세율을 2005년까지 15.3%에서 10%로 낮출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그중 공산품은 14.9%에서 9.3%로, 농산품은 23.2%에서 15.5%로 인하하기로 하였다.¹³⁾ 이에 따라 이 시기 WTO의 양허 이행을 위하여 관세 인하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 표 2-4 WTO 가입 전후 중국의 수입관세율 비교

구분	2001년	2005년	2010년
전체 평균관세율	15.3%	10%	9.8%
공산품	14.9%	9.3%	8.9%
농산품	23.2%	15.5%	15.2%

출처: 양평섭 외, 앞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상품의 수출입관리에 있어서는 ‘상품수출입관리조례(货物进出口管理条例)’에 따라 수출입허가증 제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2004년을 전후로 9차 수출환급세율을 조정하여 이를 5등급(17%, 13%, 11%, 8%, 5%)으로 나누어 적용하였다.¹⁴⁾ 수출기업의 납세에 따라서 세율이 조정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수출환급세율이 5%인 상품은 5%의 환급세율을 적용하고 수출환급세율이 5%보다 높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6%의 환급세율을 적용하였다.¹⁵⁾

13) 양평섭 외,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8-67-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p.58.

14) 财政部 国家税务总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出口货物退税率的通知》(财税[2003]222号)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765/n812198/200310/c1205357/content.html>, 2019. 12. 10. 최종접속).

15) 财政部 国家税务总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出口货物退税率的补充通知》(财税[2003]238号)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765/n812198/200312/c1204769/content.html>, 2019. 12. 10. 최종접속).

3. 양자주의 대외무역 확대

중국은 WTO 가입을 통한 다자주의 체제 국제규범에 적응하기 위해 국내법의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 중국에 있어서 FTA는 주변 우방국을 중심으로 정치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WTO 가입 이후, 중국은 경제적 수단으로서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홍콩, 마카오와의 FTA 추진을 통해 해당 지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 대륙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세안(ASEAN)과의 점진적 FTA 추진을 통해서 아세안의 풍부한 생산요소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2007년 중국 공산당은 FTA를 국가 전략 수준으로 격상시켰다.¹⁶⁾ 이는 현재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연관되어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발전되었으며, FTA가 국가전략으로 격상된 이후 중국은 파키스탄, 페루, 뉴질랜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등과 양자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4. 성과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 관련 정책과 제도는 점차 안정화되었다. 수출입관리에 있어서도 대외무역법을 상위 기본법으로 하여 ‘상품수출입관리조례’라는 차상위법을 제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문규장인 수출입허가제도를 수립하여 수출입관리에 있어, 보다 완전한 법률체계를 완성하였다. 또한 대외무역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제·개정했다. 2008년 3월까지 229건의 법률, 600여 건의 행정규칙, 7,000여 건의 지방법규와 규정을 개정했다.¹⁷⁾ 이 시기 중국 대외무역은 황금기를 맞이하면서 2003년, 2004년 각각 대외무역 성장률이 37.1%, 35.7%에 달했다.¹⁸⁾

16) 环球网, 以自贸区战略促进可持续发展, 2015. 12. 31. (<https://world.huanqiu.com/hot/2015-12/8296098.html?agt=15438>, 2019. 11. 11. 최종접속).

17) 양평섭, 앞의 보고서, p.59.

18) 郭璐, 앞의 논문, p.25.

V // 전방위 개방단계: 세계화 정책

1. 대외무역전략과 목표의 전면적 전환: 무역대국에서 강국으로

앞서 대외개방의 여러 단계를 거치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등극하였다. 중국은 새로운 대외개방전략을 통해 경제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내의 제도개혁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가 대외무역 전략의 기본목표는 새로운 ‘수출경쟁력의 창출’이 되었다. 이를 위하여 수출입 상품구조를 보다 최적화하고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대외무역 전략의 핵심 목표로 세웠다.

국무원은 2015년 5월 ‘대외무역의 새로운 경쟁우위 선점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加快培育外贸竞争新优势的若干意见)’을 발표하였다. 이는 향후 중국이 대외무역의 안정적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경쟁우위 선점을 통해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국이 갖춰야 할 요건과 의무를 제시한 강령성 문건¹⁹⁾이다. 동 의견은 대외무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외무역 전략방향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대외무역의 새로운 경쟁우위 선점에 관한 몇 가지 의견

- ① 수출 분야 확대: 상품 수출 → 상품, 서비스, 기술, 자본 수출
- ② 국제경쟁력 제고: 가격경쟁력 → 기술, 브랜드, 품질, 서비스가 핵심이 되는 종합적 경쟁력 우세
- ③ 성장동력 전환: 생산요소 → 혁신
- ④ 상업 환경 전환: 정책주도의 상업 환경 → 제도규범과 법제화/국제화 상업 환경
- ⑤ 국제규범 제정: 국제규범의 준수와 적용 → 국제무역규범 제정에 적극 참여

상기 의견을 바탕으로 2017년 상무부는 ‘대외무역 발전 13·5규획(对外贸易发展“十三五”规划)’을 발표하고, 13·5규획 기간 동안 대외무역 발전을 위한 8가지 주요 임무를 제시했다.

19) 거시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 및 공산당이 발표하는 공식 문건으로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됨.

▶▶ 표 2-5 '대외무역 발전 13·5 계획'의 주요 임무

주요 임무	세부 내용
대외무역의 새로운 경쟁우위 확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상품의 기술수준 제고 가속화 국제표준제정 능력 향상 가속화 대외무역 브랜드 양성 가속화 수출제품 품질 향상 가속화
수출 고급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화 기술을 통해 전통산업 혁신 전력, 과도교통, 정보통신 장비 등 장비제조업의 신 수출주도산업 강화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등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국제시장 개척
무역기업의 대외 간 경영능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국적기업을 양성하고, 능력 있는 기업의 산업사슬을 다른 국가로 확대하며, 국가 간 합병, 우수한 브랜드의 핵심기술 및 영업방법을 모색하고, 국제화 경영 수준 향상 경쟁력 있는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장려하고 혁신적이고 능력있는 민영기업의 국제화 발전 지원
일대일로 인접 국가와의 무역 협력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국가와의 무역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의 노동집약적 상품 등을 일대일로 인접국가로 안정적으로 수출 인접국가의 인프라 시설 건설 공사 기회 획득 대형설비 및 기술, 표준, 서비스 수출 추진 인접국가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고 공정한 무역 도모
가공 및 변경무역의 새로운 발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무역을 담당했던 연해지역을 브랜드, 연구개발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가공무역을 중서부지역으로 이동시켜 변경무역 활성화
대외무역의 새로운 업종 적극적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상거래의 건강하고 신속한 발전 촉진 입찰구매 무역시장 활성화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 양성 '인터넷 실크로드'를 추진하여 경제합작시험구를 건설하고, 일대일로 인접국가와의 전자상거래 협력 전개
수입정책의 적극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기술설비 및 핵심 부품의 수입 촉진 자원성 상품의 수입 안정화하며, 일대일로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이 인접국가로 진출하여 자원에너지 개발 및 가공산업에 착수하도록 하고, 필요한 중간재 및 완성품을 국내로 다시 재수출 일반 소비자품 수입 확대
'3항' ²⁰⁾ 건설의 견고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외무역 향상을 위한 기지 건설 가속화 무역 플랫폼 건설 추진 가속화 국제 마케팅 네트워크 건설 추진 가속화

20) ① 경제발전과 시장 규모의 안정화, ② 질적 성장, ③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전환.

2. 서비스무역 발전 촉진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왔다. 그러나 고속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방이 덜 되었던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중국은 서비스무역 발전에 관한 지도성 문건인 2015년 ‘서비스무역발전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加快发展服务贸易的若干意见)’을 발표하고 서비스무역 발전의 전략목표와 임무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동 의견은 2020년까지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 총액 1만 달러를 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동 의견은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관련 기업을 한 곳에 집결시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특정 지역을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2018년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 심화 방안(深化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总体方案)’을 발표하고 15개 지역²¹⁾에서 2년간(2018~2020년)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점 서비스수출 영역 목록을 작성하여 이들 영역에 대해 자금 및 정책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0월 상무부는 ‘서비스수출 중점영역 지도목록(服务出口重点领域指导目录)’을 발표하였다.²²⁾ 지도목록은 22개의 1급 목록, 80개의 2급 목록, 178개의 3급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22개의 1급 목록에는 컴퓨터·정보, 연구·개발 및 기술, 방송·통신 및 시청각, 엔터테인먼트·문화 및 스포츠, 출판·인쇄, 광고, 의료·보건, 보험, 금융, 교육, 운송 및 기타 관련 산업, 관광, 우편 및 통신, 건축 및 엔지니어링, 시장 조사 및 관리 자문, 법률·회계, 리스, 인력자원·보안, 유통·소매, 환경, 생산·제조업 관련 서비스, 식음료·컨벤션·통번역 등 기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지도목록은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방송 및 텔레비전, 시청각서비스 등 부가가치가 비교적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서비스 영역을 중점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건축 및 공사 서비스 등 비교적 수출 실적이 좋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지원하도록 설정되었다.

21)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헤이룽장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후베이성, 광둥성, 하이난성, 충칭시, 쓰촨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등.

22) 商务部新闻办公室, 商务部发布《服务出口重点领域指导目录》, 2016. 11. 04. (<https://www.mofcom.gov.cn/article/ae/ai/201611/20161101597606.shtml>, 2019. 11. 11. 최종접속).

3. '일대일로'를 통한 전면적 대외개방 추진

중국 공산당은 19기 3중전회 보고에서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국면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중저속 성장의 신장타이(新常态) 시대에는 경제구조 및 성장동력의 전환이 필요하며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해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²³⁾

▶▶ 표 2-6 일대일로를 통한 대외개방의 방식 및 목표

개방의 방식	일대일로를 통한 실현 목표
외자도입 + 해외 진출	국민사회경제의 외부공간 확대
연해(沿海) 개방 + 연변(沿江) 개방	지역개방 최적화
제조업 개방 + 서비스업 개방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해 경제구조개혁 추진
선진국에 대한 개방 +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방	일대일로 협력을 통해 각 국가 이익 확대
다자개방 + 지역개방	경제의 국제화 및 지역경제 일체화 추진

중국 정부는 국내 일대일로 관련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추진하고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실시하여 상업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상하이와 하이난에 이미 일대일로 자유무역 시험구를 설립하였으며, 이 지역의 네거티브리스트는 2013년 190개에서 2018년 45개로 크게 축소되었다.²⁴⁾ 또한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여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를 추진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대외개방 수준을 더욱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노력 중이다.

23) 共产党新闻网, 坚持对外开放基本国策 促进“一带一路”国际合作, 2017. 11. 02. (<https://theory.people.com.cn/n1/2017/11/02/c40531-29623059.html>, 2019. 11. 11. 최종접속).

24) 中国一带一路网, 王海峰: “一带一路”建设成为新时代对外开放的最鲜明特征, 2018. 12. 10. (<https://www.yidaiyilu.gov.cn/xwzx/roll/74179.htm>, 2019. 11. 11. 최종접속).

》》 제3절

지식재산 관련 산업정책

I // 개관

중국 정부는 신상태(新常态) 시대의 저성장을 돌파하기 위하여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노동력, 자본 등의 요소에서 과학기술 혁신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신산업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인터넷 등 신기술 분야와 전통산업의 융합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혁신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격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였다.

대표적으로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스마트제조 발전계획 등을 통해 신기술과 전통산업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였으며,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 등 신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계획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 정책을 통해 ‘혁신’과 ‘창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 표 2-7 중국의 주요 산업정책

대분류	주요내용
중국제조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골자로 함 • 10대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체 혁신능력 제고 및 핵심특허 확보
인터넷 플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7월, 국무원이 ‘인터넷 플러스를 적극 추진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며 본격 추진 • 인터넷 플랫폼 및 정보통신기술과 전통산업을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 • 2018년 7월,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인터넷 플러스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방안’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 인터넷 기술을 도입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7월, 국무원이 제정한 인공지능산업 발전계획으로 2020년, 2025년, 2030년의 3단계 전략목표 수립 • 인공지능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기술 혁신, 표준화 등 추진 • 2017년 12월, 공업정보화부는 ‘차세대 인공지능산업 발전 촉진 3개년 행동계획(2018-2020년)’ 발표
스마트제조 발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12월,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는 2020년까지 전통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전면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계획 수립 • 중국제조 2025에서 선정한 10대 산업 분야 또는 시범지역에 스마트 작업장과 스마트 공장을 건설하여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제조 장비 활용 확대

출처: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정책문건을 참고하여 연구진 정리.

II // 중국제조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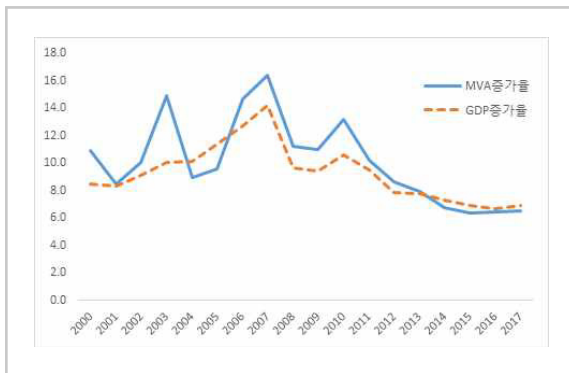
1. 추진 배경 및 목적

‘중국제조 2025’는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산업 고도화 정책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와 단계별 목표를 담고 있다. 2015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 ‘중국제조 2025’를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인 5월에 10개년 행동강령(行动纲领)으로서 ‘중국제조 2025’가 공식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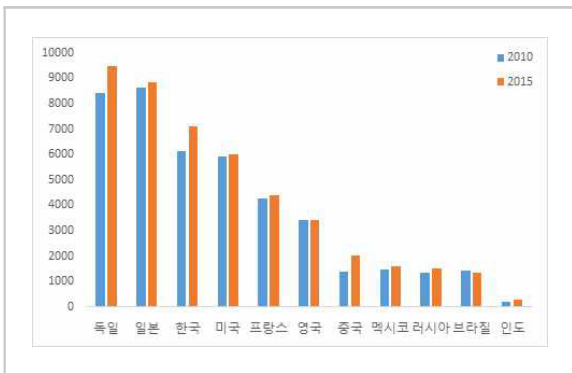
중국제조 2025의 추진 배경으로 전 세계적인 제조업 구조 변화와 중국 경제발전으로 인한 변화의 필요성을 꼽을 수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과학기술 강국을 중심으로 3D 프린팅, 이동통신,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제조업 구조 변화의 환경에서 중국은 전통제조업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혁명의 기회를 잡고자 하였다.

더불어 중국 국내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제조업 발전에 있어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경제성장률 및 수출 성장률은 둔화된 반면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비용은 이전보다 현저히 증가하였다. 또한 제조업 부가가치(MVA)는 경제성장률을 하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등 주요국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국 정부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그림 2-2 GDP 증가율과 MVA 증가율



▶▶ 그림 2-3 주요국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출처: 한국무역협회, 중국제조 2025 추진성과와 시사점.

2. 주요내용

(1) 목표

중국제조 2025는 제조강국 실현을 위한 2035년까지의 3단계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제조강국 반열에 진입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 공업화를 기본적으로 달성하고 중점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며 우세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 2025년까지 제조업의 혁신능력을 강화하고 노동생산율을 높이며 전 세계 가치사슬에서의 지위를 높인다.

두 번째 단계는 2035년까지 제조업 전체 분야에서 전 세계 제조강국 중위권에 진입하는 것이다. 혁신능력을 강화하고 중점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며 전면적인 공업화를 실현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제조업 대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 세계 제조강국 선두 지위에 오르는 것이다. 제조업의 주요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전 세계에서 선도적인 기술체계 및 산업체계를 수립한다.

▶▶ 표 2-8 중국제조 2025의 주요 목표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혁신능력	규모 이상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R&D비용 비중(%)	0.88	0.95	1.26	1.68
	규모 이상 제조업의 매출액 1억 위안당 특허 보유건수(건)	0.36	0.44	0.70	1.10
품질 효율	제조업 품질 경쟁력 지수	83.1	83.5	84.5	85.5
	제조업 부가가치율 증가	-	-	2015년 대비 2%p 증가	2015년 대비 4%p 증가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연평균, %)	-	-	7.5	6.5
정보화·공업화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	37	50	70	82
	디지털 R&D 설계도구 보급률(%)	52	58	72	84
	핵심공정 수치제어화 비중(%)	27	33	50	64
녹색 성장	규모 이상 기업의 공업부가가치 대비 에너지 소모 감축	-	-	2015년 대비 18% 감축	2015년 대비 34% 감축
	기업의 공업부가가치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	-	2015년 대비 22% 감축	2015년 대비 40% 감축
	기업의 공업부가가치 대비 물 사용량 감축	-	-	2015년 대비 23% 감축	2015년 대비 41% 감축
	공업 고체폐기물 종합이용률(%)	62	65	73	79

아울러, 앞서 설정한 목표치를 단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9대 전략목표로서 국가제조업 혁신 능력 제고, 정보화 및 공업화 융합 추진, 공업 기초역량 강화, 품질 및 브랜드 강화, 녹색 제조 실현, 중점 분야 성장 추진, 제조업 구조개혁 추진, 서비스형 제조 및 생산형 제조업 발전 추진, 제조업 국제화 발전수준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2) 중점산업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치열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10대 산업 분야를 지정하여 정부 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하고자 하였다. 차세대 정보기술, 고급수치제어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 설비, 해양 공정설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 설비,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설비, 농업기계 설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등을 10대 중점산업으로 선정하고 2025년까지 해당 분야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표 2-9 중국제조 2025의 10대 중점산업 및 목표

대분류	소분류	목표
차세대 정보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적회로배치 및 전용설비 정보통신설비 운영체제 및 공업 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반도체 국산화율 49% 2030년 반도체 국산화율 75%
고급수치제어기계 및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수치제어기계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국산로봇 내수 시장 점유율 50%
항공우주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 설비 우주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공간정보기술 국산화율 60%
해양 공정설비 및 첨단기술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탐사·자원개발이용·해상작업 설비 크루즈선 설계·건조 기술, 액화천연가스 등 첨단선박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글로벌 시장점유율 60%, 핵심부품 80%
선진 궤도교통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장, 에너지절약, 디지털화·스마트화·네트워크화 기술 친환경 고속 궤도교통설비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해외사업 비중 30%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자동차 자동차의 저탄소·정보화·스마트화를 위한 핵심기술 전기자동차 배터리, 변속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국산 전기차 100만 대, 2025년 300만 대 생산
전력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력, 원전, 가스터빈 제조기술 신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 선진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그리드용 송변전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수력발전 용량 3.5kW
농업기계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농업기계 농업생산의 정보화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국산 점유율 90% 2025년 국산 점유율 95%
신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금속재료, 고성능 구조재료, 기능성 고분자재료, 특수무기비금속재료, 선진 복합재료 민군 공용 특수 신소재 초전도 소재, 나노 소재, 바이오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기초소재 100% 국산화

대분류	소분류	목표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장비, 의료용 로봇 진료설비, 웨어러블 기기, 원격진료 등 모바일 의료상품 3D 프린팅, 줄기세포 등 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연간 산업규모 6,000억 위안으로 확대

(3) 5대 중점 프로젝트

앞서 언급한 10대 중점산업 분야의 구체적인 육성전략인 5대 중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혁신센터 설립 프로젝트이다. 차세대 정보기술, 스마트 제조, 신소재, 바이오의약 등 중점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제조업혁신센터(공업기술연구기지)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동 센터는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혁신성과의 사업화, 인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약 15개의 제조업혁신센터와 2025년까지 약 40개의 제조업혁신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스마트제조 프로젝트로 차세대 정보기술과 전통 제조설비를 융합한 혁신모델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주요공정의 스마트화, 로봇 대체, 생산과정 스마트 제어, 공급체인 최적화, 스마트 공장 및 디지털 작업장 건설 등을 집중 추진하며, 스마트제조 표준시스템과 정보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며 스마트제조 네트워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한다. 2020년까지 제조업 중점 분야의 스마트화 수준을 현저히 향상시키고 시범항목의 운영비용 30% 절감, 제품 생산주기 30% 단축, 제품 불량률 30% 감소 등을 달성한다. 2025년까지 제조업 중점 분야 전반에 걸쳐 스마트화를 실현하며 시범항목의 운영비용 50% 절감, 제품 생산주기 50% 단축, 제품 불량률 50%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공업 기반 강화 프로젝트이다. 인센티브 및 위험 보상제도를 수립하며 핵심 기초부품, 선진 기초공정, 기초재료의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설립하고 중점산업기술에 대한 기반시스템을 완비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핵심 기초부품, 기초재료의 국산화 40%를 실현하며, 2025년까지 국산화 70%를 달성하고 80종의 선진공정을 보급하며 세계 선두수준을 달성한다.

넷째, 녹색(친환경)제조 프로젝트이다. 전통 제조업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친환경 생산을 추진하며 수자원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 순환이용 등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재활용 제조, 저탄소 기술의 산업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수질·토양 오염을 방지하며, 녹색제품, 녹색공장, 녹색단지, 녹색기업의 표준체계를 제정하고 녹색평가(친환경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1,000개의 녹색 시범공장 및 100개의 녹색 시범단지를 조성하며 중점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20% 감소시킨다. 2025년까지 친환경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선두수준을 달성한다.

다섯째, 첨단설비 혁신 프로젝트이다. 대형 항공기, 항공 엔진, 민간 항공기, 친환경 스마트 열차,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해양공정설비 등 첨단설비 분야의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2020년 까지 상기 분야에서 자체적인 연구개발과 제조 및 활용을 실현하고, 2025년까지 첨단설비 시장에서 자주(국내) 지식재산권의 보유비중을 높이며 핵심 분야의 설비 기술에서 세계 선두지위를 확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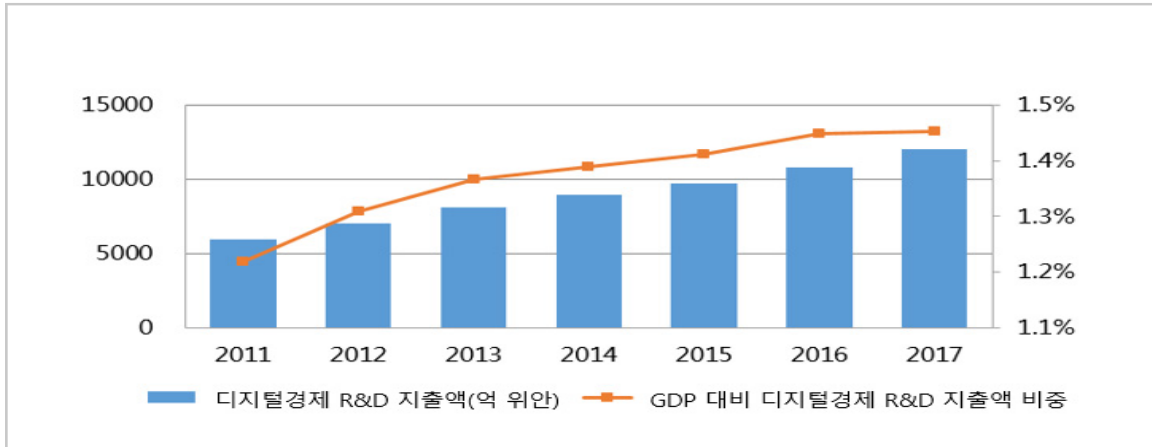
▶▶ 표 2-10 중국제조 2025의 중점 프로젝트

중점 프로젝트	주요내용
제조업혁신센터 설립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세대 정보기술, 스마트 제조, 신소재, 바이오의약 등 중점산업의 혁신을 위한 제조업혁신센터 (공업기술연구기지) 설립 핵심기술 R&D, 혁신성과의 사업화, 인재 양성 등 수행 2020년까지 제조업혁신센터 15개, 2025년까지 40개 설립
스마트제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세대 정보기술과 전통 제조설비를 융합한 혁신모델 보급 확대 주요 공정의 스마트화, 로봇 대체, 생산과정 스마트 제어, 공급체인 최적화, 스마트 공장 및 디지털 작업장 건설 등 집중 추진 스마트제조 네트워크시스템 플랫폼 구축 2020년까지 제조업 중점산업의 스마트화 수준 제고, 시범항목의 운영비용 30% 절감, 생산주기 30% 단축, 제품 불량률 30% 감소, 2025년까지 제조업 중점산업 전반의 스마트화 실현, 시범항목의 운영비용 50% 절감, 생산주기 50% 단축, 제품 불량률 50% 감소
공업 기반 강화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센티브 및 위험 보상제도를 수립하며 핵심 기초부품, 선진 기초공정, 기초재료의 활용 지원 공공서비스 플랫폼 설립, 중점산업기술의 기반시스템 완비 2020년까지 핵심 기초부품 및 기초재료의 국산화 40%를 실현하고, 2025년까지 국산화 70%, 80종의 선진공정 보급, 세계 선두수준 달성
녹색(친환경)제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제조업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친환경 생산을 추진하며 수자원 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 순환이용 등 기술 개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재활용 제조, 저탄소 기술의 산업화 시범사업 실시 대기·수질·토양 오염을 방지하며, 녹색제품, 녹색공장, 녹색단지, 녹색기업의 표준체계 확립 2020년까지 1,000개의 녹색 시범공장 및 100개의 녹색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중점산업의 오염물질 배출 20% 감소시키며, 2025년까지 친환경 제조업 분야의 세계 선두수준 달성
첨단설비 혁신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항공기, 항공 엔진, 민간 항공기, 친환경 스마트 열차,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해양 공정설비 등 첨단설비 분야의 기술혁신 추진 2020년까지 상기 분야에서 자체 연구개발·제조·활용을 실현하고 2025년까지 첨단설비시장에서 자주 지식재산권의 보유비중을 높이며 중요 분야의 설비기술에서 세계 선두지위 확립

3. 주요 성과

중국제조 2025 시행 이후, 10대 중점산업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낸 분야는 차세대 정보기술산업으로 볼 수 있다.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차세대 정보기술 분야 중 특히 디지털 분야의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면서 특히 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2017년 약 12조 위안을 기록하였다.²⁵⁾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 지출액은 2011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7년 기준으로 연구개발액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5%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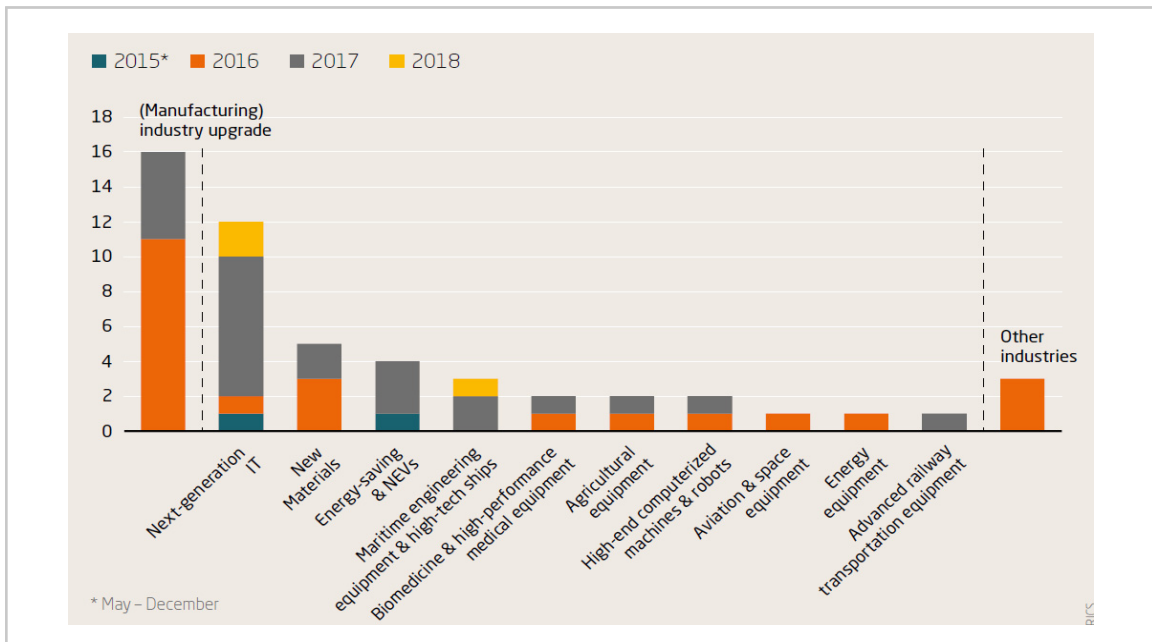
▶▶ 그림 2-4 중국 디지털 분야 연구개발(R&D) 지출액 및 GDP 비중(2011~2017년)



출처: 中国信息通信研究院, 中国数字经济发展与就业白皮书(2018年), 2018. 04.

차세대 정보기술 외에도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기술)선박 등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국제조 2025 시행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50% 이상을 기록한 산업 분야는 5G(차세대 정보기술), 전기자동차(신에너지 자동차), 드론(고급수치제어기계 및 로봇)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산업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그림 2-5 중국제조 2025 시행 이후 연도별·업종별 업그레이드 현황



출처: MERICS(2019).

25) MERICS, China's industrial policy in the quest for global tech leadership, No 8. July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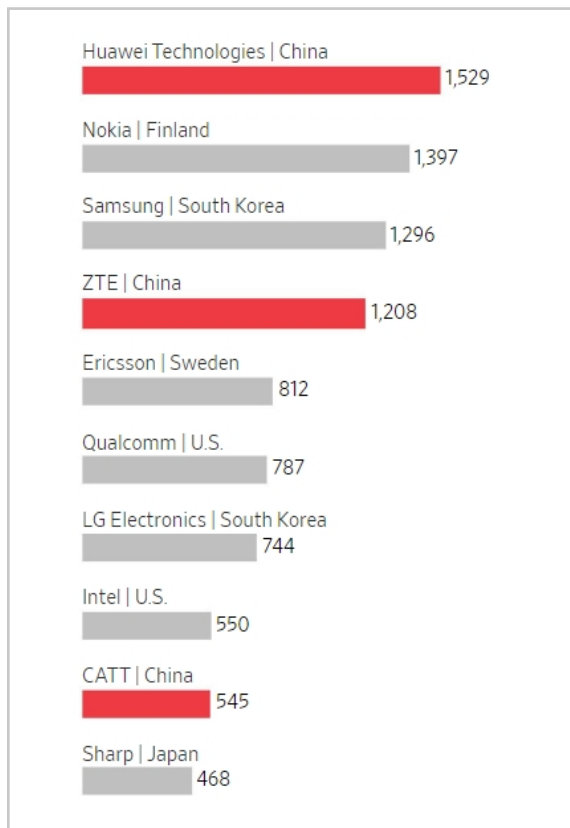
(1) 5G

중국은 5G 분야에서 후발주자로 시작하였으나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 하에 빠르게 성장하여 5G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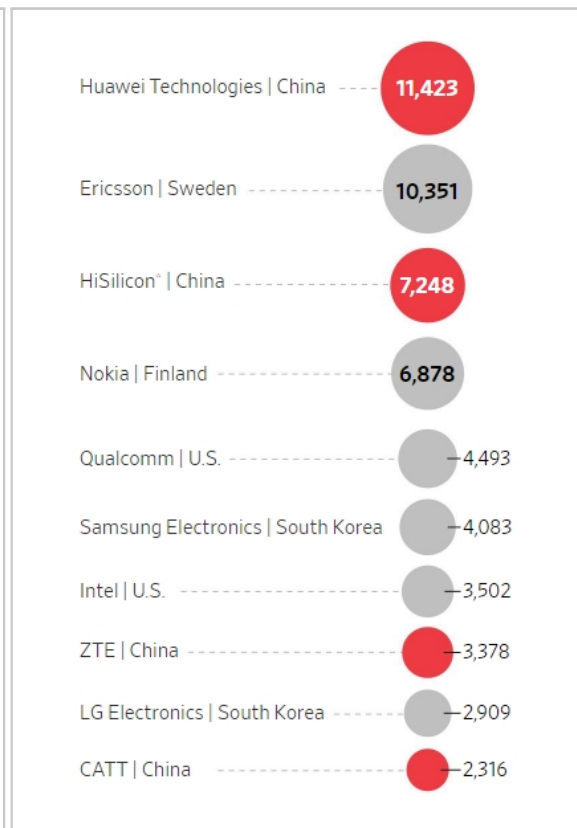
2013년부터 중국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3개 부처는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의 3대 통신업체와 화웨이(华为), ZTE(中兴), 다탕(大唐) 등의 기업과 공동으로 ‘IMT-2020 프로젝트’라는 T/F 기구를 설립하여 5G 기술 표준개발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바탕으로 2018년 중국은 전 세계 5G 표준필수특허 출원 건수의 약 3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하였다. IPlytics에 따르면, IP기업별로는 화웨이가 전 세계 5G 관련 표준필수특허 출원 건수 중 15.05%로 가장 큰 비중을 기록하였으며, ZTE(5위), CATT(9위), OPPO(11위) 등 중국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²⁶⁾

▶▶ 그림 2-6 5G 표준필수특허 보유 순위



▶▶ 그림 2-7 5G 표준 제안 건수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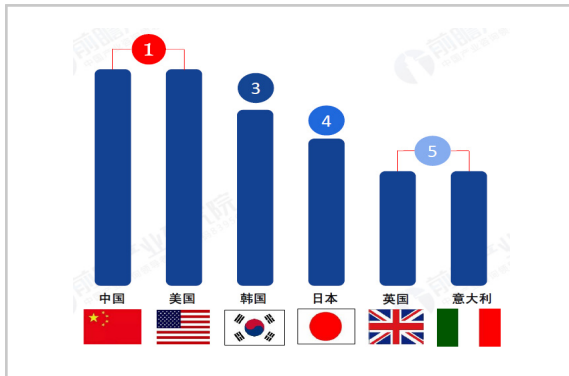


출처: WSJ, “Where China Dominates in 5G Technology”, 2019. 2. 26.(IPlytics 재인용).

²⁶⁾ Nikkei, China in pole position for 5G era with a third of key patents, 2019. 05. 03.(<https://asia.nikkei.com/Spotlight/5G-networks/China-in-pole-position-for-5G-era-with-a-third-of-key-patents>, 2019. 11. 11. 최종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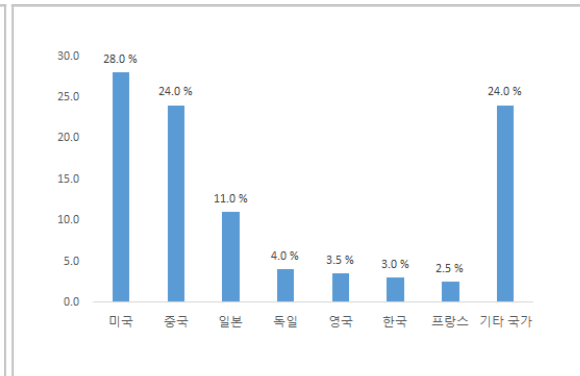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CIT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5G 준비 순위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 1위를 기록하였다.²⁷⁾ 이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5G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약 16년간 5G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가 활발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 그림 2-8 글로벌 5G 준비 순위



출처: CITA

▶▶ 그림 2-9 2020~2035년 5G 연구개발 및 투자액



출처: 前瞻产业研究院, 2019年中国5G产业发展现状及趋势分析报告(2019).

중국은 5G 기술을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금융, 헬스케어 등의 분야까지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의 대표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18개 도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5G 시범 스마트시티를 건설하였으며, 시범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1차 5G통신 상용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 표 2-11 중국 3대 통신업체의 5G 시범 스마트시티 분포 현황

도시	차이니아니콤(中国联通)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
상하이	0	0	0
승안	0	0	
선전	0	0	
항저우	0		0
쑤저우		0	0
베이징	0		
톈진	0		
난징	0		
란저우		0	
청두	0	0	

27) CITA, The Global Race to 5G, 2019. 04.

도시	차이냐우니콤(中国联通)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
광저우	0		0
우한	0		0
칭다오	0		
꾸이양	0		
푸저우	0		
정저우	0		
선양	0		
충칭	0		
합계	16	6	5

출처: 前瞻产业研究院, 2019年中国5G产业发展现状及趋势分析报告(2019).

2018년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은 바이두(百度), ZTE(中兴)와 함께 5G 통신기반 자율주행 시범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하반기에는 후난성 창사시에서 자율주행 무인택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²⁸⁾ 또한 2019년부터 전국 각 지역에 '5G+스마트은행'이 생겨나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5G 기술을 도입하였으며,²⁹⁾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도 5G 기술을 응용하기 시작하여 5G 기술을 접목한 원격수술, 원격진단, 원격회진, 원격교육 등이 개발되고 있다.³⁰⁾

(2) 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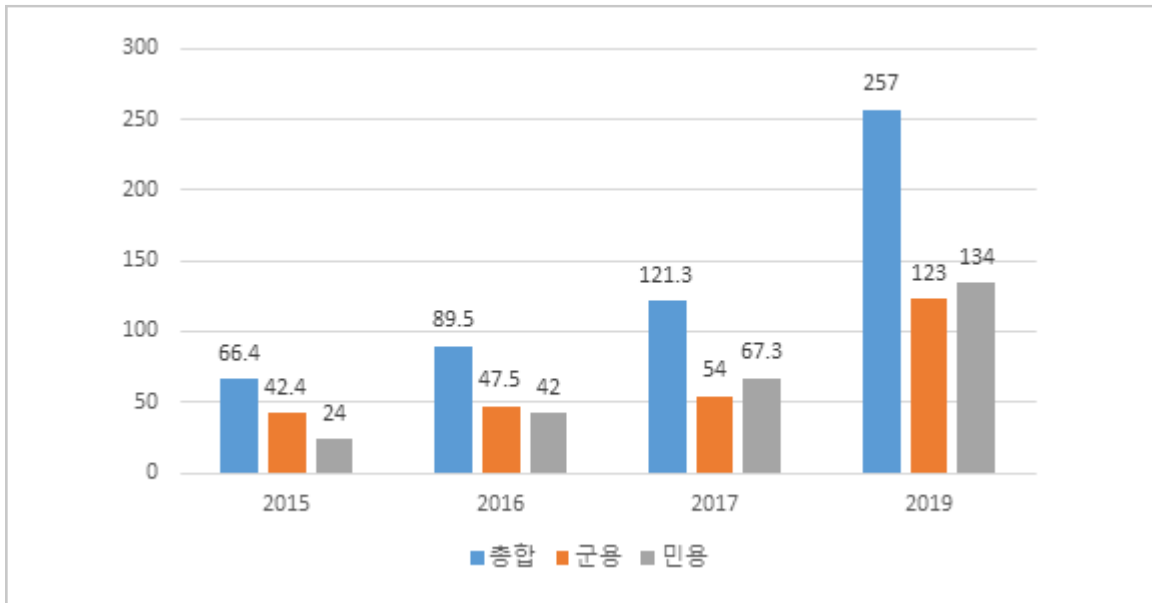
중국의 드론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의 드론시장 규모는 2015년 66억 4,000만 위안에서 3년 만에 급격히 증가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약 112% 증가한 257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그중 중국 민용 드론시장 규모는 약 24억 위안(2015년 기준)으로 군용 드론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으나, 큰 폭으로 성장해 2018년에 군용 드론시장 규모를 추월하였다.

28) 中商产业研究院, 百度合作长沙市打造自动驾驶之城 无人驾驶出租车将规模化运营, 2018. 10. 30.(<https://finance.eastmoney.com/news/1355,20181030973636167.html>, 2019. 11. 11. 최종접속).

29) 国际金融报, 试点5G版“场景革命” 银行竞相上演变形记, 2019. 8. 5. (<https://tech.sina.com.cn/5g/2019-08-05/doc-ihytcitm6877339.shtml>, 2019. 11. 11. 최종접속).

30) 卓健科技, 5G+医疗, 智慧医疗时代来临!, 2019. 6. 24.(https://www.sohu.com/a/322625676_99924567, 2019. 11. 11. 최종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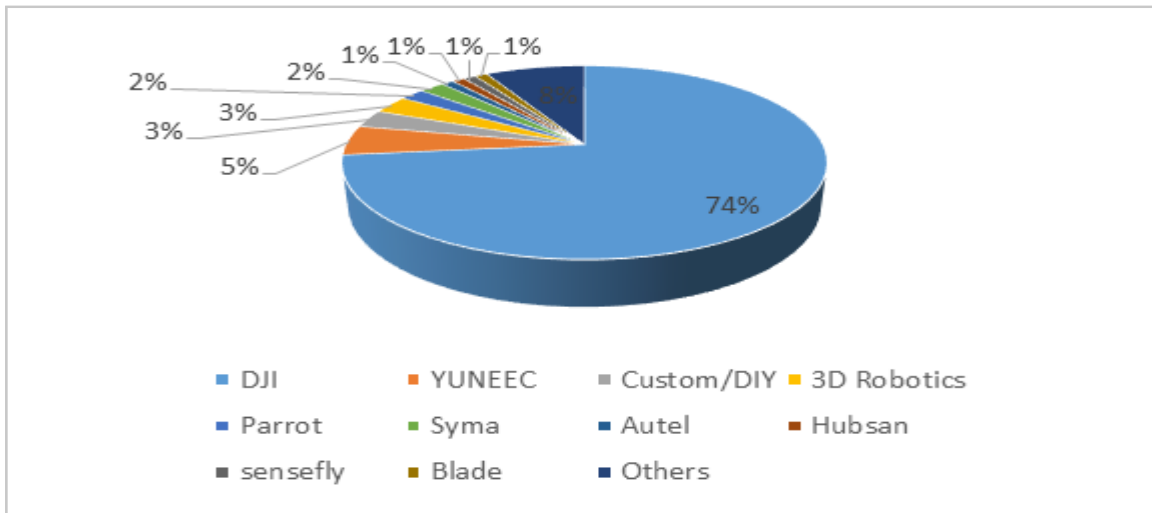
▶▶ 그림 2-10 중국 드론시장 규모(2015~2019년)



출처: 前瞻产业研究院.

특히, 중국 선전시 소재의 중국 드론 생산업체 DJI는 2018년 전 세계 드론시장에서 7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다.

▶▶ 그림 2-11 2018년 전 세계 드론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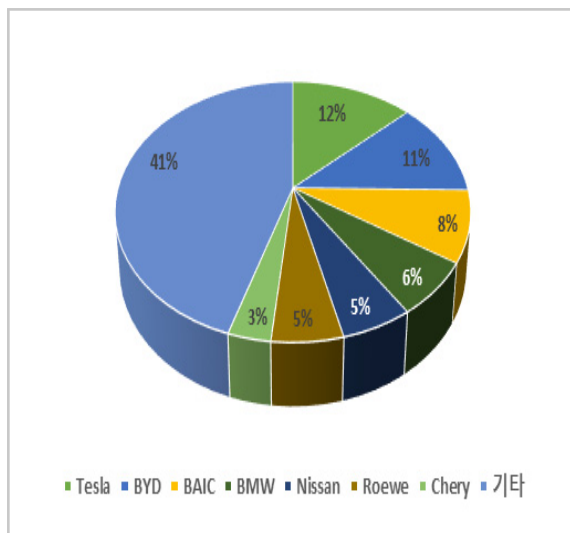


출처: Skylogic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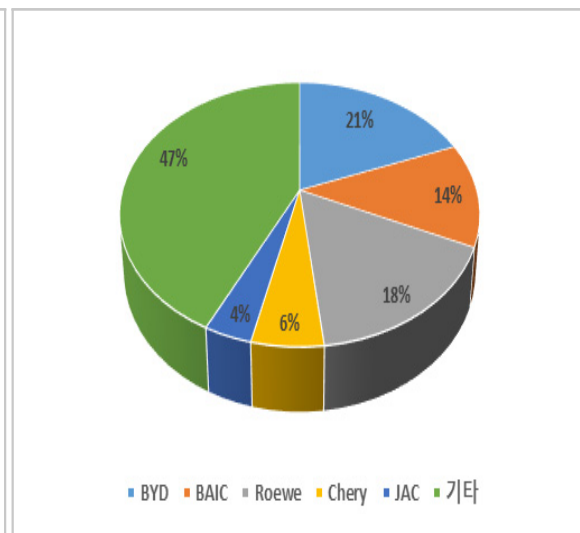
(3) 신에너지 자동차

전기차를 필두로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의 중국의 발전은 비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18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점유율에서 중국의 BYD는 11%의 점유율로 미국 테슬라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3위는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이 8%의 점유율로 차지했으며 이 밖에도 상하이자동차 계열사 로워(5%), 체리(3%) 등 중국 기업이 전 세계 전기차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12 전 세계 전기차 시장점유율



▶▶ 그림 2-13 중국 전기차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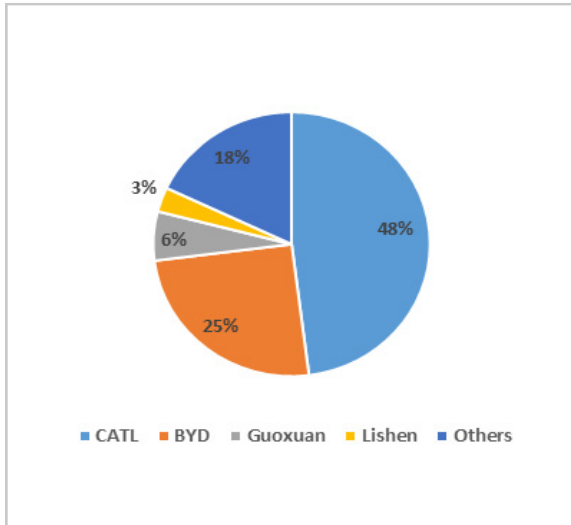
출처: InsideEVs.

전 세계 전기차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데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분야에서 국내시장 진입장벽을 높여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고, 보조금³¹⁾ 지급을 통해 BYD 등 자국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기술개발 기간을 확보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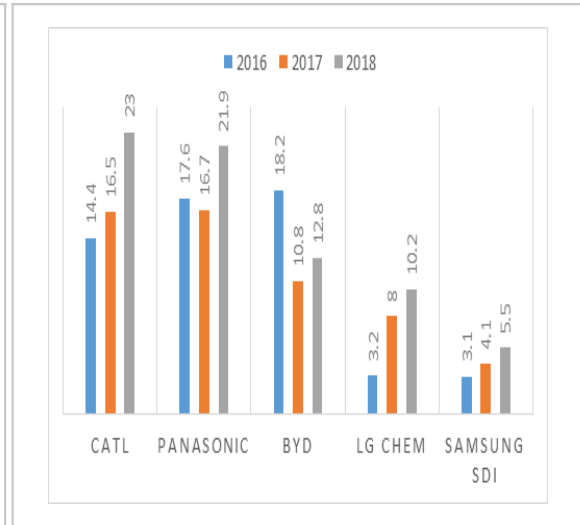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CATL과 BYD를 비롯한 상위 10개 기업이 중국 국내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국 CATL이 23%, BYD가 12.8%를 기록하면서 전체 시장의 35.8%(2018년 기준)를 중국 기업이 차지하였다.

31)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9년 6월 25일부터 각 지방정부별로 제공하는 보조금을 폐지함.

▶▶ 그림 2-14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 그림 2-15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



출처: 中商文库(2019).

III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전략

1. 전략성 신흥산업의 개요

2009년 원자바오 前총리가 처음으로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이후 2010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었다. 원자바오 前총리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의 시대에는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신산업을 선택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발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0년 중국 정부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7대 전략성 신흥산업으로 정하였으며 이후 2016년에 디지털 창의산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수년간 전략성 신흥산업은 타 산업 분야에 비해 크게 성장하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략성 신흥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15%로 동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2배를 기록하였다.³²⁾ 전략성 신흥산업의 중국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351,706건으로 2012년의 202,640건 대비 약 1.7배 증가하였다.³³⁾

32) 中国工程科技发展战略研究院, 中国战略性新兴产业发展报告 2018, 2017. 11.

중국의 전략성 신흥산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략성 신흥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과 육성전략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며, 향후 중국 정부의 추진방향을 예측함으로써 우리의 산업정책을 재검토하고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표 2-12 전략성 신흥산업

대분류	주요 범위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차세대 정보통신산업, 정보기술서비스, 전자핵심산업, 인터넷 정보 보안 상품 및 서비스, 인공지능
첨단장비 제조산업	스마트 제조 장비산업, 항공산업, 위성 및 응용산업, 철로교통장비산업, 해양 공정장비산업
신소재산업	신형 기능재료산업, 선진 구조재료산업, 고성능 복합재료산업
바이오산업	바이오향약산업, 바이오향약공정산업, 바이오농업산업, 바이오제조산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산업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신에너지 자동차상품, 전지 충전·교체 및 수소 공급 시설, 생산 및 테스트 설비
신에너지산업	원자력발전기술산업, 풍력에너지산업, 태양광에너지산업,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고효율 에너지절약산업, 선진 환경보호산업, 자원순환이용산업
디지털 창의산업	디지털 문화 창의, 디자인서비스, 디지털 창의와 관련 산업의 융합응용서비스

2. 국가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계획

(1) 배경 및 목표

‘전략성 신흥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는 ‘제 12차 5개년(2011-2015년) 국가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계획(이하 ‘12·5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5년까지 동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으나 산업의 혁신수준이 높지 않고 일부 분야의 핵심기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2016년부터 시행된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국가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계획(이하 ‘13·5 계획’)'에서는 조속히 발전되어야 할 분야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³⁴⁾

13·5 계획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전략성 신흥산업을 점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간별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 전략성 신흥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산업 혁신능력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2030년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산업규

33) 国家知识产权局, 战略性新兴产业专利统计分析报告(2017), 2017. 12. 25.

34) 김아린,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정책과 특허동향 분석 및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p. 4.

모 방면에서는 2020년까지 전략성 신흥산업의 총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로 확대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제조, 바이오, 녹색 저탄소, 디지털 창의 등 5개 산업의 생산액 규모 10조 위안을 달성하며, 연평균 신규 일자리 199만 개 이상 창출하고자 하였다. 혁신능력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특허 보유건수 연평균 증가율 15% 이상을 달성하고, 지식재산권을 더욱 엄격히 보호하며 혁신을 유발하는 정책 및 법규를 완비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2030년까지 중국을 세계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의 제조 중심, 혁신 중심으로 도약하고, 세계적인 영향력 및 주도적 지위를 갖춘 혁신형 선도기업을 대거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 표 2-13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계획의 단계별 목표

구분	12·5 계획(2011년~2015년)	13·5 계획(2015년~2020년)
중점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혁신능력 강화 혁신·창업 환경 개선 국제분업 위상 제고 선도적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규모 확대 및 경제발전의 신동력 발굴 혁신능력 및 경쟁력 제고 산업구조 최적화
2015년까지의 달성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성 신흥산업 규모 연평균 성장률 20% 이상 GDP 대비 전략성 신흥산업 부가가치 비중 약 8% 	-
2020년까지의 달성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GDP 대비 전략성 신흥산업 부가가치 비중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GDP 대비 전략성 신흥산업 부가가치 비중 15%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제조, 바이오, 녹색저탄소, 디지털 창의 등 5개 산업규모 10조 위안 연간 신규 일자리 100만 개 이상 특허 보유건수 연평균 증가율 15% 이상
2030년까지의 달성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 전략성 신흥산업의 제조중심·혁신중심으로 성장 세계적인 영향력 보유 및 주도적 지위를 지닌 혁신형 선도기업 양성

(2) 발전전략

13·5 계획은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의 관리방식을 완비하고 산업 혁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후 관련 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고 금융과 조세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산업 분야별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R&D 비용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통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과학연구 인력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업 및 연구자의 혁신을 장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법제 제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 표 2-14 ‘13·5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계획’의 주요 임무

주요 임무	세부 내용
관리방식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통신, 신약 및 의료기기,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허가와 관련하여 심사 승인방식을 완비하고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법규 및 규범성 문건 개정 및 폐지 중앙재정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자금 관리에 관한 정책조치를 실시하고, 과학기술 성과 권리화를 위한 제도 개혁 추진 반독점법을 완비하고, 독점금지 및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집행을 강화 부처 간 연석회의제도 활용을 통해 업무소통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현황 평가 및 전망 예측 과제연구 수행
산업 혁신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 소싱, 클라우드 펀딩 등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개방공유가 이루어지는 혁신플랫폼을 구축하며 기업,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창업기업 등의 협력 혁신을 추진 기업의 주도로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산업 기술혁신연맹을 설립하고,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플랫폼 설립을 지원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R&D 비용 세액공제 등 조세 혜택 제공 과학기술 성과 전환 관련 개혁조치를 실시하고, 과학연구인력의 성과 전환 수익 배분비율을 향상하는 등 과학성과 전환제도를 완비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법, 저작권법 개정업무를 추진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연구를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 상향 전국 지식재산권 운영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구 양성 지식재산권 보험가입, 채권투자 등 상품을 개발하고 지식재산권의 지분화·증권화를 모색하며, 기업이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자체브랜드를 개발하도록 장려 전략성 신흥산업의 지식재산권전략 추진계획 실시 해외 지식재산권 리스크 예비경보체제를 수립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 인수합병 및 권리보호를 지원
금융 및 조세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상장 및 설립을 위한 용자를 적극 지원하고, 장외 증권거래시장 및 기관 간 사모펀드 가격제시 시스템을 모색하며, 창업투자와 엔젤투자를 활성화 금융기관이 전략성 신흥산업의 특성에 맞춘 여신관리 및 대출심사제도를 완비하도록 지도하고, 지식재산권 담보용자, 과학기술보험 등 금융상품을 개발 재정자금의 인도기능을 발휘하며 투자 유인방식을 혁신하여 전략성 신흥산업의 발전을 지원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 프로젝트(PPP)’ 등의 방식을 통해 중대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사회자본의 유입 확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완비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조정하며, 전략성 신흥산업 분야의 기업 및 개인을 위한 소득세 정책을 완비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분야별 인재 부족 리스트를 작성하여 국가 관련 인재계획을 통해 중점 지원 사업기관의 과학연구인력이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과학연구인력이 국가 규정에 따라 기업에서 혁신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도록 지원 전략성 신흥산업 기업 내의 박사학위자를 대상으로 한 과학연구 워크스테이션을 설립하여 산업 핵심기술 연구개발 장려 해외 우수인재의 영구거주제도를 마련하고 외국국적을 가진 고급인재의 영구거주자격 절차를 간소화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거주 및 출입국 편의 제공

(3) 산업별 주요 전략

1)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기술과 전통제조업의 융합을 추진하여 2020까지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총생산액 12조 위안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속 광섬유 네트워크, 차세대 무선광대역 네트워크 등 인프라 설비를 구축하고 '인터넷 플러스' 행동방안을 실시하였다. 또한 데이터자원 개방·공유 확대, 빅데이터 활용 신모델 개발, 네트워크 정보 보안 강화 등 국가빅데이터전략을 수립하였다.

2) 첨단장비 및 신소재산업

중국제조 2025 관련 핵심기술 및 핵심부품 개발을 촉진하며 2020년까지 첨단장비 및 신소재 산업 생산액 12조 위안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첨단장비산업 분야에서는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로봇 자동화 생산라인 및 스마트 공장을 건설하여 전통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실현하고, 항공기 엔진기술 개발, 위성 보급, 철도교통장비 혁신 등을 추진하였다.

신소재산업에서는 2020년까지 주요 핵심 소재의 자급률 7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수한 신소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중국과 해외 유명 첨단제조기업과의 공급사슬 협력을 강화하며 연구개발 설계, 생산 무역, 표준 제정 등 방면에서 전 방위적 협력을 추진하였다. 한편, 중국 신소재산업의 총생산액은 2012년의 1조 위안에서 2016년 2조 6,500억 위안으로 연평균 27.6% 성장하였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하여 총생산액 10조 위안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³⁵⁾

3) 바이오산업

2020년까지 바이오산업 규모 8조 위안 이상을 달성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신형 바이오기술 기업 및 바이오 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유전자 배열순서, 세포 배양, 친환경 스마트 생산 등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가속화하여 바이오 의약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바이오 의학 공정 기술과 정보기술의 융합 발전을 통해 신형 의료기계, 모바일 의료서비스, 원격 의료서비스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모델 개발을 추진하였다.

³⁵⁾ 新华网, 工业部: 新材料产业预计到2025年产值将达10万元, 2018. 2. 12.

바이오 농업 신제품을 개발하고 농업의 현대화를 통해 바이오 육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미생물 게놈(genome) 프로젝트, 세포 공장 등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공업 바이오 기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화학공업, 재료, 에너지 등 분야에서 바이오 제조기술의 활용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바이오시밀러의 발전을 지원하고,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생산을 촉진하였다.

4) 신에너지 및 환경보호산업

신에너지 자동차, 신에너지 및 환경보호 등 녹색 저탄소산업을 국가 주요산업으로 육성하고 2020년까지 관련 산업 생산규모 10조 위안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에너지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순수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식 혼합동력 자동차 산업 수준을 제고하여, 2020년까지 당해 연도 생산판매량 200만 대 이상, 누적 생산판매량 500만 대 이상을 달성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신에너지 자동차 및 핵심부품 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신에너지산업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원자력 발전, 풍력 발전, 태양광 에너지, 바이오 매스 에너지 등 신에너지 소비량 비중 8% 이상을 달성하고 산업 생산액 1조 5천억 위안 달성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고효율 에너지장비 기술 및 활용수준을 제고하고 에너지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여 2020년까지 고효율 에너지절약산업 생산액 3조 위안을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보호산업 분야에서는 환경보호설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오염물질 측정 및 방지 기술 설비 개발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선진 환경보호산업 생산액 2조 위안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중대 환경보호 기술 장비 발전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환경보호산업과 차세대 정보기술, 선진 제조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며, 산학연 환경보호 기술 혁신연맹 설립을 지원하여 기술 연구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5) 디지털 창의산업

디지털기술 활용을 통해 문화창의, 혁신디자인 등의 산업을 조속히 발전시키고 문화와 기술의 융합발전을 촉진하여 2020년까지 관련 산업 생산규모 8조 위안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문화창의 기술 및 설비를 혁신하고 디지털 문화창의 콘텐츠를 다양화하며 관련 산업과의 융합발전을 촉진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용을 장려하고 가상현실(VR) 쇼핑, SNS 비즈니스 등 새로운 마케팅모델의 개발을 지원한다.

디지털 창의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되고 있다.

법률, 행정수단, 기술표준 등의 보완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디지털 창의 분야의 저작권 침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체 지식재산권으로 이루어진 초감각 영화관, 융합현실(MR) 게임 등의 설비와 플랫폼을 연구개발하고 디지털 문화창의 기술 설비의 핵심표준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있다.

IV 스마트 플러스

1. 추진배경

2019년 3월 중국 양회에서는 기존의 인터넷 플러스(互联网+)³⁶⁾ 전략의 확장개념인 ‘스마트 플러스(智能+)’ 전략을 제시하였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2018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9차 회의에서 데이터 구동, 인적네트워크 구축, 산업 간 융합, 혁신 공유가 이루어지는 스마트경제를 구축할 것을 언급하면서 스마트 플러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2019년 3월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치창 총리가 ‘스마트 플러스’ 전략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³⁷⁾

스마트 플러스는 인터넷 플러스 전략의 시행 이후, 사회, 경제, 생활방식 전반에서 인터넷 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을 달성함에 따라, 향후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등의 첨단기술을 통해 산업 및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전면적인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 표 2-15 중국 정부업무보고 키워드 변화(2016~2019년)

2016	2017	2019
혁신발전 전략을 위한 강요와 의견을 제정하고, 대중창업, 만인혁신정책을 필두로,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강화한다.	‘인터넷 플러스(互联网+)’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가속화하여, 기업의 광범위한 이익을 누릴수 있게 하고, 일반 대중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산업용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플러스(智能+)’ 전략을 확대하며,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한다. 빅데이터, 인동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응용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확대한다.

출처: 2016-2019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36) 인터넷 플러스 정책은 2015년에 발표된 이후, 제조업, 농업 등 전통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중국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킴.

37) 第一财经, 政府工作报告首提“智能+” 强调基础研究和原始创新, 2019. 03. 05. (<https://www.yicai.com/news/100131419.html>, 2019. 11. 11. 최종접속).

2. 스마트 플러스의 주요내용

(1) 인터넷 플러스에서 스마트 플러스로 전략 변화

스마트 플러스 전략은 정부업무보고 외에 아직까지 별도로 개념을 정의하거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 정책 문건은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터넷협회와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스마트 플러스 사회발전지수 보고(中国“智能+”社会发展指数报告)’를 바탕으로 스마트 플러스 전략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 그림 2-16 인터넷 플러스에서 스마트 플러스로 전환



출처: 阿里研究院, 从连接到赋能“智能+”助力中国经济高质量发展(2019).

스마트 플러스는 생산·공급 분야, 생활·소비 분야, 공공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공급 분야는 농업, 제조, 상업 분야로, 생활·소비 분야는 스마트 가구, 교통, 소매, 지급결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스마트 공공 분야는 다시 스마트 관리, 공공서비스인 스마트 정무로 나뉜다. 이는 기존의 인터넷 플러스의 11대 분야와 다소 중복된다.³⁸⁾

▶▶ 표 2-16 스마트 플러스 사회발전지수 지표 구성

총지수	1급 지표	2급 지표	3급 지표
중국 '스마트 플러스' 사회발전 지수	'스마트 플러스' 생산 공급	스마트 농업	표준생산
		스마트 제조	온라인 경영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제품
			산업가치사슬 연계

³⁸⁾ 인터넷 플러스에서는 창업지원, 제조업, 현대농업, 에너지, 금융, 공공복지,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환경, AI 등의 11대 플러스 분야를 제시함.

총지수	1급 지표	2급 지표	3급 지표	
	'스마트 플러스' 생활소비	스마트 상업	스마트 물류 스마트 전자상거래	
		스마트 가구	스마트가전 스마트 부동산	
		스마트 교통	자동차 공유플랫폼 스마트 교통	
		스마트소매	디지털 유통	
		디지털지급결제	이동결제(모바일결제)	
		'스마트 플러스' 공공 분야	스마트관리	운영관리 종합정책결정 사회안정
			스마트 정부	인터넷 서비스 이동서비스 정부행정 서비스 연계

출처: 中国互联网协会·中国信息通信研究院, 中国“智能+”社会发展指数报告, 2019.

동 보고서는 중국이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소비 분야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생산·공급 측면인 제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화가 다소 늦은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산업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플러스를 확대하여 제조업 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³⁹⁾이라고 언급하였는데, 특히 생산·공급 측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반의 첨단기술 활용을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이 기존의 소비 위주의 인터넷 플러스 전략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촉진해나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소비인터넷에서 산업인터넷으로 전환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2015년 인터넷 플러스 정책 추진 이후, 인터넷 플랫폼과 디지털 기업의 성장으로 인해 급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중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약 27억 위안(2017년 기준)이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9%⁴⁰⁾로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다.

39) 中国政府网, 2019年政府工作报告全文(<https://www.gov.cn/zhuanti/2019qglh/2019lhfgzbg/index.htm>, 2019. 11. 11. 최종 접속).

40) ('02년) 10.3% → ('08년) 15.2% → ('14년) 26.1% → ('15년) 27.5% → ('16년) 30.3% → ('17년) 32.9%(중국정보통신연구원)

▶▶▶ 그림 2-17 중국 디지털 경제 규모 및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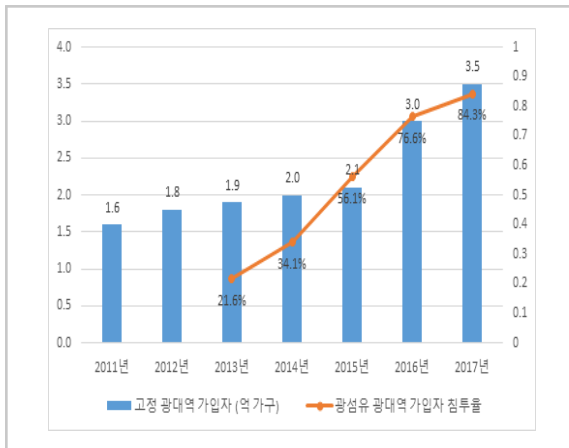


출처: 中国信息通信研究院, 2018中国数字经济时代人才流动报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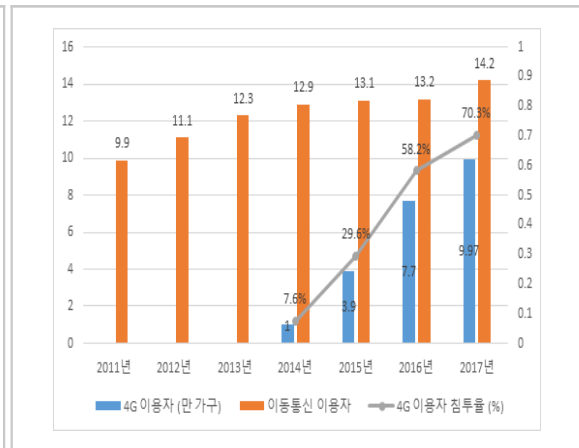
주: 막대그래프는 경제규모(단위: 억 위안)를 나타내며, 꺾은선 그래프는 GDP 비중을 의미

중국의 광대역 인프라 구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동통신 네트워크 분야 시장규모도 확대되었다. 중국의 4G 이용자 수는 2017년 기준 약 10억 명으로 미국과 유럽을 추월하였으며 4G 이용자 침투율은 70.3%로 미국(70.5%)과 유사한 수준이다.⁴¹⁾

▶▶▶ 그림 2-18 중국 유선인터넷 광대역 가입자 수



▶▶▶ 그림 2-19 중국 이동통신 이용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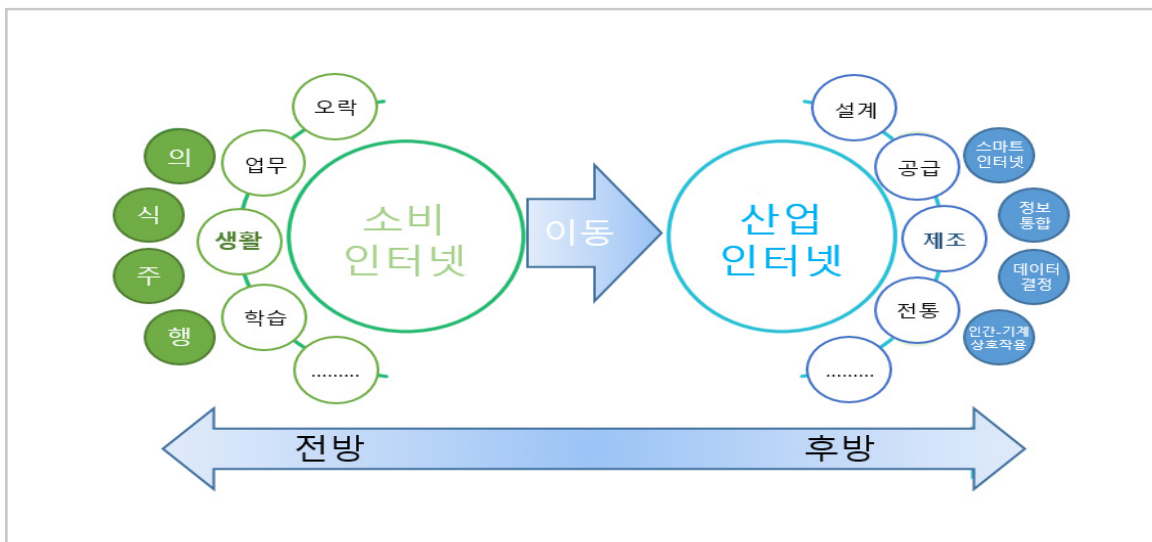
출처: 中国信息通信研究院, 中国数字经济发展与就业白皮书(2018).

41) 中国信息通信研究院, 中国数字经济发展与就业白皮书(2018).

이렇듯 중국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성장의 중심에는 BAT(Baidu, Alibaba, Tencent)라고 일컫는 중국의 3개 인터넷 기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인터넷 기업은 주로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검색엔진, 공유경제, 핀테크(모바일결제) 분야의 업체로 모두 소비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산업인터넷 분야에 속하는 제조업의 경우, 디지털화 속도가 빠르고 발전 의지는 강하지만, 전반적인 발전 수준은 여전히 글로벌 선두 국가와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Capgemini⁴²⁾가 전 세계 1,00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스마트팩토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2017년 3월 기준)로 미국과 독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산업인터넷과 관련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도 기존 소비 분야에서 산업인터넷 분야로 전략을 전환하는 추세를 띄고 있다.

▶▶ 그림 2-20 소비인터넷에서 산업인터넷으로의 전략 변화



출처: 阿里研究院, 从连接到赋能“智能+”助力中国经济高质量发展(2019).

산업인터넷(Industrial IoT)은 제품진단 소프트웨어와 분석 솔루션을 결합해 기계와 인간, 기계와 기계 사이를 연결하여 운영체계를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개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자재 조달부터 생산과 판매, 유통, 고객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제조사들의 모든 영역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 에너지절약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⁴³⁾

42) 글로벌 IT 컨설팅기업(www.capgemini.com).

43) 조은교, 중국 스마트 제조혁신의 열쇠, 산업인터넷(IIoT)의 발전전략과 시사점, 2019.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산업인터넷이 처음으로 언급된 이후, 주관부처인 공업정보화부는 산업인터넷 관련 육성정책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특히 산업인터넷 플랫폼 건설, 인프라 구축 등의 기초 분야의 지원과 보안 등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산업인터넷 전담업무 추진단을 설립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에서 주요 산업인터넷 플랫폼 리스트를 직접 지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주요 인정 기업을 선발하였으며, 해당 분야의 활용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표 2-17 2019년 발표된 산업인터넷 관련 주요정책

구분	정책명	주요내용
공업정보화부 (2019. 1.)	산업인터넷 네트워크 건설 및 보급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인터넷 표준제정, 응용강화, 산업인터넷식별체계 구축, 네트워크 환경 최적화 인터넷 프로토콜 6(IPv6) 기업 외부망 인프라 구축 지원 개방형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양회 (2019. 3.)	정부업무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로 정부업무보고에 산업인터넷이 키워드로 등장 산업인터넷을 통한 스마트 플러스 및 제조혁신을 강조
공업정보화부 (2019. 6.)	산업인터넷 전문업무팀의 2019년 업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대 임무와 61개 프로젝트 발표 인프라구축 확대, 산업인터넷 플랫폼 건설, 핵심기술개발 강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육성 강화, 산업 인터넷 생태계 발전, 산업 인터넷 안전 부분에 대한 수준 증대, 개방적 협력 강화 등
공업정보화부 (2019. 8.)	산업인터넷 보안 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까지 전자정보산업, 자동차, 우주항공 등의 주요 분야에 최소 20개의 보안상품 개발하고, 산업인터넷 보안기업 육성 2025년까지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마련 산학연 공동연구, 표준제정 추진, 인재양성 등의 분야에 협력방안 마련
공업정보화부 (2019. 8.)	2019년 산업인터넷 융합 분야의 플랫폼 리스트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이얼의 COSMOPlat, 동방국신의 Cloudiip, 팍스콘의 BEACON, 알리바바의 SsuoET, 화웨이의 Fusion Plant 등이 선정됨

(3)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한 산업 고도화 추진

2019년 3월 19일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통과된 ‘인공 지능과 실물 경제의 융합 촉진에 대한 의견’은 스마트 플러스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동 정책은 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긴밀한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데이터, 인간과 기계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스마트 경제⁴⁴⁾의 건설을 강조한다.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도 전자상거래, 검색엔진, SNS 서비스 업체에서 이제는 축적된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의 고유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BAT기업은 헬스케어, 금융,

44) ‘스마트경제’라는 용어는 중국 정책문건에서 처음 출현한 용어로 빅데이터, 로봇, 공유경제 등을 포함하며, 광의적인 의미로는 모두 AI 산업에 포함됨.

로봇, 자율주행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 중국 과학기술부는 2019년 8월 차세대 인공지능 오픈 플랫폼 10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이는 앞서 2017년 11월에 발표한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음성인식, 안면인식 등의 5개 분야의 기업에서 10개 기업을 새로이 추가한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개방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유 서비스를 확대시키고, 오픈소스로 기술을 공유하면서 관련 분야의 생태계를 확장하고자 한다.⁴⁵⁾

▶▶ 표 2-18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오픈 플랫폼 주요 기업

기업명	발표연도	분야
바이두	2017년	자율주행 플랫폼
알리바바	2017년	스마트 시티 플랫폼
텐센트	2017년	의료 및 헬스 플랫폼
아이플라이텍	2017년	음성인식플랫폼
센스타임	2017년	비주얼 플랫폼
이투커지	2019년	비주얼컴퓨터 플랫폼
마이닝램프	2019년	마케팅 플랫폼
화웨이	2019년	기초 SW 및 HW 플랫폼
평안보험	2019년	일반 금융 플랫폼
하이크비전	2019년	영상 감지 플랫폼
메그비	2019년	이미지 감지 플랫폼
치후	2019년	보안 브레인 플랫폼
티에이엘	2019년	스마트 교육 플랫폼
샤오미	2019년	스마트홈 플랫폼
징둥	2019년	스마트 공급망 플랫폼

3. 스마트 플러스와 기존 산업정책의 차이점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는 중국의 13차 5개년 계획의 산업육성 계획 중 일부이며 국무원에서 정책문건으로 발표된 중국의 신산업 육성 정책이다.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모두 특정 산업과 분야를 지정하여 분야별 세부 정책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 플러스 전략은 정책문건으로 발표되지 않고 키워드로서

45) 电子信息产业网, 科技部AI平台新政解读: 开源开放共享促进人工智能产业落地, 2019. 8. 9. (<https://www.cena.com.cn/pa/20190809/101949.html>, 2019. 11. 11. 최종접속)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와 같이 정책이라고 보다는 두 정책의 이행과정 중에 미흡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강조하기 위한 정책적 키워드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또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경우, 창업, 제조업, 농업, 금융 등 11대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별 세부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인터넷 플러스 11대 분야

- ① 창업지원플러스: 청년 창업지원
- ② 제조업플러스: 스마트 제조, 대량의 맞춤형 상품제조 강화
- ③ 농업플러스: 스마트 농업 시스템 구축
- ④ 에너지플러스: 에너지 생산 스마트화
- ⑤ 금융플러스: 온라인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대
- ⑥ 복지플러스: 공공서비스 분야의 스마트화
- ⑦ 물류플러스: 첨단기술 기반 재고 추산 및 측정 시스템화
- ⑧ 전자상거래플러스: 농촌 전자상거래 및 의약, 에너지 등 범위 확대
- ⑨ 교통플러스: 운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교통시스템 향상
- ⑩ 환경플러스: 오염물질 측정 시스템화
- ⑪ 시플러스: AI 산업 육성 및 AI 상품화, 성능 제고

최근에는 산업인터넷을 중심으로 추가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기존 인터넷 플러스의 10대 분야 중 ‘제조업플러스’를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스마트 플러스 전략이 언급된 이후, 공업정보화부에서 발표한 인터넷 플러스 분야의 추가 조치들을 보면 대부분이 산업인터넷 정책에 해당하였다. 이전부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도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과 제조업을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스마트 플러스 전략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조업 분야의 업그레이드 정책을 강화한 전략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기술분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는 화두가 되었던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다만, 동 전략의 핵심이었던 중국 제조업 기술 제고와 혁신을 통한 강국 건설에 대한 목표는 수정하지 않았으며, 제조혁신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및 첨단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플러스 전략은 기존의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정책의 추진력과 연속성을 가져가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중국의 지속적인 스마트 제조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 제4절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안정화, 대외무역 확대 정책 등이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6%대의 중저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수출 및 투자 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신기술의 접목을 통한 산업고도화 정책을 들 수 있다. 중국제조 2025를 통해 10대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새로운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하였다.

한편, 대내외적으로 통상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중국 정부의 전략 또한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1979년 개혁개방 이래로 중국은 대외무역을 통해 국내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 등을 통하여 다자주의 체제 국제규범에 적응하고 이에 맞추어 국내 법 및 제도를 개혁하였으며 빠른 기간에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은 상품 위주의 수출구조에서 서비스, 기술, 자본 수출로 분야를 확대하고 기술, 브랜드 등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 발발로 인해 무역강국으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무역분쟁의 중심에는 지식재산 이슈와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이 존재하며, 이에 무역분쟁이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2015년부터 추진되어온 중국제조 2025는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제조 2025는 2035년까지 제조강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3단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차세대 정보기술, 고급수치제어기계 및 로봇,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등 10대 중점산업 분야의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 결과 5G로 대표되는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드론 등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였다.

무역분쟁 발발 이후,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눈에 띄게 줄었다. 대신 '스마트 플러스'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2019년 3월 개최된 양회에서 스마트 플러스 전략이 제시되었으며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스마트 플러스를 언급하였다. 스마트 플러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등 첨단기술을 통해 산업 및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결국 중국 정부는 스마트 플러스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의 기본 목표와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 중국 중앙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

제1절 지식재산 관련 행정기관 개편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의
기반 마련

제2절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주요 지식재산 정책

제3절 지식재산 관련 주요 법률

제4절 소결



▶▶ 제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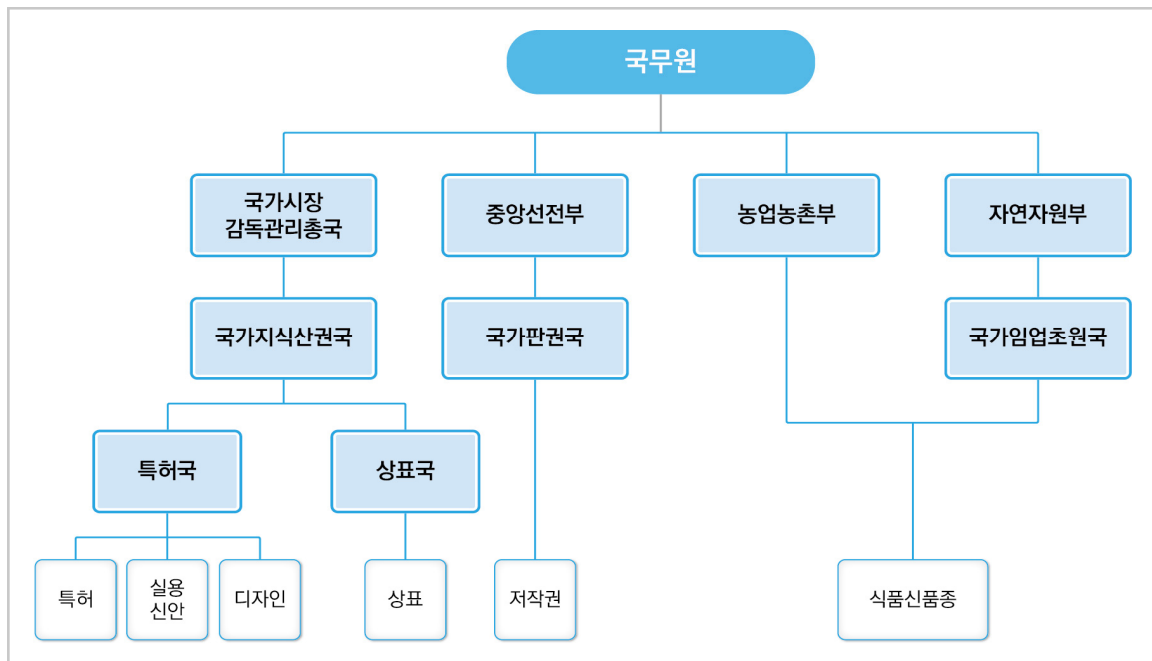
지식재산 관련 행정기관 개편을 통한 지식재산 강국의 기반 마련

I 지식재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체계

1. 개관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은 최고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⁴⁶⁾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다. 국무원은 국가 지식재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총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상표·특허 집행업무에 대한 지도 등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지도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의 국가지식재산권국(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이 산업재산권 업무를 총괄하며, 저작권 관련 업무는 중앙선전부 산하 국가판권국이 담당한다.

▶▶ 그림 3-1 중국의 지식재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출처: 국무원, 국가지식재산권국 등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46) 국무원은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자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부장(장관급), 위원회 주임 등으로 구성되며, 국무원 산하 기관으로 국무원 판공청(办公厅), 국무원 직속특설기구, 국무원 직속기구, 국무원 직속사업단위 등이 있음(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cn/guowuyuan/zuzhi.htm>, 2019. 11. 11. 최종접속).

2.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⁴⁷⁾은 국장 1인에 부국장(차관급) 6인을 두고 있으며, 26개의 국(우리나라의 국장급) 단위 조직 및 39개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산하에는 2개의 차관급 부처인 국가지식산업국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있으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등록과 이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지식산업국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내 지재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는 집행단속국(執法稽查局)과 가격감독검사 및 부정경쟁방지국(價格監督檢查和反不正當競爭局)이 있다. 집행단속국은 행정단속의 제도적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가격감독검사 및 부정경쟁방지국은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방안을 수립하며 부정경쟁행위 조사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지방의 시장감독관리국⁴⁸⁾은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업무를 담당한다. 단, 화장품과 의약품의 상표권 침해 단속업무는 각 지방의 약품감독관리국이 수행하기도 한다.

3. 국가지식산업국

국가지식산업국은 국장 1인, 부국장 6인을 두고 있으며, 내부 부서, 특허국(전리국), 상표국, 특허복심위원회, 상표평심위원회, 직속기관,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인원은 약 1만 5천여 명으로 이 중 특허심사관이 약 1만 1천여 명이고, 상표심사관이 약 1천여 명이다.

국무원 기구 개혁 이전에는 국가지식산업국이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에 대한 한정된 업무만 담당하였으나, 2018년 국무원 기구 개혁 이후 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와 지리적 표시 관련 업무가 국가지식산업국으로 이관되어 산업재산권 전반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가지식재산전략, 지식재산권 강국(強國) 건설 정책 및 발전계획,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등 정책의 수립 및 실시를 담당하며, 특허국, 상표국, 특허복심위원회, 상표평심위원회를 통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등록 심사 및 행정판결 등을 수행한다.

상위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국가지식산업국은 특허 및 상표 행정보호에 관한 업무지도, 특허·상표의 침해판단기준 수립 및 지도, 정책기준 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특허 및 상표 관련 행정집행업무를 조직·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상무부와의 업무분장을 보면, 국가지식산업국은 해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총

47) 중국 행정기관 명칭에서 총국(总局)은 장관급 부처이고, 국(局)은 차관급 부처임. 차관급인 국(局) 아래의 사(司)나 국(司)은 우리나라의 국장급 조직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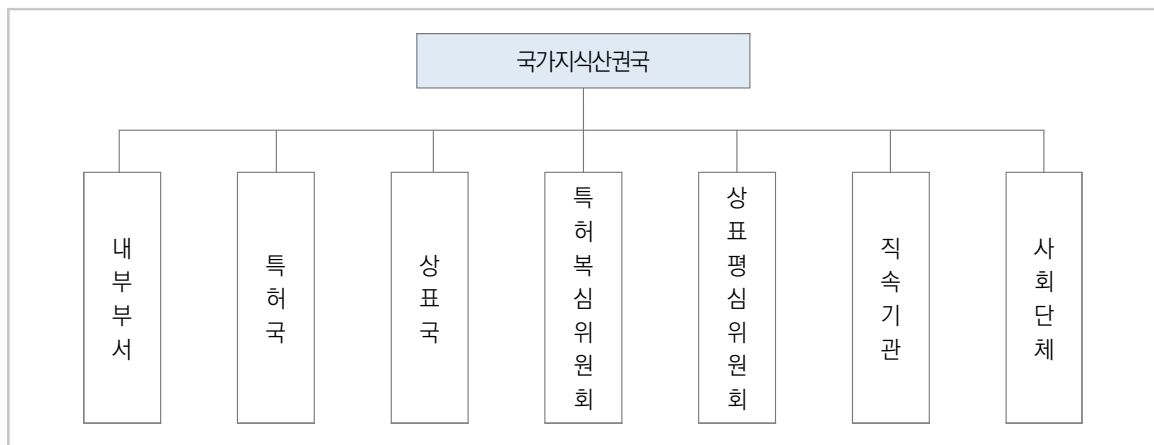
48) 중앙 기관명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고 지방 기관명은 '시장감독관리국'임.

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상무부는 경제관련 다자간 지식재산 대외협상, 양자 간 지식재산 협력의 협상메커니즘 및 국내입장 조율 등을 담당한다.

각 지방 지식산권국은 각 지방 인민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지식산권국의 내부 부서로는 조법사, 전략계획사, 지식재산권보호사, 지식재산권활용촉진사, 국제협력사 등 10개 부서가 있다. 특허국과 상표국은 산하에 각 심사부를 두고 있으며, 특허복심위원회와 상표평심위원회는 우리 심판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심판 업무를 담당한다. 직속기관으로는 지식재산권출판사, 중국지식재산권보사, 중국특허정보센터, 중국지식재산권교육센터,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 특허검색자문센터가 있다. 이 밖에도 국가지식산권국 산하의 사회단체로 중국지식재산권연구회와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 등이 있다.

▶▶ 그림 3-2 국가지식산권국 조직도



출처: CNIPA 2018 Annual Report.

국가지식산권국 산하 특허심사협력센터 및 상표심사협력센터는 정부기관이 아닌 사업단위(事业单位)⁴⁹⁾로 센터에 근무하는 심사관의 신분은 정식 공무원이 아닌 민간 계약직으로 4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지만, 심사보조 역할이 아니라 정식 심사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허심사협력센터는 베이징, 허난, 장쑤, 광둥, 텐진, 후베이, 쓰촨 등 총 7개 지역에 설치되었다. 특허심사협력센터는 특허국의 위탁을 받아 특허에 대한 실체심사, PCT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검색 및 방식심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실용신안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허심사협력센터 심사관⁵⁰⁾의 업무는 특허국의 심사관들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49)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에 유사한 성격.

50) 만 35세 이하로 석사학위 이상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며 채용 시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함.

상표심사협력센터는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충칭, 정저우, 지난의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상표심사에 관한 업무 중에서 상표국은 마드리드상표 심사와 이의신청을 담당하고, 상표심사협력센터에서는 방식심사, 일반상표심사, 불사용취소신청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4. 지식재산권전략 실시업무 부처간 연석회의제도

국무원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 이행을 강화하고 후속 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무원 지식재산권전략 실시업무 부처간 연석회의제도’를 수립하였다. 지식재산권전략 실시업무 부처간 연석회의(이하 ‘IP 부처간 연석회의’)는 지식재산 유관 부처 및 기관 31개로 구성되었으며,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의 이행을 지도하고 연간 지식재산 계획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08년에 최초 발표하고 2016년에 수정 발표한 ‘국무원의 지식재산권전략 실시업무 부처간 연석회의제도 설립 승인에 관한 회답(国务院关于同意建立国务院知识产权战略实施工作部际联席会议制度的批复)’은 연석회의의 주요 기능과 구성원, 업무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표 3-1 IP 부처간 연석회의의 주요 기능

	내용
주요 업무	국무원의 지도하에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업무를 총괄 담당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업무의 거시적인 지도 역할 수행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업무의 주요 방침 및 정책 관련 연구 및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계획 제정 정책 조치의 이행을 지도·점검·촉구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 국무원이 하달한 기타 업무 완수
업무 요구	각 기관 구성원은 업무 분담에 따라 중요 업무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정책 및 조치 제정 건의 적시에 사무국에 논의주제를 제시하고, 연석회의에서 확정된 업무 및 의정사항을 성실히 이행 상호 정보교환, 상호 지원, 친밀한 협동 등을 통해 연석회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

출처: 国务院关于同意建立国务院知识产权战略实施工作部际联席会议制度的批复, 2016. 3. 21.

상기 문건에 근거하여 연석회의는 매년 연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31개 지역의 연간 지식재산 업무계획을 취합하여 ‘지방 지식재산권전략 실시 및 강국 건설 업무 요점’의 형태로 공개한다. 더불어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이행성과를 점검·평가한다.

II 지식재산 관련 기구의 체계적 개편

1. 국무원 조직 개편

2017년 중국공산당 제19차 3중전회에서 통과된 ‘당과 국가기구의 심화개혁방안(深化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에 근거하여 2018년 3월 제13기 중국 전인대 제1차 회의(2018. 3. 13.)에서 중국의 당과 정부의 조직개편 방안이 통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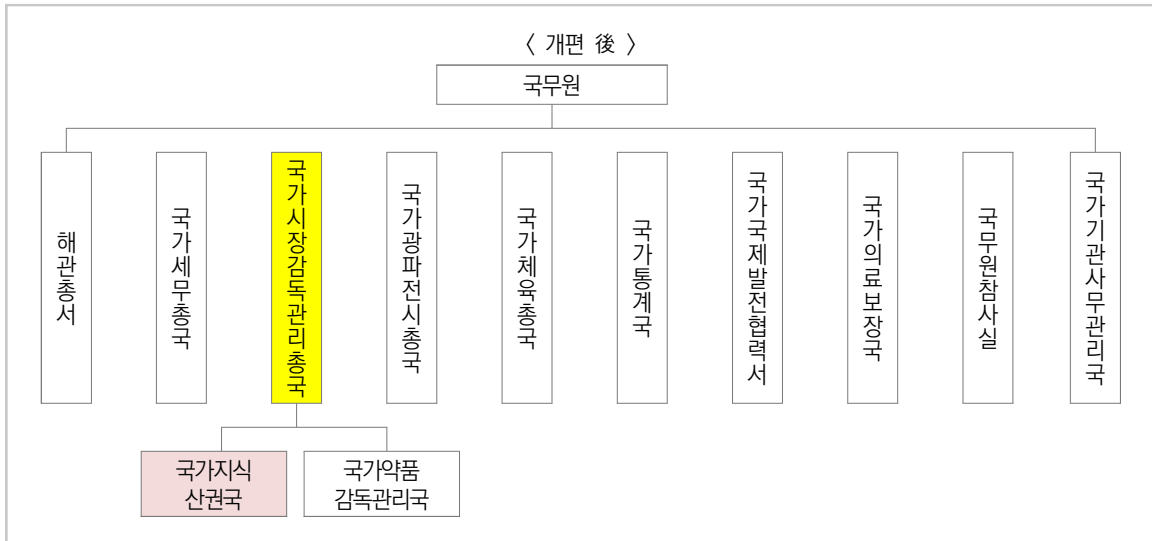
중국 국무원 조직개편의 목적은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한 정부의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함이며, 아울러 정부 역할을 발휘함에 있어서 체제상의 폐해를 방지하고 중점 분야에 대한 정부기관의 기능을 더욱 최적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국무원 부처 통·폐합 및 신설 등의 조직개편으로 26개 부서를 조정하였으며, 조정결과, 정부(正部)급 8개 부서, 부부(副部)급 7개 부서가 감소하였다.

국무원 직속기구도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기존 16개 기관에서 10개 기관으로 감소하였다. 국무원 직속기구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신설이라 할 것이다. 국가지식재산권의 경우, 개편 전에는 국무원 직속기구였으나, 개편 후에는 신설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

▶▶ 그림 3-3 국무원 직속기구 개편





※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국무원 직속기구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소속기관으로 변경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총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을 통폐합하여 신설된 기관

2. 지식재산 유관기관 개편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신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무원 기구개혁을 통해 신설된 국무원 직속기구이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설립으로 인해 기존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시장 가격 감독·감찰과 반독점 관련 업무, 상무부의 경영자 집중 신고(기업결합신고) 관련 반독점 업무, 국무원의 반독점위원회 사무국 등의 업무가 이관되었다.

▶▶ 표 3-2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신설

개편 대상부처 및 내용	개편결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업무 이관 / 폐지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포함 - 국무원식품안전위원회,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포함 - 대외적으로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명칭 유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출입검사관리업무 이관 및 해관총서에 편입 / 폐지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 출입국 검사검역 관리업무 / 폐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 감독감찰 및 반독점법(반농단법) 집행 업무 이관	
상무부 경영자 집중 반독점법(반농단법) 집행 업무 이관	
반독점위원회 사무국(판공실) 업무 이관	

한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지방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2018년 국무원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각 지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지방 공상행정관리국, 지방 식약품감독국, 지방 품질감독검사검역국을 지방 시장감독관리국으로 통합하였으며 2018년 말까지 성(省), 직할시의 조직 개편을 완료하였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시(市,) 현(县) 단위까지 조직 개편이 완료되었다.

(2) 국가지식산업국의 업무 확대 및 소속 변경

국가지식산업국은 기존 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담당하던 상표 업무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담당하던 지리적 표시 업무를 이관받았다. 소속은 국무원 직속기구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소속기관으로 변경되었다.

▶▶ 표 3-3 국가지식산업국 개편

개편 대상부처 및 개편내용	개편결과
국가지식산업국	→ 국가지식산업국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로 편입 -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업무 총괄
기존 업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 관리업무 이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원산지 지리적 표시 관리업무 이관	

제2절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주요 지식재산 정책

I 개관

1. 지식재산대국으로의 입지 확립

경제의 고속 성장세가 지속되었던 2010년까지 중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의 양적 성장을 추진하였다.⁵¹⁾ 2008년 국가 지식재산 기본전략인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를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동 강요에 근거하여 중국은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으며 지식재산대국으로 도약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쳐 세계 1위의 출원·등록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1) 국내 출원 및 등록 동향

2018년까지 최근 6년간 중국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및 등록에서 역대 최고 건수를 경신하였다. 2018년 특허 출원 건수는 1,542,002건,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2,072,311건, 디자인 출원 건수는 708,799건을 기록하였고, 등록 건수에서는 특허 432,147건, 실용신안 1,479,062건, 디자인 536,251건을 기록하였다.

▶▶ 표 3-4 중국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건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2013	825,136	892,362	659,563
2014	928,177	868,511	564,555
2015	1,101,864	1,127,577	569,059
2016	1,338,503	1,475,977	650,344
2017	1,381,594	1,687,593	628,658
2018	1,542,002	2,072,311	708,799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⁵¹⁾ 김승이, “최근 3년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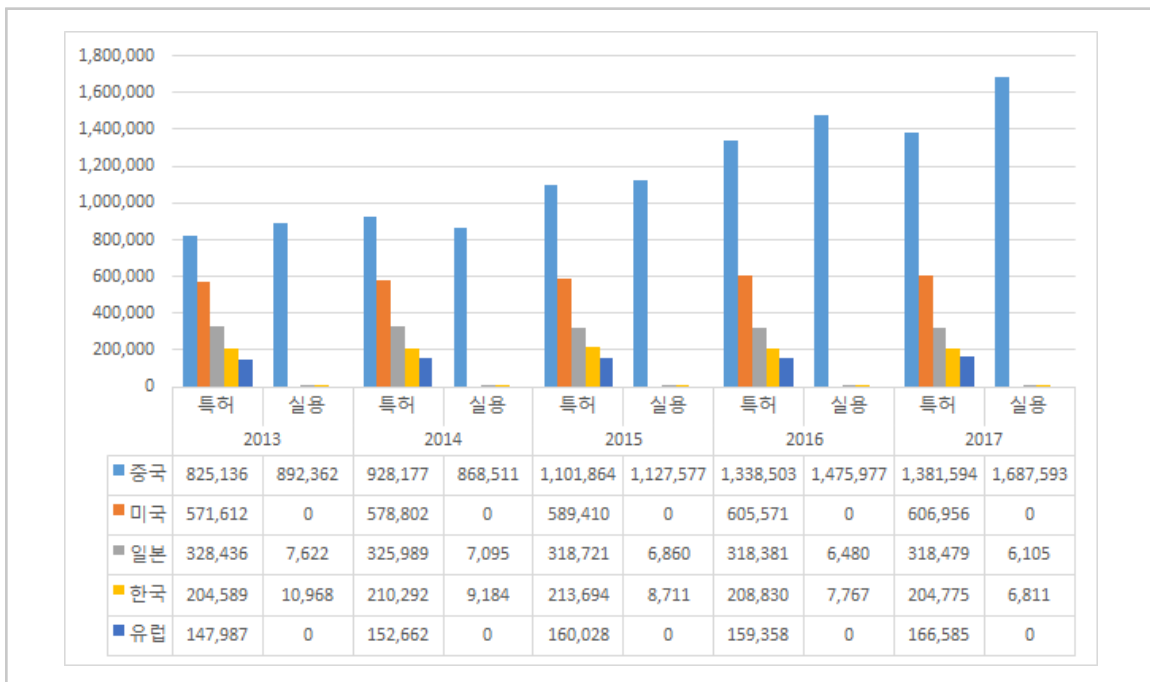
▶▶ 표 3-5 중국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 건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2013	207,688	692,845	412,467
2014	233,228	707,883	361,576
2015	359,316	876,217	482,659
2016	404,208	903,420	446,135
2017	420,144	973,294	442,996
2018	432,147	1,479,062	536,251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IP5 국가별 출원 건수를 비교하였을 때 중국이 독보적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특허 출원 건수의 경우, 2017년 중국은 1,381,594건으로 2위인 미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성적을 기록하며 큰 격차를 보였다. 상표 출원에서도 중국은 독보적인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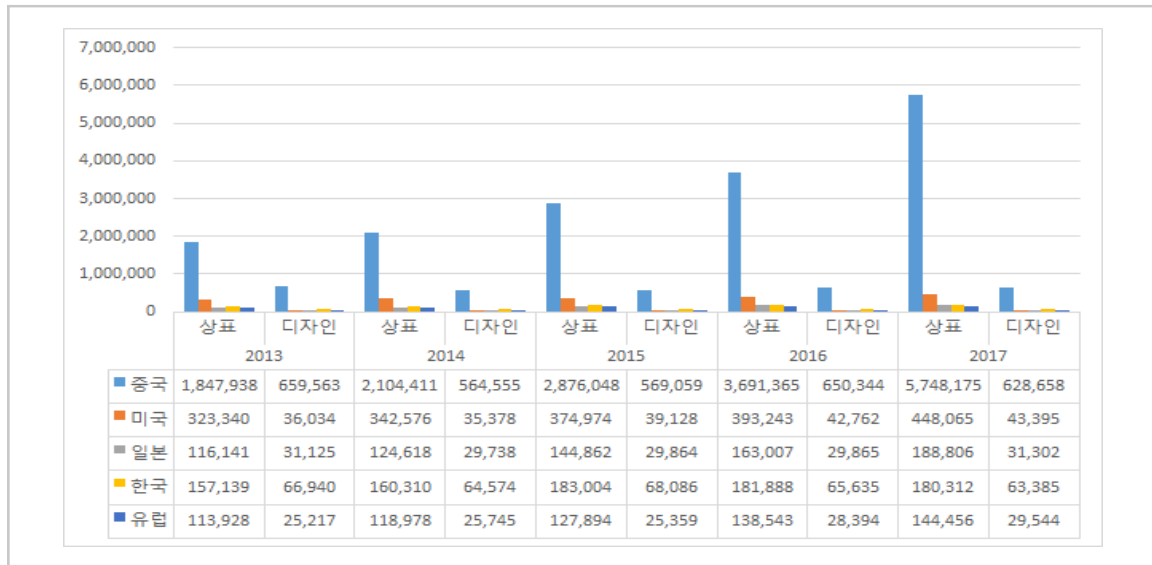
▶▶ 그림 3-4 IP5 특허·실용신안 출원 추이(2013~2017년)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주) 유럽 출원 건수는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건을 의미

▶▶▶ 그림 3-5 IP5 상표·디자인 출원 추이(2013~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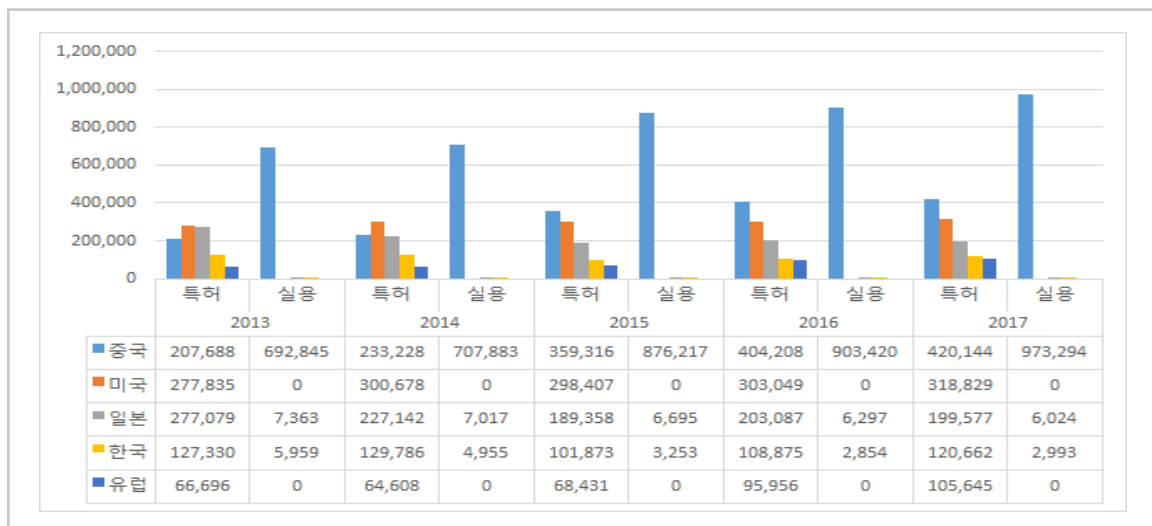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주) 2015~2017년 중국의 상표 출원 건수는 중국 상표국 통계를 참조함. 유럽 출원 건수는 유럽 지식재산청에 출원된 건을 의미

중국은 등록에 있어서도 현저한 우위를 나타내었다. 2015년 특히 등록 건수에서 미국을 처음으로 추월한 이래로 2017년까지 3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하였다. 상표 등록 건수에서는 더욱 큰 격차를 보였는데 2017년 중국의 상표 등록 건수는 2,792,072건으로 미국(258,497건)의 10배 이상, 우리나라의 약 23배 이상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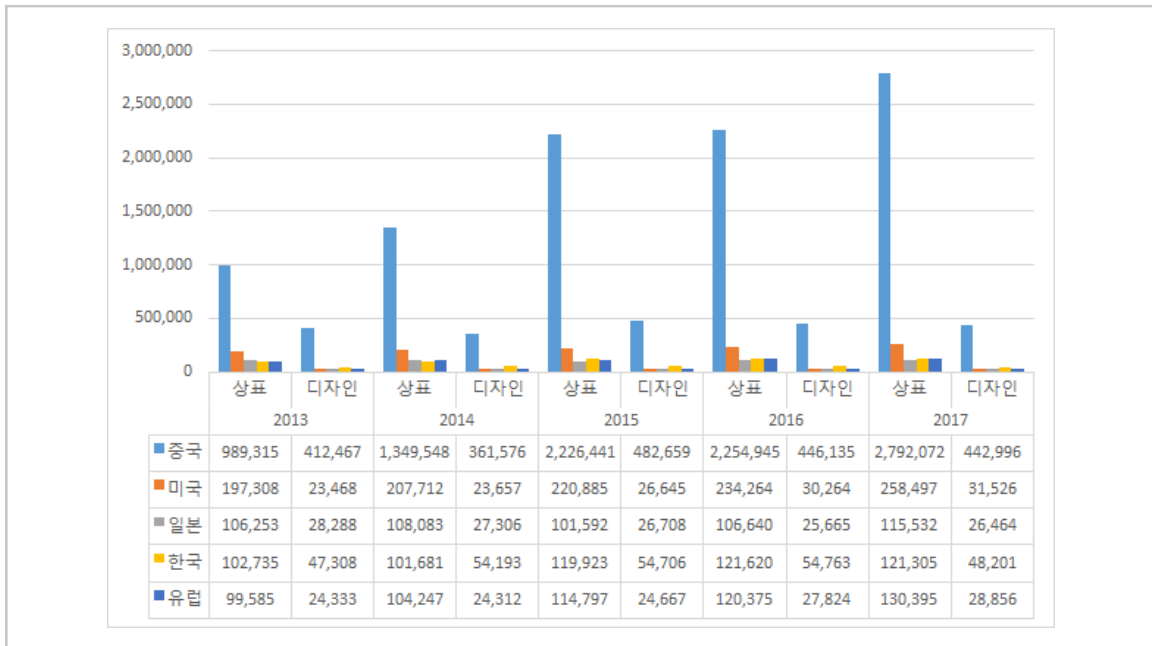
▶▶▶ 그림 3-6 IP5 특허·실용신안 등록 추이(2013~2017년)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주) 유럽 등록 건수는 유럽 특허청에 등록된 건을 의미

▶▶▶ 그림 3-7 IP5 상표·디자인 등록 추이(2013~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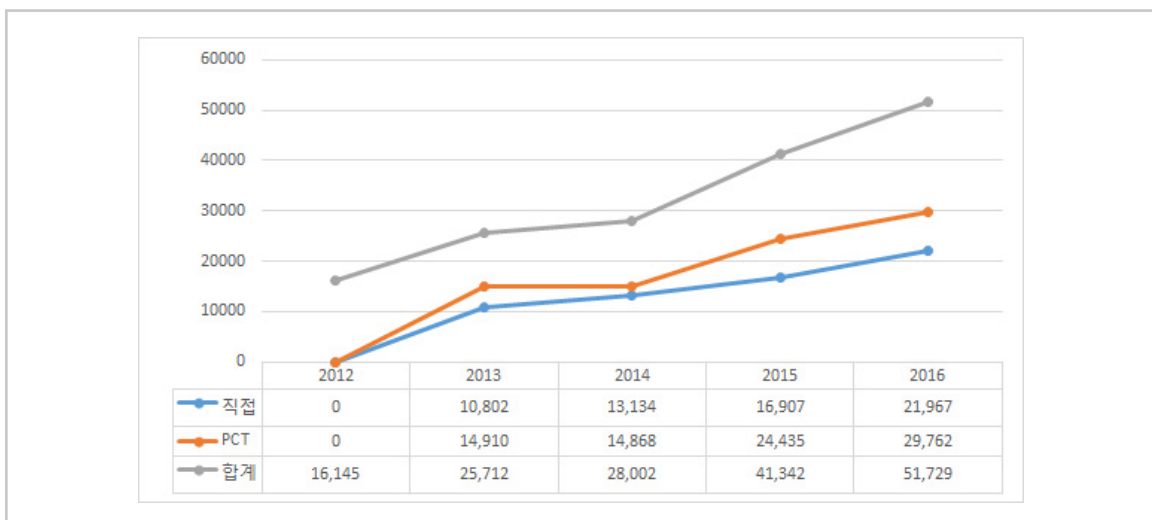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주) 2015~2017년 중국의 상표 등록 건수는 중국 상표국 통계를 참조함. 유럽 등록 건수는 유럽 지식재산청에 등록된 건을 의미

(2) 해외 출원 동향

중국의 특허 출원은 자국 내 출원뿐만 아니라 외국으로의 출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 중국의 해외 특허 출원은 51,72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5.1% 증가하였으며, 2012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35.2%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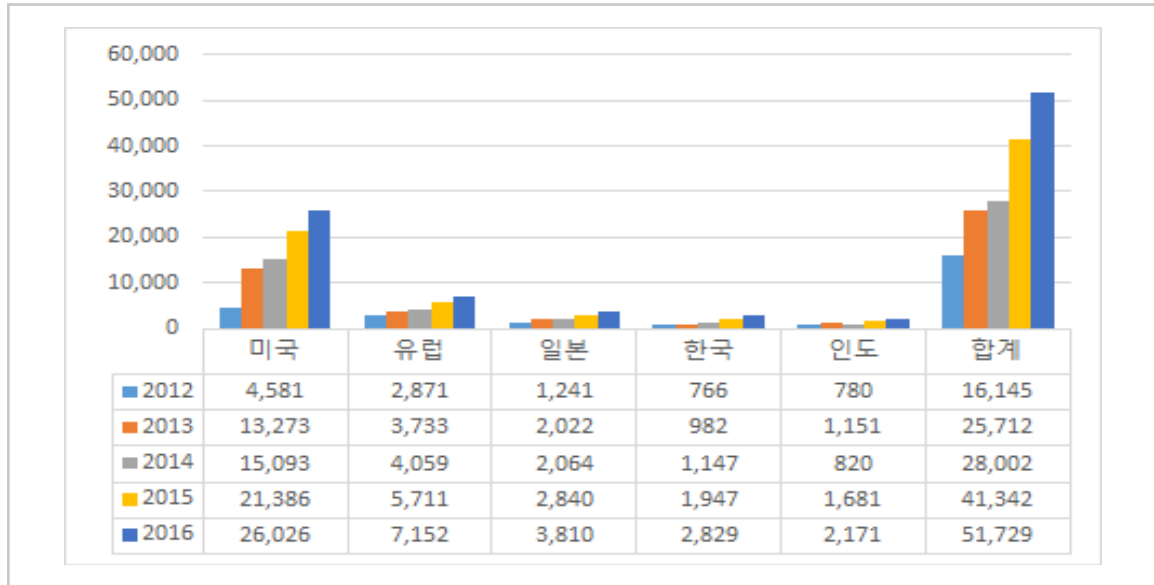
▶▶▶ 그림 3-8 중국인의 해외 특허 출원 추이(전체)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중국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상위 5개국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인도 순이었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인도를 제외한 4개 국가에 대한 출원 건수가 매년 증가하였다.

▶▶ 그림 3-9 중국인의 해외 특허 출원 추이(국가별)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2. 지식재산대국에서 강국으로 도약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수립 이후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관리 전반에서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증가하고 활용이 확대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지식재산대국의 입지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강한 특허가 부족하고 낮은 품질의 지식재산권이 속출하였으며 권리침해가 증가하는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였고 이에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 정책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전략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2014년 국무원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계획인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년-2020년)’을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동 계획을 통해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강국’이라는 목표를 천명하였다. 2014년 7월,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지식재산권 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⁵²⁾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계획을 표명하였다. 그 후 2015년 12월 22일에 국무원은 ‘새로운 상

⁵²⁾ 국무원 홈페이지 보도기사(https://www.gov.cn/guowuyuan/2014-07/11/content_2716177.htm, 2019. 11. 11. 최종접속).

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이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지침을 제시하였다.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가 지식재산권의 양적 성장과 지식재산권대국 도약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의견은 지식재산권의 질적 성장에 보다 중점을 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의 성장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국가에서의 특허출원 실무 가이드라인 작성 및 표준필수특허 강화조치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다.

▶▶ 표 3-6 중국 지식재산권전략의 변화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2008)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의견(2015)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관리수준이 높은 국가로 성장 지식재산권 보유 확대를 통해 혁신형 국가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대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함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 마련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제도 완비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남용 방지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혁 추진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실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중점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배치 및 위험 통제 강화 지식재산권 대외협력 강화 조직 실시 및 정책 보장 강화

3. 지식재산권강국전략강요 제정

현재 부처별 연석회의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유관기관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의 후속 전략인 ‘지식재산권강국전략강요’ 수립을 위한 작업에 한창이며, 2019년 연내 초안 공개를 목표로 한다.

부처별 연석회의는 지식재산권강국전략강요 제정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몇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강요의 수립방향, 목표 설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 지식재산제도가 혁신을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비되어야 하며,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고 지식재산권 관리체계를 현대화하며 대외개방 확대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강요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제기되었다.⁵³⁾

지식재산권강국전략강요는 2035년까지 시행할 중국의 지식재산전략 계획, 전략 목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53) 국가지식재산권국 보도자료, 知识产权强国战略纲要制定专家咨询委员会第一次全体会议召开, 2019. 05. 15. (<https://www.cnipa.gov.cn/zscqgz/1139163.htm>, 2019. 11. 11. 최종접속).

II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1. 수립 배경 및 목적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 및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식재산이 중국의 국가발전 정책과 경쟁력 강화 전략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점차 커지게 되었다. 같은 시기,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혁신을 주요 동력으로 삼아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제도를 활용해 경쟁 우위를 유지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중국은 국가적 지식재산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및 중장기 계획을 담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수립하였다.

동 강요는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관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중국의 자체 혁신능력을 강화하고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탄탄한 지식재산 역량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국가의 핵심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국가의 기본전략으로 삼고 지식재산업무를 더욱 견실히 하고자 하였다.

2. 전략목표 및 중점전략

(1) 전략목표

동 강요는 지도사상, 전략목표, 중점전략, 특별임무, 전략조치로 구성되었다. 먼저 전략목표로서 5년간의 단기목표와 2020년까지 달성할 장기목표를 설정하였다. 5년간의 단기목표로 다음의 4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지식재산권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보유건수를 더욱 확대한다. 중국 출원인의 특허 등록건수가 전 세계 선두권을 차지하고 해외 특허 출원 건수를 대폭 확대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대거 양성한다. 핵심 저작권산업의 생산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저히 높인다. 우수한 품질의 식물신제품 및 높은 수준의 집적회로배치설계를 보유한다.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문예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둘째, 지식재산권의 활용 효과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집약형 상품의 비중을 확대한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의 투자를 대폭 강화하며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시장경쟁능력을 향상한다. 유명 브랜드 및 핵심 지식재산권을 대거 보유하고 지식재산권제도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우수기업을 양성한다.

셋째, 지식재산권 보호상황을 개선한다. 불법 복제, 위조 등 권리침해행위를 근절하고 권리보호 비용을 절감하며 지식재산권 남용을 억제한다.

넷째, 시장주체를 포함한 전 사회의 지식재산권의식을 보편적으로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문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편, 2020년까지 달성할 장기목표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관리 방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권 법치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주체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관리능력을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인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자체 지식재산권 수준을 향상하고 보유건수를 확대함으로써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며, 지식재산제도가 경제발전, 문화번영, 사회건설을 촉진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 표 3-7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의 전략목표

구분	전략목표
장기 전략목표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관리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 건설 지식재산권 법치환경을 개선하고 시장주체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관리능력을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자주 지식재산권수준을 향상하고 보유건수를 확대함으로써 혁신형 국가 건설 지식재산제도가 경제발전, 문화번영, 사회건설 촉진기능 수행
단기 전략목표 (향후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주 지식재산권수준 강화 및 보유건수 확대 지식재산권 활용 강화 및 지식재산권 집약형 상품 비중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상황 개선 전 사회의 지식재산권의식 제고 및 지식재산권 문화 분위기 조성

(2) 중점전략

앞서 제시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제도 완비,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의 남용 방지,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의 다섯 가지 방면에서 각각 중점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식재산권제도 완비를 위해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률 및 관련 법규를 적시에 개정하고 유전자원, 전통지식, 지리적 표시 등 신지식재산 분야의 입법을 추진하며 부정경쟁 방지, 대외무역, 과학기술, 국방 등 분야의 법률·법규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집행 및 관리체제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산업정책, 지역정책, 과학기술정책, 무역정책과 지식재산권정책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문화·사회 정책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특히 지역별로 각기 다른 발전특성에 맞추어 지식재산권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와의 협력발전을 모색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중점전략으로는 재정, 금융, 투자, 정부조달 관련 정책과 산업, 에너지, 환경보호 정책을 통해 시장주체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을 지원하고, 기업이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주체가 되도록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방안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법규를 개정하고 사법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권리자의 권리보호 의식 및 능력을 향상하고 권리보호 비용의 절감 및 권리침해 대가 상승을 통해 권리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지식재산권의 남용 방지 전략으로 관련 법률·법규를 제정하고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경계를 확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질서와 공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식재산권 홍보를 강화하고 전 사회의 지식재산권 인식을 제고하며 지식재산권 보급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다.

(3) 특별임무

동 강요의 ‘특별임무’ 장에서는 중점전략과는 별도로 각 권리별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임무를 제시하였다.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식물신품종, 특정 분야에서의 지식재산권, 국방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표 3-8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의 특별임무

구분	특별임무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의약, 정보, 신소재, 선진제조, 선진에너지, 해양, 자원환경, 현대농업, 현대교통, 항공우주 등 기술 분야에서 핵심기술에 관한 특허를 육성하고, 첨단기술산업과 신흥산업의 발전 지원 • 표준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기업 및 업계조직이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 • 직무발명제도를 완비하고 직무발명인의 혁신 적극성을 유발하고 특허기술 실시를 촉진할 수 있는 이익배분체제 수립 • 특허심사절차를 완비하여 심사품질을 제고하고 저품질 특허 출원 방지 • 강제허가제도를 완비하는 등 특허보호와 공공이익의 관계 정립
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권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집행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위조 등 권리침해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 공평한 경쟁을 위한 시장질서 유지 • 기업이 효율적으로 상표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명상표를 보호하며, 기업의 해외 상표 등록 장려 • 농촌 산업화 과정에서 상표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주체의 상표 등록 및 사용 확대를 통해 농산품 품질 향상, 농산품 부가가치 향상, 식품안전 보장, 시장경쟁력 제고 등 도모 • 상표 관리를 강화하며, 상표 심사효율을 제고하고 심사기간 단축
저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출판, 방송영상, 문화예술, 문화오락, 광고디자인, 공예미술,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네트워크 등 저작권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민족 특색이 분명하고 시대적 특성을 지닌 작품의 창작을 지원하며 시장경쟁 참여가 어려운 우수문화작품의 창작 지원 • 제도를 완비하고 저작권 시장화를 촉진하며, 저작권 담보, 작품 등록, 양도계약 등록 등 제도를 완비하며 저작권 이용방식을 확대하고, 저작권 시장화 과정에서 저작권 집단관리조직, 업계협회, 대리기구 등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

구분	특별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량 제작·판매 및 해적판 전송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함으로써 불법복제 현상 억제 • 인터넷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와 정보 전송과의 관계를 확립하며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정보 전송을 촉진
영업비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주체가 법에 따라 영업비밀 관리제도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타인의 영업비밀 탈취행위 단속 • 영업비밀 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비밀 관련자의 경쟁업종 제한과 인재의 합리적인 이동 간의 관계를 확립하고,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식물신품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려체제를 수립하고 신품종 육성을 지원하며 육종 혁신성과의 식물신품종권 전환 추진 • 식물신품종을 보유한 종묘기업 양성을 지원하며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한 기술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식물신품종 실험지침 제정을 통해 심사 실험수준 제고 • 제공자, 육종자, 생산자, 경영자 간의 이익관계에 따라 자원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농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보호의식을 제고하고 품종권자, 생산경영단체와 신품종을 사용하는 농민이 공동으로 이익을 향유하도록 함
특정 분야의 지식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완비하고 지리적 표시의 기술표준체계, 품질보증체계, 검측체계를 완비하며 지리적 표시 상품 지원 • 유전자원 보호와 개발 및 이용제도를 완비하고 유전자원의 유실과 무질서한 이용을 방지하며 유전자원 보호·개발·이용의 이익관계를 조화롭게 하고 유전자원 획득과 이익 공유체제를 합리적으로 수립 • 전통지식 보호제도를 수립하고 전통지식의 전승을 지원하여 전통지식 발전을 촉진하고 전통의약 지식재산권의 관리·보호·이용 간의 조화체제 완비 • 민간문에 보호 및 발전을 촉진하며 민간문에 작품을 발굴하고 민간문에 보존인과 후속창작인 간의 합리적인 이익배분체제 수립 •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효과적인 이용과 발전 촉진
국방 지식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 지식재산권의 통일적인 조화 관리체제를 수립하고 권리귀속과 이익배분, 유상사용, 인센티브 체제, 긴급한 상황 하에서 기술의 효과적인 실시 등 중대한 문제를 해결 • 국방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국방 과학연구·생산·경영·장비 구입·보장·프로젝트 관리의 각 단계에 지식재산권 관리를 포함시키며 국방 지식재산권에 대한 장악력 강화 • 국방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국방 지식재산권 비밀보호 제도를 완비하며 국방 지식재산권의 민간 영역으로의 이전을 촉진하며 국방 영역에서 민간 지식재산권의 활용 장려

3. 주요 성과

2018년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실시 10주년으로 IP 부처간 연석회의는 동 강요의 이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10주년 평가업무’를 실시하였다. 유관 국가기관, 과학연구기관, 대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실시 10주년 평가업무 전체평가 전문가팀을 결성하고 평가작업에 착수하였다.

평가 결과, 중국은 지난 10년간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관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먼저 창출 측면에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건수와 유효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보유건수 모두 100만 건을 돌파하였으며 등록상표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농업 및 임업 식물신품종 등록 건수는 10년간 약 10배 증가하였다.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지식재산권법원 및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하고 재판표준을 통일하였으며 배상액을 높임으로써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지식재산권 활용 측면에서는 지식재산권 거래가 증가하였고 특허·상표 양도 및 라이선스 건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매입, 운영, 담보, 보험, 위탁, 연맹, 경매 등 거래유형이 다양화되었으며, 특허·상표·저작권 담보대출 규모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리 측면에서는 심사품질이 제고되었으며 특허 및 상표 심사기간이 단축되었다. 더불어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권 관리표준을 보유한 기업 수는 약 26,000개 규모로 증가하는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능력이 향상되었다.

▶▶ 표 3-9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실시 10주년 성과

구분	내용
지식재산권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디자인·실용신안 출원 건수 및 국내 유효 특허·디자인·실용신안 보유건수 모두 100만 건 돌파 등록상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 몇 년간 세계 1위 유지 농업 및 임업 식물신품종권 등록 건수는 2007년의 1,616건에서 2017년 11,039건으로 증가
지식재산권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보호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각종 시장주체에 대한 정보 공개의 투명성 강화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과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하고, 전국 법원에서 지식재산권 민사·행정·형사 재판의 '삼합일(三合一)'을 추진하였으며, 재판표준을 통일하고 배상액을 높임
지식재산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거래가 증가하였으며, 특허·상표의 양도 및 라이선스 건수 증가 지식재산권의 매입, 운영, 담보, 보험, 위탁, 연맹, 경매 등 새로운 경영방식이 성행 특허·상표·저작권 담보대출 규모 1조 위안을 돌파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지식재산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 상표 심사능력 강화를 통해 상표 출원 심사기간이 8개월로, 특허 등록 소요기간은 22개월로 단축 혁신주체와 시장주체의 지식재산권 관리능력이 향상되었고, 26,000여 개의 기업에서 지식재산권 관리 표준 운영(2018년 6월 기준)

III //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추진계획

1. 2019년 추진계획의 주요내용

국무원 IP 부처간 연석회의는 매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다. 동 계획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근거로 수립되었으며 지식재산 유관기관이 해당연도에 추진해야 할 계획을 포함한다.

2019년 추진계획⁵⁴⁾은 지식재산권 개혁을 심화하고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 등 분야에서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중점 임무 및 업무조치를 마련하였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촉진, 지식재산권 국제 교류협력 강화, 조직 실시 및 보장 강화의 4대 중점임무에 대한 106개 업무조치를 제시하였다.

(1)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을 위해 2019년 추진계획은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혁, 지식재산권 주요 정책 개혁, 지식재산권 ‘방관복(放管服)’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실시방안으로 특허 및 상표 정책, 정책 간 상호연계 강화, 서비스 창구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통일, 지식재산권 업무 신청의 ‘온라인 원스톱 정무처리 서비스(一网通办)’ 추진 등이 언급되었다.

(2)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와 관련하여 법률 체제 완비, 보호의 장기적 및 효율적 체제 마련,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및 사법보호 강화를 핵심내용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특허법 개정안 심의 진행, ‘인터넷 플러스’ 지식재산권 보호 추진 강화, 침해 및 위조 문제 특별사항에 대한 집행 등을 제시하였다.

(3)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촉진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동 계획은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 및 효율 향상,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 강화, 지식재산권의 종합 활용 강화, 지식재산권 이전 및 전환 촉진,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 완비를 제안하였다. 구체적 실시방안으로 심사품질 보장 체계 및 업무지침 체계 완비, 상표등록 편리화개혁의 전면적 심화, 비정상적 특허 출원과 상표 불법 선점, 악의적 등록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전략 수립 지원 등을 포함하였다.

(4) 지식재산권 국제 교류협력 강화

지식재산권 국제 교류 및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추진계획은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수준 향상 및 해외 리스트 예방 및 관리 강화를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관련 국가에서 중국 특허 심사결과에 대한 인정 및 등록 효력 발생 추진,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유지 지원체제 수립 연구, 국가 차원에서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가이드센터 설립 추진 등을 명시하였다.

54) 2019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

(5) 조직 실시 및 보장 강화

국가지식재산권전략에 대한 유관기관의 실천 및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전략 수립 및 실시 강화, 지식재산권사업 발전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권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문화 확산이 요구되었다. 특히 추진계획 제93항에서는 ‘지식재산권강국전략강요’ 제정을 목표로 IP 부처간 연석회의 사무국의 지도 하에 지방의 지식재산권전략 실시에 대한 총괄적 협조체제 완비를 명시하였으며, 제 95항은 각 지식재산권국과 성(省)·시(市) 정부 간의 업무 연계를 통한 지식재산권 강성(强省), 강시(强市), 강기업(强企) 건설 추진을 제시하는 등 지식재산 조직 및 행정체계의 정비를 강조하였다.

▶▶ 표 3-10 ‘2019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중점임무	업무조치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혁 추진 지식재산권 주요정책 개혁 지식재산권 ‘방관복’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법규·규장 완비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보호체제 수립 강화 지식재산 행정보호 강화 지식재산 사법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 및 효율 제고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 강화 지식재산권의 종합 활용 강화 지식재산권 이전 및 전환 촉진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 완비
지식재산권 국제 교류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 국제협력수준 제고 해외 위험 관리 강화
조직 실시 및 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권전략 수립 및 실시 강화 지식재산권사업 발전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권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문화 확산

2. 2018년과 2019년 추진계획 비교

2018년 추진계획은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의 강화, 지식재산권 국제 교류협력 심화, 조직 실시 및 보장 강화의 6개 중점 임무를 규정하고 있어, 중점 임무에서는 2019년 추진계획과 2018년 추진계획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19년 추진계획은 2018년 추진계획 상의 업무가 완수되었거나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업무조치 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임무 중,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2018

년 추진계획 상에는 국가지식재산권국 업무 개편, 지식재산권 항소법원 설립 모색을 업무조치로 규정하였으나 이미 완수되어 2019년 추진계획에서 삭제되었다. 대신에 2019년 추진계획에서 온라인 원스톱 정무처리 서비스(一网通办)를 새로이 제안하고, ‘지식재산권강국전략강요’ 제정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2019년에는 특히 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혁을 강조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권에 강한 기업 육성 업무방안’ 수립, ‘중양기업의 지식재산권 업무 지도의견’ 연구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식재산권(특허) 집약형 산업 통계분류 국가표준의 제정과 국가과학기술계획의 전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과 산업·기술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 표 3-11 ‘201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중점업무	업무조치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혁 추진) 국가지식재산권국 업무 개편,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사업 완비, 국가차원의 지식재산권 항소법원 설립 모색 · (지식재산권 주요 정책 개혁) 국가 과학기술계획의 지식재산권 관리 관련제도 완비, 연구개발비 세전 공제 정책 실시, 지식재산권 회계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회계 처리규정 제정 · (지식재산권 ‘방관복’ 개혁 심화) 지식재산권 분야의 군민(軍民) 융합개혁 시범사업 추진, 특허대리산업 발전 ‘13·5’ 기획 심화 실시, 상표대리기관의 신용 관리감독 시스템 수립
지식재산권 창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치 지식재산권 양성 강화) 특허품질 향상 프로젝트 실시, 상표 브랜드 혁신 및 창업 기지 건설,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 데이터베이스, 보호 리스트, 보호제도 설립 · (지식재산권 심사 품질·효율 제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특허심사제도 수립, 특허심사지침 상시 개정체제 수립, 중점 산업에 대한 특허출원 집중 심사관리방법을 수립하고 심사주기 관리 실시, 상표 심사능력을 제고하고 상표등록 심사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전국 저작권 등록업무 규범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법규·규장 완비) 특허법 제4차 개정 및 특허대리조례 개정, 저작권법 제3차 개정, 식물신물질 보호조례 개정 추진,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 입법 추진 · (보호의 장기적 효과 체제 수립) 지식재산권보호센터 설립 및 배치,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화 감독 실시, 지식재산권 분야의 사회신용시스템 구축 · (중점 분야의 특별관리 실시) 박람회, 전자상거래 등 중점 분야에 대한 특허 등 권리침해행위 집중 단속, ‘인터넷 플러스’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방안 제정 · (상시 관리감독 집행 강화) 징진지(京津冀), 장강경제벨트(长江经济带), 주장삼각주(珠三角) 등 지역의 특허 공동 집행 강화, 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처벌,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조사 완수
지식재산권 활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이전 강화)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 육성 연구 실시, 특허권 담보 등 지식재산권 융자모델 보급, 국유기업의 지식재산권 자산 관리제도 수립, 상표 부농(富农) 사업 심화 실시, 연구개발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의 전문 기술이전 기관 설립 장려, 지식재산권 관련 표준화 업무 강화 · (지식재산권 정보 이용 강화) 바이오기술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특허배치전략 연구 실시, 고등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지도, 농업 지식재산권 공공정보 플랫폼 설립 강화,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집결 발전 시험구 및 시범구 조성, 상표브랜드 창업 및 혁신 기지 건설
지식재산권 국제 교류협력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대외협력수준 향상)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와 협력 강화, 양자 및 다자간 지식재산권 대화협력 강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발효 추진 · (중점산업의 해외배치 및 위험예방 강화) 상표 국제등록 및 해외 권리보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 권리보호 플랫폼 구축
조직 실시 및 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제정 및 실행 강화)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10주년 평가업무 완수, ‘지식재산권강국건설강요’ 제정 연구업무 추진,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기획’ 실시에 관한 중기 평가 수행 · (인재 양성 및 홍보 지도 강화) ‘지식재산권 인재 13·5 기획’ 실시, 고등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학과 설치 지원, 산학연 인재양성모델 개발, 중국 특색의 지식재산권 국가 싱크탱크 설립

IV //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

1. 수립 배경 및 목적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수립 이후, 중국의 각 정부기관 및 지방의 이행 노력으로 인해 지식재산제도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동 강요에서 제시된 5개년 전략목표는 대부분 달성되었다. 2014년 국무원과 국가지식재산권국 등 유관부처는 2020년까지 동 강요에서 제시하는 국가전략을 실천하고 전략목표를 달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치와 세부계획을 담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을 발표하였다.

2. 주요 내용

동 행동계획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와 주요 행동방안을 담고 있다.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법치환경 개선,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관리 능력 강화, 지식재산권 의식 제고, 경제발전, 문화번영, 사회건설에서 지식재산권제도의 촉진기능 강화 등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에서 제시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2013년, 2015년, 2020년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지표별 목표치를 명시하였다.

▶▶ 표 3-12 2014~2020년 주요 예상 지표

구분	2013년	2015년	2020년
인구 만 명당 특허 보유건수(건)	4	6	14
특허협력조약(PCT) 출원(만 건)	2.2	3.0	7.5
국내 특허 평균 존속기간(년)	5.8	6.4	9.0
저작권 등록 건수(만 건)	84.5	90	100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만 건)	16.4	17.2	20
전국 기술시장의 기술계약 거래액(조 위안)	0.8	1.0	2.0
지식재산권 담보용자 연간금액(억 위안)	687.5	750	1800
사용료 및 로열티 수출입액(억 달러)	13.6	20	80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	18	20	20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점)	65	70	80
특허출원 실질심사 평균 심사기간(개월)	22.3	21.7	20.2
상표출원 평균 심사기간(개월)	10	9	9

또한 네 가지 방면에서의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 발전, 현대 농업 및 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양호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행정집행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특히 중점 분야의 지식재산권 행정집행을 강화할 것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형사집행 및 사법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다. 셋째,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심사제도 완비 및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지도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확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동방안을 제시하였다.

▶▶ 표 3-13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의 주요 행동방안

행동방안	세부내용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산업 전환 업그레이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집약형산업 발전 추진 • 현대농업 발전 지원 • 현대서비스업 발전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양호한 시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행정집행 정보 공개 강화 • 중점 분야의 지식재산권 행정집행 강화 •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 추진 • 지식재산권 형사집행 및 사법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분쟁 사회 예방과 조정업무 추진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관리효율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혁신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 지식재산권 심사 강화 • 중대 경제활동의 지식재산권 평의 실시 •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지도 • 국방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확대, 국제경쟁력 향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지식재산권 업무 강화 • 대외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규칙 완비 • 기업의 해외 진출(走出去) 지원

V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의견

2015년 12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이 발표되었다. 동 의견은 '전략의 지도역할 발휘', '개혁과 혁신', '시장주도', '총괄 계획 및 관리'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2020년까지의 주요목표와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의견은 2020년까지 지식재산의 주요 분야와 개혁에서 성과를 달성하고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

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관리·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 및 창업 환경을 최적화하며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권 강성(强省), 강시(强市)를 육성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혁 등 6개의 추진과제에 대한 29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지식재산 유관기관에 실천할 것을 촉구하였다.

▶▶ 표 3-14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의견'의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

추진과제	실천방안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연구 • 지식재산권서비스업 및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 개선 • 주요 경제활동의 지식재산권 평가제도 수립 • 지식재산권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혁신구동 발전 평가제도 수립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지식재산권 범죄 단속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예비경보 및 대비체제 수립 • 新업종·新분야의 혁신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의 남용행위 규제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심사 및 등록제도 완비 • 직무발명제도 완비 • 특허허가제도 개혁 추진 • 지식재산권 거래플랫폼 설립 강화 •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 육성 • 지식재산권의 부가가치 및 국제영향력 제고 • 지식재산권 정보의 개방 및 이용 강화
중점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 배치 및 리스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배치 계획 강화 • 해외 지식재산권 배치 경로 확대 • 해외 지식재산권 리스크 예비경보 시스템 완비 • 해외 지식재산권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강화
지식재산권 대외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평하고 합리적인 국제 지식재산규칙 수립 • 지식재산권 대외협력체제 수립 •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식재산 원조 강화 • 지식재산권 공공 외교채널 확대
조직 실시 및 정책 보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지도 강화 •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 • 지식재산 전문인재조직 설립 강화 • 홍보 및 지도 강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의견에 근거하여 각 지방 지식재산권국은 연간 지식재산권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2019년 4월에 공개된 '지방 지식재산권전략 실시 및 강국 건설 업무요점'55)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의견의 6개 추진과제에 대한 지역별 업무 및 목표를 제시하였다. 동 보고서의 제4장에서는 주요 지역의 지식재산 업무 추진상황을 자세히 검토한다.

》》 제3절

지식재산 관련 주요 법률

I // 개관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크게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외관설계)을 포함하는 특허법(专利法)⁵⁶⁾과 상표법(商标法)으로 구분된다. 이 외에도 반부정당경쟁법, 저작권법,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 식물신품종 보호조례 등 다양한 부분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이 있다.⁵⁷⁾ 또한 최근 중국에서 지식재산 침해 분쟁이 격화되면서 전자상거래법,⁵⁸⁾ 외상투자법⁵⁹⁾ 등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에 초점을 맞춘 규정들도 마련해 가고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1979년 개혁개방 선언 이후 입법되었으나, 기타 공법 영역의 법률에 비해 제정된 연혁이 짧고 법률 개정이 활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기 시작하며 국내이행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고, 2013년 시진핑 정부의 출범 후에는 ‘법치국가의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 실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의 발달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대대적 정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중국 상표법 3차 개정을 시작으로 2018년 반부정당경쟁법이 최초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2019년 현재 특허법 제4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하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주요 법률의 체계, 연혁 및 최신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55) 전국 32개 지방 지식재산권이 작성한 연간계획을 취합한 것임.

56) 중국 특허법을 한자 음역(音譯) 그대로 전리법(专利法)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전리(专利)의 뜻은 ‘전문적 이익’으로 결국 특허를 의미함. 만일 전리(专利)를 음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면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잔리’로 표기해야 함. 중국 특허법에서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한국의 특허법과 구분하기 위해 전리(专利)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 전리법의 공식 영문 번역본 또한 ‘Patent Law of China’로 표현되기 때문에 ‘특허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동 보고서에서는 ‘특허법’으로 용어를 통일하되 필요한 경우 중국어 원문을 함께 사용하도록 함.

57) 중국의 법률 체계는 기본적으로 법률(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과 시행령격인 실시세칙(특허법 실시세칙, 상표법 실시세칙)으로 구성되고, 법률 등에서 미비한 부분은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하는 ‘○○에 관한 사법해석(司法解釋)’을 통해 법률 해석을 보충하며 국무원에서 발표하는 ‘○○에 관한 조례(条例)’와 같은 행정규정 또한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가짐.

58) 중국 전자상거래법(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 [2018년 8월 31일 제정, 2019년 1월 1일 시행].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명시함.

59) 중국 외상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이 2019년 3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제2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외국 자본의 중국 투자 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강요금지를 위법행위로 규정함.

II 특허법

1. 중국 특허법의 연혁 및 체계

(1) 특허법 연혁

중국은 1980년 3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하면서 1984년 중국 특허법을 제정하고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제정 특허법은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국내이행,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하나의 법률에 포함, 선출원주의의 채택,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한 점진적 개방 추진, 행정보호와 사법보호의 2원적 보호체계 등 당시의 중국 사회주의에 적합한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중국 특허법은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2년 9월 4일 제1차 특허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199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이는 1990년대 중국 시장개방 확대와 관련이 있으며, TRIPs 협정과와의 정합성, 특허 보호대상의 확대,⁶⁰⁾ 발명특허의 보호기간의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강제실시권 조항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⁶¹⁾

제2차 특허법 개정은 2000년 8월 25일 전인대를 통과하여, 2001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동 개정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였고,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신설,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 출원의 자료제출 간소화, 특허권 부여 후 취소제도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다.⁶²⁾

2008년 12월 27일 개정되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특허법(제3차 개정법)은 ‘자주적 혁신능력의 제고와 혁신형 국가의 건설’이라는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의 방향성을 명시하였다. 또한 동 개정법에서는 ‘특허권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 2008년 발표된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의 취지를 구체화하였다. 이외에도 발명특허의 신규성 요건 강화, 공지기술의 항변규정의 신설, 유사 디자인 제도 신설 등의 디자인 보호 강화, 유전자원의 보호 신설 등의 개정이 실시되었다.⁶³⁾

(2) 특허법의 체계 및 구성

중국의 대표적인 특허 관계법은 특허법(专利法)과 특허법 실시세칙(专利法实施细则)이다. 특허법은 법률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반포되고, 특허법 실시세칙은 행

60) 특허로 보호하는 기술 분야를 화학물질·약품·식품·음료 및 조미료에 대한 특허를 부여함.

61) http://www.npc.gov.cn/wxzl/gongbao/2000-12/14/content_5002778.htm, 2019. 11. 11. 최종접수.

62) http://www.npc.gov.cn/wxzl/gongbao/2000-12/17/content_5009004.htm, 2019. 11. 11. 최종접수.

63) http://www.npc.gov.cn/npc/lfzt/rlyw/2018-12/20/content_2067448.htm, 2019. 11. 11. 최종접수.

정법규로 한국의 시행령, 즉 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에 해당하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되어 실제적, 절차적 사항이 비교적 간략히 규정된 특허법에서 정하지 못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허법을 보충하고 있다.⁶⁴⁾

이외에도 특허법 관계 행정법규로 한국 변리사법에 대응하는 특허대리조례(专利代理条例), 행정규칙으로 국가지식산업국 행정심판규정, 특허실시강제허가규정, 특허실시지침, 특허행정집행규정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인 특허권 침해분쟁사건 심리적용 법률 문제에 관한 해석 등의 다수의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

중국의 현행 특허법은 총 제8장 7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권리가 장(章)으로 분리되지는 않고 제2장 특허의 요건, 제3장 특허출원에서 조문을 달리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법상 개별 권리의 대상, 보호요건 등은 다음의 표와 같다.

▶▶ 표 3-15 중국 특허법상 권리 비교

구분	발명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외관설계)
보호대상	물건, 방법 또는 그 개량에 대하여 제출된 새로운 기술방안	제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하여 제출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	제품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보호요건	신규성, 진보성, 실용성(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확대된 선원주의), 진보성, 타법과의 충돌이 없어야 함
심사방식	실질심사	형식심사	형식심사
보호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권리내용	독점적 실시* (실시행위는 제조·판매청약(offering for sale)·판매·사용·수입을 말함)		
침해보호	(민사) 금지청구, 손해배상, (형사) 특허 사칭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2. 제4차 특허법 개정(안)

2018년 12월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어 2019년 연내에 심의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차 특허법 개정은 2008년 3차 개정 이후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국 국내 상황과 전 세계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면 개정을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4) 특허법 실시세칙도 1985년 4월 제정되어, 특허법과 함께 1992년, 2001년, 2010년 3차례 개정·실시됨.

(1) 특허 보호의 강화

개정 특허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손해배상제도 강화이다. 비록 특허법 개정안이 국무원 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으나, 특허법의 손해배상강화와 같은 취지로 2019년 5월 중국 상표법과 반부정당경쟁법은 개정이 완료되었다. 특허법 개정안은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범위를 현행법의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에서 1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배상액의 확정 시 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행위 관련 장부 및 자료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침해자가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장부 및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법원은 관리자가 제공한 증거 및 주장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개정(안)은 “인민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이미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및 자료가 주로 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및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침해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장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관리자가 주장 및 제출한 증거를 참조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관리자의 배상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민사손해배상과 더불어 중국의 특징인 행정집행의 강화도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허침해 관련 행정집행 권한을 현행법의 ‘특허업무 관리부서’에서 ‘특허집행 책임 부서’로까지 확대 부여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및 지방정부의 특허업무 관리부서도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다음은 인터넷 시대를 대비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 부과이다. 중국의 인터넷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만한 법 규정이 부재하였으며, 앞선 2018년 8월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책임을 부여한 바⁶⁵⁾ 동 개정은 전자상거래법과 유사한 수준에서 ISP의 보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ISP는 관리자의 요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 침해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 또는 특허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 링크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특허집행 담당부서는 특허권 위조에 대한 시정 결정을 내린 후에 ISP에 특허 위조 상품의 링크 삭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⁶⁵⁾ 전자상거래법 제4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식재산권 보호규칙을 수립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제45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플랫폼 내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차단, 링크 삭제, 거래 및 서비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권리침해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통지할 수 있다. ISP는 통지를 받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기타 특허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보호 방면에서 주요 개정 부분은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도입, 디자인권 보호기간의 연장(10년→15년), 신의성실원칙, 소송시효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중국 특허법 개정안은 혁신 의약품의 출시에 대한 심사 승인기간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중국 내 및 해외에 동시에 출시하는 혁신 의약품 특허에 대해 특허권 존속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⁶⁶⁾ 헤이그 협정에 따라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특허 출원 및 특허권 행사 시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허권 남용을 통해 공공의 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거나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특허권 침해 소송시효를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침해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2년으로 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용료 청구 소송 시효는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다.

(2) 특허 실시 및 활용 촉진

중국 특허법 개정(안)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하며 “특허실시와 활용”의 장을 신설하였다. 첫째, 직무발명의 처분 및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조직이 직무발명한 특허에 대해 출원할 권리와 특허권을 처분할 수 있고, 지분, 선물옵션, 배당 등의 방식으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혁신수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여 직무발명을 장려한다.⁶⁷⁾ 둘째, ‘개방허가’를 신설하여 권리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서면형식의 성명을 통해 누구에게나 특허사용을 허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료 지불방식, 기준 등을 명확히 밝힌 경우 개방허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방허가된 권리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 조직 또는 개인은 서면형식으로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공고에 명시된 사용료 지불방식, 기준 등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한 후 해당 권리를 실시할 수 있다. 개방허가 기간 동안 권리자는 해당 특허권에 대한 독점 또는 배타적 허가를 부여할 수 없으며, 개방허가 실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셋째, 특허정보의 이용촉진이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업무로서 ‘특허정보 공포’, ‘특허공보 출판’ 외에도 ‘특허정보 기초데이터 제공’, ‘특허정보 전파 및 이용을 촉진’을 추가하였고, 또한 특허정보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인민정부의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국무원 특허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동급 유관 부서와 공동 조치를 통해 특허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허 실시 및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66) 단, 이때 혁신 의약품의 출시 후 유효한 특허권의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음.

67) 현행법은 조직의 임무 또는 조직의 물질·기술 조건을 주로 이용하여 이루어진 발명, 즉 직무발명을 출원할 권리는 해당 조직에 귀속되며 출원 승인 후의 권리권자는 조직이 된다고 명시할 뿐, 해당 발명 및 권리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배분에 대한 규정은 없음.

(3) 특허 등록제도의 정비

현행법상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국내 우선권제도만 두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디자인 출원에 대한 국내 우선권제도를 신설하였다. 중국 국내에서 먼저 제출한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디자인 출원을 할 때, 후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우선권 주장 시, 특허 및 실용신안 최초 출원문서의 부분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디자인 출원문서의 부분 제출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였다. 한편,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대상으로 '원자핵 변환방법' 자체도 포함하였다.

III 상표법

1. 중국 상표법의 연혁 및 체계

(1) 상표법 연혁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에 따른 법제도 완성의 필요성으로 인해 1982년 8월 중국 최초의 상표법을 제정하였고 1983년 제정 상표법이 시행되었다. 즉 제정 상표법은 1980년 WIPO 가입과 함께 중국에 투자를 원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요청에 따른 것으로 중국 지식재산권 법제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93년 제1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1차 개정의 특징은 서비스표의 도입과 부정상표의 등록 취소 규정의 신설이다. 또한 상표사용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상표권침해의 유형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2001년 제2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2차 상표법에서는 상표 등록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확대하고, 색채상표 및 입체상표를 상표 보호 범위에 포함하였다. 지리적상표를 상표법 체계로 편재시킬 수 있도록 단체상표 및 증명상표의 규정도 추가하였다. 집행의 측면에서는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상표침해행위를 조사하고 행정집행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두 차례의 상표법 개정이 진행된 이후 12년만인 2013년에 3차 상표법 개정이 전면적으로 진행되었다. 2013년 상표법(2013. 8. 30. 전인대 상무위원회 통과)은 2010년 이후 중국의 상표 출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심사적체의 해소, 상표선점행위, 대리기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되었고 2014년 5월 1일 시행되었다. 당시 중국 국무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1년 상표법이 실제 수요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상표 등록

절차가 번잡함에 따라 상표권 확정시간이 지나치게 길며, 상표 이의안건이 상표국의 심의처리를 거쳐 재정하는 데도 약 20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악의적 선 상표등록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상표 분야의 부당한 경쟁 현상 또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상표권 침해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 제3차 상표법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2012년 10월 3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상표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전인대에 제출하여 2013년 공개의견 수렴을 거친 뒤, 4차례의 전인대 상무 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되었다. 2013년 상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도입, 소리상표 등으로 객체 확대, 다류출원제도의 도입 등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에는 상표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수준의 향상 및 악의적 상표등록 방지를 위해 2019년 4월 23일 상표법이 부분 개정되어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기간 동안 법 개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단 5년 만에 상표법 개정이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며 중국 정부도 특별 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번 상표법 일부 개정은 2017년부터 지속되어온 미·중 무역전쟁의 해소수단 중 하나로 미국 측에서 제기해 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상표법 체계

중국에서 상표법 시행령으로는 2002년 제정되어, 2014년 개정된 상표법 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가 있다. 이외에도 특수표지관리조례(特殊标志管理条例), 올림픽표시 보호조례(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세계박람회표지 보호조례(世界博览会标志保护条例) 등 상표법과 관련된 행정규칙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舊 국가공상행정총국 상표국에서 독립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한 상표인쇄관리조례(商标印制管理办法), 저명상표 인증과 보호규정(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단체상표, 증명상표 등록과 관리 방법(集体商标, 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등 10개의 행정규장이 상표법을 뒷받침한다.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사법해석으로는 상표 민사분쟁 사건 심리의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등록상표·기업명칭과 선 권리 충돌의 민사분쟁 사건 심리의 문제에 관한 규정(关于审理注册商标、企业名称与在先权利冲突的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저명상표 심리 및 보호의 민사분쟁 사건의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关于审理涉及驰名商标保护的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상표 수권 확정 행정안건에 관한 문제의 규정(关于审理商标授权确权行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의 4개 사법해석을 통해 소송에 있어 법률해석의 지침을 제공한다.⁶⁸⁾

68) 胡安琪, 中国商标法修改最新情况, 国家知识产权局, 2019, pp. 13-14.

2. 중국 상표법의 주요 내용

2019년 개정법은 2014년 제3차 상표법의 내용에 악의적 상표등록 및 침해책임 강화를 추가하였다. 2014년 제3차 상표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최근 개정 내용을 함께 살펴본다.⁶⁹⁾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4년 상표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과 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중국 내 실수요자 입장에서 개정을 진행하였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던 신청인의 상표등록 취득에 대한 편의 제공, 상표 신청·사용 규범화를 통한 공정경쟁 및 시장질서 유지, 상표 전용권 보호 강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 상표등록의 편의성 확대

상표등록 이의제도 개선 및 심사기간을 단축하였다. 상표법은 이의신청 주체를 해당 상표등록 신청이 존재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우선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로 한정하여 출원인이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같은 취지로 상표국이 상표 이의제기에 대해 심사 재정하는 과정을 삭제하고, 상표국이 상표등록 이의에 대해 심사 이후 직접 등록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상표 신청인이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청인은 거절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 심판⁷⁰⁾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복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결정을 완료하도록 명시하여 출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국제적인 상표제도 발전 추세에 따라 등록 가능한 상표의 객체를 확대하여 음성(소리)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다류상표 출원 및 전자출원 방식을 도입하여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심사의견서 제도를 도입하여 상표국이 상표심사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심사의견서>를 발송하여 해당 상표신청에 대한 설명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상표 보호 강화

2014년 개정법률에서는 공정경쟁의 보호의 측면에서 상표 등록에 관련된 규정의 개정되었다. 2014년 상표법 개정 당시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 범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⁷¹⁾ 상표법은

69) 주중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상표법 개정, 2013. 9. 17. (http://overseas.mofa.go.kr/cn-ko/brd/m_1235/view.do?seq=101780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1, 2019. 11. 11. 최종접속).

70) 복심이란, 상표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사를 구하는 행정절차를 말함.

71)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11월 브랜드 인증이 기업과 정부의 유착을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가 유명브랜드(名牌)를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유명 브랜드 등을 인정하는 사업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힘. KIIP, Issue & Focus on IP 제2019-12권호,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19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위조품 관리감독의 강화 강조”

저명상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거하여 상표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에 있어 인정이 필요한 사실로써 인정한다.”고 규정하여 개별 사례로만 인정하는 등 법적 성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표와 상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표법은 “타인의 저명상표, 등록상표를 기업명칭 중의 상호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부당경쟁 행위를 구성할 경우 <반부정당경쟁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

상표법은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미등록 선사용 상표)에 대한 악의적 선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과 구체적인 계약, 업무거래관계 또는 기타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상표 존재를 분명히 알면서도 타인의 우선 사용 상표에 대해 등록 신청할 경우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2019년 개정 상표법에서는 악의적 상표등록행위를 더욱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법 제4조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사유로 신설하고, 제19조에서 상표대리기관 또한 사용 목적이 아닌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행위 유형에서 “고의로 타인의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편의를 제공하고, 타인의 상표 전용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경우”를 추가하고, 손해배상액을 중국의 실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였다. 2014년 상표법에서는 악의적인 상표 전용권 침해 및 경위가 심각한 경우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실과 침해자의 상표권 침해로 인해 취득한 이익 또는 등록 상표 사용 로열티의 1배에서 3배 범위 내에서 배상금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법정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선을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상향한 바 있다. 나아가 2019년 4월 개정 상표법에서는 이러한 침해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1~5배로 조정하고, 법정 손해배상의 상한을 500만 위안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허위표시 상품에 관한 몰수(폐기, 유통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상표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사례

2019년 9월 6일, 중국 상하이시 푸둥법원(上海浦东法院)은 2013년 상표법 규정에 의거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상하이 푸둥법원은 이 사건 피고가 이전에도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있었으나 재차 침해행위를 하였고, 여러 유통경로를 통해 침해상품을 판매한 점, 그리고 해당 상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악의적이고 엄중한 사건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얻은 부당이익 약 100만 위안에 대한 3배 배상을 확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위안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집행의 측면에서 2014년 상표법은 행정부처의 권한(과태료)을 강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9년 4월 개정 상표법에서 과태료 수준을 더욱 향상시켰으며, 악의적 상표등록 출원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소송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음을 신설하였다. 상표대리기구에 대하여도 관련 법규준수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대리업무를 수행(영업비밀 누설 금지 등)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포괄적인 의무규정을 신설하였고, “상표대리업 조직(협회)은 반드시 정관규정에 따라 회원 접수조건을 엄격히 집행하고, 업계 자율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한다. 또한 상표대리업 조직은 접수한 회원 및 회원사에 대한 징계현황을 적시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상표대리행위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IV 반부정당경쟁법

1.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의 연혁

2017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1993년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24년 만에 최초로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부정경쟁방지법 제정 이후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 환경의 등장에 따라 (구)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행위 유형들이 나타났으며, 2014년 개정작업 착수 후 여러 논의를 거쳐 마침내 2017년 11월에 개정되었으며, 연이어 2019년 4월 23일 개정·시행되었다.

2.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의 주요내용

2017년 개정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혼동하게 하는 행위, 뇌물수수 행위, 영업비밀 침해 행위, 감독검사부서의 조사 권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적책임, 법정손해배상액 신설 등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신설되었으며,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1)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추가

2017년 개정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추가되었다. 특이한 점은 인터넷상의 부정경쟁행위를 신설한 것이다.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조항(제12조)은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하고 있

지 않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제12조의 신설 이전에는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의 일반조항을 적용하여 인터넷상의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해 왔으나 동 조항을 신설하며 인터넷상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체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에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까지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상의 부정경쟁행위 판례를 통해 법원이 구축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것이다.

(2) 영업비밀 보호

영업비밀 보호 규정은 영업비밀 정의를 수정하고, 침해 유형을 확대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수정되었다. 중국 기업의 성장에 따라 기업 내 고급 기술과 관련한 연구 성과의 유출, 기술탈취 등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기업 간 영업비밀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를 반영한 규정이다.

2019년 4월 23일 반부정당경쟁법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정의를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에서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로 수정하여 영업비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 중 부정취득 유형으로 ‘전자적 침투’ 방법을 추가하였다. 또한 교사, 유인, 방조와 같이 간접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였다. 제9조 제2항에 제1항 영업비밀 침해의 주체인 경영자 이외에 기타 자연인, 법인, 비법인사단이 제1항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피침해자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초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영업비밀 침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다는 반증을 제시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 강화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은 2017년 개정에서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반부정당경쟁법은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2019년 개정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더욱 강화하였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1~5배로 조정하고,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정 손해배상의 상한을 500만 위안으로 높였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여 행정관청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으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V 기타 지식재산권 관계 행정규정

1. 지리적 표시 보호

중국 정부는 2018년 국무원 기구개편을 통하여 기존의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이 담당하던 지리적 표시 업무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19년 지리적 표시 업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⁷²⁾,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법규정은 주로 상표법과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 규정(地理标志产品保护规定)에서 다루고 있다.

2001년 상표법 개정에서 지리적 표시는 단체상표와 증명상표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를 출원할 때에는 상표출원 명세서에 반드시 단체상표 또는 증명상표임을 기재해야 한다.⁷³⁾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은 지리적 표시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면 상표권과 동일하게 10년간 존속된다.

또한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에 관한 관리감독 사항을 명시한 국가품질감독검사총국의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 규정은 2005년 발효되었다. 동 규정은 지리적 표시의 심사와 승인 및 지리적 표시 상품의 표준화와 관계부처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 침해에 대한 구제는 행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국무원 기구 개혁으로 지리적 표시 보호 업무가 국가지식재산권국에 편입되며 지리적 표시 등록 수리관청은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 통일되었고, 지리적 표시 침해에 대해서도 상표권으로 등록되었다면 침해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19년 3월 개최된 양회에서 상표법과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 규정은 여전히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중국은 중국산 반도체 수준을 세계 일류로 끌어올리고 반도체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적인 ‘반도체 굴기’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설계자의 지적창작물 중 하

72)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19년 7월 ‘지리적 표시 상품 전용표지 사용허가 개혁 시범지역 전개의 통지’를 발표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 업무 시범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함.

73) 상표국은 단체상표나 증명상표로 지리적 표시를 출원 시 ‘단체상표 및 증명상표의 사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발급받은 자격증명서를 함께 요구함.

나인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 규정을 마련해놓았다. 2001년 국무원은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와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실시세칙(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实施细则)을 제정·시행하였다. 동 규정의 공포를 통해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함께 반도체 집적회로의 출원·등록의 증대효과를 가져왔으나⁷⁴⁾ 그에 따른 침해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분쟁을 해결하면서 규정의 문제점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⁷⁵⁾ 이에 따라 중국 국가지식산업국은 2019년 4월 집적회로 배치설계 심사 및 집행지침(集成电路布图设计审查与执法指南(试行))을 발표하여 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하에서는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 및 집행지침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중국의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는 반도체 배치설계권을 보호하고 기술 창조를 격려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반도체 집적회로로 보호의 중요한 요소로 창작성(독창성, 独创性)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현행 반도체 보호 조례와 실시세칙은 창작성을 구비할 것을 요구할 뿐,⁷⁶⁾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2019년 반도체 심사지침에서 창작성의 판단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심사지침에서는 보호받고자 하는 배치설계의 창작자가 독립적으로 창작하였는지, 선행설계나 공인된 설계와 중복되지 않는지 그리고 전체판단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창작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심사지침 제4장 제3절 독창성의 심사).

반도체 배치설계권을 등록한 자에게는 해당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 독점권(专有权)이 발생하지만⁷⁷⁾연구목적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⁷⁸⁾ 권리보호의 기간은 10년이며, 창작된 날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또한 조례는 반도체 배치설계권 침해에 대해 사법구제(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책임)와 행정구제, 그리고 형사구제를 규정하고 있다.⁷⁹⁾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 구제 방법은 민법 규정에 의한다. 앞서 살펴본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반도체 배치설계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에 정해진 바 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뿐이다.⁸⁰⁾ 한편,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행정구제를 신청할 수 있

74) 국가지식산업국 통계연보(2018)에 따르면 반도체 집적회로 출원 건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반도체 집적회로 출원등록 통계〉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원	1,464	1,778	1,561	1,838	2,058	2,360	3,328	4,431
증서발행	1,329	1,629	1,612	1,553	1,800	2,154	2,670	3,815

75) 신찬호, 중국의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8호 제3(2015), 285면.

76)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 제4조

77) 집적회로 보호조례 제22조

78) 집적회로 보호조례 제23조

79) 집적회로 보호조례 제30조~제34조

는데 2019년 집적회로 배치설계 심사 및 집행지침 제3절 행정집행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집행절차의 개시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지식재산권이 집적회로 배치설계 행정집행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합의금을 조장할 수 있다. 이때 분쟁해결은 행정집행위원회 조정을 거쳐 당사자 간 협의로 종결하되, 집적회로 배치설계 행정집행위원회는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침해행위의 중지와 침해물품의 몰수·소각을 명령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조정권한도 갖는 특징이 있다.

3. 전자상거래법과 외상투자법 및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

중국이 지식재산권의 창출에서 보호를 강조하면서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⁸¹⁾ 본래 지식재산권 보호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특허법, 상표법 이외에도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이나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조례(优化营商环境条例)와 같이 시장거래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 제·개정되고 있다.

2018년 8월 31일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한 부작용, 예를 들어 시장주체 간 가격출혈경쟁, 개인정보유출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문별 행정규칙으로 규율되던 부분을 정리·개선한 종합적인 법률이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정의하고,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전자상거래 경영자(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책임을 제41조 내지 제46조에 규정하였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여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는 경우,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페이지의 삭제, 폐지, 링크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권리침해 통보를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최고 200만 위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한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잘못된 통지로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고,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악의적으로 잘못된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에게 2배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80) 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중국 민법전 불법행위편 개정(안)에서는 고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징벌적 배상규정을 신설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民法典侵权责任编(草案)(二次审议稿)

81) 중국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는 2019년 9월 24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促进中医药传承创新发展的意见)'을 발표함. 동 의견은 지식재산권 심사, 집행, 사법보호, 대체적 분쟁해결, 업계의 자율을 통해 보호 시스템을 완성하고 법제도, 경제, 기술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보호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중국 외상투자법은 2019년 3월 15일 제정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 시행예정이다. 외상투자법은 외국기업들에 적용되는 회사법의 일종으로 기존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3개 법률(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법률이다. 최근 중국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였고 특히 2017년부터 격화된 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이슈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급속하게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⁸²⁾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법의 제정이 대외개방 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외상투자법 시행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설명하며, 외국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상투자법은 외국인의 투자보호, 외국인 투자 촉진, 외국인 투자 관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 중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제22조), 영업비밀 보호(제23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⁸³⁾ 외상투자법에서 외국인 기술보호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서 강제 기술이전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부과 및 구제에 관한 시행 법률은 미흡하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2019년 10월 22일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조례를 통과시키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공표하였다. 이 조례는 시장주체의 투자 및 창업에 관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전자상거래법, 외상투자법과 마찬가지로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 조례는 공평한 경쟁과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고품질의 시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시장에 관한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법에 의거한 집행으로 국제 선진수준에 맞는 규범을 확립하고자 한다. 조례에 따르면 법에 의해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법정 절차와 권한의 위반을 엄격히 금지하여 각 시장주체가 평등하게 경쟁하고, 국가의 지원정책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분쟁해결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82) 중국은 외자3법에 대한 개정 및 통합 논의를 2011년부터 시작하였고, 2015년에 외상투자법 개정 초안을 공표하였으나 2018년 전인대 상무회의 법률안 3차 심의를 통과함.

83) 외상투자법 제22조 ①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자와 관련 권리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한다. 지식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하여 엄격한 법률 책임을 부담한다.

② 국가는 외상투자과정에서 자율원칙과 상업규칙에 기초하여 기술협력을 장려한다. 기술협력의 조건은 투자 당사자가 공평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협상하여 확정한다. 행정기관 및 그 관계자는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기술을 강제로 이전할 수 없다.

제23조 행정기관과 그 관계자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해서 반드시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불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VI // 중국 지식재산권 소송체계의 정비

중국의 지식재산권 소송체계는 최근 급속한 변화를 겪었다. 중국의 지식재산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지식재산 관련 사건을 별도로 취급하지 않고, 민사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베이징시, 상하이시 같은 일부 대도시에서만 일반법원에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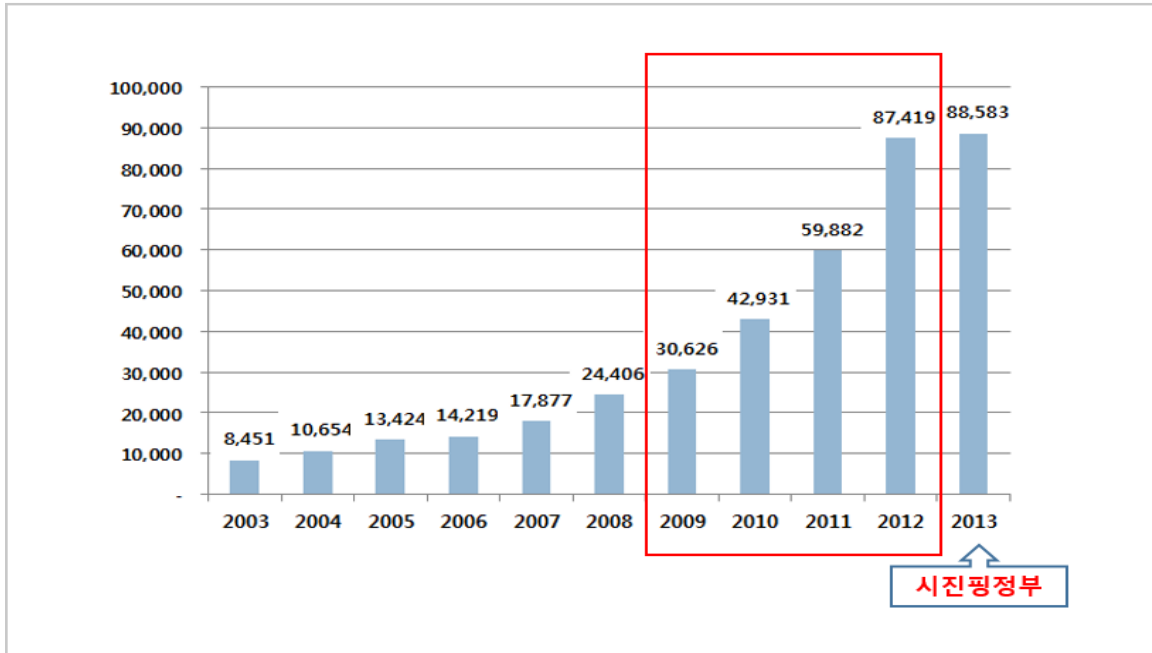
1.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

(1)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의 목적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촉구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지식재산권 소송이 증대되었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전면적인 법치사회의 건설을 사회적 목표로 내세우며 중국 사회의 질적 성장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 전후에는 ‘지식재산권 상소법원(현재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이 논의될 정도로 사법시스템의 선진화 움직임이 있었다. 또한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위조품의 제조, 판매, 수출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2014년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 즈음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하며 기술적으로 복잡하거나 분쟁 유형이 다양해져 심리의 난이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법원 산하의 지식재산권 재판부는 전문성 부족과 지역 보호주의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분쟁의 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원이 대량의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그림 3-10 연도별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1심 민사사건 통계



출처 : 2013년 중국지식재산권 보호현황(국가지식재산권전략망) 재구성.

(2)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의 설립

2014년 국무원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광둥성)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하는 결정을 발표하였다.⁸⁴⁾ 세 지역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한 이유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이 중국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사건의 처리 경험이 풍부하며, 지리적으로 중국 각 지역의 지식재산권 재판 현황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동 규정에 의해 2014년 11월 6일 설립되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설립 직후 총 221건의 사건을 접수하였다.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법관 30명을 정원으로 하여 2024년까지 연간 약 15,000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판사 1명당 500건의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입안부(立案庭), 2개의 재판부(审判庭), 재판감독부(审监庭) 등 4개 부서를 두고 있고, 각 부에는 1명의 부장판사를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인의 법관과 1인의 법관보조(法官助理), 1인의 서기(书记员)'로 팀을 이루어 사건을 심리한다.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주심법관 10명을 임명하며 2014년 12월 16일 설립되었다.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그 산하에 입안부, 특허재판부, 저작권재판부, 상표 및 부정경쟁재판부, 기술조사실, 종합사무실(综合办公室) 등 6개 부서를 두고 있으며,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과 상하이

⁸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결정(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在北京,上海,广州设立知识产权法院的决定).

지식재산권법원과 비교할 때 재판부를 구체적인 지식재산권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고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과 달리,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1인의 법관과 1.5인의 법관보조, 1인의 서기로 팀을 이루어 사건을 심리하는 구조이다.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2014년 12월 28일 설립되었다.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 또한 법관 10명을 임명하였다.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이 설립됨으로써 사건의 당사자들은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들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통일적 법 해석 및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한다.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의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2017년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소송이 많이 발생하는 일부 지역의 중급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립하였다.⁸⁵⁾

(3) 지식재산권 법원의 관할

1) 소송제도 개요

본래 중국의 소송제도는 4급 2심급제도를 택하고 있다. 사법적 해결수단인 소송은 지식재산권자가 침해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금지,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것이다. 중국 내에서 소송은 침해자에게 강한 압박을 줄 수 있으며, 공정증거를 요하는 등 재판 절차가 엄격하다. 한편 소송비용이 높고 구제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손해배상청구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최종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활용된다. 지식재산권 침해(민사) 소송의 종류에는 지식재산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소제기 전에 침해행위의 정지명령 및 증거보전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본안 전 소송,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적시에 지식재산권(특허권) 침해행위의 저지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행위의 정지 및 재산 보전의 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임시조치(가처분), 권리가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침해금지청구,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침해자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범죄를 구성하여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중국 법원은 지식재산 침해분쟁에 삼심합일(三審合一)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있어서,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심판하는 것이다. 동일한 사건에서 파생하는 민사, 형사 및 행정소송을 각기 다른 법정에서 심리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법 자원의 절약과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재판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삼심합일 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최고인민법원은 2016년 7월에 ‘전국 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 및 형사사건의 삼심합일(三合一) 재판을 전개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공표하고 하급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의 삼심합일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⁸⁶⁾

85) 2019년 현재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치한 중급인민법원은 난징, 쑤저우, 우한, 청두시 등 18개임.

86) JETRO, 中国知財権侵害関連連裁判マニュアル, 2017, pp. 32-33.

2) 지식재산권 법원의 관할

지식재산권 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1심 및 2심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지식재산권 법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각급 법원의 지식재산권 재판부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민사사건은 물론 행정 내지 형사사건까지도 담당하였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법원이 판단하는 범위를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으로 한정하고 형사사건은 배제하였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목적과 취지가 범죄를 처벌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중 전문성이 강하고 기술성이 강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이다.

가. 토지관할

중국 민사소송법 제21조는 토지관할(地域管轄)로 피고주소지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8조는 행정사건은 처음으로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 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법원은 행정구역에 따라 각 지역에 설치되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토지관할은 해당 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만 한정하고 있다.⁸⁷⁾ 이에 의하면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토지관할은 베이징시이고,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의 토지관할은 상하이시이며,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의 토지관할은 광저우시에 한정될 것이다. 그러나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결정’은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의 토지관할 규정의 틀을 벗어나 지식재산권 법원은 지역을 초월하여(跨区域) 관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 법원이 설립된 첫 3년 내에는 먼저 소재지인 성(직할시)에서 지역을 초월하여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2조 제3항). 다만, 베이징과 상하이의 지식재산권 법원의 관할구역은 원래 베이징시와 상하이시가 직할시인 관계로, 해당규정은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만 해당하게 된다.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의 관할에 대해 별도로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은 광둥성 내에서 지역을 초월하여 관할할 수 있으므로,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기존의 관할 구역인 광저우시를 벗어나 광둥성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을 관할하였다.

87) 기층법원은 각 현(縣) 및 구(區)를 두고 있지 않은 시와 구를 두고 있는 시의 경우에는 구에 설치되어 있고, 중급법원은 직할시, 구를 두고 있는 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고급법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치됨(법원조직법 제17조, 제22조, 제25조).

(4) 기술조사관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성 확대

지식재산권 소송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안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조사관 제도가 신설 되기 전에는 사법감정⁸⁸⁾ 제도가 운영되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 목적에 맞추어 법원은 기술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사건 심리 과정에서 기술적인 사실에 대한 규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사법감정인은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법원이 사전에 등록된 감정인 명부에서 위탁한 자로서 일반적으로 법원의 직원이 아닌 외부에서 담당하며 법정에 출석하여 당사자의 심문을 받을 수 있으나 기술조사관은 지식재산권 법원에 소속된 직원이다. 감정인과 기술조사관은 모두 법관을 도와 지식재산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가지지만, 양자의 차이점은 법적 신분과 소송참여 정도에 있다.

기술조사관이 법원의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는 구체적으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기술조사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 기술조사관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조사실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때 재판 문서 앞부분에 기술조사관의 신분과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고,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기술조사관을 참여시킬 것을 결정하면 이 사실을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식재산권 법원 기술조사관 소송참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잠정규정 제3조, 제4조). 기술조사관의 역할은 ① 소송문서와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기술적인 사실에 관한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② 기술적 사실의 조사 범위, 조사순서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 제안하며, ③ 조사 및 증거채집, 검증, 보전에 참여하고 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제안하고, ④ 심문, 증인 청취 및 심리과정에 참여하며, ⑤ 기술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합의부 평의에 참석하고, ⑥ 필요한 경우에 법관에 협조하여 감정인,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감정 의견과 자문 의견을 제시하며, ⑦ 법관이 지정한 기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지식재산권 법원 기술조사관 소송참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잠정규정 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기술조사관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법감정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도록 하여 정확하고 전문성 있는 판결을 가능토록 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기술조사관은 합의부 평의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법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권 사건은 기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기술조사관의 의견이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식재산권 법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 평가되고 있다. 또한 판사, 기술조사관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판사, 기술조사관의 장기 근무를 추진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법원이 설립되어 재판부의 전문성은 고도화되고 있다.

⁸⁸⁾ 사법감정은 소송 중에서 과학기술 또는 전문기술을 이용하여 소송과 관련된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감별 판단하여 감정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법감정 관리문제에 대한 결정'에서 사법감정 기관 및 감정인의 자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양측 당사자가 협의하여 감정기관을 확정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법원에서 지정함.

2.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중국 법원은 지식재산권 소송 상소심을 최고인민법원으로 집중하는 결정을 내렸다.⁸⁹⁾ 2019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베이징의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법정이 2심으로서 이를 심리 및 판단한다. 이 결정은 지식재산권 재판 표준을 통일하고, 각종 사업 주체의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키우고, 과학기술에 대한 법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특허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 소송사건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나, 현행 민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상 특허 침해의 2심 민사사건을 각 지역의 고급인민법원이 심리하고 있어 재판 결과의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이 설립되기 전에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원이 심리한 1심 사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일반 고급법원의 지식재산권 재판부가 담당하였고, 일반 고급법원이 지식재산권 법원의 상소사건을 심리하면서 그 전문성이나 기술성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식재산권 상소법원의 설치문제와 관련하여 2008년 국무원에서 공포한 ‘국가 지식재산권전략강요(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었고,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하는데 관한 결정’ 초안의 작성과정에서도 일부 위원들에 의해 제안된 바 있다.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지식재산권 법원이 안착되고 실무 경험이 축적되어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며, 지식재산권 사건의 재판 표준을 통일하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치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이 설립된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전문적인 특허 기술 소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권 행정·민사소송의 최종심을 담당하며, 상설심판기구로 베이징에 설립된다. 동 결정에 따르면 고급인민법원이 심리한 1심 특허침해 민사사건에 대한 불복, 지방 중급인민법원이나 지식재산권 법원이 판단한 특허·실용신안·식물신품종·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기술비밀·소프트웨어·반독점 위반 1심 민사사건에 대한 불복,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이 판단한 특허 1심 행정사건에 대한 불복 사건을 판단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사건에 따라 원심법원 소재지에서 순회 법정을 개최할 수 있으며 판결문은 법에 따라 전자소송 플랫폼 등에 공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법정은 지식재산권 법원과 다른 최고인민법원에서 파출한 상설 재판기구이므로 지식재산권 법정의 재판효력은 최고인민법원의 재판효력과 동일하다. 지식재산권 법정은 주로 제2심 지식재산권

⁸⁹⁾ 지식재산권 법정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사안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국 범위 내의 중대, 복잡한 제1심 지식재산권 사안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중국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의 재심⁹⁰⁾, 당사자의 재심청구⁹¹⁾, 인민검찰원의 항소⁹²⁾ 등 심판 감독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법률효력이 발생한 제1심 지식재산권 사안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기존의 고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하던 재심 및 항소사안도 본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권 법정에서 관할하도록 규정되었다.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할 수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은 만 3년간 이 결정을 시행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실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90) 중국 민사소송법 제198조에서는 최고인민법원은 각급인민법원의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 조정서에 대하여 잘못을 발견한 경우 재심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91) 중국 민사소송법 제199조에서는 당사자가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92) 중국 민사소송법 제208조에서는 하급인민법원은 각급인민법원의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에 대하여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의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에 대하여 재심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제4절

소결

중국은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창출에 있어서 세계 1위 수준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저품질 특허 등록, 낮은 지식재산 인식수준 등 지식재산 강국이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중국은 지식재산전략의 수정을 통해 지식재산대국에서 지식재산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식재산 유관 행정기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지식재산 행정체계의 효율화를 제고하였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신설하여 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한편, 국가지식재산국의 기존업무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더하여 상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유 확대를 통해 혁신형 국가 건설’을 추진하던 전략에서 ‘지식재산 강국 건설의 기반 마련’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개혁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심사 및 등록제도 수정을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였다. 또한 국가 중점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을 마련하였다.

2020년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의 목표가 완수되는 해로 ‘지식재산권강국건설강요’가 수립되어 종전의 전략을 대체할 예정이다. 현재 초안 작업 중이며, 지식재산제도의 역할 강화, 지식재산 관리체계의 현대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략이 정비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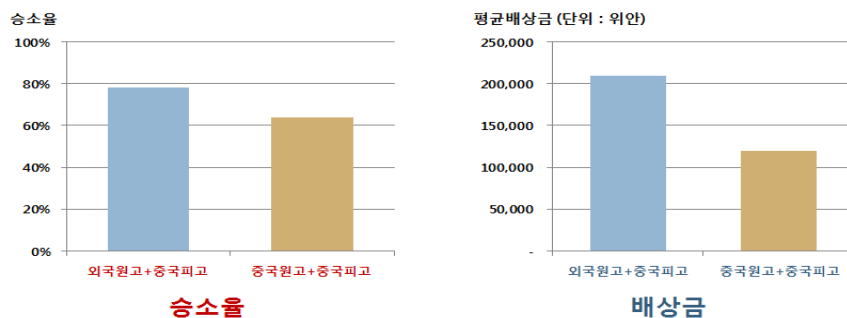
특허법, 상표법,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 및 국무원 기구개편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업무의 통합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비교적 정교하지 못했던 이전 시대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규모 지식재산권 창출을 이루어냈고, 그중에서 중국의 기술과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지식재산권 제도는 자국 산업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이제부터는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기술패권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즉 세계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반도체, 인공지능, 항공우주산업, 정보통신 기술 등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육성한 후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일대일로 추진 등으로 주변 개도국 및 해외 선진국과의 거래가 증대되고 이들 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 것이다. 즉 양적 성장 일변도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정책개선이 뒤따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같은 의미로 중국 지식재산권 소송제도의 변화 또한 현재 중국의 경제규모 수준으로 봤을 때 당연한 수순이며,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결과이다.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 등은 중국 내부적으로 내재된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꾸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부

로 보인다. 한국에서 일부는 중국의 전문성과 공평성을 의심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불가피한 정책 방향이다. 한국이나 일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국이 친특허정책으로 전환한 시기가 제조업의 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부터였으며 일본은 2000년부터 한국 등에게 제품 경쟁력이 문제되는 시점에서 지식재산 강국을 추진하였고 한국도 2010년부터 지식재산기본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립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소송제도 강화는 사회주의 틀 안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이며, 정상적인 시도이다. 소송제도의 개편 등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반대의 입장에서 중국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개선으로 외국인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 외국인의 승소율, 법정 배상금 등은 외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⁹³⁾ 즉 2000년대 이후 중국 법원은 내외국인의 차별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 이후 지역별 판단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더욱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93)

〈중국 IP 소송에서 내외국인 소송의 승소율 및 배상금 비교〉

출처: CIELA(China IP Litigation Analysis), <https://ciela.cn> 자료 인용.



제4장 중국 주요 성(省)별 지식재산 정책

제1절 개관

제2절 지역별 지식재산권 정책

제3절 소결

KIP

KIP

▶▶ 제1절

개관

중국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중앙정부의 거시적 정책결정과 지방정부의 지역특색을 반영한 미시적 운영방안 결정 및 집행이 공존하여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중앙정부가 승인한 정책과 계획들이 정부기구들을 통하여 이행됨으로써 각급 정부 단위에 대한 통제와 지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⁹⁴⁾ 그렇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지방정부제도는 국가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방면에서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자신의 이익실현과 권력지향을 우선하였던 점이 국가경제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배경이 있다. 즉, 중국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 차원의 지방분권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하에 지방정부와 생산단위에 더 많은 정책결정권을 부여하고, 지방정부, 기업, 노동자 개인에게 더욱 많은 이익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중앙과 지방 간 수입과 지출의 명확한 구분, 정부 단위별 재정 책임 완수”의 실행을 통해 지방의 재정자주권이 확보되었고, 재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통일과 분열을 반복해왔다. 거대한 영토를 통하기 위해 지역별 권력의 분산은 필연적이었으며, 거대한 영토와 분할된 행정체제 하에서 국민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는 지방 권력일 수밖에 없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는 70년대의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적 분권화’ 경험을 통해 중국식 분권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개혁개방 이후 재정 분권화 과정 등을 통한 시장화 개혁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권한, 특히 경제적 권한이 급격히 확대되어 온 것이다. 중국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요약하면 중앙의 정책 집행에도 지방정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므로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는 일방적인 것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지방 분권화된 경제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특유의 중앙-지방 관계를 ‘중국식 연방주의(Chinese Style Federalism)’라는 개념으로 묘사하기도 한다.⁹⁵⁾ ‘중국식 연방주의’는 사실상 경제적 분권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나아가 개혁개방 정책 선언 이후 중국의 지방정부의 자율적 행정권이 크게 확대되어 사실상 자치적인 양상을 띠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행정 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⁹⁶⁾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분권 체제가 중앙의 통치 권력을 지방 자치단위에

94) 박우서 외, 중국지방정부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3, p. 42.

95) Gabriella Montino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 *World Politics* 48(1) 1996, pp50-81; Yuanzheng Cao,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From federalism, chinese style to privatization, Chinese style”, *Economics of Transition*, 7(1) 1999, pp. 103-131.

96) 경기개발연구원, 한·중·일 지방행정시스템 비교, 2010. 1., pp. 20-25.

이양하는 ‘자치적 분권’이 아니고 중앙 행정 권력을 지방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형태의 ‘행정적’ 분권에 가깝지만, 지방정부는 인사, 교육, 경찰 등 행정부분에서 자율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국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한은 실질적으로 강력하며,⁹⁷⁾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억제하기 위해 거시적인 경제조정 및 규제조치를 실시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간 경쟁은 결국 지역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유인이 제공된 개혁개방 이후의 분권화 체제, 즉 ‘중국식 연방주의’하에서는 각 지방정부와 관료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역에서 시장화 개혁을 실험하고 지역 산업의 성장과 지역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나서게 되었고 각 지방정부가 사실상 기업가가 되어 지방기업 경영을 주도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 기업가주의(local state entrepreneurship)’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중국 특유의 현상이다.⁹⁸⁾ 지방정부는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경제 성장에 사활을 걸게 되었고 각급 지방정부가 하나의 독립된 경영체로 심화된 시장경쟁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이다. 각 지역은 필히 경제발전을 가속화하여야 했고, 기업과 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성장과 재정수입 증가를 실현해야 했다.⁹⁹⁾ 지방정부의 도시 발전 전략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즉 최근 중국 지방정부는 도시 거버넌스 구축에서 기업적 형태를 도모한다든지 아예 ‘기업형 도시’를 추진하는 등 도시 발전 전략에서 기업가주의적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의 형태는 성(省)·시(市)→구(区)→현(县) 단위에서 그대로 구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은 성·시의 지식산업권국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중앙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실시한다. 최근에는 중앙정부는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는 ‘방관복(放管服)’ 개혁의 심화실시를 추진하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추세이다.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무원은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을 2015년 12월 발표하였다. 이어 2016년 7월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의견’의 중점업무 분담 방안을 발표하여,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는 조직을 강화하고 책임을 다하여, 실제상황을 반영한 실시방안과 관련정책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즉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의견’은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권 강성(强省), 강시(强市)를 육성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개별 지방정부에서는 지

97) 그러나 중국에는 지방정부의 중앙 정책집행 과정에서 ‘상부에 정책이 있다면, 하부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对策)’는 유행어처럼 일상적인 정책집행의 왜곡 현상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즉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정책을 집행할 경우 지방정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정책집행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집행 왜곡 현상으로는 실제 정책 집행자인 지방정부가 지방 관료가 표면적으로는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 상부의 정책과 위배되는 실시방안을 제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의 정책 가운데 자신의 조직에게 유리한 내용만 선택적으로 집행하는 경우, 또는 중앙의 정책을 상징적인 차원에서만 집행하는 경우 그리고 중앙의 정책에 더해 부가적인 내용을 더해 본질을 흐리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98) Jean Oi, “Private and local state entrepreneurship: The Shandong case,” paper presented at the 44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sian Studies, 2-5 April, 1992, Washington, D.C.

99) 채욱 외,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p.160-163.

식재산권 강국 건설 의견의 구조에 의하여 성별 특색에 적합한 지식재산권 시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2017년부터 중국의 32개 지방 지식산업국은 연간 지식재산권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지식재산권전략 실시 및 강국 건설 업무요점’¹⁰⁰⁾을 취합하여 발표한다. 2019년에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의견의 6개 추진과제에 대한 지역별 업무 및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이 지역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주요 지역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검토해본다.

¹⁰⁰⁾ 전국 32개 지방 지식산업국이 작성한 연간계획을 취합한 것임.

▶▶ 제2절

지역별 지식재산권 정책

I 지역별 경제 및 지식재산권 현황

2018년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31개 지역내총생산(GRDP) 상위 10개 지역은 광둥, 장쑤, 산둥, 저장, 허난, 쓰촨, 후베이, 후난, 허베이, 푸젠 순이다. 광둥성의 2019년 GRDP는 9조 7천 300억 위안으로 30년 연속 중국 내 최대 경제규모를 차지하였으며, 광둥, 장쑤, 산둥 세 지역의 지역 내 GRDP 규모는 2017년 이미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16위권 이내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로 성장하였다.¹⁰¹⁾

▶▶ 표 4-1 중국 지역내총생산(GRDP)

(단위: 억 위안)

지역	2018년 지역내총생산	순위	2017년 지역내총생산	GRDP 순위 증감
광둥	97,277.7	1	87,879.2	
장쑤	92,595.4	2	85,900	
산둥	76,469.7	3	72,678.1	
저장	56,197	4	51,768	
허난	48,055.8	5	44,988.1	
쓰촨	40,678.1	6	36,980.2	
후베이	39,399.5	7	36,522.9	
후난	36,425.7	8	34,590.5	
허베이	36,010.3	9	36,000	2단계 하락
푸젠	35,804	10	32,298.2	
상하이	32,679.8	11	30,133.8	
베이징	30,320	12	28,000.4	
안후이	30,006.8	13	27,518.7	
랴오닝	25,315.4	14	23,945	
산시(섬서)	24,438.3	15	21,989.8	
장시	21,984.8	16	20,818.5	1단계 상승

¹⁰¹⁾ KIEP, 중국의 주요 지역별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2018. 4.), p. 6.

지역	2018년 지역내총생산	순위	2017년 지역내총생산	GRDP 순위 증감
충칭	20,353.1	17	19,500.2	3단계 상승
광시	20,352.5	18	20,936.2	
톈진	18,809.6	19	18,595.3	
윈난	17,881.1	20	-	3단계 상승
내몽고	17,289.2	21	-	5단계 하락
산시(산서)	16,818.1	22	14,973.5	2단계 상승
헤이룽장	16,361.6	23	16,199.9	2단계 하락
지린	15,074.6	24	15,288.9	2단계 하락
구이저우	14,806.4	25	13,540.8	
신장	12,199	26	10,920	
간쑤	8,246.1	27	7,677	
하이난	4,832	28	4,462.5	
닝샤	3,705.1	29	3,453.9	
칭하이	2,865.2	30	2,642.8	
티베트	1,477.6	31	1,310.6	

출처: 중국 국가통계국

최근 중국 경제축이 북방¹⁰²⁾에서 남방¹⁰³⁾으로 옮겨가고 있다.¹⁰⁴⁾ 전통산업과 국유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북방지역의 경기는 둔화하는 한편 혁신산업과 민간기업 주도의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남방지역은 경제가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2000년에서 2018년 사이 남쪽 지역의 GDP 합계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2%에서 61.5%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북방에서의 GDP 합계 비중은 41.8%에서 38.5%로 하락하였다.¹⁰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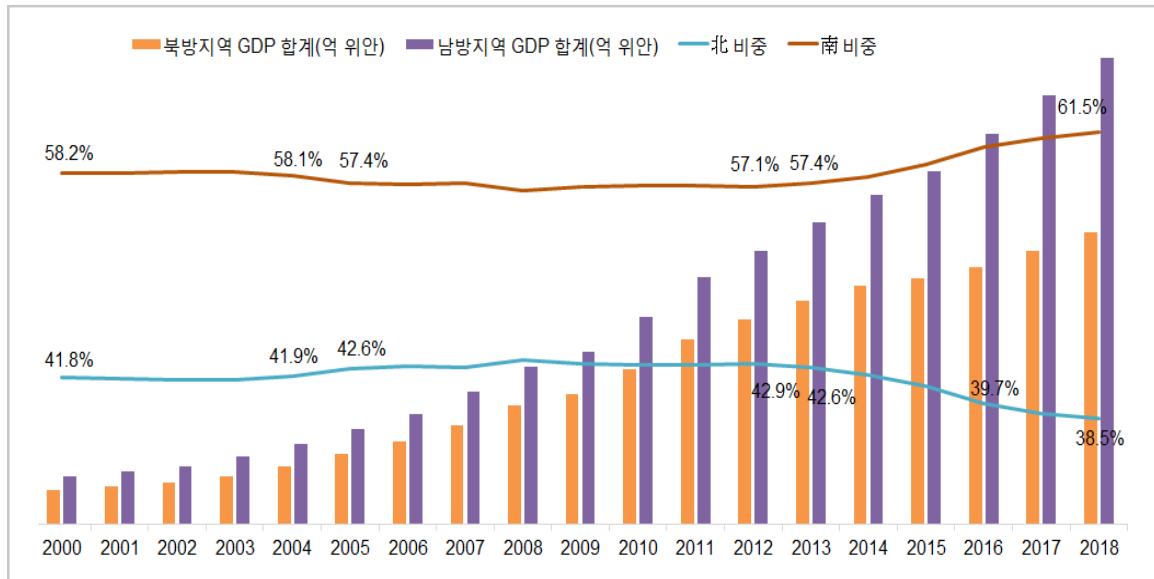
102)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허베이, 베이징, 톈진, 네이멍구, 신장, 간쑤, 닝샤, 산시(山西), 산시(陝西), 칭하이, 산둥, 허난

103) 장쑤, 저장, 상하이, 안후이, 후베이, 후난, 장시, 쓰촨, 충칭, 구이저우, 윈난, 광시, 푸젠, 광둥, 하이난, 티베트

104) 기존 중국 지역별 경제격차는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동부·중부·서부·동북지역으로 구분했으나 최근 서부의 쓰촨, 중부의 후베이 등 지역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남·북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나타남.

105) 김성애 중국 베이징 무역관, '中 경제, 南은 뜨고 北은 진다', 2019. 6. 18.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75620>.

▶▶▶ 그림 4-1 중국 남·북방 GDP 합계 및 비중



출처: 코트라

코트리에 따르면 이러한 남북 경제의 격차 확대는 양 지역의 산업구조에서 기인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면서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산업 클러스터가 남부지역에 조성되며 경제 활력이 제고되고 있다.

경제축의 이동현상은 중국 지역별 지식재산 수준의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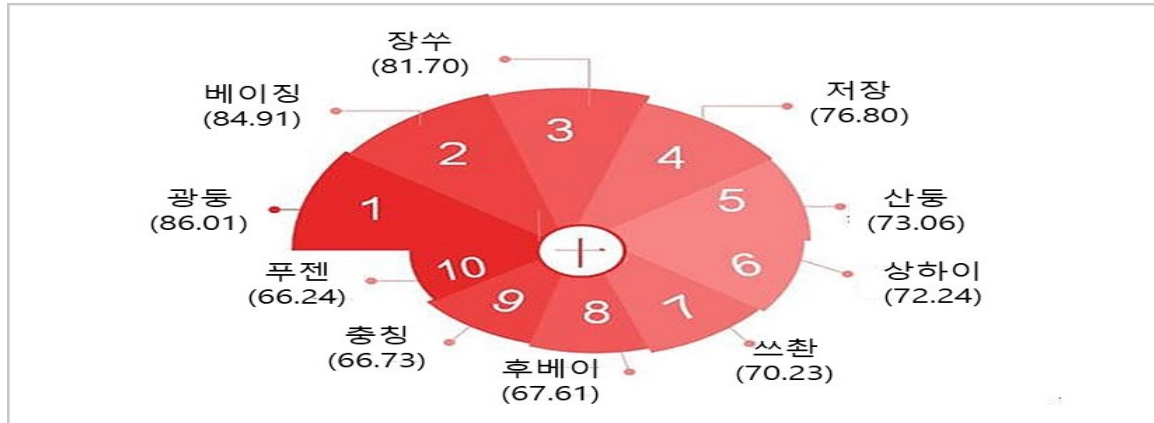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매년 중국 전 지역의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을 조사·분석한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 평가보고서(年中国知识产权发展状况评价报告)’를 발표해왔다.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환경의 4개 분야에 대한 전국 및 각 성(省)급 지역의 발전 현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2019년 6월 24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개 지역은 광둥성, 장쑤성, 베이징, 상하이시, 산둥성, 저장성, 안후이성, 후베이성, 쓰촨성, 랴오닝 순이다. 상위 10위 지역에는 베이징시, 랴오닝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방지역이며, 남방지역에 속하는 장쑤, 산둥, 후베이성의 순위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 표 4-2 중국 지역별 지식재산권 발전 종합능력 평가결과

지역	2018 순위	2017 순위
광둥	1	1
장쑤	2	4
베이징	3	2
상하이	4	3
산둥	5	6
저장	6	5
안후이	7	7
후베이	8	10
쓰촨	9	8
랴오닝	10	11
푸젠	11	9
산시(섬서)	12	13
텐진	13	12
후난	14	14
충칭	15	16
허난	16	15
윈난	17	17
지린	18	19
허베이	19	18
헤이룽장	20	20
장시	21	22
광시	22	21
구이저우	23	23
간쑤	24	25
내몽고	25	27
신장	26	24
산시(산서)	27	26
닝샤	28	28
하이난	29	29
칭하이	30	30
티베트	31	31

또한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은 매년 중국 전 지역의 지식재산권 실력을 분석한 ‘전국 특허실력 현황 보고서(全国专利实力状况报告)’를 발표한다. 2019년 5월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 상위 10개 지역은 광둥성, 베이징시, 장쑤성, 저장성, 산둥성, 상하이시, 쓰촨성, 후베이성, 충칭시, 푸젠시 순이다. 동 보고서상 상위 10위 지역 중 북방지역은 베이징만 포함되었다.

▶▶ 그림 4-2 2018년 전국 특허 실력 현황 상위 10개



한편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 산하의 지식산업출판사(知识产权出版社)가 베이징 글로브로 로펌(Globe-law lawfirm)과 공동으로 2010년부터 발행하는 중국 지식재산권 지수(中国知识产权指数)에 따르면, 2018년 지식재산권 종합지수 상위 10개 지역은 베이징, 광둥성, 장쑤성, 상하이, 저장성, 산둥성, 안후이, 톈진, 후베이, 충칭 순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베이징시가 연속하여 1위를 기록하였지만 2위에서 5위 지역은 상하이, 광둥성, 장쑤성, 저장성의 남방지역이 차지하고 있고, 장쑤성과 광둥성의 순위가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4-3 중국 지식재산권 지수 상위 10위(2010~2018년)

순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베이징
2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장쑤성	장쑤성	장쑤성	장쑤성	광둥성
3	광둥성	광둥성	광둥성	장쑤성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광둥성	장쑤성
4	장쑤성	장쑤성	장쑤성	광둥성	광둥성	광둥성	광둥성	상하이	상하이
5	저장성	저장성	저장성	저장성	저장성	저장성	저장성	저장성	저장성
6	톈진	산둥성	산둥성	산둥성	톈진	톈진	산둥성	산둥성	산둥성
7	산둥성	톈진	톈진	톈진	산둥	산둥	톈진	톈진	안후이
8	랴오닝	푸젠	랴오닝	랴오닝	랴오닝	푸젠	충칭	충칭	톈진
9	충칭	랴오닝	푸젠	푸젠	푸젠	충칭	푸젠	안후이	후베이
10	푸젠	후난	충칭	충칭	충칭	안후이	안후이	후베이	충칭

위 보고서들은 각자 다른 방식을 지식재산권 발전 상황을 측정하고 있으나, 상위를 차지하는 지역은 대체로 유사하다. 단 지역별 총생산(GRDP)과 비교할 때에 경제규모와 지식재산권 발전 상황이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다. 지식재산권 발전 상위 지역인 베이징과 상하이에는 최근의 경제 발전 속도는 더디지만 각각 오랫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중앙정부 정책을 시범 실시하는 등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영향을 강력히 받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업무에 있어서는 경제발전도에 비하여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남북 경제상황에 비추어보면 북부지역은 베이징시와 허베이성 등을 제외하고는 경제상황과 지식재산권 발전상황은 대부분 하위에 분포하고, 광둥성, 저장성 등 남부지역은 경제규모와 지식재산권 발전이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하에서는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각 지방 지식재산권이 취한 발전전략이 서로 상이했음에 염두하여 주목할 만한 지방정부의 지식재산권 업무 모델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지식재산권 발전 조치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중국 국무원의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은 ①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개혁 추진, ②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실시, ③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촉진, ④ 중점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 배치 및 리스크 관리, ⑤ 지식재산권 대외협력 강화, ⑥ 조직 실시 및 정책 보장 강화의 6대 추진과제와 29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추진계획을 매년 발표한다. 2019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추진계획에서는 ① 지식재산권 분야 개혁 심화, ②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③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촉진, ④ 지식재산권 국제 교류협력 강화, ⑤ 조직 실시 및 보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2019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 추진계획도 2015년 의견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각 지방 정부는 추진계획에 근거한 지역 지식재산권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하에서는 지식재산권 발전상황 상위 지역인 광둥성, 베이징시, 저장성, 산둥성과 중위지역인 윈난성을 선택하여 '지방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및 강국 건설 업무요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 광둥성

1. 개요

광둥성은 인구 약 13,461만 명, 면적 179,700km²의 중국 제3의 도시이고, 성도는 광저우시이다. 광둥성은 북동쪽으로 푸젠성(福建省), 북쪽으로 장시성(江西省)과 후난성(湖南省), 남쪽으로 홍콩과 마카오와 접하고 있으며, 중국 남해와 근접한 성(省)으로 4,310km의 해안선을 끼고 있어

남쪽지방의 관문이자 수륙교통의 요충지이며 화남(华南, 화남) 지방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다.¹⁰⁶⁾ 광둥성에는 광저우시 외에도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등 경제특구를 포함하며, 이 지역들을 기반으로 개혁, 개방의 전초지로 중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통적으로 기술도입의 관문으로 핸드폰, 컴퓨터 등 중국의 ICT 산업을 이끌며 지난 30년간 지역내총생산(GRDP)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광둥성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산짜이(산적) 문화, 베끼기의 본고장처럼 불리기도 했는데 당시에 조성된 인프라와 인력 유입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와 기술력(실행력)이 동시에 시행되는 창업의 메카로 변모하였다.

나아가 광둥성은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대외개방을 활발히 실천하고 있다. 특히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근접성 및 ‘해상 일대일로’ 추진의 전방기지로 활약한다. 2015년 광둥성은 중국 중앙정부의 지식재산권 강국 설립을 지원하는 시책을 발표하며, 유효 발명특허의 증가, 품질향상, 기업 및 중점산업의 특허관리, 거래확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광둥성은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정비해왔으며, 지식재산권 발전 순위 및 경제규모는 중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2019년 2월 국무원이 광둥성, 홍콩, 마카오 발전 계획요강을 발표한 이래, 5월에는 광둥성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의 정식운영을 개시하였으며, 2019년 8월 해상 실크로드 지식재산권 혁신과 협력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역할 수행에 집중한다.

2. 광둥성의 주요 지식재산 정책

(1) 관리체계의 개혁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는 지식재산권 관리체계의 제도 개혁을 실시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모델구역, 지식재산 비즈니스 발전 선행구역, 지식재산 선도형산업 고급발전 시범구역, 지식재산제도혁신 실천 탐색구역의 4대 구역 구성에 중점을 두고 중국-싱가포르 광저우 지식도시의 지식재산권 운용과 보호 종합개혁 시험을 심화한다.

특허를 통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은 광저우시의 특허 구역 배치 후속 작업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특허, 지역, 산업, 경제, 과학기술 등의 분야를 아우르는 작업팀을 만들고, 특허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정책 문서를 도출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또한 지식재산 자원의 분석, 혁신 자원과 산업 발전의 정합성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정책 시너지를 강화하고, 혁신 자원의 효과적인 결집을 유도한다. 전략적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의 특허 배치를 착실히 추진하고, 산업 발전과 혁신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 상표 개혁의 측면에서는 국가브

¹⁰⁶⁾ [네이버 지식백과] 광둥성 [广东省, Guǎngdōng Province](<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52689&cid=43792&categoryId=51740>, 2019. 11. 11., 최종접속).

랜드 혁신창업(광저우) 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광둥 자유무역구, 국가자유혁신시범구 등에서 시범적으로 상표 브랜드 서비스업 집합 시범구 건설을 실시한다. 즉 광둥성에 산업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브랜드가 있고 수익성이 있는 고품질의 하이엔드 기업들을 유치하며, 지식재산 빅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표 브랜드 포럼과 전시활동을 조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업무 서비스의 개선의 방향으로는 ‘원스톱’ 지식재산 서비스 사무소를 건설하고,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최적화하고, 제출서류를 줄이고, 전체 행정절차의 전자적 서비스와 전자증명서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2) 보호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일괄적으로 위조 특허, 위조 상표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 위조 특허 사건을 공개하고, 침해사실을 인정하여, 처분결정을 내린 특허침해사건을 처리하며, 검사를 독려하는 작업 수행한다. 또한 상표행정처벌사건에 대한 정보를 법에 따라 적시에 공시하게 하여 해당 정보가 신용포털에 실시간으로 게시되게 한다. 또한 성 시장감독관리국과 광둥성 지식재산권이 중국(광둥)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설립하고, 국가지식재산권의 지원을 받아 중국(선전)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국(불산)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등 새로운 지식재산권 권리보호지원센터의 건설과 심층 운영을 추진하며, 기업과 지방정부, 집행기관 간 인터넷 분야와 전자상거래 특허집행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인터넷 시장 감시 전문 단속활동인 ‘검망(劍網) 2019’ 행동을 전개하며, ‘인터넷 시장 감시와 서비스 시범구역’의 창설을 추진한다.

(주요성과)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전시회 중에 발생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모조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광둥성이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수단 수립을 앞장서서 모색하였다.

(구체적 방법)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개선하고, 《광둥성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지침(시행)》, 《광둥성 전시회 특허보호 방법》을 제정하여 발행하였다. 전시회 지식재산권 신고 사무소를 만들고, 전시회 신속 권리 보호 체계를 수립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였다. 전시회 특허 등록, 공시제도 및 신뢰준수서류 제도를 만들고, 참가 업체에게 참가 프로젝트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독려하였다. 해외의 권리자와 브랜드 기업의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전시회 후 사후 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관련 범위가 비교적 넓은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동의를 거친 후에 신속 처리 모드로 조치하였으며, 중대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건의 침해 혐의 제품에 대해서는 사법 및 행정 등 부문에 협조하여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수집하였다.

(기초적 성과) 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및 조치가 한층 더 표준화, 규범화되었고, 광둥성 주요 전시회의 지식재산권 사건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침해 혐의 기업 수도 점차 감소하였다. 광교회(广交会)¹⁰⁷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제119회 479건에서 제123회에서는 421건으로 점차 줄어들었고, 침해 혐의 기업도 326개에서 274개로 감소하였다.

광둥성 세관은 국무원이 발표한 ‘위조품 제조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행정처분 사건 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과 ‘행정허가 행정처벌 등 신용정보 공시업무에 관한 세관의 통지’를 적극 이행하고, 세관의 지적재산권을 규범화하여 광둥성 내 직속 세관들은 공식 포털사이트에 수출입 지식재산권 침해 화물 행정처벌 사건 정보공개 코너를 개설해 적발된 수출입 지식재산권 화물 행정처벌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세관과 광둥성 지식산업국이 체결한 ‘특허보호협력 협정’을 계속적으로 이행하여 수출입 구역에서 세관의 신청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자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위조품제조, 유통에 대해 엄벌한다.

집행 측면에서 광둥성 공안은 자발적인 첩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구역을 초월하여 전문적인 사건 클러스터 모델을 채택하여 전문가조직을 통한 사건해결을 도모한다. 나아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대량의 단서를 분석함으로써 정밀한 타격을 가능하게 하고 이슈가 되는 범죄와 중점사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특히 식품의약품, 농약, 화학비료 등 건강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광둥성 지식재산권 법원은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권 사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완성하여 재판의 품질과 효율을 높인다. 지식재산권 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1차적 방어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법원·지식재산 법원 등이 연합하여, 온라인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다변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모색한다.

(3) 창출 및 활용

지식재산권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광둥성 과학기술청은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의 혁신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조치’ 등에 따라 기업, 고등교육기관 등의 발명창조를 격려하고 직무발명 관리 제도수립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성과전환의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연구소)의 단독자본으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위탁하거나 조달하는 과학기술 성과물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매겨 투자하고, 과학기술자에 대한 지분 인센티브를 실시한다. 또한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국유지분 수익 분배 및 퇴출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심사하여 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교·과학연구기관이 기술개발, 기술컨설팅, 기술서비스 등의 활동을 하여 얻은 순수익은 과학기술 성과전환 소득과 동일하며, 자가 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과학기술청은 국유기업에게 산하 과학 연구원소의 지식재산권 처분과 수익 분배권을 부여하도록 장려하게 하고, 건전한 대학의 과학기술 성과이전을 지원하는 체계를 수립한다.

107) 광저우 중국 수출입 박람회(Canton Fair)의 출입말.

성 지식재산 거래 운영기관 도입 프로그램과 지식재산 거래 운영기관 육성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민영화, 시장화 지식재산 운영기관 발전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중국(남부) 지식재산권 운영 센터, 광저우 지식재산권 거래 센터, 횡친(橫琴) 국제 지식재산 거래 센터의 배치와 높은 수준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지식재산 거래 운영 플랫폼의 건설을 지도한다. 지식재산 금융의 혁신적인 공정을 실시하여, 해당 기관이 지식재산권 질권담보 상품이나 프로젝트를 혁신하도록 장려하고, 보험 기관에 지식재산의 새로운 보험 종류를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특히 광둥성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문서의 작성을 검토해야 한다.

(주요성과) 지식재산권 운영과 보호 업무 중 존재하는 시스템적인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이 혁신의 동기를 부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여, '혁신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체인을 연결시키고, 혁신의 성과를 방출하고, 대중의 창업 및 혁신의 번창'을 촉진하였다.

(구체적 방법) 광둥성은 중국-싱가포르 광저우 지식도시(中新广州知识城)에 구급(区级) 지식재산권을 설립하고 지식도시의 상표와 특수표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특허, 상표, 저작권 행정 관리의 통일적 관리를 실현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미옥(美玉) 10조' 정책을 제정하고 반포하고, 《광저우 개발구 황푸구 지식재산권 특별 자금 관리 방법》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운영의 원스톱 지원을 최초로 도입하여 양질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이 단체로 개발구에 입주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 및 운영 센터를 설립하여 심사협력 광동 센터, 광저우 지식재산법원 등 국가 및 성급 지식재산권 중점 기구를 집결시켜 우수한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기구를 유입하였다. 현재, 중국-싱가포르 광저우 지식도시의 지식재산권 운영 및 보호 종합 개혁 실험은 전국 최초이며, 유일하게 국무원 기준을 거친 지식재산권 개혁을 시험하는 것이다.

(기초적 성과) 2년 동안 광저우 개발구는 '즈룽후이(知融汇,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매칭회)' 브랜드 활동을 창설하였으며, 특허권 담보 융자 금액은 광저우시에서 1위를 차지하였고 그 금액은 4.7억 위안(광저우시의 40% 이상을 차지)에 달한다. 1,000만 위안 규모의 구급(区级)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리스크 보상 캐시풀링(cashpooling)을 출시하였고, 중국(광둥)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를 설립하여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의약산업을 위한 신속한 협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저우 지식재산권 법원의 사건 처리 건수는 2만 건에 달하고 종결 비율은 85%를 넘어서, 지식재산권 운영 및 보호의 귀감이 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창출 부분에서는 광둥성 중점산업 관련 상표와 브랜드, 문화창의 상품의 개발을 증대하고, 농업 관련 지리적 표시 증대를 위해 정책 지원과 재정 확보에 힘써야 한다.

광둥성을 중심으로 홍콩, 마카오와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재산권 연맹설립을 추진한다. 광둥성의 전략적 신흥산업, 현대 농업지적재산권연구와 발전센터가 특허내비게이션(안내) 업무의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지도하고, 중점산업 분야 특허 안내센터 건립 배치를 추진하며, 국가특허 내비게이션 준법 (산업) 연구센터 설립을 신고한다. 또한 '광둥성 전략적 신흥산업 특허내비게이션 프로젝트'와 '광둥성 중점산업 및 기업특허내비게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계획별 특허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실시 지도원칙》과 《기업 운영 분류에 따른 특허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실시 지도원칙》을 보급한다. 《광둥성 특허내비게이션 사업 안내서》를 보급한다.

(4) 국제화

국제 수준에 맞도록 지식재산권을 승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국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지리적 표시 보호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지리적 표시 상품의 국제화 발전을 위하여 특산 농산품을 중점 육성한다. 지리적 표시 제품 추천 신고 작업을 잘 하고, 지리적 표시 제품의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기술혁신지원센터(TISCs)를 광둥에 유치하여 국가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 기지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 지식재산권 제휴 브랜드 창출 활동을 지속한다. 광둥 특허대리협회의 “광둥성 지식재산권 실무 세미나”의 해외 개최를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 세미나, 국제 지식재산제도 순회 강연 활동, 지식재산 좌담 교류 활동 등을 실시한다.

성 지식재산권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성 정부의 중대 의사결정 배치와 광둥성의 지식 재산 중점 사업 맞춤형·타당성 있는 자문의견과 정책제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광둥성의 건설 가속화를 위해 선도적인 지식재산의 강성을 실현한다.

이 외에도 주강삼각주와 홍콩 마카오 간 지식재산권 협력을 심화하고, 광둥성과 홍콩 지역의 지식재산권 협력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5) 조직적 실시와 정책 보장

지식재산권 강성(强省), 강시(强市), 강기업(强企业)을 만든다. 광둥성 시장감독관리국(지식재산권 국)은 선도적으로 지식재산권 강성 건설의 연간 중점 업무의 정착을 조직적으로 추진한다. 주강삼각지 지식재산권 강시를 건설하고, 광둥성 동쪽의 각 시는 지역산업 특성을 결합하여 이색적인 지식재산권 강시 건설을 추진한다. 국가 지식재산권 강현(强县)의 업무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지식재산권 강현을 육성한다. 또한 지역의 지식재산권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능력을 향상시킨다.

지식재산권 정책 실시를 위해 시 예산(약 2.5억 위안)을 배정하고, 각종의 지식재산권 계획이 문제없이 잘 실현될 수 있게 한다. 각 부분의 혁신 인재에게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하고, 광둥성 각 지역에 지식재산권 고급인재를 유치한다.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인식제고 및 공익광고 활동을 전개하고, 지식재산권 법률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광둥성 내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를 확산한다.

III 베이징시

1. 개요

베이징시는 인구 약 2,171만 명, 면적 16,412km²의 중국 수도이다. 베이징시는 직할시이며, 국가중심도시, 국제도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국 정치, 문화, 국제교류, 과학기술혁신의 중심지이다. 지리적으로는 주변의 톈진시와 허베이성에 인접하여,¹⁰⁸⁾ 지역의 광역 발전을 추진한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베이징시는 중앙정부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영향을 가장 먼저 받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선도적인 조치들을 발표한다. 또한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지식재산권 심판 소송의 1심을 담당하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에 대한 최종심은 베이징에 위치한 최고 인민법원이 판단하는 등 베이징시는 지식재산권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역이다.

또한 베이징시는 중국의 우수대학 및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집중된 창업투자의 중심지이다. 특히 중관촌(中关村) 지역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바이두(Baidu), 샤오미 등이 시작된 곳으로 '중국의 실리콘벨리'로 지칭되기도 한다. 중관촌은 1980년대 전자상가에서 출발해 현재는 ICT, 바이오, 신소재, 신에너지, 항공우주 등 첨단 분야를 아우르며 2만여 개의 크고 작은 기술기업이 포진해 있다. 현재는 중관촌 창업거리를 중심으로 연간 6천 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기업들이 활동한다. 이에 따라 베이징시의 창업생태계는 대학, 과학 연구소, 첨단기술 인재, 투자자 및 베이징시 정부의 금융지원, 지적권 보호 정책을 연결한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 특허심사협력센터는 지식재산권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하여 IP를 통한 베이징시 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 관리 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핵심기술 발굴부터 상업화까지의 전 과정에 서비스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스타트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한다.

또한 베이징시 정부는 2018년 11월, '베이징시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행동계획(2018년-2020년)(北京市进一步优化营商环境行动计划(2018年—2020年))'을 발표한 바 있다. 동 계획은 첫째 공평한 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고효율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시스템을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감독 및 집행 보호를 강화하며, 행정집행기관의 이송 및 지식재산권법원의 형사사건 수리 역량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가를 높이는 것을 추진한다. 둘째 중국(베이징)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조속히 설립하여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 등 산업 분야의 특허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베이징시의 지식재산권 혁신·창업기지 인정 및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며 신흥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촉구

¹⁰⁸⁾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을 묶어서 '징진지'라고 일컫음.

한다. 넷째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담보·유통 체계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가치 분석 및 표준화를 추진한다. 지식재산권 담보용자 서비스체제를 최적화하고, 중관촌(中关村) 국가자주혁신시범구에서 특히 담보용자 보증보험을 추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다원화 해결 체계를 완비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 및 신속 조정제도를 수립하며, 각종 업계협회, 조정센터, 중개서비스기관의 역할 강화를 요구한다.

이와 같이 베이징시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고유의 정책을 발굴하여 실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19년 베이징시의 지식재산권 주요 정책을 살펴본다.

2. 베이징시의 주요 지식재산 정책

(1) 관리체계의 개혁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과 베이징시 과학기술위원회는 지역에 최적화된 지식재산권 정책을 시행 하도록 조정한다.

먼저 주요 과학기술단지의 지식재산권 발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평가하여,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와 경제 데이터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식재산 축진단지의 혁신과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각 단지와 과학 타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의 공통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을 위한 플랫폼 구축·실현을 실시하고 첨단기술기업을 위한 전문 서비스 기관 지원을 확대한다.

중관촌 지역의 IP 서비스 기업을 유치하고 중관촌 기업들의 해외 특허 창출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국(중관촌)의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는 바이오의약 및 신소재 분야 기업의 특허예심 서비스를 추진하여 해당 기술의 특허 심사주기를 단축한다.

징진지 저작권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설립하여 저작권 공동시장을 구축하고, 징진지 협동 공동체 건설을 통해 국가실험실,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등의 과학기술 플랫폼을 육성한다. 또한 혁신 플랫폼으로의 자원집중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여 베이징 고등교육기관의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민간문예, 전통지식 등의 개발이용을 계속 강화하고 문화 창달, 디자인 서비스와 관련 산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의 지식재산 서비스 플랫폼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보호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법 집행에 관한 사건의 정보 공개에 관한 통지’에 따라 특허 침해 처리 결정과 허위 특허 처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적시에 공시한다. 또한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보호센터가 ‘빠른 심사, 빠른 권리, 빠른 권리’가 고도의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촉진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 특허의 빠른 심사 및 확약을 추진하고(질적 향상)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협력강화), 특허 내비게이션 산업의 발전 효과를 부각(정확한 위치선정)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베이징시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식재산권(특허) 보호 신속처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불만이 제기되었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국으로의 이관 처리된 특허 침해 분쟁 사건은 일반 절차의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사안의 “단순화 및 전환”을 계속 추진하고, 단순 사례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전형적인 사례가 지침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렵고 복잡한 사례에 대한 “선제적 판단”을 구현하려고 노력한다.

세관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다음과 같다. 수입 및 수출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례의 단서의 연결고리를 발견해 나가며 사건의 영향력을 확대하며 전형적인 사례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한다. 중국의 독자적인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계속 확대하고, ‘룽텡(龙腾)¹⁰⁹⁾ 행동의 성공적인 경험을 총결산하며, 중점보호기업 리스트를 더욱 확장한다.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협력을 원활히 하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징진지 3지역의 세관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건공조 체계를 구성하고, 정보교환, 위험관리 조치를 더욱 밀접하게 하여 전국 세관에 널리 보급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마련한다.

(주요성과) 수출입 무역 지식재산권 보호 강도를 높이고,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의 종합 능력을 한층 더 제고하여 양호한 수출입 무역 질서를 유지하였다.

(구체적 방법) ‘룽저우(龙舟)’, ‘칭핑(清风)’, ‘중미 지식재산권 연합 집행’, ‘룽텡(龙腾)’ 등의 전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안전과 공공 안전 등을 해치는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였다.

징진지(京津冀) 세 지역의 법 집행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세 지역의 세관 지식재산권 행정 집행을 구축하였으며 상호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정한 위험분석 및 공동연구를 전개하였으며 침해 제품의 추세와 특징을 분석하고 총정리 하여 세관에서의 공동 방어 및 엄격한 통제 태세를 구축하였다.

(기초적 성과) 법 집행을 통한 보호 강도가 현저하게 강화되었고, 2018년 10월 말까지 베이징 세관에서 수사하여 압수한 침해사건은 3.18만 건으로, 침해 상품 수량은 약 95.1만 건, 관련 금액은 약 1.53억 위안, 40여 개 국가와 지역이 연관되어 있다. 보호 대상 브랜드는 나이키(NIKE), 아디다스(ADIDAS), 애플(APPLE), 레이벤(RAYBAN) 등 60여 개 브랜드로, 수출입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였다.

¹⁰⁹⁾ 분기마다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우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활동을 말함.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적재산권(특허) 보호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특허사건의 온라인 오프라인 상호연결을 모색하고, 교육 홍보 강화 등에 대한 연례작업을 실시한다. 출판자협회 등 권리자 협회와의 제휴를 강화하여, 인터넷 기업에 의한 조사·연구·기술규제·저작권 분야의 법집행을 통해 보호를 추진한다.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련된 정책은 다음과 같다. 베이징시 법원은 주요 사건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사건이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베이징시 고등법원과 함께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 집행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요 사례 보고 체계를 구현해야 한다. 또한 법원 및 대리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여 판결의 기준을 더욱 통일시켜야 한다. 상표 사무소, 상표 심사 및 판결위원회,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심판부와의 의사소통 및 교류를 강화하여 시범업무에서 발생하는 현저한 문제에 대한 견해를 충분히 교환하고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한다. 또한 검찰은 지식재산 범죄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전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한편으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재산형을 더욱 활용할 것을 건의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게 하여 범죄 억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지역 간 및 전체적 형벌을 촉진한다. 시 공안(경찰)은 경제범죄정보 지도 센터 건설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위조방지 추적기술 및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과의 협력 등 중점사업의 건설을 추진하며, 위협조사와 공동처치를 강화하며, 적시에 조직하여 전문적인 타격 행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재판 중심의 사법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려운 사안 및 돌출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법률과의 조정 및 협의를 강화한다. 사건의 본질, 처리 절차, 감정 및 관할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당국에 주요 사건을 사전에 개입시키고, 법률적용 및 증거표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과 집행기관 및 베이징 세관은 공안, 시장감독총국 및 담배공사와 같은 국내 행정법 집행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행정과 사법을 서로 연결하는데 필요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며,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사회감독 분야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신용사회 건설을 위해 위법 행위자에 대한 신용제도를 구축하여, 국가지식재산권국의 “법 집행 사건에 관한 특정 정보 공개에 관한 통지”에 따라, 특허 침해 결정을 내린 경우와 위조된 형벌 결정을 적시에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표준화 시장의 육성, 식별 및 건설을 수행하고, 표준화 시장의 설립과 관리를 강화하며, 상품 유통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기적 매커니즘의 확립을 촉진해야 한다. 사회 감독 시스템을 구성하여 산업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형성하여 지식재산권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대중 참여를 증진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인터넷 부분에서의 단속을 위해 ‘검망 특별행동’¹¹⁰⁾ 실시, 주요 사건 조사 및 처리, 법 집행 및 감독 협력 강화, 온라인 혁신 모니터링 강화, 추적 및 정보 공유 강화, 온라인

110) 인터넷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인터넷 감시활동.

및 오프라인 통합 관리를 준수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 핫라인(12330)을 활용하고,¹¹¹⁾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을 50회 이상 실시하며, 100개 이상의 소기업 및 대기업에 권리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베이징에서 특징적으로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은 다음과 같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베이징 올림픽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분쟁의 다원적 해결 작업을 심화시키고, 특히 생물학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1~2명으로 구성된 전문 지식재산권 분쟁을 담당하는 중재조직을 수립한다. 또한 중재 및 소송의 플랫폼에서의 소송 자원의 통합을 강화하고 연계방식을 개선한다. 징진지 연동 서비스 체계를 심도있게 정착시켜, 징진지의 협동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허베이성 지식재산권 유지지원센터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2022년 동계올림픽과 빙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12330 워크스테이션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징진지 협력의 지침을 강화하고, 정밀하게 서비스 역량을 향상시키며, 3개 지역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서비스 자원 공유 및 권리 보호, 원조, 이중 창출 서비스 및 지역 간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와 같은 결과 공유를 촉진한다. 지식재산 사건 관할 이의제기를 위한 녹색통로를 구축하고, 고등법원 법정, 심사처, 기술처 등과의 소통 조화를 통해 관할 이의 사건 심리기간을 단축하며, 관련 사건의 재판 효율성을 높인다. 육종 단위 및 종자 산업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 및 수준을 향상시키고, 임업식물의 품종법 집행 보호 강화, 품질검증 능력 강화 건설, 감식 수준 증대, 새로운 품종 식별을 위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침해 행위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한다.

(3) 창출 및 활용

지식재산권 활용 부분에 있어서 대학의 특허 운영 사무소 건설 촉진 및 특허 소득 분배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국유기업 산하 연구기관에 지식재산 처분과 소득 분배권을 부여하도록 장려하고, 홍보 및 훈련을 강화하여 베이징시 국유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시행하도록 안내한다. 보상 없이 특허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기관, 연구소 및 기타 기관의 직원과 대학생들에게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지식재산권 사업자 육성 강화, 특허 내비게이션 업무 체계 확립, 특허 관리 시스템 개선, 특허 운영 인력 육성, 운영 생태계 형성 등을 위하여 대학의 특허 운영 사무소를 지원한다.

한편, 베이징시는 지식재산권 투자 용자 상품의 혁신과 지식재산 증권화를 모색하여, 지식재산 신용보증 체계의 보완을 추진한다.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은 금융기관, 특허평가기관을 초청하여 특허 대출, 특허 가치평가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을 조직하여 현장상담을 진행한

111)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위조 상품 침해 신고전화인 12330은 2020년까지 12315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다. 또한 지식재산 증권화 사업 전개를 계속 지원하면서 지식재산 증권 할인에 대한 보상방법 등의 시책을 모색한다. 또한 중관춘에 지식재산 금융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고, 기업에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식재산 증권화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재산 담보용자 보험의 진흥 및 보급을 확대하고, 보증기관이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재산권 용자 지원을 확대하며, 지식재산권 용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기술이전기관에 정보, 인재, 인큐베이터 및 기술이전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방면에서 공동의 노력을 통해, 기술이전에 대한 수요를 통합하고 거래를 촉진하며 투자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학기술 성과이전 및 전환 서비스 시스템을 형성한다. 베이징 고등교육기관들은 기술 혁신을 위한 5-10개의 기술전환센터를 건설하고, 대학의 다양한 기술이전 및 혁신기관의 통합을 촉진한다. 또한 대학, 연구기관의 특허운영 사무실 건설을 추진하며, 베이징의 과학 및 기술 성과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조직을 모은다. 대학 및 과학 기술 연구소에 전문 서비스 기관을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평가, 운영 및 관리와 같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베이징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한다.

창출의 측면에서는 특허 품질 향상 사업 실시,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행위 심화, 특허 출원 정책 조정, 품질지도 강조를 위해 《베이징시의 특허 지원금 관리 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악의적 상표의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다른 상표 승인 및 확인된 사례를 통해 악의적인 등록자에 대한 심판 기준을 엄격히 파악한다. 또한 악의적인 등록상표를 등록한 대행사 및 에이전트를 공개하고 일반적인 사례 및 데모 사례를 게시한다. 또한 100년 기업(노포(老字号))을 위한 홍보 플랫폼을 만들어 베이징의 노포의 브랜드 영향력을 높이며, 노포의 제품 수출, 문화기술의 해외 전파와 역외 투자를 위한 전방위 서비스를 제공하며, 베이징의 노포 인지도와 시장경쟁력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에 관련된 베이징 고유의 혁신 업무는 다음과 같다. 베이징시 화이러우구(怀柔区)의 과학기술 전문연구단지 계획과 실행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식재산 서비스를 포함한 고도의 과학 기술 서비스 시스템의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 문화를 전달하는 문화상품의 설계 및 개발을 위해 국가 문화 제품의 디자인 및 개발과 저작권 보호 강화, 허가 증진, 거래 개선 및 강력한 기술 지원 등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중관춘 지식재산권 선도 기업 육성 계획을 시행하고, 선도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중국 출판 크리에이티브 산업단지는 지리적인 장점과 자원적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저작권 혁신, 저작권 표시, 저작권 평가 및 거래, 저작권 모니터링 및 권리 보호 및 저작권 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 혁신을 자본의 경제, 문화 및 과학 기술 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고 국가 문화 센터 건설을 촉진할 기회로 삼는다. 나아가 중국 전통의약·전통의학의 지식재산권 성과전환을 가속화한다. 전통 중의약의 독자적인 혁신 능력을 촉진하고, 베이징 중약의 지식재산권 성과의 산업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4) 서비스

중점산업 부분의 지식재산권 자원의 배치와 위험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베이징 서비스(北京服务)” 규범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베이징 서비스”를 충분히 실현하여 베이징이 세계 일류의 조화롭고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의 세분화된 분야와 접목시킨 특허내비게이션(안내)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특히 운영을 목적으로 한 지식재산 서비스 체인의 구축으로 베이징시의 첨단정밀산업의 혁신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을 뒷받침하고, 베이징 산업밀집지역에 IP 신속협동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빠른 예비심사 및 신속한 권리 취득을 보장한다.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은 해외출원을 준비하는 기업 지원을 위해 특허 보조금 정책을 개정하여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의 혁신 주체에 대해 보다 우수한 품질의 특허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한다. 또한 중관춘 기업을 위해 국제 특허 등록 정책 및 법률 서비스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 전문가풀을 조직한다. 수출 데이터 및 특허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허를 필요로 하는 외국 회사를 정확하게 찾고, 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 특허 목록을 나열하여 기업이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을 중관춘에 유치하여, 중관춘 지식재산권에 최적화된 사례를 수집하고 중관춘 지식재산 사업의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한다.

또한 새로운 형식의 공증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증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대학 및 기업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한다. 첨단 기술 기업, 중소기업 및 혁신 기업이 고품질의 전문적인 공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원스톱 증거채집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고, 각 공증 기관이 “공증 클라우드”에 의거해 손쉬운 증거 수집을 할 수 있게 한다. 공증 클라우드는 비밀보장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적이고 신속한 기술적 이점을 입증하여 전자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거 채취의 한계를 해결한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인 ‘천평련(天平链)’을 도입하는 것을 중요한 계기로 삼아, 각 공증기관과 인터넷 법원은 관련 업무의 연계와 융합을 지도하고, 기술자 선발과 교육을 강화하며, 소송의 안전을 보장하며, 선진적이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국제화

기업의 해외 진출과 지식재산 분석 평의 서비스 프로그램의 전개를 바탕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해외 교류·맞춤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 및 베이징시 상무국 등은 해외 권리 보호를 위해 해외권리보호의 전형적인 사례, 소송 맵(map), 서비스 기관 및 전문가를 포함하는 해외 권리 보호 상품을 구매한다. 해

외 지식재산권 지원 업무를 규범화하여 추진하기 위해 《베이징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및 권리보호 관리 방법》을 개정한다. 서비스 전문팀의 일대일 지도를 강화하고, 해외 권리보호의 대표적인 사례를 형성하여, 같은 유형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권리보호 경험을 제공한다.

외국 특허 출원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외국 특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중관춘 지역은 인공 지능, 반도체 집적회로, 생물 의약, 스마트 제조 및 신소재 산업의 핵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식재산권 전략 개발한다. 중국과 미국 간 무역분쟁의 추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지식재산권 및 무역 정책의 통합을 강화하며 상업 및 무역 분야의 지식재산권 개발 및 보호를 장려한다. 나아가 대외무역 제품 혁신과 브랜드 육성을 촉진하고 무역 마찰을 개선하며 공공 서비스 역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제협력 측면에서는 베이징시 지식재산권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센터의 건설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도시건설 및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운용 및 IP 인재육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심화한다. 또한 일대일로 국가 간 지식재산권 서비스 연합을 구축하고, 일대일로에 포함된 국가들의 지식재산권 사업 가이드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 해당 국가에게 양질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베이징시의 기업을 위한 해외 교류 기반을 마련한다.

(6) 조직적 실시와 정책 보장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 내부의 업무를 조정한다. 비즈니스 환경 조사와 투자 촉진 활동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기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를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베이징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한다.

베이징시의 지식재산권 인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 베이징시 지식재산권국은 베이징시의 수많은 인재들을 위해 지식재산 교육을 진행하여 IP 법률과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식재산 인재 양성 기지의 건설을 촉진하고 인력 육성을 추진한다. 한편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법원은 재판인력의 국제경험을 강화한다. 판사의 국제회의 참석, 해외 교육, 국제조직의 직무수행 등을 통해 국제지식재산권 보호 상황을 파악하고, 국제지식재산권 관리규칙 제정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홍보의 측면에서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웨이보 등을 통해 베이징 지식재산권국의 업무 활동을 공개하고, 베이징시민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전개한다. 한편 초중고생을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시절부터 “지식을 존중하고, 혁신을 숭상하며, 법을 수호”하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의 핵심으로 삼는다.

IV 저장성

1. 개관

저장성은 인구 약 5,590만 명, 면적 105,500km²의 중국 제3의 도시이고, 성도는 항저우시이다. 저장성은 창장경제벨트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후이(安徽), 장쑤(江苏), 상하이(上海) 등 지역과 함께 세계 6대 도시군 중 하나인 ‘창장삼각주도시군(长江三角洲城市群)’을 형성한다. 또한 저장성은 제3차 자유무역시범구로 중국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며,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뚜렷한 특색을 지닌 ‘저장 경제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저장성을 국가급 디지털 경제 시범구로 비준하였다. 저장성 항저우시는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탄생한 지역으로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저장성은 의류, 방직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지역으로 2000년대 초반 중국 제조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업과 스마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을 추진하였다. 2010년대부터는 정보화와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 기술을 접목시킨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지역으로 발전하였다. 저장성의 초기 인터넷 기업들은 비교적 정부의 간섭 없이 시장에 참여하고 상호 경쟁을 통해 발전 기반을 마련하였고, 저장성 정부가 알리바바를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민영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형성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기존의 저장성에 형성되어 있던 전문시장과 전자상거래를 결합하며 지역경제를 이끄는 주축이 되었다.¹¹²⁾

지식재산권 부분도 디지털 경제 발전과 맞물려 있다.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조품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항저우 미래과학기술단지에서 지식재산권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입주기업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저장성의 주요 지식재산 정책

(1) 관리체계의 개혁

지식재산권 관리체계의 개혁을 연구하여 “치밀하고, 강하고, 빠르고, 동등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원칙(严保护, 大保护, 快保护, 同保护)”을 실현한다. 특히, 브랜드, 상표 및 표준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과학기술 혁신 통계 평가 지표 체계에 포함시킨다. 지식재산권의 공공 서비스 능력을 향

112) 이한나, 저장성 디지털 경제의 발전 특징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11.

상시킨다. 국가와 성(省)급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집중 시범구 건설을 강화하고, 성급(省级)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집중 시범구가 6개 이상 선정되게 한다. 기존에 활용되던 지식재산권 지원 사무소 등을 통합하고 지식재산권 원스톱 통합 지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현급 행정구역의 지식재산의 업무 범위와 향상을 도모한다.

(2) 보호

지식재산권 행정 처벌 사건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장려한다. 행정 법집행 정보 및 지식재산 신용 기록을 개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한 행정 처벌 정보를 공개한다. 중국(저장성)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의 설립을 통해 정보 기술과 신에너지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닝보, 온주, 이우 지역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을 위한 제3자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한다. 저장성의 산업 및 경제 개발 모델에 부합하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IP 분쟁해결 방식을 모색한다.

세관 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기업의 수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룽텡(龙腾)”조치를 수행한다. 세관 및 특정 목표의 주요 영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박람회 등에 주재하는 등 서비스를 수행하고 알리바바(Alibaba) 및 넷이즈(Netease)와 같은 전자 상거래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경 간 전자 상거래에서 침해 통제를 증진한다.

행정집행의 강도를 강화한다.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괄적인 법집행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최적화 조치”를 제정하고, 각 성(도시, 지구)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에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가 적어도 1건이 되게 한다. 네트워크 침해와 네트워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저작권 침해 해적판 단속 및 위조품 제조 및 제15차 ‘검망(行动) 행동’ 사업을 전개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안(경찰)이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지식재산 권리 침해, 상업 비밀 침해, 중소기업 시장점유율의 심각한 변화, 지역의 고질적인 위조 범죄 등 네 가지 범죄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사법적 측면에서는 지식재산 재판의 강도를 높인다.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을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벌금 부과, 부당이익의 회복, 범죄 도구를 수집, 법에 따라 침해 제품을 파기하고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제적 권리를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보상을 강화하고, 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의 행정 집행을 감독하고 지원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행정 법집행과 형사, 사법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사건, 단서 정보 공유, 사건 단서의 쌍방향 교환, 중대 사안의 집중적인 재판 실시, 합동 법집행 등을 실시한다. 형사 체포·기소·법률감독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기타의 저장성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는 다음과 같다. 특허 침해, 법률 위반, 특허대리기관의 심각한 법률 위반, 특허대리인 자격위조, 비정상적인 특허 신청 및 허위 문서의 6가지 범주의 심각

한 위법행동을 한 자에 대하여 신용정보를 공개한다. 한편 저장성의 전통적인 우위 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용을 증대한다. 섬유, 의류, 날염, 가죽, 자동차 부품, 의약, 건재, 야금, 식품, 포장 등 특화된 강점 산업과 중점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운용 능력을 제고한다. 식물신품종의 보호를 강화하고 종자 생산 및 운영 면허를 엄격하게 검토한다. 새로운 종류의 임업식물에 대한 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각 지역의 다양한 종류의 임산물 권리자를 조사하고, 침해 단서 조사 등 업무를 지도하여 임업신품종권 보호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한다.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순회강연활동을 전개한다.

(3) 창출 및 활용 부분

혁신 성과와 지식재산 소득 분배 시스템을 개선한다. 《저장성 과학 기술 성과 변화 촉진 규정(浙江省促进科技成果转化条例)》의 이행을 촉진하여 지식의 가치를 높이고, 보다 유연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 대학, 연구 기관 및 국영 기업의 지식재산권의 사용권, 처분권 및 소득권의 개혁을 강화한다. 보상 없이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고등 교육 기관, 연구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직원 및 대학생들의 혁신 및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항저우시(杭州市)와 Ningbo시(宁波市)가 국가 지식재산권 운영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도록 안내하고, 첨단기술개발구, 경제개발구, 과학기술도시에 대해서는 지역의 핵심 산업이 지식재산권과 연계되도록 유도한다. 기업 및 기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이전을 장려한다. 기술이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저장성 기술시장규정을 개정한다. 저장성 지식재산권 교류 센터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대학 및 연구 기관의 건전한 지식재산권 이전 및 혁신 기관 설립을 촉진한다.

(주요성과) 고등교육기관 지식재산권 이전·전환 효율이 높지 않고, 사회 경제에 대한 공헌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 지식재산권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구체적 방법) 저장성 지식재산권 거래 센터는 고등교육기관 지식재산권 운영 및 서비스를 선도하였다. ① 고등교육기관 특허에 대해 등급을 나누어 분류하여 잠재적 의향이 있는 기업 및 구역을 발굴하고 시장 방향을 찾고, ② 자체적으로 설립한 거래 플랫폼 및 국제 기술 이전 네트워크에 의거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지식재산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③ 다른 유형의 과학기술형 기업과 그 수요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주주권 융자, 투융자 자문 등의 과학기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기술 거래 고문 서비스와 결합하여 지식재산권 프로젝트의 산업화 과정에 대한 자본+기술의 이중 지원을 제공하였다.

(기초적 성과) 2018년 7월까지 성사된 거래 총금액은 3.2억 위안이고, 고등교육기관의 과학기술 성과 327건의 거래가 성사되었고, 특하는 978건이며 특허 평균 거래 성사 단가는 33만 위안이다. 그중 양도는 202건, 거래 성사 금액은 1.2억 위안이고, 라이선스 계약 체결은 111건, 거래 성사 금액은 약 6,500만 위안이다. 가격을 책정하여 주식을 매입한 프로젝트는 14건이고 거래 성사 금액은 1.3억 위안을 달성하였다.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의 누적 금액은 8천만 위안에 달한다.

창출의 측면에서는 상표를 통한 농가소득 개선(이하, “상표 부농”) 사업을 계속 홍보한다. 농산물의 브랜드 품질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실행하며, “지리적 표시 상표가 강한 기업과 부농을 지원하는 3개년 계획(地理标志商标助力强企富农三年行动计划)”을 홍보한다. 100개의 농산물 브랜드를 구축하고, 30개의 지리적 표시 상표(제품) 및 10개의 농산물 클러스터 지역 브랜드를 육성한다.

문화 산업 및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에서 지식재산권의 통합과 발전을 촉진한다. 또한 전통 산업의 지식재산권의 무형문화유산, 민속, 개발 및 활용도를 향상, 무형 문화유산 프로젝트의 유네스코 목록에 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한다. 전통 수공예품, 전통 드라마 및 민속 예술을 홍보하고 보호한다. 특히 독창적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관광 상품을 통해 전통 문화 자원 및 문화 요소의 전환을 촉진하고, 100개의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또한 제14회 중국 (이우) 문화 박람회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저장성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중국 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화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기업 및 기관의 표준 및 규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위협 경보를 알리고, 기업의 해외 상표 등록 및 보호 신청, 기업의 국제 브랜드 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저장성 시장감독관리국은 대형 전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저장성의 100년 기업(노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위해 지식재산권 기관을 조직하고 소규모 기업에 지식재산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장성은 2019년 연말까지 인구 1만 명당 발명 특허 건수는 25건이며, 100개 기업 당 국내 등록 상표 수는 89건, 국내 유효등록 상표 건수는 220만 건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서비스 및 국제화

기업이 국제 표준,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영향력 있는 기관이 인정하는 표준의 수립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표준 개발과 특허 간의 연결을 추진한다.

저장성 시장감독관리국은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해외에 출원하도록 권장하고, 매년 PCT 국제 특허출원 1,800건 이상,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신청을 400건 이상 하도록 한다. IP 법률 서비스 및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 활동을 수행한다.

국제화를 위해서 저장성의 지리적 표시 상품을 중국-유럽이 상호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중의약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다. ‘저장-벨라루스 중의약센터’, ‘중국-이스라엘 중의약센터’가 중국 의약 및 의료, 교육, 연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5) 조직적 실시와 정책 보장

저장성의 지식재산 강성 건설사업 연석회의를 보완하고, “2019년 저장성 지적재산 전략실시 업무 요점”을 제정하여 부처간 소통조율과 작업연동을 강화한다. 저장성 전체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담보용자 사업을 추진하고, 전 성의 과학기술형 중소 기업 용자를 위해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지식재산권 인력 풀 구축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실무자, 법집행 인원, 관리 등의 분야의 인원 중 20명을 선별하여 해외 연수를 제공한다.

V // 산둥성

1. 개관

산둥성은 인구 약 9,974만 명, 면적 156,700km²의 중국 동부 산둥반도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과 가장 인접한 성이다. 성도는 지난시이다. 산둥성 옌타이시에는 LG, 두산, 포스코 등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일본 투자자 또한 밀집되어 경제규모가 비교적 큰 도시이다.

산둥성의 산업구조는 중화학공업이 약 70%에 달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에 환경 문제 등 취약점이 존재하였다. 2017년 산둥성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신소재, 해양산업, 장비제조업 등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산둥성은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에 의존한 발전을 경험하였으며 대규모 공장 위주의 생산방식으로 시장경쟁력이 약했다. 이에 산둥성 정부는 산업고도화 정책을 제시하며 약 6천억 위안 규모의 성장동력 전환기금을 조성하였다.¹¹³⁾

또한 2018년 폭스콘(Foxconn)이 지난시 정부와 약 37.5억 위안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며 산둥성에 반도체 기업 건설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2019년 7월 산둥성 정부가 발표한 ‘혁신형 성 건설 심화조치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매년 100억 위안 이상의 자금을 도입해 산둥성 전체의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고,¹¹⁴⁾ R&D 투입, 시스템 개혁과 개방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통해 ‘혁신형 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13) 이상훈 외, 중국의 주요 지역별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6.

114) 산둥성은 지난시에 치루 과학기술 혁신화랑, 국제 의과학센터, 양자 대과학센터, 국가 슈퍼컴퓨터 지난센터 등의 건설을 지원하여 정보기술과 바이오제약 등을 특색으로 한 과학기술 혁신 센터를 조성할 방침을 제시함. (<https://csf.kiep.go.kr/news/M001000000/view.do?articleId=35038>, 2019. 11. 11. 최종접속.)

2. 산동성의 지식재산 정책

(1) 보호

국가지식산업국의 ‘특허집행 사건 보고 플랫폼’과 ‘산동성 집행연계 시스템’, ‘산동성 공시 시스템’을 통해 특허권 침해 행정처벌 사건의 정보를 국가지식산업국으로 전달하고, 산동성 정보 사이트에도 공개한다. 또한 산동성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가 적극적인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특허 행정부서와 세관이 특허 집행협력제도와 특허침해 신속판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입 절차에서 특허사건 처리과정에서 협조를 강화한다. 《전시회 지식재산권 조사제도의 수립에 관한 통지》를 실천하고, 전시회 상품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협약 체결을 지도하며, 전자상거래 분야 특허법 집행에 대한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특허사건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도한다.

또한 산동성 공안은 공중의 이익을 해치고, 생활의 안전을 해치며, 기업의 혁신 발전을 저해하는 위조 상품 제조, 영업비밀 침해 등의 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민생 반응이 큰 분야에 대해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전문시장 지식재산권 통합 집행 및 반부정당경쟁법 위반행위 단속 등 법적 대응을 실시하며 단속활동의 전과정을 기록하며 범죄혐의가 있는 사건은 즉시 공안으로 이관한다.

산동성 지식산업국은 창의산업 지식재산 중점보호기업 연결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특허 침해 분쟁의 신속한 조정절차를 수립하고, 특허 침해 상담을 제공하여 소기업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2) 창출 및 활용 부분

직무발명에 있어서 핵심 발명인의 수익을 높이고, 직무발명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조치를 마련한다. 국유기업 산하 연구기관에 지식재산권의 증권화를 추진하고, 스톡옵션 인센티브 등의 소득배분 방식을 모색하여 지식재산권 수익분배를 촉진한다. 고등교육기관 또는 사설 연구소에서도 주식 등의 형식으로 지식재산 시장의 가치 실현을 가속화하고 끊임없는 성과전환을 촉진한다. ‘산동성 고교 과학기술 성과이전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통해 공공 자원 사용 효율 향상을 모색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소기업 지식재산권 금융기지로 지식재산권 담보용자 방안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인터넷 클라우드 펀딩을 검토한다. 핵심기술(특허)의 가속화를 유도하고 고가치 특허 육성으로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 행위를 엄하게 단속한다.

(주요성과) 중소 영세기업의 특허권 담보 용자에 있어 신용공여등급이 낮고, 유효한 담보가 부족하고, 대출 난이도가 높고, 용자 비용이 높은 문제에 대하여, 정책 자금 지원 확대, 특허권 담보 용자 보험 도입, 특허 보험 신용 증진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중소기업 용자 난제를 해결하였다.

(구체적 방법) 《산둥성 특허권 '정인바오' 용자 시범 업무 실시 방법(시행)》을 발표하고, 기업이 특허권 '정인바오'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고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을 한 후에는 산둥성의 재정으로 기업이 납부한 보험료의 60%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각 기업에게 지급되는 연간 보조금 총액이 6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보조금 기한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은행 대출 금리 상한은 일반적으로 인민은행이 공표한 동기 대출 기준금리의 30%를 초과하지 않으며, 특허 보험 업무 전개에 있어 연 환산요율은 일반적으로 대출 총액의 2%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신용대출 위험 부담 비율은 60% 미만이면 안 된다. 이 외에,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영세기업은 특허 '정인바오' 방식의 대출을 통하여 당해년도 인민은행의 동기 대출 기준금리 60%의 대출 이자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정인바오'용자 시범 업무는 이미 지난, 칭다오 등 11개 설구시(設区市)¹¹⁵⁾에서 추진 중이다.

(기초성과) 2017년 말까지, 산둥성은 누계 지식재산 담보 용자 프로젝트 1,179건을 실현하였고, 총금액은 276억 위안이며, 1,000여 개 기업이 특허 담보 대출을 통해 발전자금을 획득하였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산둥에서는 지식재산권 담보 용자 계약 400건이 등록되었고, 담보 금액은 45.34억 위안이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28%, 23.17% 증가한 수치이다.

지리적 표시 상표와 전통공예 진흥계획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한다. 100년 기업(노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고, 노포 브랜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조직을 통한 대외 교류회 개최 등 중국 의약, 중화전통음식점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주요성과) 지식재산권 핵심기술 보급 역량이 부족하고, 그 가치가 쉽게 발굴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 주요 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브랜드를 수립하여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였다.

(구체적 방법) 산둥성은 2016년부터 주요 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브랜드 육성 업무를 시작하였고, 《산둥성 주요 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브랜드 육성 업무 실시방안》을 제정하여 2020년까지 주요 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브랜드 100여 개를 육성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산둥성의 현재 중점 산업 발전 방향과 결합하여 공개모집 프로젝트에 대해 특허 가치 종합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5개 특허품이 각각 산둥성 주요 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브랜드임을 확인하였다. 《산둥성 핵심기술 특허(품) 자금 관리 세칙》을 제정하고, 산둥성 주요 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브랜드 단위 건설회를 조직하고 개최하여 브랜드 단위에 증서를 발급하고 패(牌)를 수여하고 있다.

(기초성과) 현재까지, 30개 특허품이 산둥성 주요 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브랜드로 확정되었다. 그중, 산둥 덩하이(登海) 종자업 주식 유한회사의 '컴팩트형 옥수수 싹품종'의 경우 육성 품종이 누적 4억 묘(畝)가 넘게 보급되어 재배되었고, 400억 위안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다.

115) '구를 설치하고 있는 시'를 뜻함.

(3) 서비스 및 국제화

산동성과 시가 연합하여 발명특허 유지비, 기업 최초의 발명특허 라이선스 등에 대한 지원을 독려해 혁신성과 특허화 수준을 높이고 특허 내비게이션 시범실시 사업을 실시하여, 관련 산업 기업에 특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동성의 우수 기업·연구기관·고등교육기관의 해외 특허 출원·지원을 추진한다. 외국의 관련 지식재산 협회·정보 운용기관과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지식재산의 규칙 및 발전 동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사법 감정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업계의 벽을 허물고, 지식재산 법률의 서비스 수준과 능력을 향상시킨다. 기업이 지식재산 분석평가를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브랜드 도입, 기술제품 수출입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여 지식재산 침해 위험을 회피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정통한 고급 변호사 인력풀, 공증 인력풀을 형성한다.

국내외 유명 지리적 표지 상품에 대한 보호협력을 강화하고, 지리적 표시 및 상표 국제 등록·운용 강화를 추진한다. 산동성의 유명 기업은 해외 지식재산권 교육·상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산동성 지식재산권국은 기업이 관련 규칙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고, 관련 규칙 개정에 참여한 우수한 경험을 취합하여 보급한다.

(4) 조직적 실시와 정책 보장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보완·강화하여 지식재산권 전략에 포괄적으로 접목시키고, 특허·상표 브랜드·지리적 표시 전략을 실시하여 지식재산 강성 건설을 추진한다. 칭다오, 옌타이 등의 주요 시를 국가 지식재산권 강시로 건설하는 업무를 가속화하고, 지방 특색을 가진 지식재산 강시(强市)의 길을 탐색한다. 산동성의 중점 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운영 기금 프로그램 목록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이 포함되도록 지원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 지식재산권 산업화를 실천한다.

이외에도 고급 지식재산권 인재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와 산동성의 지식재산 교육센터를 통해 지적재산 학과 교육을 실시한다. 지식재산 혁신인재와 서비스형 인재의 창업을 유도하고 지원하여, 산동성의 고급 IP 인력을 유치한다. 홍보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 향상을 추진한다.

VI // 윈난성

1. 개관

윈난성은 인구 약 4,829만 명, 면적 394,000km²의 중국 내륙 남부에 위치하여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도시이다. 주도는 쿤밍시이다. 윈난성은 중국 내 가장 많고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으로는 농업, 임업을 기반산업으로 하여 다른 지역보다 덜 개발되었으나 전통문화산업 등의 발전으로 최근 5년간 지역내총생산량(GRDP)이 연평균 8.9%를 기록하며 중국 평균 GRDP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2019년 8월에는 중국의 새로운 자유무역시범구를 쿤밍시에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육지를 통한 동남아시아 진출을 추진하고, 건강산업의 혁신 발전을 추진한다.

2. 윈난성의 지식재산 정책

윈난성의 쿤밍시 지식산권국과 지식재산권 출판사는 2019년 1월 ‘쿤밍 창의인증보호센터(昆明原创认证保护中心)’를 설립하였다. 쿤밍시 정부는 문화산업과 지식재산의 융합을 통한 창의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윈난성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동남아 지역으로의 확산되도록 지원하며, 창의인증보호센터는 창작자를 위한 전방위적 보호 시스템을 제공하고, 쿤밍시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특허법 제4차 개정(안)에 맞춰 ‘윈난성 특허촉진과 보호 조례’의 개정 작업을 수행 중이다. 윈난성은 풍부한 중의약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 중약 현대화 과학기술 산업(윈난성) 기지’ 제1기를 건설하며 윈난성의 천연자원과 민족의약 측면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중의약을 개발하고 있다. 윈남성의 중의약 분야에서의 특허신청은 주로 신약 및 처방, 의약품, 신형 제제 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이 분야의 발명 특허 신청 건수가 전체의 88.22%를 차지하며 중약자원의 우수한 품질로 중국 내 시장에서는 독보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약의 생산 가공 및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는 특허 신청이 미진하다.

창출활용의 측면에서 윈난성의 임업과학기술과 임산물 전시 플랫폼의 건설을 가속화하여 지식재산권과 시장을 연결한다. ‘상표 부농’ 업무를 추진하여 지리적 표시를 가지지 못한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상표출원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윈난성 정부는 커피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여 특허기술과 커피 상표 발굴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윈난 커피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동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윈난성 바오산시의 아라비카 커피가 중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해 커피산업을 보호하게 된 상징적 사례로 평가되기도 한다.¹¹⁶⁾

바오산시(保山) 첨단기술구, 멩하이현(勐海) 산업공단, 린창시(临沧) 과학기술혁신구, 윈난 광곡 인큐베이터 등에 4개 특허정보사무실을 조직하여 운영한다. 녹색식품에 중점을 두고 특허, 상표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핵심산업 분야에 관한 특허 배치 전략 연구를 실시한다. 국경지역에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진출한 중국 기업을 위해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¹¹⁶⁾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07733>, 2019. 11. 11. 최종접속.

》》 제3절

소결

2010년에 제시된 전략적 신흥산업 정책은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재정을 대거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각 성 지방정부는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통계체제와 평가체제를 구비함으로써 정책과 통계, 평가체제 등 전략적 신흥산업을 위한 산업발전체제를 완비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강국을 만들기 위해 지식재산권 강성을 조성하는 사업이 함께 추진되었으며 주요 지방에서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경쟁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였다.

2015년 국무원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의견은 각 지방에서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었다. 각 지방 지식재산권국은 매년 각 지방에서 계획한 지식재산권 업무를 공개하고 이듬해 초에 연간 업무수행 성과를 공유하며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을 추진한다. 중국 지방정부의 지식재산권국은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식재산 정책에 더하여 자기 지역의 특징을 더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의견과 각 지역의 2019년 지식재산 정책계획을 비교하였다.

▶▶ 표 4-4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의견의 실천방안과 주요 지방정부 정책 비교

추진과제	실천방안	광둥성	베이징	저장성	산둥성	윈난성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개혁 추진	•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연구	○	○	○	○	○
	• 지식재산권서비스업 및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 개선	○	○			
	• 중대 경제활동의 지식재산권 평가제도 수립	○	○	○	○	○
	• 지식재산권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혁신구동 발전 평가제도 수립	○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실시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	○	○	○
	• 지식재산권 범죄 단속 강화	○	○	○	○	○
	• 지식재산권 보호 예비경보 및 대비체계 수립	○	○	○	○	○
	• 新인증·新분야 의 혁신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	○	○	○
	• 지식재산권의 남용행위 규제					
	• 지식재산권 심사 및 등록제도 완비					
지식재산권 창출 및 활용 촉진	• 직무발명제도 완비			○	○	
	• 특허하기제도 개혁 추진		○	○		
	• 지식재산권 거래플랫폼 설립 강화		○	○	○	○
	•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 육성		○	○	○	○
중점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 배치 및 리스크 관리	• 지식재산권의 부가 가치 및 국제영향력 제고	○	○	○	○	○
	• 지식재산권 정보의 개방 및 이용 강화	○	○	○	○	○
	• 중점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배치 계획 강화	○	○	○	○	○
	• 해외 지식재산권 배치 경로 확대	○				
	• 해외 지식재산권 리스크 예비경보 시스템 완비	○	○	○	○	○
	• 해외 지식재산권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	○	○	○	○
지식재산권 대외협력 강화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강화	○	○	○	○	
	• 공평하고 합리적인 국제 지식재산규칙 수립	○	○	○	○	
	• 지식재산권 대외협력체계 수립	○	○	○	○	
	•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식재산 원조 강화	○	○	○	○	
조직 실시 및 정책 보장 강화	• 지식재산권 공공 외교채널 확대	○	○			
	• 조직 지도 강화	○	○	○	○	○
	•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	○	○	○	○	○
	• 지식재산 전문인재조직 설립 강화	○	○	○	○	○
	• 홍보 및 지도 강화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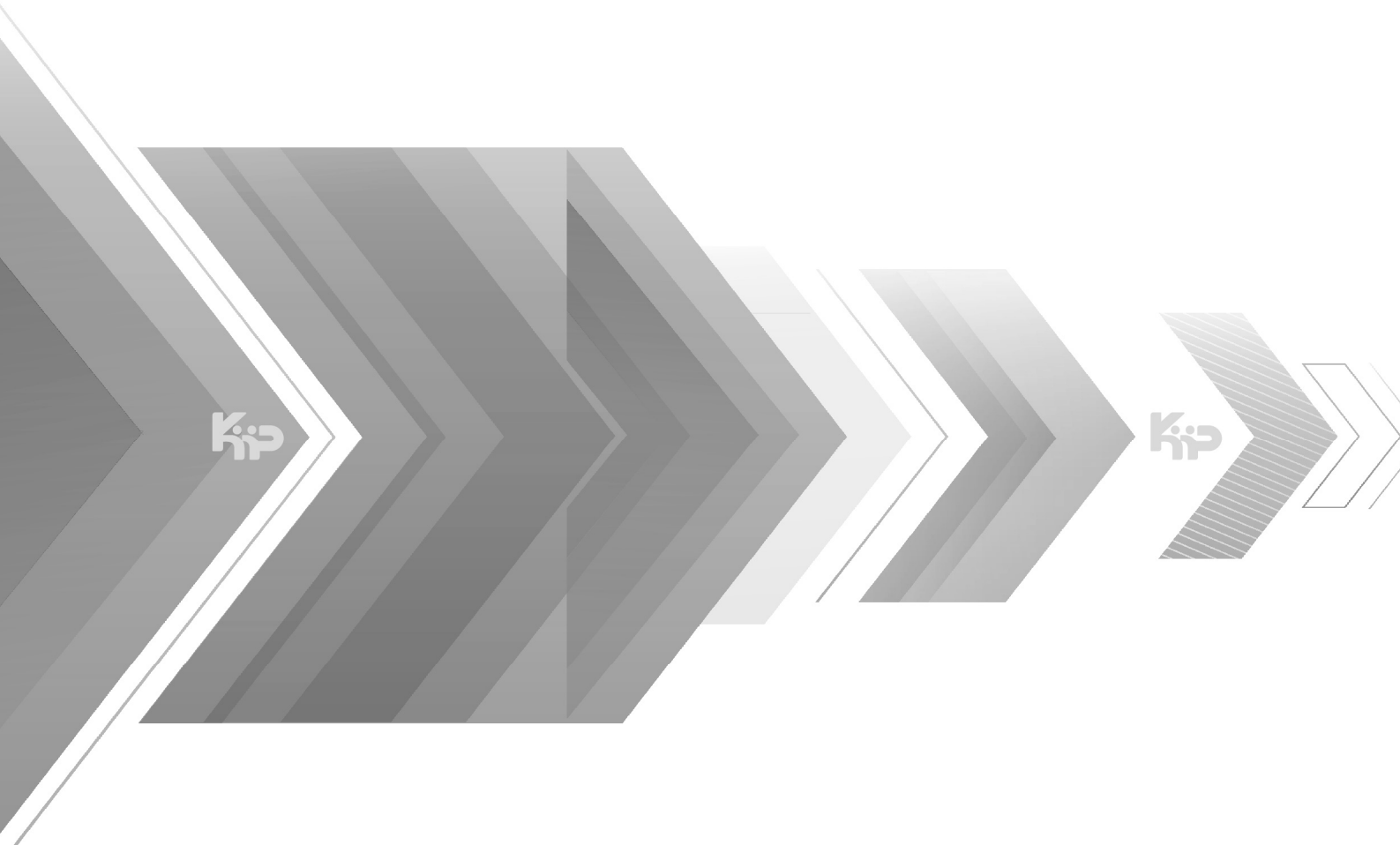
광둥성, 베이징시와 같이 경제규모가 크고 발전한 지역에서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IP 정책을 최대한 반영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세우는 것에서 나아가 독특한 지식재산 정책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윈난성과 같이 경제성장속도가 느린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중 실천 가능한 부분만 선택하여 지방의 정책을 수립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중국식 연방주의’로 나타나는 모습이 지식재산권 분야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진핑 정부가 방관복 개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지방 자치입법권한에 따른 지방성 법규 및 그 집행력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즉,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각종 간섭을 축소하고,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탈규제’ 개혁방향인 방관복 개혁은 과거 각종 규제 정책으로 사사건건 기업을 간섭했던 중국 정부가 이제 경제 운영의 주도권을 시장에 이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대신 정부는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2019년 6월에도 방관복 개혁의 심화를 주창함으로써 향후 방관복 개혁은 중국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 확산될 전망이다.¹¹⁷⁾ 이미 광둥성, 베이징시 등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의 지식재산권 업무 처리 모델은 해당 지역을 둘러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방관복 개혁은 각 지방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17) “李克强在全国深化“放管服”改革优化营商环境电视电话会议上发表重要讲话”『中国政府网』2019年6月25日. (http://www.gov.cn/guowuyuan/2019-06/25/content_5403115.htm)



제5장 결론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이래 대외무역을 통해 국내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WTO 가입 등을 통하여 다자주의 체제 국제규범에 적응하고 이에 맞추어 국내법 및 제도를 개혁하였으며 빠른 기간에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던 중국 경제는 2011년 이후 둔화되었으며 2015년 이후부터는 6%대의 중저속 성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중국은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였으며, 이는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산업고도화 정책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이 통상정책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 산업전략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역분쟁 발발 이후,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중국제조 2025’라는 표현 대신 ‘스마트 플러스’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스마트 플러스 전략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등 첨단기술을 통해 산업 및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결국 중국 정부는 스마트 플러스 전략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의 기본 목표와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 중국을 살펴보자면, 중국은 산업재산권 창출에 있어 세계 1위 수준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저품질 특허, 낮은 지식재산 보호 인식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지식재산 강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중국은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목표로 지식재산 유관 조직의 전면 개편, 기존 정책의 재검점 및 새로운 전략 수립, 특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 관련 법 개정, 소송체계 개선 등 과감한 변화를 하고 있다.

전국의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정책을 지방 재정이 확충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 이에 각 지방정부는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통계체계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의 산업발전 전략을 완비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지방 지식산업국은 중앙에서 발표하는 국가지식재산전략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춘 세부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하며 경쟁적으로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향후 시진핑 정부가 방관복(放管服) 개혁과 지방 분권을 더욱 강화한다면 지방 자치입법 권한에 따른 지식재산 분야의 지방성 법규 제정 및 집행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과제로서 지식재산 분야에서 각 지방정부의 역할 및 노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실시
10주년 평가보고



KIP

KIP

[붙임]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실시 10주년 평가보고¹¹⁸⁾

제3장 중점업무 실시 평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은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 관리와 서비스의 전 과정을 포섭하여 전개되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사업도 급속히 발전하여 거대한 변화를 이룩하였다.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은 이에 맞추어 다양해졌고, 새로운 조치와 정책, 방침들이 실시되고 있다.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의 주요 내용은 창출, 활용, 보호, 관리, 서비스, 국제 협력 발전, 인프라 7가지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는 26개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주요 내용별 실시 현황을 다룬다.

3.1 지식재산권 창출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은 지식재산권 창출과 관련하여 ① 지식재산권 수량, ② 지식재산권 품질, ③ 지식재산권 종류, ④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지원 정책의 4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3.1.1 지식재산권 수량

지식재산권 수량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의 기본 전략 중의 하나다. 10년 동안,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전 사회적인 지식재산권 의식의 변화와 함께 중국의 지식재산권 수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첫째, 각 유형별 지식재산권의 급격한 증가

1) 특허

특허 출원 및 등록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2007~2017년 사이 중국의 발명 특허 출원 수량은 24.5만 건에서 138.2만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¹¹⁸⁾ 2019년 5월, 중국에서 출간된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실시 10주년 평가보고” 제3장을 발췌 번역함.

2) 상표

최근 10년간 중국의 상표 신청 및 등록량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유효한 상표 등록 총량은 매년 20.3%씩 증가하였으며 2007년 235.5만 건에서 2017년 1,492만 건으로 증가하였다. 상표등록출원량은 2007년의 70.8만 건에서 574.8만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1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시장주체 만 개당 유효한 상표 등록 건수는 2011년 1,074건에서 2017년 1,520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6.7인당 1건의 유효한 상표를 소유하고 있다.

3) 저작권

최근 10년간 중국의 저작권(작품, 소프트웨어, 질권) 등록 신청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연간 저작권 등록량은 2007년 15.85만 건에서 2017년 274.77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그중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간 등록량은 2.57만 건에서 74.54만 건으로 증가했다.

4) 식물신품종

신품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에 따라 신청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농·임업 식물신품종 등록 총량은 2007년의 1,616건에서 2017년 12,411건으로 증가했다. 2017년 중국의 식물신품종권 신청량은 국제 식물신품종 보호연맹국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5) 지리적 표시

최근 10년간 중국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상표와 제품의 수량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지리적 표시에 관한 상표는 누적 등록량이 2007년 301건에서 2017년 3,906건으로 증가하였고, 농산물 지리적 표시 제품의 누적 발급량은 2008년 121건에서 2017년 2,242건(농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은 2008년부터 시작)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말까지 지리적 표시 제품은 총 2,359개였으며 심사비준 단계의 전용 지리적 표시 사용 기업은 8,091개에 달하였다.

6)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최근 10년간 중국의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량은 빠르게 증가했으며,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등록량은 2007년 1,546건에서 2017년 16,713건으로 증가하였다. 그중 중국의 권리자가 출원한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등록은 전체의 90%를 차지하였다.

둘째, 중국 지식재산권 건수의 증가는 창출 활동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요시한 결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수량 증가의 주요 원인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과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실시한 것이다. 중국은 전략성 신흥산업 발전에 힘쓰고,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했으며, 창출 활동을 활발히 장려함으로써 권리자의 창출능력을 향상했고, 지식재산권 창출·보호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의 지식재산권 인식을 개선했다. 동시에 국가는 특허품질 제고 프로젝트, 상표 브랜드 창출, 저작권 업무 “13·5(十三五)” 계획 등의 정책을 통해 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특허·상표·저작권(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창출을 촉진하였다. 중국 지식재산권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과 지식재산권 업무를 중요시한 결과이다.

3.1.2 지식재산권 품질

지식재산권 수량이 대폭 증가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품질도 향상되었으며 특허·상표·저작권 등의 품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첫째, PCT 특허 출원량 세계 2위, 고품질 특허 증가의 가속화

중국의 PCT 특허 출원은 2007년 5,041건에서 2017년 50,67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2017년 중국 내 PCT 특허 출원 100건 이상을 기록한 국내기업은 44개였으며, 화웨이가 3,850건의 PCT 특허 출원으로 선두를 차지하였다.

유럽 특허청의 ‘2017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내 중국 기업의 특허 출원 건수에서 화웨이가 1위(2,398건), ZTE(679건), BOE(500건) 순을 기록하였다. 이들 3개 기업의 출원량은 2017년 유럽 특허 출원량 50위권 안에 들었으며 화웨이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중국 특허의 평균 유지 기간을 살펴보면,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특허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PCT 특허 출원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상승폭이 제일 컸고 동기 대비 48.5% 증가함으로써 중국 내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고품질 특허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마드리드 상표 출원에서 세계 3위를 차지, 유명 상표브랜드의 꾸준한 증가

중국 출원인이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출원한 상표는 2007년 7,135건에서 2017년 2.5만 건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 중국 출원인의 마드리드 상표 출원은 4,810건으로 동기 대비 59.6% 증가하였으며, 마드리드 회원국 중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World Brand Lab에서 발표한 2017년 “세계 500대 브랜드”에서 중국의 37개 브랜드가 순위에 포함되어 세계 5위를 차지하였다.

셋째, 우수한 저작권과 영상작품의 제작 증가

2007~2017년, 국가출판기금은 3,300여 개의 우수 출판 항목을 선별하여 지원하였는데, 현재 2,300여 개 항목이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약 500개가 정신문명건설 “오개일공정상(五个一工程奖)” “중국출판정부상” 등 국가급 상을 수상하였다. 영상작품은 중요한 저작권 유형으로 최근 몇 년간 국산영화, 드라마의 수와 품질이 향상되었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우수한 국산 영상작품이 제작되었다. 또한 “실크로드 영화교(丝绸之路影视桥)” 중점 프로젝트를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일대일로” 관련 국가에 대한 저작권 무역이 약 6,000종에 달하였다. 2017년 전국적으로 제작 완성하고 발행 허가까지 받은 드라마는 총 314부였으며, 드라마의 전반적인 품질이 향상되었다. 또한, 2017년 전국 영화 총흥행수익이 559억 위안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7년의 16.8배이다.

넷째, 우수한 식물신품종 증가

중국 식물신품종권 출원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출원량은 국제식물신품종 보호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신품종과 우수한 품종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으며 권리를 부여받은 품종 중에서 우수한 벼, 옥수수, 밀 품종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보급률 상위 10개 품목은 거의 대부분이 권리를 부여받은 품종이었다. 국내 종자 기업의 품종 육성에 대한 적극성이 고려되어 투자 금액이 매년 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국내 지식재산권 품질의 전반적인 향상, 비교적 낮은 국제화 수준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창출 능력이 부단히 강화되었으나, 지식재산권 국제화 정도가 낮은 것이 한계이다. 2017년 12월 WIPO가 발표한 “세계지식재산권 지표 보고 2017”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중국은 해외 특허 및 상표 출원 수준이 비교적 낮고 해외 출원이 불균형적인 문제가 존재하였다.

특히 영역에서 중국은 해외 특허 출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출원의 4%에 불과하였다. 일본과 미국의 해외 특허 출원은 45%를 차지하였으며 인도와 브라질도 각각 47.3%와 29.2%를 차지하였다. 2016년 각국이 해외에서 등록한 특허 건수를 비교하였을 때 중국은 2만 건으로 7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위인 미국(13.3만 건)의 1/6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의 소수 기업이 전 세계의 해외 특허 출원 순위에서 선두를 차지하였더라도, 절대 다수의 기업은 해외 특허 출원이 미흡하며 PCT 특허 출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은 여전히 부족하여 해외 특허 출원이 소수 영역과 산업에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일부 기술 분야는 이미 일정한 기술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선진 기술 분야의 해외 특허 출원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해

외 특허 출원을 하도록 유도하여 신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표 영역에서 중국의 상표 해외 출원 비중은 다른 국가와의 차이가 현저하다. 스위스의 해외 상표 출원량은 전체 출원 건수의 72%이고 미국은 46%, 독일은 40%였으나 중국의 상표 해외 출원 비중은 4%에 불과하다. 기업 측면에서 볼 때, 중국 기업 규모 확장 속도가 브랜드 국제화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중국에서 100여 개의 기업이 “세계 500대 기업”에 선정되었고 그 수 또한 2015년 106개에서 2018년 120개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2018년 7월 포춘지가 발표한 세계 Top 500 기업에 중국 기업이 120개 선정되었고, 이는 미국의 126개에 거의 근접한 수치로, 3위의 일본(52개)과 큰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World Brand Lab에서 발표한 “세계 500강 브랜드”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2015년의 31개에서 2017년의 37개로 증가하였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500강 브랜드”에 선정된 기업 수가 “Top 500 기업” 수를 초과한 반면, 중국의 “500강 브랜드”에 선정된 기업 수는 “Top 500 기업” 수보다 현저하게 적었다. 이에 혁신적인 브랜드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중국 브랜드의 육성과 보급,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중점을 두어, 중국 브랜드의 국제적 영향력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3.1.3 지식재산권의 분야별 분포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련의 핵심 지식재산권을 형성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은 전 세계 전략적 신흥 산업의 특허 출원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첫째, 특허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첨단기술산업과 신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유도,
산업 전환 업그레이드 지원**

최근 몇 년간, 특허 내비게이션 시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국가지식재산권은 정책 지도 문건을 발표하였다. 국가 전략에 대한 수요에 따라 전략성 신흥 산업에 대한 주요 산업협회와 선두 기업의 의견 수렴을 통해 특허 내비게이션 산업 발전 실험 지역 17개, 특허 협동 운영 시범단위 37개, 국가 특허 운영 시범 기업 115개를 선정하였으며 “산업 계획류 특허 내비게이션 항목 실시 지침(产业规划类专利导航项目实施导则)”과 “기업 운영류 특허 내비게이션 항목 실시 지침(企业运营类专利导航项目实施导则)”을 발표하였다. 또한, 전 지역에서 특허 내비게이션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지역의 산업 전환 과정에서 기업이 지식재산권 전략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도와주었다. 3개의 특허 내비게이션 프로젝트 연구·보급 센터를 설립하여 특허 내비게이션 이론 및 실무 연구와 인재 육성을 지원하였다. 각 지역에서도 산업 분야별 특허 내비게이션을 선정함과 동시에 가치가 높은 특허 육성, 핵심기술 특허 분포 및 지식재산권 활용 인재 육성 등의 시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적 특색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장쑤성은 전국 최초로 고품질 특허 육성을

시범 센터를 건설하고, 성급 중점 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계획에 특히 내비게이션 실시를 명시하였다.

둘째, 중국의 선진 기술 분야에서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 형성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의 시행을 통해 중국은 정보통신, 항공우주, 고속철도, 원자력 등 국민경제를 주도하는 산업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였고, 선진 기술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주요한 과학기술 성과의 특허, 상표, 소프트웨어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은 혁신국가 건설을 더욱 촉진하였다.

중국의 초고속열차 “푸싱하오”는 350km/h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전국 고속철도 운행거리는 이미 전 세계 총거리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전기자동차,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과 보유량은 전 세계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5G 네트워크 등의 기술은 국제적 표준에 진입하였고 화웨이 등의 통신 기업은 5G 표준 제정에서도 비교적 강한 발언권을 얻었으며, 특압 송전 기술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기록을 경신하는 등 국제적 표준 14개를 이미 형성하였고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었다.

셋째, 중국은 전 세계 신산업 특허 출원 성장의 주요 동력

통계에 따르면, 2012~2016년 중국은 전 세계 신산업 특허 출원 건수 증가의 주요 동력을 제공하였다. 중국 신산업 분야의 특허 출원량은 2012년 16.7만 건에서 2016년 34.4만 건으로 증가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그 비중은 2012년 27.0%에서 2016년 44.3%로 증가하였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중국의 전략성 신흥산업의 유효 특허는 총 71.9만 건으로 그중 국내 유효 특허는 42.9만 건에 해당하며, 전략성 신흥산업 유효 특허의 59.6%를 차지하였다. 그중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바이오, 신소재, 첨단 장비 제조의 5대 산업에 대한 내국인의 특허 출원 건수는 중국 내 외국인 특허 건수보다 높았고, 차세대 정보기술과 신에너지자동차산업의 내국인 특허 출원 건수는 중국 내 외국인의 특허 출원 건수보다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1.4 소결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의 실시를 통해 중국 지식재산권 출원량과 보유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세계적인 지식재산권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창출은 “품질상”으로도 양호한 편이며 지식재산 업무는 시대와 더불어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강국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지난 10년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로 인해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창출을 제고하였으며 중요한 기술영역에서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하였다. 국가적으로 지

식재산을 중시하는 기조는 전략성 신흥산업의 발전을 이끌었고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 경쟁력도 향상되었으며 세계 산업구조 재편에 기여하고 혁신국가 건설에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특허 및 상표에서 해외 출원 비율이 여전히 낮으므로, 해외 특허 전략 및 세계적인 브랜드 육성 지원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3.2 지식재산권 활용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은 지식재산권 활용에 관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① 지식재산권 활용 모델, ②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한 경제사회의 발전과 민생 개선 촉진, ③ 고등 교육기관 및 과학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교육 강화, ④ 군민(軍民) 융합 지식재산권 활용, ⑤ 지식재산권 활용 정책 및 공공 서비스 추진

3.2.1 지식재산권 활용 모델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을 실시한 이래로, 지식재산권 활용 모델은 꾸준히 개선되었고 지식재산권의 자본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산업 전환 및 발전의 촉진과 민생 개선에서 지식재산권의 역할이 더욱 커져 지식재산권의 활용 효과는 뚜렷하게 증명되었다.

첫째, 지식재산권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 거래액도 현저히 변화

특허 거래는 2009년 3.4만 건에서 2017년 22.3만 건으로 증가하였다. 상표 거래는 2008년 7.22만 건에서 2017년 25.38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 거래시장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여 2008~2017년 중국 기술시장 거래액은 2,665억 위안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조 3,424억 위안에 이르렀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9%에서 1.64%로 증가하였다. 2017년 특허와 관련된 기술 계약은 15,000건에 달하였고 거래액은 1,400억 위안을 돌파했으며 동기 대비 10% 증가하였다.

둘째, 지식재산권의 운영 혁신 및 신산업 발전

중국은 특허 내비게이션 시범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특허 운영을 산업 기술 혁신, 상품 혁신, 조직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포함시켰다. 동시에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기초로 하여 시장주체들을 지원하였고 “산학연금계용(产学研金介用)”을 구성하여 심층적인 협업을 위한 지식재산연맹을 설립하였으며 사업 관련 분야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강화하였다.

셋째, 지식재산권 용자 규모 확대

2017년 특허 저당 항목이 4,177건에 달하였으며 특허 용자 총액은 720억 위안으로, 2009년 (74.6억 위안)에서 약 9배가 증가하였다. 저작권 용자 금액은 29.74억 위안이었다. 2011년 “저작권 저당 등록 방법”을 실시한 이후 2017년 말까지 저작권 저당 등록 총건수는 3,224건이었고 저당 용자 총액은 200억 위안이었다. 2008~2017년, 상표 저당 용자 금액은 51.19억 위안에서 370.23억 위안으로 상승하였다. 지식재산권 저당 용자는 이미 용자 모델로서 보편화되었다.

넷째, 기술 표준에서의 지식재산권 중시

2013년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와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국가표준에 관한 특허 관리 규정(임시 시행)”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국가표준제정과 특허 문제의 처리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다. 다탕, 화웨이 등의 기업은 핵심기술 표준의 국제 특허를 구성하여 가입하였으며, 중국과학원 컴퓨팅기술연구소의 AVS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

2006~2016년 중국이 참여, 제정한 국제표준은 누적 1,795건이었으며 그중 중국이 주도하여 제정 및 발표한 ISO/IEC 국제표준은 301건에 달하여 중국 ISO/IEC 국제표준 누적 건수인 369건의 81.6%를 차지하였다. 중국 기업은 지속해서 지식재산과 기술표준의 결합을 강화해왔고, 점차 사례가 증가하였다. 중국 특압 전기 수송 기술은 이미 국제표준 14건을 제정하는 데 일조하였고 해당 분야에서 발언권을 확립하게 하였다. 다탕전신이 연구·개발하여 실시한 3G 이동통신 국제표준은 TD-SCDMA가 있다. 또한, 4G 이동통신 TD-LTE의 핵심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12년 중국이 제출한 TD-LTE-Advanced는 국제통신연맹에서 4G 이동통신 국제표준으로 확정되었으며 정식으로 두 개의 4G 국제표준 중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5G 표준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제안 건수는 전 세계 제안 건수의 1/3로, 일부 국제표준의 핵심특허를 형성하였으며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 유리한 지위를 형성하였다.

3.2.2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해 경제사회의 발전과 민생 개선 촉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의 시행 이래로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활용의 효과는 나날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식물신품종과 지리적 표시는 강농부농(强农富农), 빈곤구제 등의 영역에서 민생 개선을 촉진하였으며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공헌도가 높아졌으며 중화 전통문화와 전통 기예의 발전과 전승을 촉진하였다.

첫째, 지식재산권 활용은 단편적인 효과에서 종합적인 효과로 변화되었으며 경제에 대한 기여도 확대

1) 특허활용

2017년 중국의 특허 집약형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4%로, 2010년에 비해서 3.2%p 상승하였다. 주요산업에서 지식재산권 운영 기금의 첫 모집 자금은 42.8억 위안이었으며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액은 47.86억 달러로서 동기 대비 311.5% 증가하여 중국의 서비스 무역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허 운영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고속열차 영역에서 핵심 지식재산은 “부흥호(复兴号)”로서 대규모 산업화에 충실한 보장을 마련해 주었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특고압 교류 전기 기술, 설비 및 공정 응용은 2013년 국가 과학기술 진보상 및 특등상을 받았다. 중국 내 특허 활용의 경제적 효과는 날로 두드러지고 있으며,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도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2) 상표 브랜드 운영

중국은 “상품경제”에서 “브랜드 경제”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과 지역 브랜드 건설을 추진하고 기업의 상표 브랜드 전략을 지원하며 기업이 브랜드 발전을 중시하도록 지원하였다. “중국 상표 브랜드 전략 연간 발전 보고(2017)”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상표 브랜드 가치는 끊임없이 성장하였고 브랜드가 경제 발전을 이끄는 역할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관련 부서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중국 브랜드 가치는 전반적으로 937% 성장하였고 이미 전 세계 100강 브랜드 총 가치의 11%를 차지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가 제일 빨리 성장하는 국가가 되었다. 비슷하게 발전한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중국 브랜드 효과는 여전히 큰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 WIPO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천억 달러 GDP에서 경제 이익은 미국의 상표 창출이 2,175건이지만, 중국은 12,071건으로 매 건의 상표가 산출하는 실제 경제 이익은 미국이 중국의 6배이다.

3) 저작권 관리

중국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는 2008년의 1조 9천억 위안에서 2016년 5조 5천억 위안으로 증가하였고, 전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1%에서 7.33%로 증가하였으며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연평균 15.8% 증가하였다. 네트워크 핵심 저작권 업종 규모는 2006년 163.8억 위안에서 2017년 6,365억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0% 이상을 유지하며 산업 규모는 약 40배 성장하였다. 혁신 발전의 중요한 부분인 저작권 산업은 중국 경제 발전 방식의 변화에 중요한 작용을 일으켰고, 중국의 경제 발전의 품질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둘째, 지식재산권은 강농부농, 빈곤 구제 등 분야에서 성과 달성

1) 식물신품종이 효과적으로 보급되어 운영

산시 양릉 농업 첨단기술 산업 시범구에서는 2010년 이래, 누적 심의한 식물신품종이 500개가 넘고 밀 신품종은 누계 1억여 묘가 보급되었으며 증산된 양식은 25억kg이었다. 유채 신품종은 누계 1,200만여 묘가 보급되었고 중국 “쌍저유채(双低油菜)” 중 보급면적이 제일 큰 잡교 유채 품종으로서 강농부농 정책과 구각 양식 안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다. 중국 임업과학연구원 임업연구소의 녹색 식물 성장 조절제 계열 특허제품은 1,582종의 식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2억 600만 묘인 전국 80%의 현(시), 육묘 74.87억 그루, 경제효과는 91.24억 위안에 이르며, 전 세계 31개 국가와 지역에 보급되었다. 임업 육묘 신기술 성과는 이미 중국 남·북방 20여 개의 성에서 대규모로 보급 응용되고 있으며 육묘생산 라인과 생산 기지 300여 개가 설립되었다.

2) 지리적 표시

특히 산업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빈곤 구제에 도움을 주었다. 전국 각지에서 지리적 표시를 연결고리로 하는 “기업+지리적 표시+농가+기지”의 보편적인 산업 모델을 구축하였고, 지리적 표시 상품 생산, 가공, 물류 등 완전한 산업기반을 형성하였으며 지리적 표시 상품과 빈곤지역의 특색 자원을 상호 결합하여 경제적 이점으로 바꾸었으며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였다. 쓰촨성의 “자운키위”는 지리적 표시 상표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지리적 표시 종사자 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며 연간 생산량과 종사자 수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제3차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 상표 등록 후 상품 가격은 평균 50.11% 상승하였고 관련 사업의 발전을 이끄는 생산액의 비율은 1:5.2에 달하였으며, 53.38%의 지리적 표시 관련 산업 발전은 지역 경제의 핵심산업이 되었고 지리적 표시 산업의 수입은 생산지 농민 총수입의 65.94%를 차지하게 되었다. 간쑤성은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은 56개를 보유하고 총생산액은 146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직접 종사자 수는 326만 명에 이른다. 구이저우성의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은 117개이고 종사자 수는 200여만 명, 3,000여 개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중화 전통문화와 전통 기예의 발전과 계승 촉진

이상의 자사호, 양저우의 칠기, 우한의 한수, 난징의 운금 등 잊혀가고 있던 중화 전통 기예들이 계승되었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였다. 한때 산업 위기가 닥쳤던 촉수는 2013년 국가 지리적 표시 상품으로 인정된 후, 100종의 전통 자수법과 30여 종의 사용 자수법이 계승되고 발전되었다. 휘묵, 섭연, 선지, 호필, 단연 등 문화 상품이 더욱 발전되었다. 후베이성 근촌은 쑤에 대한 지리적

표시 상품 보호를 통하여 연간 생산액 30억 원에 달하는 주요산업으로 발전시켰다. 이밖에도 ‘중화 라오즈하오’라는 브랜드 효과는 중국 전통 수공업의 계승과 발전을 촉진시켰고 중의약, 중식 등의 민족산업을 국제 시장의 확장으로까지 이끌었다. 중국 전통문화를 내포하고 있는 ‘중화 라오즈하오’는 민족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넷째,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활용을 통해 집적회로 배치설계 산업 발전 촉진

2011년 국무원은 “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여 집적회로 배치설계 전유권의 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하였고,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집적회로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삼았다. 국가 과학기술 특별 지원, 집적회로 연구 개발 특별 자금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집적회로 산업의 핵심 기술 발굴과 핵심 상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적시에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3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교육 강화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시행 이후,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전환 활용 환경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지식재산권 활용이 날로 발전하고 지식재산권 응용 관리 모델도 부단히 혁신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첫째,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용 환경 개선

1) 과학기술 성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처분, 사용, 수익 개선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기관은 보유한 과학기술 성과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양도, 허가 또는 가격 투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이상 심사와 기준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활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2) 직무발명인 우선실시정책 실시

직무발명인이 직무발명의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 단위와의 협의를 통해 직무발명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협의 규정에 따른 권익을 누릴 수 있으며 직무발명인의 경업, 퇴직 후 창업, 재직창업 등 방식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성과와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허락함으로써 직무발명인의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적극성을 고취하였다.

3) 직무발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베이징시와 산둥성은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완성함에 있어서 주요 공헌자의 인센티브 비율을 70%까지 허용하였고, 헤이룽장성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95%까지, 장쑤성은 99%까지 고려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허난성은 과학기술 지식재산권 전환 수익 전체를 직무발명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쓰촨성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쓰촨성 전면 혁신 개혁 발전에 관한 결정” 중에서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권리를 중점으로 하여 과학기술 성과 자본화 산업화제도를 보완하였다. 서남교통대학은 “직무과학기술 성과 혼합 소유제”를 수립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였다. 서남교통대학에서 직무 과학기술 성과 혼합 소유제 개혁을 하면서부터 150여 건의 직무발명 특허에 대해 그 권리를 분할 확정되었으며, 10여 개의 첨단기술 기업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장려 조치는 직무발명인들의 특허 활용에 대한 적극성과 자율성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둘째,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활용 확대

“2016년 중국 특허 운영 상황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총 특허 활용은 30,655건, 그중 특허 양도 20,626건, 특허 허가 10,637건, 특허 담보 용자가 613건으로 특허 양도는 여전히 주요한 요소였다. 역대 분포를 보면, 특허 양도는 최근 몇 년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고등교육기관의 특허 양도는 3,000건 이상을 유지하였고 특허 허가는 최근 몇 년간 발전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매년 1,000여 건을 유지하고 있다. 2008~2016년, 중국과학원의 누적 지식재산권 전환(양도, 허가, 자체 실시, 기술 개발, 기술 서비스)은 257건에서 1,15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금액은 6.42억 위안에서 25.6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셋째,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활용 모델 혁신

중국의 많은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법률과 정책규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성과 전환에 대한 관리와 촉진을 강화하여 다양한 지식재산권 활용 모델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 모델을 참고하여 전문적인 지식재산권 관리 운영기구를 설립하였다. 칭화대학은 2015년 10월 지식재산권 사무국을 설립하여 특허 관리, 법무와 기술 이전의 융합을 실현하였고, 특허 전환 실시율을 40%까지 달성하였다. 청두중의약대학에서는 2017년 7월 전국 첫 중의약 지식재산권 운영센터를 설립하였고, 중난대학은 지식재산권 관리 부문에 운영직책을 신설하고 서기와 교장이 운영하는 지도자 그룹을 조성하여 교내 지식재산권 운영 업무 전개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우한공정대학은 전문화, 시장화의 특허 운영기구 모델을 건립하였고 후베이성 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도기막(陶瓷膜) 8항 특허기술을 통해 2,128만 위안의 지분을 마련함으로써 전환 플랫폼

품을 구축하였다. 동제대학은 교외 특허 운영 서비스 기구에 위탁하여 고성능의 레이저박막기 및 장치 6항 특허를 3,800만 위안에 양도하는 데 성공하였다. 중국과학원도 점차 다양한 과학기술 운영 모델을 탐색하여 “행정+시장화”의 성과 전환 사업 모델을 채택하였다. 선전 중국과학원 지식재산권 투자회사는 2009년에 설립되었고, 중국 과학원 혁신 인큐베이터 투자책임회사가 2015년에, 중국 과학원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 센터는 2016년에 설립됨으로써 비교적 완전한 지식재산운영 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

넷째,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 능력 향상 필요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중요한 지식재산권 창출 주체이자 중요한 지식재산권 활용 주체이다. 그러나 중국 지식재산권 활용 시스템의 수립은 주로 서비스 기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 내부 운영기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의 내부 지식재산권 운영기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중국 내 다수의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활용은 주로 외부 서비스 기관 모델을 통하여 진행되는 반면에 해외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대부분 내부 기관을 설립하여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고 있으며 내부 기구가 운영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3%에 달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관리 기능과 투자 기능 삼합일(三合一) 집중 관리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각 기구에는 적게는 십여 명 많게는 백여 명의 전문 인력을 두고 있으며 전문화된 지식재산권의 활용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의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해외 선진국의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기관과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 능력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여 전반적인 수준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3.2.4 군민(軍民) 융합 지식재산권 활용

국방 지식재산권의 민간 영역으로의 활용 확대를 촉진하고, 민간 영역의 지식재산권이 국방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의 중요한 내용이다. 국가 전략을 시행하면서부터 중국은 군민 융합 지식재산권이 상호 교류하여 활용되는 것을 추진하였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군민 지식재산권 상호 전환 활용의 정책과 부가 조치 채택

2016년, 중공중앙, 국무원, 중앙군위는 공동으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융합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민간 영역의 지식재산권이 국방과 군대 건설 영역에서도 활용되게 이끌고, 국방지식재산권도 민간 영역으로 사용이 확대되기를 격려”할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2017년, 과학기술부와 중앙군위 과학기술위원회는 공동으로 “13·5 과학기술 군민융합 발전 특별전문계획”을

발표하여 군민 과학기술 성과의 상호 교류를 목표로 삼았다. 중앙군위장비발전부가 발표한 규범에는 장비에 관한 과학연구, 구매, 수리 보장 활동 중에서 지식재산권의 처리, 활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또한, 중앙군위장비발전부는 3,000여 건의 국방 특허의 비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고, 4,000여 개의 국방 특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군 무기 장비 조달 정보 사이트에 배포하여 민군 이중 기술 자원을 사회에 제공하였다. 국가·국방 과학기술 공업국, 재정부, 국가지식산업권국은 “국방 과학기술 공업이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추진할 것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함으로써 “13·5”국방 과학기술 공업 지식재산권 사업의 지도 사상·기본원칙·목표를 명확히 하였고, 지식재산권 제도의 기초적인 부분에서 힘을 합쳐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융합 발전을 추진하였다.

둘째, 지식재산권 군민 융합 서비스 시스템 건설 추진

각 부서,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군민 융합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하고 재정부, 국가지식산업권국은 시안시에서 건설한 국가 지식재산권 군민융합 운영 시범 플랫폼의 “군공+지방” 건설 모델의 형성을 추진하였고, 공업정보화부는 “군민융합 과학기술 서비스기구 추천 명단 리스트”를 발표하여 온·오프라인 지식재산권 군민융합 서비스 대상을 선발하였다. 국가국방과학기술 공업국은 2015년부터 국가지식산업권국과 연합하여 3년간 “국방과학기술 공업 지식재산권 전환 리스트”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개된 지식재산권 누적 수량은 1,480건에 달한다. 국방과학기술 공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전환 활용을 강화하여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일조하였다.

셋째, 군민 지식재산권 상호 전환 활용의 성공 사례 증가.

2009년부터 공업정보화부는 매년 “민참군 기술과 상품 추천 리스트”와 “군용기술의 민간기술 전환 및 보급 리스트”를 편찬하여 심층적인 협력을 이끌었으며 군민용 기술 상호 전환을 추진하였다. 2017년까지 공업정보화부에서는 두 개의 “리스트”를 각 8개씩 발표하여 민간 분야에 군용기술 1,143개를 전파했으며 국방 분야에 군용 잠재력을 가진 민간의 우수한 기술 1,110개를 추천하였다.

3.2.5 지식재산권 활용 정책 및 공공 서비스 추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시행한 이래, 중국은 지식재산권 응용을 촉진하는 정책적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과학기술 성과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 법규 시스템을 초보적으로 형성하였으며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운영시스템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 지식재산권 응용을 촉진하는 정책적 환경 최적화

2015년 8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과학기술성과 전환 촉진법”(2016년 3월),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 전환 촉진법〉 실시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발표하였으며(2016년 5월), 국무원 판공청은 “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 행동방안”을 발표하였다. 3개의 규범은 성과 전환 촉진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와 체계적인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법 조항 개정, 세부규칙 제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임무 배치에 이르는 과학기술 성과전환 추진사업의 “삼부곡”을 형성하였는바, 중국 특색이 있는 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에 관한 정책적 법규 체계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2016년 12월, 국무원은 “13·5(十三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활용 촉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활용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보완하고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며 지식재산권 협동 활용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식재산권 활용 공공서비스 시스템 기본 수립

중국은 재정 수단을 활용하여 일부 운영기구의 건설과 발전을 지원하였고, 전국 플랫폼을 중심, 지방 플랫폼을 기초로 하여 사회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운영 체계를 수립하였다.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재정부는 2014년 전국 지식재산권 운영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할 것을 확정하였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15년 초에 “2015년 전국 특허 사업 발전전략 추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운영시스템 건설”과 “1+2+20+n”의 건설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쑤저우 등 10개 도시를 국가지식재산권 강시(强市) 창설 시로 선정하였고 지식재산권 운영시스템 건설 등의 주요사업을 잘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6년, 공업정보화부,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군민 융합과 전자정보 영역 고가치 지식재산권 육성 운영 사업에 대한 통지”를 발표함으로써 군민 융합과 전자정보 영역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크게 지원하였다. 2017년 12월부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선전시, 베이징시, 상하이시에서 남방 지식재산권 운영센터, 자동차산업 지식재산권 투자 운영센터와 지식재산권 국제 운영 특색 시범 플랫폼을 건설하고 구역 및 산업 플랫폼 건설 면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현재, “플랫폼, 기구, 자본, 산업” 사위일체(四位一体)의 전국 지식재산권 활용 공공 서비스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다.

3.2.6 소결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시행하면서부터,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 환경이 변화되었고 공공 서비스 활용 체계가 수립되었다. 지식재산권 활용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고 지식재산권 거래, 담보 융자 등 상업적인 활용도 발전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의 경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빈곤구제에 도움이 되고 강농부농 등 민생 분야에서도 효과적으

로 활용되었으며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대폭 상승했다.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활용을 촉진하고 운영 모델의 혁신을 논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군민 지식재산권 상호 전환 활용 정책이 부단히 강화됨에 따라 성공 사례가 증가하고 효과도 해를 거듭할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중국 지식재산권 전환 활용은 아직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중국 지식재산권 활용 효율과 기술 표준에서 활용 능력이 여전히 낮으며, 지식재산권 협동 활용 시스템이 비교적 느슨하다. 둘째, 국유기업,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활용 시스템 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 모델도 혁신이 필요하다.

3.3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① 지식재산권 입법, ②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③ 지식재산권의 행정적 보호, ④ 다원화 분쟁 해결 및 예방 시스템을 주요하게 포함하고 있다.

3.3.1 지식재산권 입법

〈강요〉 및 부설 문서에서는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및 법제 건설에 대하여 명확한 목표와 조치를 제시하였다. 최종목표는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하는 것”인데 “주요 전략” 부분에서 각각의 주요사안을 열거하였으며 그중에서 첫 번째 조항이 바로 “지식재산권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권 법률·법규를 보완하여야 하며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전문 법률 및 유관 법규를 제때 개정하여야 하고,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 문화 예술과 지리적 표시 등의 입법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입법의 연결고리를 튼튼히 하고 법률·법규의 운용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 방지, 대외무역, 과학기술, 국방 등 법률·법규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완비하여야 한다.

첫째, 법률·법규의 대대적인 개정과 중국 지식재산권 법률 제도의 기본 완비

2008년 “강요” 실시 이래, 중국은 “민법총칙”을 출범하였고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부정당경쟁법”, “종자법”, “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또한, “특허법 실시 세칙”, “상표법 실시 조례”, “저작권법 실시 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저작권 단체 관리 조례”,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 “식물신품종 보호 조례”,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 등 지식재산권 행정법규도 수정·보완하였고 국내 정세와 세계화 추세에 알맞은 지식재산권 법제도를 수립하였다.

1) 기초 법률

2017년 3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민법총칙”이 통과되었는데 그중 제123조는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민사 주체는 법률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을 향유한다. 지식재산권은 권리자가 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객체에 대하여 특유의 권리를 향유한다. (1) 작품 (2)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3) 상표 (4) 지리적 표시 (5) 영업 비밀 (6) 집적회로 배치설계 (7) 식물신품종 (8) 법률이 규정한 기타 객체” 그 중의 “기타 객체”는 기타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는 지적 활동의 성과를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단행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2) 특허

2008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특허법” 제3차 개정을 결정하였고 2009년 10월부터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1월, 국무원은 수정한 후의 “특허법 실시세칙”을 발표하였는데, 국가 지식재산권국에서는 2010년 “특허심사지침”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하였으며 뒤이어 몇 차례 수정을 거쳤다. 그 외에도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법” 제4차 전부 개정 준비 사업을 실시하였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이번 개정안에서 권리 보호를 위한 소요시간이 길고 입증이 어려우며 보호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배상액이 적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권의 보호에 그 중점을 두었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를 보호함에 있어서 존재하는 기타 문제에 대한 개정사항을 건의하였다. “특허법”과 “특허대리조례”의 개정은 국무원 2018년 입법 사업 계획에 포함되었고, 2015년 8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법”을 개정하였고 과학기술 성과의 처분권, 수익권, 장려권을 이양하여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유리한 제도 조건을 마련하였다.

3) 상표

2013년 8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상표법” 제3차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14년 5월부터 시행하였다. 2014년 4월, 국무원은 개정 후의 “상표법 실시조례”를 발표하였고 해당 개정을 통해 출원인이 상표를 등록할 때 편리를 제공하였고 상표 등록의 객체를 확대하였으며, 유명상표의 보호를 규범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표 전용권 보호를 강화하여 징벌적 배상 규정을 추가했고 권리 침해 배상액을 높였으며 권리인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였다.

4) 저작권

국무원의 입법 계획에 근거하여 국가판권국은 “저작권법” 제3차 개정 작업을 개시하였다. 2012년 12월, 국가판권국은 국무원에 “저작권법(수정초안)”을 제출하였고 원 국무원 법제 부처에서 2014년 6월에 공포하였으며 사회 대중의 의견을 구하였다. 2017년 12월, 초기의 의견 수렴, 조사, 세미나, 심의회 등의 단계에서 국가판권국은 초안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심사받았다. 국무원 법제 부서는 재차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여러 차례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국가판권국과 함께 수정안을 보완하였다. 2013년 1월, 국무원은 집중적으로 “저작권 실시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와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보호 조례”에 대한 개정을 진행하였고 행정 처벌에서도 고정된 처벌 액수를 권리침해 상품 또는 서비스 가치의 일정 배수로 벌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수정하였는바, 행정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5) 부정경쟁

2017년 11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개정 “반부정당경쟁법”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의 정의가 재정립되었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영업비밀 침해자의 행정처벌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책임추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를 보완하여 지식재산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6) 식물신품종

2013년 1월, 국무원은 “식물신품종 보호 조례”를 개정하고 위조 상품의 권리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식물신품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2015년 11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종자법”을 개정함으로써 제4장 “신품종”을 추가하였으며 총 21조의 조항을 통해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규범화하였다. 개정 “종자법”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둘째, 일부 특정 지식재산권 영역의 법률의 추가 제정 필요

1)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관한 입법

생물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관리 조례의 입법은 활발히 추진 중이지만, 현재 유전자원은 “특허법” 등 법률·법규에서의 언급이 적은 상황이다. 전통지식 또한 “중의약법”에서만 언급될 뿐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전면적인 입법이 부족하다.

2) 민간 문화 예술 보호 입법

1990년 제정된 “저작권법” 제6조 규정은 민간 문화 예술 작품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법”이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는 동안 해당 규정을 이어올 뿐 현재 민간 문화 예술 작품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 않다.

3) 대외무역 지식재산권 입법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16년에 “해관법”과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조항에서만 대외무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국무원은 2003년 “지식재산권 해관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2010년에 개정을 진행하였으며 수출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대외무역의 지식재산권 입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3.2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사범 사건에 대한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 형사 심판 “삼합일” 개혁이 추진되었으며 지식재산권 법원과 법정이 설립되었다.

첫째, 지식재산권 심판 사건은 매년 증가하였으며 심판 효과도 점차 향상

재판 품질을 제고하고 재판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법원 기술 조사관 소송 활동에 참여하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잠정 규정”, “특허 분쟁 사건 법률 활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등 20개의 사범해석 또는 규범적인 문서를 제정하고 개정하였다.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민사사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2017년 전국 법원에서 수리한 각 유형의 지식재산권 1심 사건이 21.3만 건에 달하였다. 지식재산권 유형으로 볼 때, 저작권 사건이 60%를 차지하고 상표사건은 20%를 차지했으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사건이 10%를 차지, 기타 유형의 지식재산권 사건은 10%를 차지하였다.

둘째, 검찰기관의 직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

2017년 전국 검찰기관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체포한 범죄는 2,510건, 4,272명이었고 지식재산권 범죄에 관해서 공소를 제기한 것은 3,674건, 6,809명이었다. 관련 사건 중 상표 위조 범죄, 위조 상표 상품 판매 범죄, 불법 제조, 판매 및 불법 상표 제조한 범죄용의자는 3,975명, 공소 제기는 6,468명으로 각각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93.1%와 95.0%를 차지하였다. 체포령을 내린 저작권 침해 범죄는 67건, 115명, 공소 제기는 157건, 272명, 체포령을 내린 영업비밀 침해

범죄는 32건, 59명, 공소 제기는 24건, 61명, 체포령을 내린 수죄 중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9건, 27명, 체포령을 내린 타죄 중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는 48건, 87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도 검찰 기관에서 형사가 입안해 감독하거나, 민사행정 항소, 집행 감독 등 법률 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적시에 상표 침해 분야의 감독 미흡, 벌금으로 형벌을 대체, 재판 불공정, 집행 불공정 등의 문제를 바로잡았다.

셋째, 공안기관의 지식재산권 범죄사건 수사 강도 강화

2017년 공안기관이 해결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위조 상품 제조 판매 범죄사건은 1.7만 건, 연루된 금액은 64.6억 위안에 달하며 44건의 중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감독 처리하였다. 2011년부터 전국 공안기관이 해결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위조 상품 제조 판매 범죄사건은 20여만 건, 총가치는 1,200억 위안을 초과하였으며 공안부가 감독 처리한 2,500여 건의 중대 사건은 전부 수사 완결하였는바 권리를 침해한 위조 상품 범죄에 대해 지속적이고 고압적인 태세를 형성하였다. 동시에 공안부는 공상, 질검, 해관, 저작권, 특허, 식약품 감독 등 행정 집행부서와 함께 협력체제를 수립하여 공안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수사”하고 행정집행부서로 하여금 “진지 제어(阵地控制)”가 결합한 사업 모델 형성을 추진하여 효과적으로 전반적인 법 집행 기능을 향상시켰다. 2011~2017년, 각급 행정집행 부문에서 공안기관으로 이송한 범죄사건은 3.2만 건이고 이송 비중은 8%에서 점차 늘어 19%에 달하였다.

다국적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은 주도적으로 각국 법 집행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실무를 수행했으며, 단서 공유, 조사 및 증거 확보, 사법 협조 등 다차원적인 협력을 강화했으며 적극적인 법 집행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2015년부터 공안부와 해외 집행 기구가 연합 조사하여 확보한 단서가 40여 건에 이르렀다. 주요 사건을 둘러싸고 공안부는 국제형사경찰기구와 관련 국가의 법 집행 부문과 함께 “허리케인(飓风)”, “진실(真实)”, “판고(盘古)” 등 17차례의 국제집행 활동과 일련의 사건 해결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넷째, 지식재산권 재판 체계 수립의 획기적인 이룩

지식재산권 법원과 법정을 설립하고 재판기준을 통일하였다. 2014년 8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는 것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2017년부터 최고인민법원은 각지 중급인민법원 내부에 지역을 초월한 관할권을 가진 지식재산권 전문 법정을 설립하였는데 우한, 청두, 난징, 쑤저우, 허페이, 푸저우, 항저우, 닝보, 지난, 청두, 선전, 톈진, 정저우, 창사, 시안, 난창에 설립되어있다. 2018년 7월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는 3개의 지식재산권 법원과 16개 전문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립하였다.

지식재산권 법원과 전문 지식재산권 법정 설립은 지식재산권 사건 심리의 전문화, 집중적 관찰, 절차의 집약화 실현을 이끌 수 있고 근본적으로 지식재산권 재판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심판한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지식재산권 침해 배상액은 부단히 증가되었으며, 2016년 특허 침해 사건의 평균 배상액은 141만 위안에 달하였다.

지식재산권 재판의 “삼합일” 개혁은 전국 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재판정이 지식재산권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일관적으로 접수하도록 추진했다. 2016년 “삼합일” 개혁은 전국 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다. 지식재산권 심판 “삼합일” 개혁은 지식재산권 사법 체제의 전 방위적인 개혁으로서 사법 보호의 전반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였다.

2018년 2월, 중공 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지식재산권 심판 분야 개혁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지식재산권 소송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기초로, 지식재산권 법원 체계 수립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지식재산권 심판 조직 건설을 보장으로, 지식재산권 사법적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전면적, 체제적, 근본적인 문제를 타파하고 지식재산권의 공신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는 중앙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재판에 관한 최초의 기념비적인 강령성 문건이다. 지식재산권 법원은 전면적으로 각 항의 사법개혁 조치를 실행하여 주 심판관 책임제를 실행함으로써 합의적 사건 해결 책임제를 보완하고, 법관액제 도입, 사법직업 특성에 맞는 인적 분류 관리 제도의 탐색, 사법 책임제를 시행함으로써 법관 주도, 인적 분류, 책임소재의 명백화, 협동적 심판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형성하여 중국 사법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3.3.3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이래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는 더욱 편리하고 효율이 높아졌다. 2013~2017년 중국은 특허 위조 침해 사건 19.2만 건, 상표 위조 침해 사건 17.3만 건을 처리했으며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강력하게 보호하였다. 각 부문과 각 지방에서는 협력하여 위조 단속, 소프트웨어 정품화, 인터넷 해적판 단속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뇌우”, “천왕”, “호향”, “검왕”, “뇌정”, “소원” 등 특별 조치를 통하여 혁신적인 창업과 운영 환경을 뚜렷하게 개선하였다.

첫째, 특허 행정법 집행 역량 강화

국가 특허 행정 집행 사건처리량이 2007년 1,462건에서 2017년 6.7만 건으로 증가하였고, 사건처리 효율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공평 경제, 효율적 관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였다. 최근 몇 년간, 특허 행정 부문은 특허 영역의 위조 사건 단속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였고 일상의 법 집행

사건처리와 전문 조치를 협력하는 것을 강화하여 “호항”, “뇌정” 특별 조치를 심층적으로 전개하였다. 영역을 초월하는 집행 협력체제를 확대하고 대형 전시회 특히 집행 역량을 강화하며, 질서 있게 수출 단계의 특허 보호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집행체제를 보완하여 온라인 특허법 집행을 위한 지역 간 협조 체제를 보완하여 조치에 참여하는 성이 22개로 확대되었다. 2017년 특허 분쟁 처리 사건은 28,157건(특허 침해 분재 처리 사건 27,305건 포함), 동기 대비 35.0% 증가하였으며 특허 위조 사건은 38,492건, 동기 대비 37.2% 증가하였다. 동시에 신속 협력 보호와 권리 유지 지원사업이 차례로 추진되어 신속한 심사, 신속한 권리 확보, 신속한 권리 유지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14개의 지식재산 신속권리보호센터를 설립하였다. 신속한 권리 보호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에 17개 지식재산권 신속권리보호센터를 설립하였다. 권리보호와 신고 시스템을 꾸준히 강화하여 이미 설립한 76개 신속권리보호센터 기초에서 지방 센터, 워크스테이션을 총 400여 개를 설립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와 신고 네트워크가 전국 대부분 지역을 다룰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상표권 보호 역량 강화

2017년 총 3만 100건, 3억 6,500만 위안 규모의 상표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공장과 시장 감독 부문에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상표 행정의 집행 강도를 높이고 특별히 유명한 상표, 지리적 표시, 올림픽 마크, 엑스포 로고, 아시안 게임 로고 등의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였다.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하여 구역 및 담당을 초월한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상표 빅데이터 및 신용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상표에 대한 “쌍수기, 일공개” 감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상표 행정의 법률 집행과 사법의 연계를 실현하고 상표 보호 사회의 형성을 추진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08~2017년, 국가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는 상표법 위반 사건 50.09만 건에 대하여 조사, 처리하였고 그중 권리 침해 사건은 43.69만 건이며 일반 위법 사건은 6.04만 건, 해외 관련 사건은 10.48만 건, 벌금은 46.34억 위안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상표 감독 관리 보호 강화를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사건 집중 심사와 법률적용 등의 조치를 하여 대규모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 강탈 사건을 엄격하게 심리하였다. 또한, 상표의 권리 침해를 집중단속하는 “추원”과 같은 전문적인 조치를 실시, 상표 행정의 법률 집행에 대한 업무 효율을 더욱 높였다. 지방 상표 행정에 관한 법률 집행 사업에 대해 지도, 조직, 협력을 강화하여 “일득각”, “노봉상”, “BULL”, “낙천사과” 등 지역을 초월하고, 여론의 반응이 뜨거웠던 상표권 침해 사건을 조사, 처리하였는바 권리인의 상표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셋째, 권리를 침해하는 해적판 단속 집행 역량 강화

2017년 저작권 부문에서는 권리 침해 해적판 사건 3,100여 건에 대해서 조사, 처리하였고 해적판 제품 605만 건을 수거하였다. 최근 몇 년간, 국가저작권국은 지속해서 권리 침해 해적판을 단속하는 사업을 강화하고, 해적판 영상물 전문 단속, 소프트웨어 사전 설치 전문 관리, 도서관 해적판 전문 관리, 불법 복제업체 특별 단속, 고등교육기관 해적판 교재 단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저작권 단속이 이어졌다. 2012~2016년 각급 저작권 행정집행 부문은 행정처분을 약 2만 건, 각종 저작권 침해 해적판을 약 1억 건 수거하였다.

넷째, 법에 근거하여 영업비밀 침해 등 부정경쟁 행위 조사 처리

전국 공상 및 시장 감독 관리부서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대량의 위조 모방, 영업비밀 침해, 허위광고,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정경쟁 행위에 대하여 법에 근거하여 제지하고 조사, 처리하였다. 2017년, 전국 공상 및 시장 감독 관리부서는 부정경쟁 사건 24,601건에 대해 조사, 처리하였고 그 가치는 130억 위안에 달하였다. 그중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부정경쟁행위는 5,839건이고 가치는 8,873만 위안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강력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였고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였으며 발전을 촉진하였다.

특히 국가저작권국은 국가인터넷정보사무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등 부문과 연합하여 13년째 “검망행동”을 조직하여 인터넷 권리 침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으며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 사건은 총 6,103건이며, 불법 웹 사이트 5,636개를 폐업 조치하였다. Qvod Player 권리 침해 사건, Anternna video망 권리 침해 사건, 1 ting 뮤직망(一听音乐网) 권리 침해 사건, Tomato Garden Network(番茄花园网) 소프트웨어 권리 침해 사건 등 일련의 중대한 사건들이 적발되어 조사, 처리됨으로써 효과적으로 인터넷 환경이 정비되었고 국내외 권리자의 충분한 인정을 받았다. 소프트웨어의 정품화 사업은 기한 내에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중앙과 성, 시, 현 진 정부 기관이 모두 정품화를 실현하였으며 기업의 정품화 사업도 차례로 추진되어 국제적인 약속을 이행하였다.

다섯째, 세관 지식재산권 집행력 제고

“강요”의 변화와 보호를 강화하는 요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세관은 전 방위적이고 다분야적이며 심층적으로 지식재산권 세관 보호 사업을 추진하여 엄격하게 권리 침해 화물의 수출입 위법 활동을 단속함으로써 부단히 집행 자원을 집중하고 집행 효율을 제고하여 최근 10년간 십 여 차례의 집행 활동을 전개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제조에 대한 “청풍” 행동(2015~2017), “용약” 행동(2017), 특별 활동 또는 경기에 대한 세계 박람회(2010), 월드컵(2014, 2018)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법률 집행 행동, 특정 상품에 대한 특허 보호 전문 행동(2016) 등이 있다. 중국 세관은 특별히 국제 세관과 협력하여 집행 활동을 전개하였다. 중미 세관 연합 법률 집행 행동(2013, 2016, 2017), 중러 연합 법률 집행 행동(2016, 2018)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강요” 실시 10년간, 전국 세관은 부단히 집행 효율을 제고하였고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권리 침해 화물 23.6만 건에 대해 압수하였고 그 화물 가치는 40.8억 위안에 달하였다. 2017년, 전국 세관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2.25만 건을 취하였으며 1.91만 건의 화물에 대한 압수조치를 통해 권리 침해 화물은 4,094만 건에 달하였다.

여섯째, 영역을 초월한 연합 집행체제와 특별집행 활동의 성과 달성.

많은 특별집행 활동은 서로 협력하여 진행되어 여러 측면에서 시장의 변화를 일으켰다. 예를 들면 “노우”(2008~2011, 악의적, 단체에 의한, 반복적인 권리 침해, 특허 위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천왕”(2008~2009, 특허 위조), “호향”(2012~2015), “번개”(2014~2015) 등 특별집행 활동이 있다. 문화시장 종합 집행 개혁 사업은 분야를 초월한 협력체제를 형성하였다.

일곱째, “양법 연계(两法衔接)” 사업체제 구축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와 위조 상품 제조, 판매단속 영도소조사무실(双打办),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양법 연결” 사업체제를 보완하여 전국 각지의 행정집행과 형사 사법 연결의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현재, 전국 “양법 연결” 정보 공유 시스템 중앙 플랫폼이 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국 30개 성(구, 시)에서 이미 “양법 연계” 정보 공유 플랫폼을 수립하였고, 전국 행정 집행과 형사 사법 사건 정보의 상호 공유를 통해 이미 입력된 사건 정보가 45만여 건에 달하였다. “강요” 실시와 지식재산권 침해와 위조 상품 제조, 판매단속이 전개된 이래, 공상 행정 관리 기관과 각급 저작권 행정 관리 부서는 적극적으로 “양법 연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형사 사법 기관으로 이송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형사 사건 수량은 증가하였다. 2008~2017년 전국 공상 시장 감독 관리부서에서 사법기관에 이송한 상표 범죄 사건은 2,602건이고 사법기관에 이송한 상표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2,481명이며 각급 저작권 관리부서에서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저작권 침해 사건은 3,735건이었다.

3.3.4 다원적 분쟁 해결 및 예방 시스템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화 해결 및 예방 시스템은 지식재산권 법제 수립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전문적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기구를 육성시키고 지식재산권 보호, 예방 및 조기 경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신고 및 권리 보호 지원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주도하에 점점 많은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신속권리보호센터가 설립되었다. 2017년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신속권리보호센터는 31개에 달하였고 지식재산권 제보 신고와 권리 보호 지원 서비스 네트워크는 전국을 아우르게 되었다. 특히 권리 침해 판정 자문 시스템, 특히 분쟁 신속 조정 시스템 및 구역별 집행 협력 시스템 수립을 통하여 전국 지식재산권보호 지원사업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둘째,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 및 조정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14년부터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사업을 시행하였고, 13개 성(구, 시)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유관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각 유관 지방에서는 약 60개 지식재산권 조정 조직을 육성하였고 800여 명의 조정원을 선발 및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성공적으로 조정된 사건이 6,300여 건에 달하였다. 2017년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 조정 시범사업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행하였는데 처음으로 중재를 시범사업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9개 성(구, 시) 중재 조정 시범 임무를 시행하였다. 11개 지식재산권 중재 기구와 27개 조정 조직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고 시범지역에서는 120여 명의 지식재산권 중재원을 선발 및 교육하였으며 600여 건의 중재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350여 명의 조정원을 선발 교육하였고 성공적으로 조정된 사건은 1,000여 건에 달하였다.

세 번째, 권리 침해 예방 조기 경보 시스템

지식재산권 보호 예방과 조기 경보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첫째, 전문적인 예방과 조기 경보 기구를 설립하였다. 둘째,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수립하고 셋째, 맞춤형 예방과 조기 경보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주요 영역의 중대한 기술 특허 분석과 조기 경보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3.3.5 소결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이후, 중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법규는 부단히 개정되어,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완비되어 중국 국내 정세에 적합하고 국제화 추세에 어울리는 지식재산 법제도를 수립하였다.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를 강화하고 재판체계의 수립을 통해 급진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3개의 지식재산권 법원과 16개의 지식재산권 법정을 설립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재판 “삼합일” 개혁이 전국 법원에서 전면적으로 진행되었는바 재판 기

준이 점차 통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역량을 부단히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행정 집행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행정 집행 절차도 규범화되고 집행의 전문화 수준도 끊임없이 향상되었다. 지식재산권 신고와 권리 보호 지원은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이 되었으며 사회 관리 면에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점점 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만족도도 부단히 향상되었고 2012년의 63.69점에서 2017년의 76.69점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은 존재한다. 지식재산권의 기초적인 법률 부족을 비롯하여 일부 특정 분야의 지식재산권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여전히 “낮은 배상액”, “입증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존재하여, 입증제도 등 소송절차의 보완과 권리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등의 수립이 필요하다.

3.4 지식재산 관리

지식재산 관리에 관하여 국가지식재산 전략은 주요 사항으로 ① 지식재산 관리체계 구조, ② 지식재산권 영역의 “방관복(放管服)” 개혁, ③ 각 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 ④ 혁신주체의 지식재산권 관리 능력 등을 포함한다.

3.4.1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구조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시행하면서부터, 중앙정부와 각 지방은 지식재산권 업무 전담 기구와 전략실시 기구들을 설치하여,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수직적이고 통일적인 지식재산권 전략 실행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중국 사회주의제도의 장점을 명확하게 발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강요> 실행 과정에서 직면한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의 실무적인 문제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구 개혁을 통해 일원화된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체계를 형성하고, 지식재산권 발전과 감독·평가를 위한 관리감독 역할 및 관련 구조를 보완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심사 시스템 정비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관리 능력의 전반적인 향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1.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식재산권 전략·계획·협력 및 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

중앙과 지방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의 기반을 견고히 하고, 지식재산권 업무 전담 기구와 지식재산권 전략 실행을 지도하기 위한 부서를 설립하였다. 중앙군위는 국방지식재산국을 설립하였고, 최고인민검찰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등 기관도 지식재산권 업무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전국 29개 성(구, 시), 신강건설병단, 200여 개 시는 각 지역별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하였

다. 중앙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부처간 연석회의와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품 단속 지도자 그룹,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촉진 부서연합회의 등을 비롯한 업무 협력과 의사결정 기구들을 설립하였다. 각 성(구, 시)도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를 위한 업무 협력 기구를 설치하였다. “중앙에서 지방까지”의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은 각 부서 간의 협력과 연결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징진지 프로젝트, 창장 경제벨트 발전계획, 동북지역 농업기지 진흥 등 국가 정책의 수행과 함께, 각 지역 간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의 협력을 촉진하여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관리 구도를 형성하였다.

2.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의 시범사업 실시

중국은 활력이 넘치고, 지속발전 가능성이 강하며, 고품질 지식재산권 양성을 위한 “중점 지역”을 건설하였다.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의 부족,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부족, 정부 서비스 능력 부족, 창의적인 발전 인력에 대한 지원 부족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2015년에 지방정부에 지식재산권 관련 개혁 시범구 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은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구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2016년 중앙 전면 심층 개혁 지도자그룹은 ‘지식재산권 종합관리 개혁 시험사업 총체방안(关于开展知识产权综合管理改革试点总体方案)’을 통과시켰으며 동 방안은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종합관리 구조를 구축하고, 유익하고 편리한 지식재산권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수립하여, 지식재산권을 종합 활용과 혁신 발전 촉진 능력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2017년에는 푸젠성 샤먼시, 산둥성 칭다오시, 광둥성 선전시, 후난성 창사시, 장쑤성 쑤저우시, 상하이시 등 6개 시(구)에서 지식재산권 종합관리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국가의 전면개혁 시범구, 자유무역 시범구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지식재산권 종합관리 개혁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의 목표, 개혁제도의 정층설계(顶层设计)와 기층 탐색 시범지점이 모두 함께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하이시 푸둥신구는 2015년부터 특허, 상표, 저작권 행정관리와 종합 집중 기능을 함께하는 집중관리기구를 최초로 구축하였다. 특허, 상표, 저작권과 관련하여 국가 및 상하이시의 법률 및 법규에서 규정한 9가지 책임사항과 특허, 상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포함한 75개 권한사항을 모두 명확하게 정비하여, 지식재산권 관리의 종합성과 효율성을 실현하였다. 중국(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는 지식재산권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설립하였는데, 온오프라인 연동 운영 방법을 통해 시범구 내의 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거래, 용자, 평가, 감정 등을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해 주었다. “푸둥 모델”은 기타 신설하고 있는 자유무역구에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개혁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종합관리 개혁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해 주었다.

많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성, 시, 현의 시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3개의 지식재산권 강성(强省)을 지정하여, 중앙과 지방의 우수한 자원을 집결하여 중대한 지식재산권 협력 프로

젝트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광저우, 우한 등 14개 도시를 국가 지식재산권 강시(强市)로 지정하였고, 189개 국가 지식재산권 시범 도시, 449개 강현(强县), 31개 전통지식재산권 보호 시범현(区), 125개 시점 시범 원구를 지정하였다.

지식재산권 종합관리 개혁 시점, 지식재산권 강성, 시범도시 등의 지정과 수립은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와 개혁의 발전을 강력하게 촉진하였다. 각 지방정부는 부단한 개혁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시스템 구조를 꾸준히 보완하고, 활력이 넘치고 지속발전 가능성이 강하며 우수한 지식재산권 “중점 지역”들을 건설함으로써, 특색이 뚜렷하고 성과가 현저한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3. 지식재산권 행정관리 구조 개혁의 성과 달성

상표와 특허가 구분되어 중복 관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국무원 구조 개혁 방안은 기존 국가지식재산국의 직책, 기존 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관리 직책, 기존 국가질량감독검증검역총국의 원산지 지리적 표시 관리 직책들을 총합하여, 국가지식재산국을 새롭게 재편하였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새로 구성된 국가지식재산국의 직책은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책임지고, 지식재산권 체계 수립을 추진하고, 상표, 특허, 원산지 지리적 표시의 등록등기와 결정을 책임지고, 상표와 특허 관련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상표, 특허 관련 집행 업무는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담당한다. 신문 여론, 홍보와 문화 업무에 대한 당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신문출판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총국의 신문출판 관리 직책을 중앙선전부로 이관하였다. 중앙선전부는 대외적으로 국가신문출판서(국가출판국)로 운영된다. 개혁 후, 지식재산권 관리 구조는 더욱 효율적으로 되었다.

각 지역 지식재산권 관리 기구도 이전에는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등급이 다양하였으며 서로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다른 관리 방식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국가 기구 개혁을 통해 각 지방정부는 중앙의 주도적 배치와 요구에 따라, 각 지역 경제와 사회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현황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기구와 조직 건설을 강화하여 현지에 맞는 기구들을 구축하여 업무 직책의 정비를 최적의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개혁들은 중앙과 지방의 구조가 연결되도록 하여, 혁신 발전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힘을 실어주었다.

4. 지식재산권 심사 시스템의 보완

특허 통계 방식과 수치 발표 방식을 개선하여, 특허의 품질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심사를 이끌어, 내부와 외부가 “양쪽으로 평가하고 양쪽으로 감독(双评价, 双监督)”하는 특허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특허 품질에 대한 심사, 평가, 피드백 등을 강화하여 특허심사 업무 지도 체계와

품질 보증 체계를 완비하여 품질 심사 매뉴얼을 구축하여 통일된 특허 심사표준을 설정하였다. 상표 심사 시스템 개혁을 통해, 일부 상표 심사 업무와 서비스적인 업무들은 모두 위탁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관리하지만, 지방이 관리를 위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상표 심사 협력 센터를 설립하였다. 상표 심사 제도를 완성하여, 일원화된 임무를 배분하고 통일적인 심사표준을 설정, 품질 검사를 진행하였다. 무작위로 검증을 하고, 분기별로 품질에 대한 수치통계를 하며, 검증수치와 접수한 신고에 대한 대조분석으로 심사와 평가를 진행한다.

3.4.2 지식재산권 영역의 “방관복” 개혁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시행하면서부터, 중국은 특허 심사제도의 최적화, 상표 등록의 편리화, 상표 등록 시스템 구조 구축, 상표 감독 규범화, 특허대리기구 설립 기준 완화, 특허대리기구 연간 보고 공시 제고 구축, 상표 브랜드 전략 실행 등 여러 개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던 난제들을 풀어가고, 정부는 직능과 권력의 개편을 통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행정 관리를 너무 엄하게 하는 것을 완화하고, 창의적인 감독 방식을 사용하여 “심사는 엄격하고 감독은 가벼운” 문제를 보완하였다. 서비스 능력 향상으로 기업에 더욱 좋은 경영환경을 마련해 주어 기업과 시민들이 더 쉽게 창업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특허 우선심사제도 실시, 심사 효율 향상

2017년 6월,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우선심사관리방법(专利优先审查管理办法)’을 발표하여 중국이 공식적으로 특허우선심사제도를 구축하였음을 밝혔다. 우선심사의 범위를 특허, 실용신안과 디자인에 대한 심사, 재심의, 무효선고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였고, 우선심사제도를 적용하는 수속절차를 간편화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 장비제조 등 국가 중점 발전산업 핵심 기술의 특허 출원과 사회 공공이익에 관련되는 특허 출원을 최우선 심사 범위로 확정하였다. 이외에도, 특허우선심사와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신속권익보호센터 등의 설립 사업을 종합하여, 신속한 심사, 신속한 권리 확보, 신속한 권익 보호 등이 협력하고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하였다.

둘째, 상표 심사 시스템 보완, 상표 등록의 편리성 향상

2013년에 개정된 상표법은 상표 등록 심사 기간을 9개월로 정하였는데, 2017년 개정 상표법은 그 기간을 8개월로 단축하였다. 2016년부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연이어 상표 등록과 관련된 시행규칙과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적극적·전면적으로 상표 등록 편리화 개혁을 전개하여, 출원청인에게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어 지방에서 바로 상표등록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123개, 상표전용권 질권등기 신청 접수지점 58개를 설치하였다. 상표 정보화 능력을 부단히 향상하여, 현재 상표 등록은 온라인 신청, 온라인 조회, 온라인 공고, 온라인으로 비용 납부 등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비용 납부도 가능한 영역을 부단히 확대하여 현재는 23가지 업무관련 비용을 모두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표 데이터베이스도 전국에 개방하여, 이미지와 문자로 상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향상하였다.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충칭 등에서 상표심사협력센터를 운영하였고, 독립심사제와 질량관리감독시스템을 부단히 보완하였다. 상표 등록 수속 절차는 더욱 간편화되어, 수리통지서 발급기간이 6개월부터 1개월로 단축되었다.

셋째, 특허, 상표 관련 비용 대폭 인하, 기업의 세무 부담을 감소

2016년 국가지식산업국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특허수수료 인하 방법(专利收费减缴办法)’를 보완하여, 특허 연비용 감소 적용 기간을 3년으로부터 6년으로 조절하였고, 특허 연비용 감소 적용 대상을 개인소득액 2.5만 위안 이하로부터 4.2만 위안 이하로 조절하였다. 사업 단위, 사회단체, 비영리성 과학연구 기구 등 단체가 특허비용 감소 청구를 제출할 시, 더 이상 경제공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수정하였고, 단위 신청인의 감소비율은 70%로부터 85%로 향상하였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상표 업무 진행 시 수취하는 비용표준을 2008년부터 연이어 4차례 인하하여, 상표 등록 비용을 기존의 1,000위안에서 300위안으로 인하하였다. 특히 2017년 4월 1일에는 상표 등록 수리 비용 등 13개 상표 관련 업무 수취 비용을 50%까지 인하하였다. 비용을 인정한 후부터 2017년 연말까지, 이 9개월의 기간에 기업이 비용 인하기로 절약한 금액은 무려 18.57억 위안이 되는데, 이는 2017년 전체 상표 수입의 59%에 해당한다.

넷째, 지식재산권 민간조직 허가 조건을 완화, 심사 절차 간편화

〈강요〉가 발표된 후, 특허와 판권 대리기구 설립의 허가 조건을 완화하였고, 지방정부의 “특허 대리기구 설립 사무처리 기구와 사무 기구 영업정지와 허가 말소”와 “특허대리기구 설립 초보 심사” 사항을 취소하였다. 일부 지역에서 대리기구가 부족하고, 대리 인력이 부족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12개 성(구, 시)을 특허대리기구 허가 조건 완화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대리 기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주었다. 상표대리에 관하여, 2003년에는 상표대리기구 설립과 대리인 자격 행정심사를 취소하였고, 2013년부터는 변호사 사무소가 상표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비안등기만 하면 되는 비안제도를 실행하였다.

다섯째, 특허대리업계에 대한 사후감독 역할을 강화, 특허대리 시장을 정화

〈특허대리관리방법(专利代理管理办法)〉을 수정하여, 특허대리기구 연간 보고 공시제도를 구축하고 “무작위, 공개(双随机, 一公开)” 형식의 감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특허대리 자격증서를 함부로 임대해주고, 무자격대리를 하는 등 현상들이 대폭 감소하여, 특허대리시장을 정화하여 업계 경영 질서를 규범화하였다.

여섯째, 상표대리기구에 대한 감독을 보완

상표대리기구 신용 감독관리 플랫폼 건설을 부단히 추진하여, 대리기구 비안 및 변경의 온라인 화를 실현하였다. 이미 비안등록한 기구의 리스트를 공개하고, 새로 추가된 상표대리기구 비안 상황을 발송하고 있다. 각 지역의 집행부서는 “무작위, 공개(双随机, 一公开)”의 감독관리 규정에 의하여, 대리기구에 대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비안 후의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대리기구의 부정경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범위를 확대하였다. 집중적으로 위법대리기구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중국 상표넷에 전형적인 위법상표대리 사건들을 발표하여, 대중이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 대중이 상표국과 집행부서에 제보하는 것을 장려하여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일곱째,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을 상표관리에 이용하여 감독 업무 효율 향상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상표권익보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방의 공상과 시장감독부서가 상표 행정 집행 활동을 전개하는데 데이터 지원을 제공하였다. 상표 행정 집행 정보 공유 플랫폼 건설을 보완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화 방법들을 상표 감독과 관리에 사용하는 창의적 감독방법들을 탐색하여 감독관리 효율을 향상하였다.

여덟째, “인터넷+정무서비스”와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서비스 효율 향상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실제 업무 처리 청사, 온라인 정무 서비스, 이동 단말기 서비스, 전화상담센터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무 처리 일체화를 추진하여, 행정부서의 정보공유로 시민들의 업무 처리에 드는 시간을 절약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특히 대형 접수기구들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였고 권한을 지방과 기층에 부여하여 행정심사 간편화를 촉진하였다. 30개 성(구, 시)에 설치한 33개의 대형 접수 기구들은 특허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청인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타인의 상표권 영향을 악의적 이용,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갖

춘 상표에 대한 악의적 선점, 타인의 선권리 침해, 공공자원 점유, 악의적 반복 신청 등 행위가 점차 많아지면서 상표를 악의적으로 등록하는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감독하고 처리할 것인지, 양호한 상표 브랜드의 경쟁 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남아있다.

3.4.3 각 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국 등 8개 부서는 공동으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심층적으로 실행하고,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 加强和改进知识产权管理的若干意见)’을 발표하여, “사회조직이 업계 관리를 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국무원 판공청은 <일부 의견>을 발표하며 지식재산권 서비스와 사회조직에 대한 관리를 개혁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업계 정보 공개제도를 구축하고, 적시에 지식재산권 대리 기구와 종업 인원 신용평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지식재산권 관리와 서비스 표준 체계를 구축, 업무 규범 능력 향상

중화전국변호사협회는 ‘지식재산권 실사 조사 업무 처리 지침(知识产权尽职调查操作指南)’을 제정하여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업무 처리 절차를 규범화하였다.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는 특허대리인 직업표준을 실행하여 특허대리인의 행위들을 효율적으로 규범화하였다. 직업능력 트레이닝 제도를 부단히 보완하고 트레이닝 담당자들의 인력과 질을 향상하였으며, 트레이닝 과정의 최적화에 노력을 기울여 특허대리인의 직업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하였다. 중국재산평가협회는 <재산평가직업준칙-무형재산(资产评估职业准则——无形资产)>을 수정하였고, <특허재산 평가지도의견(专利资产评估指导意见)>과 <저작권재산 평가지도의견(著作权资产评估指导意见)>을 출범하였다. 중국재산평가협회는 통일적으로 설계한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평가 업무의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였다. 여기에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었다. 중화상표협회와 중국인민대학은 공동으로 “중국상표 브랜드 연구원”을 설립하여, 중국상표 브랜드 평가 표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국과 지방 협회에서의 표준 관련 시스템의 설립과 보완은 지식재산권 관리와 서비스 업무에 대한 규범화를 촉진하였다.

둘째,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연합 또는 협회의 신속한 발전과 연계 강화

베이징시는 2015년에 수도지식재산권 서비스업 협회를 등록하였고, 장쑤성, 헤이룽장성, 후베이성, 후난성, 산시성, 쓰촨성 등 성급 지방에서는 지식재산권 서비스 연합을 설립하였고, 쑤저우

시는 지식재산권 서비스 상회를 설립, 지난, 푸산, 칭다오, 타이저우 등 20여 개 지방에서는 지식재산권 서비스 협력 협회를 설립하였다. 이외에도 중화상표협회 상표대리 분회를 성립하였다. 베이징시 중관촌 하이텐구, 쑤저우 고신구, 상하이 조하경개발구, 시안 고신구, 청두 고신구, 톈진 고신구 등 약 20여 개 원구들은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연합을 구축하였다. 각급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협회(연맹)들은 연결고리 역할을 하여, 회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업계 표준과 규범을 제정하여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트레이닝 과정을 구비하여 서비스 조직 인원들의 능력을 향상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가 현지 산업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고, 창의적인 시장 주체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힘을 기울였다.

셋째, 사회조직 정보 공공 서비스 플랫폼 건설 강화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는 전국 특허대리 신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특허대리기구와 특허대리인의 기본정보 및 성실경영을 위반한 특허대리기구와 특허대리인 정보를 게재하여, 대중이 수시로 정확한 특허대리기구와 특허대리인의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무원 10대 중대 산업 조정과 진흥 계획의 실행에 맞추어, 국가지식산업국은 국무원의 재산감독관리위원회와 관련 업계의 협회와 연합하여, 중점산업 특허정보 서비스플랫폼을 2010년 2월에 개설하였다. 전국 적유화공업협회, 중국자동차산업협회와 중국비철금속협회 등 업계협회도 특허업무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식재산권관리와 격려제도를 구축하여 업계특허정보플랫폼에 소속되는 하급 플랫폼을 만들어 업계 특허정보의 운용 편리성을 향상하였다.

넷째, 전국과 지방 협회는 지식재산권 협력 운용 시범적 단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업무의 협력 발전을 촉진

2013년, 국가지식산업국은 <국가특허 협력 운용 시범 단위 신청에 관한 통지(关于组织申报国家专利协同运用试点单位的通知)>를 발표하여, 전국의 업계들의 협회, 또는 지방에서 지방별 산업 특색과 우세가 있는 지방업계협회가 국가특허 협력 운용 시범 단위로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다. 각 조직은 시범 단위의 운영을 통하여 관리와 서비스 능력을 향상하였고 특허의 협력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의 협력 신청, 운용, 보호 및 관리를 실현하였다.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협회 조직의 “업계는 하나지만 여러 개 협회의 운영 가능한 방안”은 여전히 모색되고 있고, 사회조직의 서비스 평준화와 능력은 여전히 향상할 여지와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업계의 자율적인 규범화와 협동적인 권익보호는 더욱 심층적인 발전과 개혁이 필요하다.

3.4.4 혁신주체의 지식재산권 관리 능력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의식, 능력과 규범성은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전략을 실행하면서 부터, 기업,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구 등 혁신 주체들의 지식재산권 관리 규범화 표준은 대폭 강화되었고 관리 능력도 향상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리 기구, 제도, 시스템도 점차적으로 완비되어, 특히 가이드, 특히 계획, 특히 운용 의식도 보다 강화되어 지적 재산의 가치와 과학 기술 창의적 성과 가치 향상을 실현하였다.

첫째,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시장능력, 인재양성 등 방면에서 새로운 변화

2013년에 <기업지식재산권 관리규범(企业知识产权管理规范)> 국가표준을 공식적으로 발표 및 실행하였다. 2017년 표준을 집행하는 기업은 2.6만 개가 되었는데 이는 4년에 1,344%가 증가한 셈이다. 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관리는 더욱 규범적이고 체계적이며, 기업들의 특허 전략, 특허 활용 인식이 부단히 강화되었으며, 지식재산권의 수량과 품질 모두 향상하였다. 국가지식재산권국, 공업정보화부는 2009년부터 연합하여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촉진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종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능력을 현저히 향상해 주었다.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의식이 대폭 증가해, 일부 지식재산권 의식과 경제기술실력이 비교적 강한 기업들은 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방안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을 기업의 기본 경영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 지식재산권 보장 시스템을 부단히 보완하였고, 국가지식재산권 2015년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7,308개 기업 중, 54.6%의 기업은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기구를 설치하였고, 61.0%의 기업들은 통일적인 지식재산권 관리 규율을 제정하였다.

둘째,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 기구의 지식재산권 관리와 과학연구의 융합 강화

국가표준화 관리위원회는 2016년에 <고등교육기관 지식재산권 관리 규범(高等学校知识产权管理规范)>(GB/T 33251-2016) 국가표준과 <과학연구 조직과 지식재산권 관리 규범(科研组织知识产权管理规范)>(GB/T 3250-2016) 국가표준을 발표하였다. 상기 표준들의 실행은 지식재산권의 관리를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주제선정, 프로젝트 입건, 실행, 프로젝트 종료 등 전반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식재산권 관리의 운용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구들이 연구결과를 실제적 성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예컨대 중국과학원은 지식재산권 업무의 제도화와 규범화를 촉진하였다. 중국과학원은 2016년부터 지식재산권 운용 관리 센터를 운영하였고, 지적 성과를 실제 성과로 전환하고 운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탐색하였는데, 여기에는 중국과학원 시스템의 특허공개입찰도 포함된다. 중앙군위장비발전부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에 <장비 보급 제작 단위 지식재산권 관리 요구(装备承制单位知识产权管理要求)>를 발표하여, 장비 보급 생산 단위의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의 규범화 건설을 도모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과학연구, 장비 주문, 사후 수리 및 계약 체결, 계약 수행 등 전반과정으로 보급하였다.

좌담회에서, 각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구들은 혁신주체의 지식재산권 관리와 전문관리인재 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금도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구 내의 지식재산권 관리 분야는 단독 부서가 아닌 기타 다른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단위와 기관 지도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이에 지식재산권 관리기구 설치와 전담 인재 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4.5 소결

중앙과 각 지방의 지식재산권 종합 개혁 시점과 지방 시범적 업무는 실질적인 성과를 획득하였다. 지식재산권 영역의 “방관복”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창의적 주체의 지식재산관리능력이 부단히 향상되어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의 실행에 기초적인 보장을 제공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 개혁은 혁신적인 발전을 취득하였고, 당중앙과 국무원이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각 연합회의가 협력적 역할을 잘 수행하며, 각 부서와 각 지방이 합리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국가지식재산권 행정관리 시스템의 완비를 촉진하였다. 각 혁신주체의 지식재산권 전략 시행에 대한 적극성을 고취하고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주체적 지위를 부단히 강화하였다.

“방관복” 개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정책 체계를 부단히 보완하여, 시장의 활력과 혁신 능력을 향상하였다. 지식재산권 종합 관리 개혁 시점과 지식재산권 강성, 강시, 강기업 시험 및 시범구의 운영으로, 각 지역이 지역 현황과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권 강화 조치와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여, 확보와 이전이 모두 가능한 지적재산권 보호 모델을 누적하였다.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 관리에서 과학기술과 경제의 융합이 부족하다.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과 혁신구동발전 등 전략과의 협력이 부족하다. 둘째, 기업,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의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및 계획이 부족하다. 지식재산권 관리 기구의 설치, 전담인원 배치 등 측면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셋째, 지식재산권을 재산으로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3.5 지식재산권 서비스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관하여 국가지식재산권 주요 전략은 다음의 3가지이다. ①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발전, ② 지식재산권 공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운영, ③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의 정책 환경 조성

3.5.1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발전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이 실행되면서, 혁신 구동 발전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식재산권 전문 서비스는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주체로서, 지식재산권의 체계 전반에서 날이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지적 성과의 권리화, 상업화, 산업화 등 여러 측면에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 기구 규모의 급격한 성장

통계수치에 따르면, 2008년 중국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 법인은 3,506개이고, 해당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 총수는 약 3.4만 명이였다. 2017년 연말,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구의 총수는 2.6만 개를 초과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25%이다. 연간 영업수입은 1,000억 위안을 초과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30% 이상이다. 저작권에 대한 집단 관리 효과가 탁월하여, 2016년까지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중국문자저작권협회, 중국촬영저작권협회의 각 협회별 회원 수는 모두 8,000명 이상이다. 중국음악저작권협회와 중국음향저작권집단관리협회가 2016년에 수취한 사용비용은 각 협회별 1억 위안을 초과하였다. 지식재산권 서비스는 이미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부상하였다.

둘째, 전통적인 대리서비스업계의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발전

중국 특허대리기구 개수는 2008년 704개에서 2017년 1,824개로 증가하였고 사무처리 기구는 1,000개를 초과하였다. 2017년 전 업계 연간 영업수입은 260억 위안을 초과하였다. 상표대리 업무 가능 기구는 2007년 3,352개로부터 2017년 30,517개로 증가하였고, 그중 변호사사무소는 9,048개이다. 2017년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특허대리인 자격을 취득한 인수는 3.7만 명을 초과하고, 활동 중인 특허대리인은 1.7만 명에 달하여, 이는 2008년과 비교 시 각 291%와 185% 증가하였다.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가 2018년 1월에 발표한 특허소송대리인 목록에 의하면, 600여 개 특허대리기구의 특허대리인 2,309명이 소송대리인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민사와 행정 소송에서도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서비스기구 집결 현상이 나타남

2012년, 국가지식산업권국은 <국가지식재산 서비스 집결 발전 시범구 업무 실시방법(시행)(国家知识产权服务业集聚发展试验区工作实施办法(试行))>을 발표하여, 집결구 건설업무를 전개하였다.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함께 서비스와 산업화의 융합을 촉진하여, 원구산업의 발전 능력이 중고급 레벨로 업그레이드하였고, 지역 경제 질의 향상을 이루었다. 2017년 연말까지, 국가지식산업권국은 북경중관촌 등 14개 국가 지식재산권 서비스 업무 집결 발전 실험구를 설립하였고, 145개의 전국 지식재산권 서비스 브랜드 양육 기구를 선별하였다. 그중 북경중관촌, 상해조하경 등 5개 시범구는 이미 국가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집결 발전 시범구로 성장하였다. 쑤저우 고신구의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구 수량은 2012년보다 74개 증가하였다.

각 집결 발전 시범구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물리 집결과 기능 집결은 동시에 진행되어, 지력 성과 권리화, 상업화와 산업화 “생태권(生態圈)”을 형성하여, 전국에 여러 개의 전문화 서비스 기지를 만들어 놓았다. 이와 동시에, 집결구의 건설은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이념, 방안들의 탐색에 도움을 주었다. 중관촌 집결 발전 시범구는 국내 최초 지식재산권 클라우드 펀드를 창설하여 창업자들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지식재산권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였다. 상해조하경 집결발전 시범구는 “특허은행”과 “특허펀드”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 질권 설정과 저당 설정을 통한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미 4억 위안에 달하는 대금을 발행하였다. 서비스 기구들의 집결발전은 서비스업과 지방 산업의 융합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의 질적 향상과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였다.

네 번째, 신 서비스업의 형태 확대

창출 주체 능력의 부단한 향상으로 인하여, 시장이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에게도 보다 높은 요구와 기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내용도 대단히 풍부해지고, 지식재산권 서비스는 전통적인 대리, 자문과 소송으로부터 분석, 예방, 리스크 경고, 운영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 신흥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은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가 신속히 발전되었다. 2014년,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재정부와 함께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이에 대한 시범지역을 운영할 것을 결정하여, 지분투자 방식으로 20개의 지식재산권 운영 기구를 지원하였다. 2016년 12월, 국무원은 <“135” 국가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영 계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거래 운영 체계 건설을 강화”, “지식재산권 협력 운용을 강화” 등의 목표들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 지식재산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 특허 운영 횟수(양도, 허가와 질권 설정 등을 포함)는 24.8만 회에 해당되고, 2016년과 비교

시 43.4% 증가하였다. 관련된 특허 수량은 22.9만 건, 이는 2016년 대비 시 40.5%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 등 상업화 서비스가 심층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국가소유 “4대은행”과 교통은행 등 주식제은행들은 지식재산권 질권 설정 대출 업무를 개설하였다. 일부 투자기구들도 지식재산권 영역에 진입하여, 엔젤펀드, 벤처투자, 주식투자 등 투자를 진행하였다. 일부 기업은 지식재산권 운영을 전담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지식재산권의 용자 업무는 날이 갈수록 다양하면서도 보편화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자금 영입에서 직면하고 있는 난제 해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플러스”는 지식재산권 서비스와 인터넷의 심층적 융합과 발전을 촉진하였다. 근 몇년간,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구들은 신흥 기술, 자본 운영, 서비스 아웃소싱 등 새로운 방식과 양식을 부단히 탐색하였다.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구는 인터넷 직접회로 설계, 인터넷 정보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업계로 진입하였다. “인터넷 플러스”는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를 촉진하여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업체는 이미 수십 개를 넘어가고 있다. 수치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되는 기구들이 신속히 발전하여, 2014년 신규 등록업체가 1,725개였는데, 2015년 3,234개로 증가하였고(증가율 약 100%), 2016년에는 1,052개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섯 번째,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한계 및 문제점

시장요구에 부합되는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와 수요 간 상호 촉진하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으며, 지식재산권 평가 시스템도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우선, 시장요구에 부합되는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이미 일부 실력이 있고, 규모를 갖춘 지식재산권 서비스 대리기구들이 성장하여 시장에서 선두를 이끌고 있지만, 인재 부족, 신설 업무와 주요 업무 간의 균형 불일치 등 문제로 인하여, 산업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신설 기구들은 기업들의 종합 서비스 수요를 대상으로 하고, 기업에게 연구개발부터 성과 취득까지 정보서비스, 자문서비스,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한 성과를 이전하고 양도하는 업무도 지원해 주고 있다. 즉 법적 절차에서 “원스텝”형 서비스 제공에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그다지 많지 않고, 전반 서비스 산업에서의 비율이 높지 않다.

다음으로, 기업 지식재산권 요구와 지식재산권 서비스 공급 간의 양적 촉진 시스템이 아직 구성되지 못하였다. 요구 측면에서 보면, 다수의 기업들은 아직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주로 권익보호와 권리취득에 집중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보면,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은 근 몇년간 신속한 발전을 하였고, 특히 지식재산권의 운영, 질권 설정

을 통한 용자 등 영역에서는 급성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구들은 아직 발전 단계에 있고, 특허, 상표, 판권 대리가 여전히 주요 업무이지, 운영, 평가, 거래, 용자 등 서비스 업무는 여전히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영역에서 특정화된 고급인력이 부족하고, 서비스 능력이 기업들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더 양질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서비스 제공과 기업의 수요가 상호 촉진하는 발전 구조는 아직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더욱 창의적인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고, 가치 평가 시스템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평가하기 어렵고, 용자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시간과 비용이 높은 것이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에 존재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식재산 금융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품질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며, 지식재산권 자체가 복잡하고, 무형적이며 가치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통일적이며 활용하기 쉬운 평가시스템이 부족하다. 많은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은 리스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질권 설정 비율을 줄이고 대출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3.5.2 지식재산권 공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운영

지식재산권 공공 서비스는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기반이다.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시행하면서 부터 중국은 일련의 계획적 문건과 지식재산권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공공 서비스 기구의 수량과 업무 영역도 대폭 확대되었다. 우선 기구의 수량이 현저히 증가했다. 2016년 중국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국 지식재산권 공공 서비스 주체는 2,726개로, 전체 서비스 기구의 4.16%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었다. 지식재산권 공공 서비스는 이미 특허, 상표, 판권, 식물신품종, 지리적 표시, 무형문화유산, 국방 등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공업, 농업, 임업, 문화, 정보, 상업 등 산업 범위로 확장되었다.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국가와 지방은 서비스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더욱 편리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업무 분야는 특허가이드, 거래 운영, 사법 감정, 권익 보호와 지원 등으로 확대되었다.

첫 번째, 기초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 서비스 플랫폼의 신속한 구축

첫째, 전국 특허정보 공공 서비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구축 완료하였다. 2011년 4월,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 검색과 서비스 시스템이 출범되었다. 동 시스템은 특허 검색과 특허 분석을 함께 할 수 있어 종합적인 특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후 관련 기능들이 부단히 보완되었고, 이미 7

개 언어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여러 나라의 발명특허정보 조회 서비스와 무효정보 재차 심사 등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2009년, 국가지식산권국이 발표한 <전국 특허 정보 공공 서비스 체계 구축 계획(全国专利信息共欧诺个服务体系建设规划)>에 따르면 1개의 국가특허데이터 센터, 5개 지역 특허정보서비스 센터와 47개 지방 특허 정보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여, 3개 급별로 구성된 특허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2017년 연말까지, 이미 국가지식산권국 지역 특허 정보서비스(광저우) 센터와 43개 지방 특허정보서비스 센터들을 설립 완료하였다. 2017년 7월, 국가지식산권국은 30개 성(시, 구)을 포함하는 120개의 전국 특허 문헌 서비스망을 구축하였다.

둘째, 국가 상표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상표 공시 플랫폼은 2003년부터 사용되었다. 상표 온라인 조회는 2005년부터 사용하여 2017년에 업그레이드를 하였다. 상표 온라인 출원은 2006년부터 사용되었다가 2017년에 업그레이드하여, 출원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신청 범위도 상표 연장, 상표 양도 등을 포함한 23개의 업무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상표 출원, 조회, 공시, 비용 지불 등 모든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2017년 온라인 상표 출원 건수는 489.7만 건으로, 전체 출원의 85%를 차지하였다.

셋째, 저작권 서비스 플랫폼도 신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시행한 후부터 국가판권국은 연이어 16개 국가급 저작권 거래 센터와 무역기지의 설립을 비준하여, 전국 각 주요 행정지역들을 포괄한 저작권거래센터 연맹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저작권 평가, 저당, 투자유자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들을 설립하였다. 2014년 10월, 중국 저작권 보호 센터는 신규 온라인 서비스 업무 플랫폼인 작품보관플랫폼을 출범하였다. 이외, 중국영상저작권거래넷, 중국저작권온라인넷 등도 사용하여, 라디오와 영상제품 제작자들에게 저작권을 판매 및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국가저작권감독 플랫폼도 프로젝트 개발을 완료하여, 국가판권국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판권국 및 4개 직할시 집행부서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감독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였다.

넷째, 식물신품종, 지리적 표시 등 공공서비스 플랫폼도 점진적으로 구성되었다. 2017년 연말까지, 식물신품종 관련 플랫폼은 주로 중국 식물신품종 보호망, 임업 식물신품종 보호망, 농업부 식물신품종 보호 판공실 등 3개 공공 플랫폼을 두고 있다. 2016년 4월, 중국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망이 공식적으로 출범되었다. 국가지식산권국 집적회로 배치설계 전자 출원 플랫폼도 공식적으로 출범되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국방 지식재산권 정보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오픈하였다. 2017년 9월, 국방지식재산권국은 무기 장비 입찰 정보망을 기반으로, 국방 지식재산권 정보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운영하여 국방지식재산권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동 플랫폼은 국방특허, 군용 계산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국방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관련 문서 검색, 통계수치 분석, 사무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섯째, 종합 서비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보급되었다. 2009년 4월, 신판 국가지식

재산권 전략망이 공식적으로 운영되었다. “지식재산권 강성 프로젝트(知识产权强省工程)”가 추진되면서, 각 지방도 지역별 특성을 갖춘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출범하였다. 2017년 연말까지, 전국 31개 성(구, 시)은 모두 성급 지식재산권 서비스 종합성 플랫폼 또는 공식 사이트를 출범하였다.

두 번째, 전통산업과 신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플랫폼 구축

전통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 날이 갈수록 완비되고 있다. 2017년 연말까지, 중국 지식재산권 공공 서비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공업, 농업, 임업, 국방, 문화, 전략성 신흥 산업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2010년 2월, 중국은 첫 국가 중점 산업 특허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오픈하였는데, 이는 자동차, 강철 등 10대 중점 산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후 첫 농업 국제 합작 지식재산권 서비스 플랫폼, 중국(내 몽골) 모래산업 특허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등을 포함한 전통산업 관련 서비스 플랫폼들을 연이어 출범하였다. 2015년 11월 5일, 산서양령(가뭇지역) 농업 지식재산권 공공 서비스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운영되었고 전국적으로 최초로 “영업정보 자동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흥 산업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 플랫폼이 운영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2016년 6월에 출범한 국가애니메이션게임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은 중국에서 최초로 운영된 애니메이션게임 지식재산권 B2B 거래 플랫폼이다. 이는 중국이 중국의 지식재산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해외의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는 수입하고자 하는 목적 실현에 힘을 실어주어, 글로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7년 8월, 글로벌 자동차업계 특허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출범되었는데,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104개 국가/지역의 1,800만 개의 자동차와 관련되는 특허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동년 12월, 중국 3D프린트 지식재산권 거래 서비스 플랫폼이 출범되었다. 상기 플랫폼들의 출범들은 중국 지식재산권 서비스가 이미 점차 신흥 산업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지식재산권 운영 공공 서비스 구조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

2014년,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재정부와 함께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시장화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동 시범 운영은 북경에서 국가지식재산권 운영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출범하여, 서안, 주해에 특색플랫폼을 출범할 것을 계획하여, 지분투자 방식으로 20개 지식재산권 운영기구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시범 운영은 전국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기구들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여, “1+2+20+n”의 지식재산권 운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7년 4월, 국가 지식재산권 운영 공공 서비스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출범되었고, 각 유형별 지식재산권 정보 자원을 기반으로, 전반 절차를 포함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현재 국가

지식재산권 운영 공공 서비스 플랫폼은 이미 1,700만 개의 중국 특허문서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특허 심사 과정에 있는 데이터량은 2.5억 개, 특허 사무 공고 데이터는 3,300만 개, 특허 비용 데이터는 9,000만 개이다. 전국 25개 성에 위치한 1,000개 제조회 기업, 서비스 기구와 과학연구원이 동 플랫폼에 투입되어 2,000여 개의 공급·수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2017년 6월, 국가 지식재산권 운영 공공 서비스 플랫폼 금융 혁신(황금) 시범 플랫폼이 출범되었고, “칠현금 지식재산권 자산과 서비스 거래넷(七弦琴知识产权资产与服务交易网)”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었다. 현재 이미 80여 개의 서비스 기구가 입주하였고, 이미 2,000개의 창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56건의 거래를 성사하였고, 2,600건의 특허를 입찰하고 있다.

네 번째, 지식재산권 공공 서비스 영역이 부단히 확대

첫째, 지식재산권 권익 보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2009년 4월, 전국 지식재산권 권익 보호 지원 전화 “12330”이 개설되었다. 2016년 12월, 중국 지식재산권 권익 보호 지원과 신고넷이 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전국 76개 지급 지식재산권 권익 보호와 지원 센터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 처리 및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8년 2월, 온라인 저작권 조정 플랫폼이 출범되었고, 온라인으로 저작권 분쟁을 협상하여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익 보호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둘째, 해외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중국지식재산권보호넷은 2007년부터 정기적으로 <IPR FOCUS> 온라인 간행물을 발행하였고, 2012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지식재산권 국제 뉴스레터>를 발송하였다. 중국지식재산권보호넷은 중국 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법규, 국내외 지식재산권 뉴스, 전형 사례,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구 리스트와 지식재산권 관련 연락처를 포함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해 주고 있다. 2015년 “쯔난뽀왕(智南针网)”이 출범되었고, 2017년 연말까지, 200개 국가/지역의 1,400여 개 법률 법규 정보들을 제공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쯔난뽀왕” 위챗공식계정을 만들어, 프랑스, 한국, 스페인, 미국 등 국가에서 특허 신청을 하는 실무적 가이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셋째, 지식재산권 인재 플랫폼을 출범하였다. 중국 지식재산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2014년 12월에 전국 지식재산권 교사 정보 플랫폼을 출범하여, 각 트레이닝 서비스 제공 기구들에게 전문가와 교사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자원 공유를 하여 트레이닝 교사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2013년 3월, 국가지식재산권국 인재 정보 온라인 플랫폼은 공식적으로 운영되었고, 이에선 전문가, 업계 정예인사, 전문자문위원회, 100대 고급 인재, 국가동향과 정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 번째, 서비스 제공방식 개선

첫째, 분석평가 업무 체계를 구성하였다. 2013년 4월, 국가지식산업국은 지식재산권 분석평가 서비스 시범 기구 양성 업무를 작동하였다. 2017년까지 15개의 국가지식재산권 분석평가 서비스 시범 기구와 124개의 국가지식재산권 분석평가 서비스 시범 기구의 창설기구들을 오픈하였다. 2013년 11월, 전국국가재산권 분석평가 연맹이 이루어졌고, 2017년 말 기준으로 연맹 구성원은 34개 업체에서 126개 업체로 확대되어 전국 25개 성시를 포괄하고 있고, 특허정보이용, 특허 운용 및 신개념 매체 등 10여 개의 분야를 포함하여, 점차 정보를 교류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지식재산권 분석 협력 플랫폼을 구성하였다. 이는 창의적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건설과 산업 업그레이드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둘째, 특허 경보 분석과 보호 서비스가 신속히 발전하였다. 2008년, 국가지식산업국은 특허 분석과 경보 업무를 작동하여, 〈국가지식산업국 특허분석과 경고 알람 업무 관리 방법(国家知识产权局专利分析和预警工作管理办法)〉 등 문건을 발표하였고, 〈특허분석과 경고와 예방 실행 실무(专利分析和预警操作实务)〉를 발표하여, 특허 분석과 경보 및 예방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지도하고 규범화하였다. 2017년 9월까지, 국가지식산업국은 84개의 중점 산업과 중점 기술과 관련 되는 프로젝트를 전개하였고, 화웨이 등 21개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형성된 경보 및 방어 업무팀을 구성하여, 지능형 특허 리스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였는데, 여기에는 6가지 주요 기술영역, 241건의 핵심기술, 13,765건의 특허 리스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천여 건에 해당하는 특허침해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 및 추적하고 있다.

3.5.3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의 정책 추진 환경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실행한 후부터, 국가는 연이어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규범화를 촉진하고 부단한 지원을 하여 적극적인 효과를 획득하였다.

첫 번째,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추진계획 실시

2011년 6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서는 〈우선발전 첨단기술 산업화 중점 영역 지침(2011년판)(当前有限发展的高技术产业化重点领域指南)(2011年版)〉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을 첨단기술 서비스산업에 편입하였다. 2011년 12월, 국무원 판공청은 〈첨단기술 서비스업 촉진 발전 지도의견(关于加快发展高技术服务业的知道意见)〉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8개 중요 영역 중의 하나에 편입하였다. 2012년 12월, 국무원은 〈서비스발전 “12·5” 규획(服务业发展十二五规划)〉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서비스 체계를 서비스업 발전의 4대 주요

시스템 중의 하나로 지정하였다. 2017년 1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략성신흥산업 중점 제품 및 서비스 가이드 목록(2016년판)(战略型新兴产业重点产品和服务知道目录(2016版))>과 <서비스업 혁신 발전 대강(2017-2025년)(服务业创新发展大纲)(2017-2025年)>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을 전략성 신흥 산업 지도목록에 편입한 동시에, 중국 서비스업 혁신 발전의 중점 영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각 부서, 각 지방은 관련 정책을 연이어 수립하고 이행하였다. 2017년 연말까지, 국가지식재산권국, 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판권국, 재정부 등을 포함한 19개 부서들은 지식재산권서비스업 발전과 관련되는 53개의 정책성 문서들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각 지역도 해당 지역 발전에 부합되는 전략적 목표와 계획을 제정하였다. 2017년 연말까지, 각 성급 정부는 109개의 지식재산권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발전계획을, 23개의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 촉진 관련 지방성 정책과 규범성 문건들을 발표하였으며, 현지 지식재산권 및 경제 현황에 따라, 179개의 업무지침과 지도의견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을 촉진하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정책 시행의 효과는 대중의 인정을 받고 있다. 본 평가 과정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68.6%의 서비스기구와 서비스 대상은 근 몇 년간 지식재산권 서비스 관련 정책으로 인해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60.4%의 서비스 기구와 서비스 대상은 정책 집행의 유효성이 향상되었다고 답하였다. 이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발전 촉진 정책이 내용과 실행 등 모든 측면에서 보다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로 정책에 의한 지원역량, 정책의 공평성과 정책 정보 접근의 편리성 등 3개 요소에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관리감독 강화 및 규제 최소화를 통해 건전한 관리감독 구조를 형성하였으나 여전히 특정 분야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특허와 관련해서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 품질 향상 공정 실시방안을 실시하여, 여러 단계를 통하여 특허 품질을 향상하였다. <특허대리 심사사항 서비스 가이드(专利代理审批事项服务指南)>를 출판하여 특허대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였다. 특허신청 행위를 규범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 시스템 사회신용 체계 건설 업무 일부 사항에 관한 통지(国家知识产权局关于开展知识产权系统社会信用体系假设工作若干事项的通知)>를 발표하여, 시스템 전반에서의 사회신용 구조 구축 업무를 추진하여 특허대리 감독 관련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격려와 제재를 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7년 4월 <특허 출원행위 규범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关于规范专利申请行为的若干规定)>을 수정하여, 비정상적인 특허 출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였다. 상표대리 감독·관리 방면에서 2009년 11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상표대리관리 방법(商标代理管理办法)>을 제정하였고, 2010년 이를 수정하여 시장경쟁 시스템 도입을 통한 상표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2014년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상표법은 상표대리기구의 권리와 의무, 위법에 대한 책임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상표법 실행조례(商标法实施条例)> 개정안에는

처음으로 “상표대리”를 단독 장으로 하여 상표대리기구와 상표대리 시장에 대한 법적 감독을 강화하였다. 2014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공상총국의 상표대리기구 비안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工商总局关于商标代理机构备案有关问题的通知)>를 발표하여 상표대리기구의 비안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외에도, 상표대리업계의 자율 관리도 현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2018년 11월 18일, 중화상표협회의 상표대리분회가 베이징시에 설립되어, <중화상표협회 상표대리분회 징계 규칙(中华商标协会商标代理分会惩戒规则)>, <중화상표협회 상표대리분회 업계 자율 건설 강화에 관한 일부 의견(中华商标协会商标代理分会加强行业自律建设的若干意见)> 등 9개의 규범성 문건 등을 발표하였다. <강요>를 실시한 후부터, 국가판권총국은 <음악제품을 공연에 사용하는 저작권 사용비용 표준(使用音乐作品进行表演的著作权许可使用费标准)> 등을 포함한 여러 비용 수취 표준을 공시하여 수익 배분 제도를 완비하였고 저작권 집단관리업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국가지식산업국은 2012년부터 각 성에서 특허대리업 신속 발전 시범 업무를 전개하였다. 16개 성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합명제 특허대리기구의 발기인 인수를 기존의 3명으로부터 2명으로 조절하고, 1/5의 주주가 특허대리인 자격이 없어도 되게 하였다. 또한, 성도시 내에 유한책임제 특허대리기구는 2/5 이상을 초과하지 않은 주주들이 대리인 자격이 없어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까지, 관련 정책 지원을 받는 특허대리기구 수는 250개를 초과하였다. 2011년 6월, 국가지식산업국은 <대만주민 2011년 전국 특허대리인 자격시험 참석 공고(关于台湾居民参加2011年全国专利代理人资格考试的公告)>를 발표하였고, 2016년 연말까지, 총 347개의 대만주민이 특허대리인자격증을 취득하였다. 2012년, 사법부, 원 공상행정관리총국은 <변호사 사무소 상표대리 업무 종사 관리 방법(律师事务所从事商标代理业务管理办法)>을 발표하여 진입조건을 낮추어 변호사나 사무사가 바로 상표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진입 표준 인하는 시장 활력을 향상하여 관련 업무 수행 기구의 수량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2015~2017년, 전국 신설 특허대리기구는 연도별로 153개, 255개, 313개로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3.9%, 20.3%, 20.7%를 기록하였다.

일부 특정 서비스 영역에는 여전히 현저하게 존재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업체 간 악성 가격경쟁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 국가지식산업국 <2016년 전국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통계 조사 보고(2016年全国知识产权服务业统计调查报告)>에 따르면, 65.9%의 조사 참여 기구는 발전 중에서 직면한 제일 큰 문제점이 동업자 간의 악성 경쟁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리기구는 저렴한 가격을 시장에 제안하고, 심지어 “무료 서비스”로 서비스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둘째, 대리인 자격 없는 자들이 대리 업무를 대행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 존재한다. 2016년 9월부터 11월간에, 국가지식산업국은 특허대리업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중화전국특허대리인 협회에서 총 16회를 거쳐 “특허대리자격 미보유기구 리스트”를 공표하였는데, 그 수량이 300개를 넘는다. 2016년 11월, 국가지식산업국은 <지식재산권 신속 협력 보호 업무에 대한 통지(关于开展知识产权快速协同保护工作的通知)>를 발표하여, “법과 규범을 위반

하고 특허대리를 하는 자”를 지식재산권 신용상실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관련 감독 절차의 실행도 상기 문제 해결에 일정한 도움이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세 번째, 서비스 표준화 체계 마련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표준화는 서비스 과정을 규범화하고,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 향상, 시장 환경 보완, 서비스 무역 발전 촉진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십여 년간 <강요>를 실행하면서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화 업무는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화 건설을 촉진하는 일부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2013년 9월, 국가 표준화 관리위원회는 9개 부서와 연합하여 <첨단기술 서비스업 표준제 수정 업무 지도 의견(高技术服务业标准制修订工作指导意见)>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서비스 영역을 포함한 8개 영역의 표준제도 제정 업무를 중점적으로 전개하였다. 2014년 6월, 국무원 <사회신용체계 건설 계획강요(2014-2020년)(社会信用体系建设规划纲要)(2014-2020年)>에서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구 신용 건설을 전개하고, 각 유형별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화 체계와 신용평가제도의 구축을 탐색한다.”고 밝혔다. 2015년 연초, 국가지식재산권국, 국가표준화 관리위원회 등 4개 부서는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화 체계 건설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知识产权服务标准体系建设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 체계 건설의 중요 임무를 명확히 하고, 2020년에 기본적으로 완비된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 체계를 구성할 것을 제출하였다.

둘째,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의 제정과 실행이 안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18년 1월, <특허대리기구 서비스 규범(专利代理机构服务规范)>(GB/T 34866-2017) 국가표준이 공식적으로 실행되어, 첫 번째 지식재산권 서비스 관련 국가표준을 제정하였다. 2009년 8월, 중화전국특허대리인협회는 <특허대리 서비스 지도 표준(专利代理服务指导标准)>을 발표하였다.

셋째,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화 체계의 완전한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중국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화에는 주로 아래 3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화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주로 특허대리 영역에 집중되었고, 지식재산권 정보 서비스, 상업화, 자문 관련 등 업무의 표준화 건설에서의 표준화 발전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표준화 실행의 효과가 현저하지 못하다.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평가적 조사에 따르면, 조사참석자들은 근 몇 년간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표준화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다(3.8점). 따라서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화 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하여야 한다.

3.5.4 소결

중국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은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괄찬은 성과를 취득하였다. 우선 중국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촉진하는 정책들은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운영 환경을 현저하게 향상해 주었다.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략적 지위도 제고되어, 관련 정책들에 대한 집행도 잘 되어 객관적인 실행 효과가 양호하다. 진입조건을 인하하고 진입 후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업계 질서도 규범화하였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신속히 발전하였고 동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에서도 전통 영역은 이미 성숙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신흥 영역은 창의적인 발전에 힘입어 발전 초기에 신속한 발전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이 점차 추진되어,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반적 발전에 비교적 양호한 보장과 지원을 주었다. 지식재산권 운영 공공서비스 체계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지식재산권 운영 발전의 새로운 방식을 구성하였다.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도 부단히 발전하여, 창의적인 여러 유형의 창의적 방식이 나타나 지식재산권 자원의 융합과 정보 공유를 현저하게 촉진하였다.

비록 현저한 성과를 취득하였지만, 일부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부 특정 영역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화 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하여야 한다. 업계에서의 악성 경쟁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화 건설 과정에서 발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서비스표준 체계가 아직 명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 둘째, 시장요구를 만족하는 완전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 사슬이 형성되지 않아, 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여전히 발전할 부분이 존재한다. 서비스에 대한 평가 체계를 완비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 영역이 소소하게 여기저기 널려져 있어 전반적인 협력과 지원 공급에 장애가 존재하기에 시장의 요구를 만족해 주지 못하고 있다.

3.6 지식재산 국제 협력 발전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발전에 관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의 주요 내용은 이하의 3가지로 구성된다. ①지식재산권 국제규칙의 제정에 참여, ②지식재산권국 국제협력 시스템과 방법 및 절차, ③지식재산권 해외 배치와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

3.6.1 지식재산권 국제규범 제정에 참여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시행한 후부터, 중국은 세계지식재산권 영역에서의 규칙 제정과 제도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국제지식재산권 질서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국제조직의 관련 일정에도 참여하여 국제규칙을 따르는 자로부터 규칙 건설자로 전환하고 있다.

첫 번째, 국제규칙의 제정과 제도 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

WIPO 중국 사무소 설립과 중국 특허문헌이 PCT 최저 한도 문헌에 포함 사업을 촉진하여 중국이 담당한 국제 특허 유형 구분(IPC)의 수정 업무를 양질로 완성하였다. “IP5”, “ID5”과 “BRICS5개국” 간의 협력 시스템 건설을 추진하였다. UN의 2030년 발전지속가능성 의향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2012년에는 베이징시에서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여, 시청각의 국제 연출권 관련 국제조약의 공백을 보완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국제 협상에 참여하여, ‘산업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헤이그 협정’과 ‘맹인, 시각 손상인 또는 그 밖의 독서 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 촉진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체결에 참여하였다. WIPO가 주체하는 상표 국제 등록 마드리드 시스템, 상표와 서비스 마크 분류, 도형상표에 대한 비엔나 분류, 지리적 표시 리스본 협정 관련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지식재산권 업무에서 중국의 이익을 적극 보호하였다. TRIPS 이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국제 식물신품종 보호 연합(UPOV)에 참여하여, 매년 봄과 가을 분기마다 개최하는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조약’과 ‘나고야 의정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나고야 의정서’와 WIPO, TRIPS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킬럼 3.6.1 처음으로 중국에서 탄생된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조약 -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2012년 6월 26일, 세계지식재산권조직 음향 연출 보호 외교회의가 북경에서 폐막하였고, 이와 동시에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여 연출자 권리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부족하였던 역사를 종결하였다. 이는 처음 중국에서 탄생한 국제지식재산권 조약이다. 중국 제12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는 2014년 4월 24일에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을 비준하였다.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에 의하면, 동 조약은 30개 체결자들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제출한 3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8년 6월 5일까지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20개를 넘어가고 있다.

두 번째, 국제조직과 국제포럼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

2014년, WIPO와 〈협력 프레임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WIPO와 〈심층 협력 촉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WIPO와 함께 특허금상, 상표금상을 발급하고, 세계 지리적 표시 대회와 마드리드 체계 성립 125주년 기념활동 등 중대한 활동들을 개최하였다. 중국은 WIPO, G20, APEC, BRICS 국가,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중·일·한 협력 플랫폼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영역에서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간의 지식재산권 협력을 촉진하였다. 〈중국-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중국-유럽 지식재산권 업무 회의, 중국-유럽 세관 지식재산권 집행 세미나, 중국-아프리카 장관급 회의, 중국-일본-한국 특허청장 회의, 중국-동남아시아 국가 특허청장 회의 등 다자간 담화 기회를 통하여 지

식재산권 관련 협력을 촉진하였다. 2016년, 제6차, 제7차 BRICS 국가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BRICS 국가 특허청 협력 시스템 업무 직책(金砖国家知识产权局合作体系业务职责)>을 체결하였다. 2017년, 지식재산권이 처음으로 아시아 보아오 포럼의 의제가 되었다. 중국 국제무역 촉진 위원회는 WIPO의 장기 관찰원으로 임명되었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국제표준 관련 협력에 참여

국제표준은 국제무역의 “통행증”이자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중요한 경로 중의 하나이다. 중국은 WIPO 등 국제조직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양자 간의 협력 시스템을 통한 지원을 받았다. 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44개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관리국 회원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하여, 브랜드 표준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국제 표준화 조직 혁신 관리기술위원회(ISO/TC279)는 <혁신관리-지식재산권 관리 가이드> 국제표준 제정을 시작하였다. 2007~2016년, 중국이 참여 및 제정한 국제표준은 총 1,705건이었다. 2016년, 중앙 기업이 ISO, IEC, ITU 등 국제표준조직에서 신설로 제정한 표준은 100여 건에 달한다. 국제표준 제정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영역의 글로벌 발전에 중국의 계획을 제출하였고 중국 지혜를 나누었다.

3.6.2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 시스템과 거동

중국은 대외 지식재산권 협력 시스템을 보완하여, 지식재산권 대외 협력 계획, 보호조례, 권의 보호 방안, 경외 가이드 등을 제정하였다. 지식재산권 업무를 외교 프레임에 포함하여, 국제조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현저한 성과를 취득하였다. 2017년 연말까지, 중국은 63개 국제조직, 국가 또는 지역과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체결하였고, 28개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외에도 중국-미국-유럽-일본-한국 IP5, TM5, ID5, BRICS 국가 간 지식재산권 협력 등 일부 중요한 다자간 지식재산권 협력 시스템에 참석하였다. 따라서 전면적이고 다원적이며 영역이 넓은 대외 협력 구조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적극적으로 정부 간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을 전개

중국은 정부 간 부장과 정상들이 교류하거나 다자간 협상을 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영역에 관한 소통과 교류를 진행하였고, 관련 협력 계약 체결을 힘을 기울였다. 중국 주외국 영사관은 여러 가지 장소와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여 주재국의 지식재산권 담당자들과의 충분한 교류를 진행하였으며, 중국이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취득한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중부 간 교류와 고위층 간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다자간 협력 시스템을 완비하였다. 정기

적으로 중국-미국, 중국-유럽, 중국-일본, 중국-스위스, 중국-러시아, 중국-파키스탄 지식재산권 담화를 조직하고,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영역에서 취득한 성과들을 홍보하였다. 중국-미국 세관, 중국-일본-한국 세관 간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취득하였고, EU와 러시아 세관과는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체결하여 집행 활동에서의 협력을 추진하였다. 세계 세관 조직, 상해협력기구, WIP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다자간 협력 프레임에서의 지식재산권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중국-스위스, 중국-호주, 중국-한국, 중국-뉴질랜드, 중국-아이슬란드, 중국-그루지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RCEP), 중국-유라시아경제연합(EEU) 경제 무역협력협정 중의 지식재산권 관련 담화를 전개하였다. 중국-유럽 지리적 표시 협정 협상은 이미 16회 개최되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일대일로”를 추진하여 지식재산권 국제협력을 촉진

“일대일로”는 중국 현대화 건설에서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로 관련 국가들과의 지식재산권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실무적인 행동을 전개하여 혁신 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협력벨트를 구축하였다. 2017년 중국이 “일대일로” 관련 국가에서 출원한 특허 수는 5,608건, 이는 전년 대비 16.0% 증가하였다. 같은 해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이 중국에서 출원한 특허 수는 4,319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하였다. 2017년 “일대일로” 관련 국가가 중국에서 출원한 상표 건수는 3.94만 건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하였으며,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 건수는 19.17만 개이고 출원국가는 총 76개이다. “중국 정부 지식재산권 장학금”을 설립하여 국제인재 교류와 양성 업무를 전개하였다. 2017년부터 매년 마다 “일대일로” 관련 국가의 50명의 관원과 전문가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학위 공부를 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2016년 WIPO 등 기구와 연합하여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고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7년 WIPO 사무총장 Francis Gurry가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층 포럼에 출석하여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에 관한 협정(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世界知识产权组织加强“一带一路”知识产权合作协议)>을 체결하였다.

칼럼 3.6.2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고위층 포럼 개최

2016년 7월 21일,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판권국, 상무부, 베이징시 인민정부와 WIPO가 공동으로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고위층 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에 대한 제안(加强“一带一路”国家知识产权领域合作的共同倡议)을 체결하였고,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고위층 회의의 중국 측 단위 “일대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조치(“一带一路”知识产权高级别会议中方主办单位加强“一带一路”知识产权合作的措施)를 발표하였다. 지식재산권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일대일로” 지역의 창조적인 발전을 계획하였다. 본 회의의 주제는 “포용, 발전, 협력, 윈-윈”이며, “일대일로” 전략을 실현하고,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하여 취득한 유익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로써 “일대일로”의 더욱 심층적인 발전을 통하여 관련 국가와 지역들의 창조적인 발전과 번창을 촉진하고자 한다.

세 번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력 시스템을 구축

PPH 시스템을 통하여, 한 국가 또는 지역 특허청으로 제출한 특허출원의 일부 또는 전체가 특허로 인정되었을 경우, 출원인은 특허청 간의 PPH 협정을 통하여, 다른 특허청에도 해당 특허에 대한 신속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은 2011년 11월 1일부터 PPH를 시범 실시하였고, 이미 28개 국가와 지역과 PPH 협력을 체결하였다. 중국 국가지식산업국과 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상표청, 일본 특허청, 한국 특허청은 “중국-유럽-미국-일본-한국 5개국 연합 PPH 시범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국내외 특허출원인과 특허대리기구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한편, 중국의 유효 특허는 현재 캄보디아에서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네 번째, 지식재산권 집행 국제협력을 광범위하게 전개

중국은 여러 국제기구 및 국가 연합과 함께 지식재산권 집행을 전개하였다. 국제형사경찰기구, EU, 미국, 홍콩, 마카오 등 35개 국제기구, 국가 또는 지역과 연합하여 지식재산권 형사 집행 협력 관계를 구성하였다. 중국은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조직한 “폭풍”, “반고”, “허리케인”, “진실”, “오프션” 등 행동에 참여하였고, 21개의 연합 집행 조사를 전개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집행 기관과 연합하여 “블루 계획”, “4.8” 위조 의약품 사건, “5.8” 위조 휴대폰 사건, “2.20” 글로벌 위조 의약품 판매 사건 등 9개 중대형 사건에 대한 연합 행동을 개시하였다. 중국 세관은 중국-미국, 중국-러시아, 중국-유럽, 중국-일본-한국 세관 지식재산권 협력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집행에 있어서 협력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을 처리하고, 적극적으로 세계 세관 조직, 상해합작조직, WIP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지식재산권 사무에 참석하였다.

중국은 국제 연합 집행 실무에서 협력을 중요시하고 공헌을 하여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글로벌 위조품 단속 기구, 국제형사경찰기구, 미국상공회의소 등 여러 기구와 조직들은 연이어 중국에게 “최고공헌상”, “최적지구 사례상”, “지식재산권 수호상” 등을 발급하였다. 십여 년간, 세계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제도와 보호 현황에 대해 더욱 깊은 이해를 하게 되어, 보다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중국은 점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최선 지역으로 부상되고 있고, 국제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참여권, 발언권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책임성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3.6.3 지식재산권 해외 전개와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시행한 후부터, 중국은 지식재산권 협력 시스템 개혁과 보완에 힘을 기울였고, 지식재산권 영역에서의 대외적 협력을 목적으로 한 보호조례, 권리보호 방안, 해외 지침 등을 발급하였다. 지식재산권 업무를 외교적 프레임에 포섭, 국제조직과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하여 현저한 효과를 취득하였다. 현재 외부와의 지식재산권 협력 시스템을 초보적으로 구축하였고 지식재산권 대외 협력에서 중요한 발전을 취득하였다.

중국은 점차 PCT 국제특허 체계와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체계의 주요 사용자가 되었다.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PCT 국제특허 출원은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유하고 있다. WIPO 사무총장 Francis Gurry는 중국의 국제특허시스템 사용이 대폭 증가한 것은 중국 경제가 신속한 변화를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중국의 혁신 기업들은 점차 전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혁신 활동이 새로운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PCT 국제특허출원의 신속한 증가는 중국이 점차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으며, 기업은 특허를 이용하여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중국의 마드리드 상표등록 출원은 4810건으로 전년 대비 59.6% 증가하였다. 중국은 마드리드 회원국 중 3위를 기록하였다. 중국의 기업은 해외 시장 개척을 진행하는 동시에, 시장경쟁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혁신 발전에 효과적인 디딤돌이 될 것이다.

첫 번째,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영역 확보

국의 지식재산권 기구들과 각종의 세미나와 트레이닝 교육을 개최함으로써 중국 기업이 국외 지식재산권 제도를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하였다. 중국은 미국, 인도, 한국, 호주 등 국가와 지역에서의 특허 신청 실무 지침을 발표하였고, 정기적으로 <대외투자 협력 국가(지역)별 가이드>를 발급하였고, 해외 산업 중대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제정하였고, 중국지식재산권보호망과 해외지식재산권 정보 플랫폼인 “쓰난쯔망”을 출범하여, 지식재산권 국제 정보를 적시에 발표하여 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지도와 경고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구 간의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였다.

두 번째, 해외 지식재산권 환경 조사

2009년부터, 중대 경제활동 지식재산권 심사 제도를 실시하여, 주요 해외 국가들의 지식재산권 환경을 조사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2012년, 2014년과 2016년에 개최한 국외 지식재

산권 환경조사 연구보고 발표회를 통하여 알려졌고, 2016년에는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법률 리스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세 번째, 해외 전시회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전개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빨라지면서, 외국 전시회 참석은 기업이 무역을 확장하고 브랜드를 홍보하는 중요한 경로와 방식이 되었다.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하고, 전시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지식재산권 문제도 생각보다 많다. 2012년에 “기업지식재산권 해외 권익 보호 센터”를 설립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9년부터는 미국, 독일에서 개최한 국제 유명 전시회에 “전시회 참석 중국 기업 지식재산권 서비스 센터”(IPR DESK)를 설치하였다. 2017년 국제 전시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업무 방안을 제정하였고 “중국 기업 지식재산권 해외 권익 보호 지원 펀드”를 설립하여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권익 보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네 번째, 상표 해외 권익 보호 시스템을 탐색

중국 브랜드가 “국제화”되는 것을 지지하고, 기업 상표 해외에서 권익을 보호하는 관련 시스템을 탐색하고 있다. 해당되는 방안들을 제정하고, 해외에서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을 개설하여 해외 진출한 기업들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지력과 실무적인 지원을 준다. 관련 기업과 기업들을 지원하여 국내 유명 브랜드가 해외에서 악의 선점을 당한 사건을 잘 해결하였다.

3.6.4 소결

중국은 대외 지식재산권 협력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여 전반적인 국제협력 전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재산권 업무를 외교 업무 프레임이 편입하여, 지식재산권의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제규칙과 표준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 지식재산권 조직, 중점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이루고 있고, “일대일로”도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취득하고 있다. 국제인재 양성과 교류를 전개하여 중국의 소프트 파워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 집행의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영역에서의 이미지를 대폭 향상하였다.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과 능력은 아직도 향상할 여지가 있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운용하고 배치하는 능력도 부단히 향상하여 국제적 경쟁력이 현저히 인상되었다. 지식재산권 국제협력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전략과 일치하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중국의 목소리를 내어 중국의 방안과 중국의 지혜를 공헌하고 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영역에서의 영향력을 향상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전략 시행에 양호한 외부적 환경을 만들고 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협력에서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미 전반적이고, 다방면적이며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대외 협력 총체적 구조를 조성 완료하였다. 더욱더 많은 정부부서, 기업과 조직들이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사업에 적극적인 평가를 주고 있다. 대외기구와 전문가의 조사에 따르면, 57%의 외국기업들은 중국이 전략을 시행한 후부터 지식재산권 영역에서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98%의 조사참여자들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중국이 국제지식재산권 영역에서의 참여권, 발언권, 주동권이 더 향상되어 전 세계 지식재산권 체계와 개혁에서 날이 갈수록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의 단순한 참여자로부터 건설자로 변화하고 있다.

3.7 지식재산 인프라

지식재산권 인프라 환경 조성에 관하여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은 아래의 3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① 지식재산권 인재조직 건설, ②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 ③ 지식재산권 고등교육 및 훈련

3.7.1 지식재산권 인재조직 건설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시행 후부터, 중국의 지식재산권 인재조직은 부단히 확장되고 있고, 구조가 보다 합리화되었다. 지식재산권 업무는 국가의 업무 분류에 속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일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지식재산권 인재조직 확대 및 구조 개선

전국 지식재산권 종업 인수는 50만 명을 초과하여 구조가 합리적으로 양질의 인재들이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였다. 전국은 리더형 인재, 100명 고위층 인재, 1,000명 핵심인재와 10,000명 전업 인재 등 4가지 등급으로 구분된 전문종업원조직, 행정관리와 법 집행, 심사, 서비스업, 기업,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 기구 지식재산권 인재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 인재조직을 구성하였다.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와 법 집행 인재 양성 계획”, “특허 심사 인재 능력 향상 계획”, “기업 사업 단위 지식재산권 인재 개발 계획”,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인재 지원 계획” 등을 실행하여, 전국에 2만 명이 넘는 지식재산권 행정관리와 법 집행 인재와 심사능력 구비 인재들을 양성하였다. 그중 심사인원은 1만여 명으로, 심사 인재의 수량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기업과 사업단위의 지식재산권 인재는 6만여 명이 되어, 인재의 수량과 질이 모두 대폭 향상하였다. 서비스업 종업원은 6만여 명,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인재는 1만여 명이다. 기층의 집행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양성을 하여 상표 행정 집행 능력을 향상하였다. 원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은 전국 상표 행정 업무 집행 트레이닝을 전개하여, 행정 업무 집행 인

원들이 상표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였는데, 천여 명이 넘는 참석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은 지방 공상부서의 상표 트레이닝 업무를 중요시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업무 전문가를 파견하여 수강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지식재산권과 관련되는 직업들을 국가 직업 분류 목록에 추가

2015년 7월 29일, 국가직업분류목록 수정 업무위원회는 2015년판 <중화인민공화국 직업 분류 대전(中华人民共和国职业分类大典)>(이하 <대전>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대전>은 총 8개 대 유형, 75개 중유형, 434개 소유형, 1,481개의 직업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경제와 금융 전문인력” 유형에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의 세부항목을 신설하였다.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은 새로운 직업군으로 <대전>에 편입되었다. 이는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이라는 직업군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직업 유형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지식재산권 인재 특성에 맞는 직업 능력 평가 시스템 구축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중공중앙 <직명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关于深化职称制度改革的意见)>의 요구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 “직명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 관철 집행에 관한 실행방안(国家知识产权局贯彻落实<关于深化职称制度改革的意见>实施方案)>을 제정하였다. 이는 직명 평가 표준을 완비, 창조적인 직명 평가 시스템 구축, 직명 관리 방식 개혁, 직명 평가와 인재 양성의 상호 촉진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각 지방의 지식재산권국은 인사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본 지역 지식재산권 영역에서의 전문 기술인재의 직명 평가 업무를 전개하였다. 현재까지 이미 열 몇 개의 성은 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명 평가 업무를 진행하였고, 지식재산권 전문 인재 능력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법부서는 변호사 업무 능력 평가시스템과 평가 시점을 운영하여, 지식재산권 전문 영역에 대한 평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네 번째,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 인재조직 건설에서 직면한 문제와 도전

이는 주로 지식재산권 관련 고급 인력 부족, 지식재산권 인재 평가 시스템 미비, 지식재산권 인재에 대한 수요 확대 필요 등에 있다.

첫째, 인재의 업무 능력 향상이 필요하고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 과학연구원과 기업 간의 좌담회를 통하여, 인재의 전문화, 고급화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등교육기관 측 대표들도 고등교육을 통하여 양성된 인재들이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저작권 행정 관리와 법 집행 인재, 지식재산권 심사 인재, 지식재산권 심판 인재, 기업과 과학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 인재, 사법 감정 인재, 저작권 관리직, 특히 가이드 인재,

지식재산권 평가 인재, 지식재산권 운영 인재 등이 수량적으로 부족하다. 지식재산권법 집행 인재, 신흥 영역 지식재산권 심사 인재, 지식재산권 형사 사법 인재, 지식재산권 통계 인재, 국유기업과 과학연구기관에 소속된 지식재산권 관리 인재들의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동서부 지역의 지식재산권 인재조직은 규모와 품질 등 모든 측면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각 유형의 지식재산권 인재 조직은 보편적으로 인재 공급이 부족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서비스 인재를 예로 들자면, 대형 첨단기술 기업이 지식재산권 전략 등에 대한 심층적 자문을 원하고 있는 반면, 고급적이고 복합적이며 글로벌적인 인재들은 양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이는 이미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구들이 슬럼프가 되었다. 특허신청, 소송 등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인원 비율은 특허 분석, 특허 발굴, 특허 가이드, 리스크 평가, 지식재산권 구조 작성, 추세 분석 등 영역에 종사하는 고급형 자문 제공 인원보다 훨씬 많다. 총체적으로, 각 부서가 연합하여 발급한 정책이 비교적 적고, 정책들의 유형도 주로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조직 건설에 있어서 방향 설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따라서 각 부서는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과 법규정의 품질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권 인재 평가 시스템이 미비하다. 현재 지식재산권 인재 훈련, 평가와 발견, 선임, 유동과 보장 등 영역 중, 훈련과 선임에 있어서는 일정한 진보를 했다. 하지만 평가와 발견, 유동과 보장 등 방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평가에 관하여, 기업 지식재산권 인재 평가 시스템이 미비하여 인재의 유동과 발전을 제어하는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 좌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인재에 대한 사회적 정의, 인재에게 부여한 지위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하였다. 지식재산권 사업에 종사하는 인재들은 직명, 직책, 직무 능력 평가 등에 있어서 귀속감과 명예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이 지식재산권 인재 평가 관련 노하우들을 분석해 보면, 이들은 <대전> 중 “지식재산권 전문인원”의 직무유형을 기반으로 하여 지식재산권 전업과 관련되는 직무평가 정책을 제정하였고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 직명 평가 업무를 적절하게 진행하고 있다.

셋째, 지식재산권 인재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창조 주체들의 지식재산권 창설 능력이 부단히 향상되면서, 시장주체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권을 운용하여 시장경쟁에 참석하는 인식도 향상되었다. 이와 관련된 국제 간 협력이 일상화되고 있기에, 정치소양이 높고, 업무 능력이 강하며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와 법 집행 인재들, 지식재산권을 사용하여 기업의 경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관리 인재들, 지식재산권 거래 허가, 자본화와 산업화 등을 지식재산권을 운용할 수 있는 인재들, 특히 정보 자원을 사용하여 기업과 산업 및 사회 발전에 필요한 특허 정보를 제공 및 분석할 수 있는 인재들, 글로벌적 시야가 있고 풍부한 국제교류 노하우와 지식재산권 국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국제화 인재들이 필요하다.

3.7.2 지식재산 인프라

〈강요〉는 전국 초등 및 중학교 지식재산권 보급 및 교육 계획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초등 및 중학교 과정에 편입하고, 정부가 주도하고 신문매체가 지탱해 주며 사회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홍보 업무체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 업무들은 부단히 추진되어 비교적 견고한 지식재산권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첫 번째, 지식재산권 보급 교육과 성과

2015년 국가 지식재산권국과 교육부가 연합하여 전국 초등 및 중교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 업무를 전개하면서부터, 각 부서들의 노력을 통하여, 협력 시스템이 점차 완비되었고, 각 업무도 심층적으로 추진되었다. 2017년 연말까지 총 112개 국가급 시범 학교를 선정하였다. 성급 초등 및 중학교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 업무를 전개한 성은 무려 20개나 되었고, 해당 평가를 통과한 시범 학교는 천 개를 넘는다. 국가, 성, 지방 등 3급 지식재산권 시범 학교들에서 시작된 지식재산권 시범 학교 평가 업무는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한 아이를 교육하면 한 가정이 혜택을 보고 이어서 전반 사회가 발전” 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2017년에 발행한 〈초등 및 중학교 종합 실천 활동 과정 지도 강요(中小学综合实践活动课程指导纲要)〉는 지식재산권 교육을 편입하여 지식재산권 교육과 초등 및 중학교 일상 교과와의 결합을 강화하였다. 본 조사에 따르면, 절반을 초과한 대중이 지식재산권 교육을 초등 및 중학교의 교육과정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2013년보다 17.9% 증가하였다. 이는 점차 많은 사람이 지식재산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이들의 지식재산권 인식 양성이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사회의 지식재산권 문화적 분위기가 개선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는데 이는 국제적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향후에도 지식재산권을 중요내용으로 설정하여, 청소년 법률 교육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우선 수업을 주요 방식으로 청소년의 법치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여러 종류의 법률 보급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법치 교육 실천 기지를 건설하고 실천 기지를 청소년 지식재산권 교육의 두 번째 교실이 되게끔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지식재산권의 문화 확산방식 다양화

2013년, 국가지식재산권국, 교육부, 문화부 등 6개 부서는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에 관한 일부 의견(关于加强知识产权文化建设的若干意见)〉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을 촉진하는 정책 체계를 구성하였다. 지식재산권 법치 강화를 전국적 법률 보급 계획에 편입하여, 지식재산권 법치 홍보 교육을 전국민 법률 지식 보급의 중점 업무로 설정하여 전 민족의 지식재산권 법치 소양을 향상하였다. 2009년부터 연속 10년간 전국 지식재산권 홍보주 활동을 전개하였다. 4번의 지

식재산권 포스트 디자인 설계 대회와 2번의 지식재산권 공익광고 대회를 조직하였고, 누적 참석자 수는 수천만 명이였다. 중국 최초로 지식재산권을 내용으로 한 다큐멘터리 <국가의 예리한 병기> 는 각 매체에서 방영되었으며 대중의 호평을 받고 있다.

세 번째, 사회 대중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단히 향상되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조사에 따르면 대중의 지식재산권 인식이 향상하여, 60%를 넘는 대중은 지식재산권이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는 5년 전 대비 22.7% 증가하였다. 90%를 넘는 대중은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들을 알고, 유형별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인지도를 갖고 있다.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에 대한 이해 비율도 대폭 증가하여 무려 85%나 된다. 90%를 넘는 대중이 불법복제품을 반대하고, 80%를 넘는 대중이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받겠다고 하였다. 이번 조사는 대중을 대상으로 6,200건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는데, 이 결과에 의하면 10년 동안 사회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대폭 증가하였고 그 영향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응답자의 87.7%는 최근 10년간 지식재산권이 전반적으로 발전되었다고 보았다.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에 대한 인지율은 2008년의 3.70%로부터 2018년의 85.28%로 향상하였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단히 강화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리적 표시,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문예 등에 대한 인지도가 50%가 되지 않는다. 식물신품종, 영업비밀, 집적회로 설계도 등에 대한 인지도는 80%가 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 대중이 여전히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향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대중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존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응답자의 32.8%는 지식재산권이 자신의 생활과 큰 관계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20%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지만 납득은 된다.”, “지식재산권 침해보다 가성비가 더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사회의 지식재산권 의식과 소양은 지식재산권 전략 실행을 보장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혁신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초이다. 건전한 지식재산권 인재조직을 보유하고 있고, 양질의 지식재산권 서비스와 양호한 지식재산권 사회 환경이 받쳐주어야, 혁신 활동이 사회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양호한 사회 감독 체계를 조성하여 “발견-신고-처리-홍보” 등으로 이루어진 인프라 강화 및 업그레이드 발전 사슬을 구성하여야 한다.

3.7.3 지식재산권 고등교육 및 훈련

고등교육과 훈련에 대해, <강요>는 지식재산권 교육을 고등학교 소양 교육 체계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부 국가지식재산권 인재양성 기지를 설립하고, 훈련 계획을 제정하여 유형별 지식재산권 인재양성을 진행하였다. 현재 형세 발전과 인재의 특성에 따라, 지식재산권 교육과 훈련 방법을 부단히 창출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첫 번째, 지식재산권 건설의 지속적인 강화, 지식재산권 전공의 신속한 발전 및 지식재산권 교육 환경 완비

2012년, 교육부는 <보통고등교육기관 학부 전공 목록(2012년)(普通高等学校本科专业目录)(2012年)>을 발표하였는데, 그중에서 지식재산권 전공을 법학과 유형과 법학전공 산하의 특설 전공으로 지정하고 비안제를 실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들이 학과 전공 구조의 최적화를 추진하고, 구조를 조정하여 지식재산권 전문화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장려하였다.

2018년 3월까지, 전국적으로 38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지식재산권 학원을 설립, 76개 고등교육기관이 “지식재산권” 학부 전공을 개설하고 6개 고등교육기관은 지식재산권 제2학위를 개설하였다. 2017년까지, 전국에는 총 39개 학교가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 관리” 등 전공에 대한 2급 학과 석사과정 총 41개를 개설(2007년 11개)하였고, 박사과정 20개(2007년 11개)를 개설하였다. 2016년 지식재산권 학부 졸업생은 1,235명, 석사 졸업생은 218명, 박사 졸업생은 29명이다. 지식재산권 전문인재 교육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영역 고급 연수반을 38번 조직하였으며, 고위층 전문인원을 2,700명 가까이 양성하였다.

두 번째, 다양한 고등 교육 양성 방식을 통하여 종합 능력 향상

2018년 7월까지, 전국에는 총 100개 고등교육기관이 지식재산권 학원 또는 전공을 개설하였다. 학사(제2학위 포함), 석사, 박사 등을 포함한 고급 인재들이 선수과목, 필수과목, 포럼, 강연, 실무실천 등 여러 가지 교육 방식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을 터득하고 기타 전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을 보급하였다. 전국 대학생 필수과목인 “사상도덕 소양과 법률기초”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는 국가의 법률과 법규, 지식재산권 보호가 혁신형 국가건설, 과학기술의 발전과 창출의 촉진에 대한 역할 등을 학습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시민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80%를 넘는 대중은 모든 학생들에게 지식재산권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대학생의 필수과목 또는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다수의 고등교육기관은 지식재산권 관련 인재들을 양육하고 있다. 전담 교직원 외에도, 많은 고등교육기관은 학교 외부에서 법관, 검찰관, 변호사, 행정관원 등을 초빙하여 초빙교수 또는 전문가 고문으로 영입하여 교학

과 연구를 지도하게 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들이 지식재산권 인재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 97.67%를 초과하는 설문참석자들은 “학사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과목에 대한 수강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석사와 박사 학위 부여가 가능한 고등교육기관들은, 국제화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학생들이 공기관 파견 유학생 신분 또는 자비 유학생 신분으로 유학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전공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교육부는 공기관 파견 유학생에 대한 지원의 역할을 하여, 국가 전략에 맞추어 국제 시야와 경쟁력을 갖춘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12~2016년까지, 중국은 153명의 우수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전공에 관한 유학을 지원해 주었다. 이외에도 2017~2019년까지는 전문경로를 통하여 10~20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전담 인원을 선발하여 외국으로 연수파견을 하였다. 교육부는 여전히 국가전략에 따라 공기관 파견 유학생 규모를 확대하고, 더욱 많은 인재들이 외국 일류대학과 연구기구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지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세 번째, 교육 기지와 교육 체계 건설 강화

전국 19개 성시는 26개의 국가지식재산권 훈련기지를 설립하였고, 이들은 전국 각 성에서 50여 개의 성급 지식재산권 훈련기지 설립을 인솔하여, 구조 배치가 대체적으로 합리하고 특색이 선명하며 영향력이 전국 전 지역을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일련의 지식재산권 전문인원 양육 정책을 제정 및 실행하여, 이에는 <전국 지식재산권국 교육 훈련 지도 강요(개정판)(2013년) (全国知识产权培训指导纲要)(修订版)(2013年)>, <전국지식재산권 교육 훈련 유형 구분 지도 대강(시행)(2014년)(全国知识产权教育培训分类指导大纲)(试行)(2014年)>, <“12.5 국가 자체 혁신 능력 건설계획” 실행에 대한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 업무 실행 방안(2013년)(落实十二五国家自主创新能力建设规划知识产权人才专项工作实施方案)(2013年)>, 백천만 지식재산권 인재 공정, 고급 인재 인솔 계획, 전업 기술인재 지식 갱신 공정 등을 전개하여, 전국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구축에 힘을 기울여, 분업이 명확한 지식재산권 훈련 체계를 조성하였다.

네 번째, 다양한 유형 및 등급의 훈련과 교류활동 진행

각종 유형의 교육, 훈련과 교류 활동을 통하여, 지방 지식재산권 훈련 기지와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 공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출범 등 방식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인재조직 건설 업무를 착실히 전개하였다. 예컨대 광시장족자치구의 “십백천” 지식재산권(특허) 인재공정, 남경이공대학의 “지식재산권 54321 인재 양성 계획” 등이 있다. 동시에, 기업 사업단위 지식재산권 인재 능력 향상 계획,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인재 지원 계

획 및 지식재산권 고급 교사 육성 추진계획 등을 실시하였다. 매년 기업 사업단위와 서비스업계를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교육에 3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였다. 이외에도, WIPO가 중국에서 다양한 인재 양성활동을 실시하였다. 중국 정부의 공무원, 학자 및 기타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국에서 연이어 2회의 여름학교를 개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WIPO는 중문 온라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재 양성의 실무는 현실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비록 몇 년간 인재 양성 학습을 많이 개최하였지만, 시장의 고정적이고 다양한 수요로 인하여 인재에 대한 요구를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가 꼭 필요한 인재에 대한 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지식재산권 운영 인재, 특히 정보 분석 인재, 국제화 인재가 부족하다. 지식재산권 인재 조직의 체계적인 교육, 실용적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지역이 자체적 발전의 수요에 따라, 각 지역에서의 인재 양성 가능성에 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실무 플랫폼을 구축하여 더 많은 실무적 지식재산권 인재와 청년간부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3.7.4 소결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을 시행한 후부터, 지식재산권 인프라 건설은 현저한 성과를 취득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홍보 및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초등 및 중학교 수업에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내용이 편입되었고 18개 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 인재조직 양성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싱크탱크를 설립하여 전업 인력을 대대적으로 양성하였다. 이 밖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직업이 국가직업분류대전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지식재산권 학과 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공이 확대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환경이 완비되었다.

지식재산권 사업의 발전과 전반 사회가 인재에 대한 요구가 부단히 변화되면서, 거시적 관리가 부족하고, 인재의 수량과 질이 지식재산권 산업 발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고급적이고, 국제적이며, 복합적이면서도 실무적인 지식재산권 인재들이 부족하다. 이는 지식재산권 강국 전략 실행에서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인재 양성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교육으로 양성된 인재와 실무에서 요구하는 인재 간에 매칭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학과의 건설과 사회 대중의 인식 향상 등 여러 방면에서 향상의 여지가 많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경기개발연구원, 한·중·일 지방행정시스템 비교, 2010.
- 김송이, 최근 3년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 김아린, 중국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정책과 특허동향 분석 및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 박우서 외, 중국지방정부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3.
- 신찬호, 중국의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8호 제3, 2015.
- 양평섭,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이상훈 외, 중국의 주요 지역별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이하나, 저장성 디지털 경제의 발전 특징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11.
- 조은교, 중국 스마트 제조혁신의 열쇠, 산업인터넷(IIoT)의 발전전략과 시사점, 2019.
- 중국전문가포럼, “산둥, 2020년 중국 대표 혁신형 성으로 거듭난다”, 2019. 8. 5.
- 채욱, 이장규, 김부용 공편,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과 권역별 경제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특허청, 중국 지재권 실무 가이드북, 2019.
- 한국무역협회, 중국제조 2025 추진성과와 시사점, 2019.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 & Focus on IP 제 2019-12 권호,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19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위조품 관리감독의 강화 강조”, 2019.
- Kotra 해외시장뉴스(김성애 중국 베이징 무역관), “中 경제, 南은 뜨고 北은 진다”, 2019. 6. 18.

2. 해외 문헌

- CITA, The Global Race to 5G, 2019. 4.
- Gabriella Montinola,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Federalism, Chinese Style: The Political Basis for Economic Success”, *World Politics* 48(1) 1996.
- Jean Oi, “Private and local state entrepreneurship: The Shandong case,” paper presented at the 44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Asian Studies, 2-5 April, 1992, Washington, D.C
- MERICS, China’s industrial policy in the quest for global tech leadership, No 8. July 2019.
- Yuanzheng Cao, Yingyi Qian and Barry R. Weingast, “From federalism, chinese style to privatization, Chinese style”, *Economics of Transition*, 7(1) 1999,
- 阿里研究院, 从连接到赋能“智能+”助力中国经济高质量发展, 2019.
- 中国信息通信研究院, 中国数字经济发展与就业白皮书(2018年), 2018. 4.
- 中国工程科技发展战略研究院, 中国战略性新兴产业发展报告2018, 2017. 11.
- 中国互联网协会·中国信息通信研究院, 中国“智能+”社会发展指数报告, 2019. 7.

- 中国信息通信研究院, 2018中国数字经济时代人才流动报告, 2019.
- 国家知识产权局, 战略性新兴产业专利统计分析报告(2017), 2017. 12. 25.
- 国家知识产权局, 2018年国家知识产权局年报, 2019.
- 郭璐, 改革开放40年来中国对外贸易制度演变研究, 价格月刊, 总第497期, 2018.
- 马颖, 李建波, 从进口替代到出口导向: 大陆与台湾贸易发展战略的路径比较, 亚太经济, 第3卷, 2007.
- 胡安琪, 中国商标法修改最新情况, 国家知识产权局, 2019.
- 民法典侵权责任编(草案)(二次审议稿)
- “李克强在全国深化“放管服”改革优化营商环境电视电话会议上发表重要讲话”, 中国政府网, 2019. 6. 25.
- JETRO, 中国知財権侵害関連裁判マニュアル, 2017.

대외협력 연구

중국 지식재산 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행인 권택민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화 02-2189-2600
홈페이지 www.kiip.re.kr
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